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의 성과 분석 연구

최효미·박은정·김태우·우석진

연구보고 2019-10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의 성과 분석 연구

연구책임자	최 효 미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박 은 정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김 태 우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우 석 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19-10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의 성과 분석 연구

발행일 2019년 11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세일포커스(주) 02) 2275-6894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90485-05-0 9332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8년 기준 정부의 육아정책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는 적게는 11조원에서 많게는 1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2018년 국가 총 재정 예산(429조원)의 최대 4.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무엇보다 지난 10년간의 육아정책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최소 3배 이상의 막대한 재정 투자의 증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자의 급속한 증가는 지속적인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시책과 노력에 기인하는 바가 크며, 특히 무상 보육의 실현과 최근 아동수당 지원 등에 따른 육아 지원의 강화가 재정 투자 증가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재정 투자의 증가와 막대한 재원의 소요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의 방향에 대한 근본적 논의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의 규모를 면밀히 고찰하고, 이의 효과성을 검증하여 향후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그 간 육아정책의 목표로 제시되어 왔던 양육부담 완화, 여성 경제활동참여 증진, 출산을 제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육아정책분야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육아정책의 방향에 대한 대국민 조사 및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육아정책분야 재정투자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보고서의 질 제고를 위해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을 주신 전문가, 실태조사에 응해주신 응답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또한 방대한 범위의 연구 수행을 위해 수고한 연구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9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요약	1
I.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의 내용	16
3. 연구 방법	17
4. 연구 범위	18
II. 연구 배경	27
1. 육아정책분야 지원 정책 개관	29
2. 선행 연구의 경향성 분석	59
III.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 현황	65
1. 육아정책사업 총액	67
2. 중앙정부 재정 투자: 2010-2018	69
3. 지방자치단체(일반재정) 재정 투자: 2016-2018	73
4. 시도교육청(교육재정) 재정 투자: 2010-2017	78
5. 육아휴직 지원 재정 투자	86
6. 지도로 본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	87
7. OECD 국가의 육아지원정책 분야 재정 투자	93
IV.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의 효과성 분석	97
1. 주요 성과 지표 및 분석 개요	99
2. 자녀 양육부담 완화에 대한 효과성 분석	100
3. 여성 고용 관련 지표에 대한 효과성 분석	113
4. 출산율 관련 효과성 분석	120
5. 소결	125

V.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에 대한 의견 조사	129
1.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자에 대한 인식 조사	131
2. 전문가 조사 결과	171
 VI. 결론 및 정책 제언	 179
1.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자 정책의 기본 방향	181
2. 정책목표 변화에 대응한 재정 투입 재구조화	181
3. 포용적 복지국가를 향한 지원 강화	183
4.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원 방식 모색	188
5.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정립	190
6. 육아지원 정책의 지역별 격차 축소 필요	192
7. 신뢰성 있는 육아정책 재정 자료 구축 체계 마련	194
8. 정보 제공 강화를 통한 체감도 증진 필요	195
 참고문헌	 197
Abstract	207
부록	211
1. 선행연구 경향성 분석에 활용된 문헌	211
2.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의 중점과제 및 사업	214
3.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의 정책과제 및 세부 내용	228
4. 중장기보육계획의 정책과제 및 세부 내용	231
5. 설문지 - 대국민조사	238
6. 설문지 - 전문가조사	252



표 목차

〈표 Ⅰ-3-1〉 실태조사 목표 표본	18
〈표 Ⅰ-4-1〉 예산 계정 과목을 중심으로 살펴본 육아정책분야 사업 분류(2019년 기준) ..	23
〈표 Ⅱ-1-1〉 기본 보육료 변화 추이 (2010~2019)	31
〈표 Ⅱ-1-2〉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기준 (2019년 기준)	32
〈표 Ⅱ-1-3〉 영아전담 어린이집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2019년 기준)	33
〈표 Ⅱ-1-4〉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및 교사 겸직 원장 지원 (2019년 기준) ...	33
〈표 Ⅱ-1-5〉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지원 (2019년 기준)	34
〈표 Ⅱ-1-6〉 어린이집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지원 (2019년 기준)	34
〈표 Ⅱ-1-7〉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2019년 기준)	35
〈표 Ⅱ-1-8〉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2019년 기준) ...	36
〈표 Ⅱ-1-9〉 장애아전문시설 신축 지원(2019년 기준)	37
〈표 Ⅱ-1-10〉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2019년 기준)	37
〈표 Ⅱ-1-11〉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2019년 기준) ...	39
〈표 Ⅱ-1-12〉 차량 운행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2019년 기준) ...	39
〈표 Ⅱ-1-13〉 유치원 지원 사업 현황 (2019년, 서울 기준)	40
〈표 Ⅱ-1-14〉 유치원 지원 사업의 변화(2017~2019년, 서울 기준)	42
〈표 Ⅱ-1-15〉 유아교육 진흥 사업 (2019년, 서울 기준)	43
〈표 Ⅱ-1-16〉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변화 과정	44
〈표 Ⅱ-1-17〉 (부모)보육료·유아학비 정부 지원 단가 추이	46
〈표 Ⅱ-1-18〉 돌봄 취약계층 보육료 지원 : 자격 기준 및 지원 금액(2019년 기준) ...	47
〈표 Ⅱ-1-19〉 가정 양육 수당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변화 과정 (일반가구기준) ...	48
〈표 Ⅱ-1-20〉 가정양육수당 연령별 지원 금액 현황(2013~2019년)	49
〈표 Ⅱ-1-21〉 한부모 가구 지원 정책 현황(2019년 기준)	50
〈표 Ⅱ-1-22〉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변화(2012~2019)	50
〈표 Ⅱ-1-23〉 한부모 추가양육비 지원 기준 변화(2012~2019)	51
〈표 Ⅱ-1-24〉 한부모 생계보조금 지원 기준 변화(2015~2016)	51
〈표 Ⅱ-1-25〉 장애아동수당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2019년)	52
〈표 Ⅱ-1-26〉 장애아동수당 지원 내용 변화 과정(2011~2019)	52
〈표 Ⅱ-1-27〉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사업 현황(2019년)	53

〈표 II-1-28〉 다문화 가족 자녀 생활서비스(2019년)	54
〈표 II-1-29〉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변화과정(2014~2019)	55
〈표 II-1-30〉 육아휴직 제도 현황(2019년)	56
〈표 II-1-31〉 육아휴직 제도 변화 과정(2010~2019년)	56
〈표 II-1-3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2019)	58
〈표 II-1-3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2011~2019년)	58
〈표 II-2-1〉 선행연구 분류 : 분석대상 사업 및 효과성 지표별	59
〈표 II-2-2〉 선행연구 분류 : 분석대상 사업 및 분석자료 연도별	60
〈표 II-2-3〉 선행연구 분류 : 효과성 지표 및 분석자료 연도별	61
〈표 II-2-4〉 선행연구 분류 : 분석대상 사업 및 분석자료 유형별	61
〈표 II-2-5〉 선행연구 분류 : 효과성 지표 및 분석자료 유형별	62
〈표 III-1-1〉 연도별 산출방법별 육아정책사업 총액	69
〈표 III-2-1〉 연도별 소관기관별 중앙정부 육아정책사업 예산	69
〈표 III-2-2〉 연도별 소관기관별 중앙정부 육아정책사업 수	71
〈표 III-2-3〉 연도별 사업유형별 중앙정부 육아정책사업 예산	72
〈표 III-2-4〉 연도별 사업유형별 중앙정부 육아정책사업 수	73
〈표 III-3-1〉 연도별 시도별 지방자치단체 육아정책사업 예산	74
〈표 III-3-2〉 연도별 시도별 지방자치단체 육아정책사업 수	75
〈표 III-3-3〉 연도별 사업유형별 지방자치단체 육아정책사업 예산	76
〈표 III-3-4〉 연도별 사업유형별 지방자치단체 육아정책사업 수	77
〈표 III-4-1〉 연도별 사업별 유아교육재정 지출액	79
〈표 III-4-2〉 연도별 시도별 유아교육재정 지출액	80
〈표 III-4-3〉 연도별 목그룹별 누리과정 지출액	81
〈표 III-4-4〉 연도별 시도별 누리과정 지출액	82
〈표 III-4-5〉 연도별 목그룹별 유아교육진흥 지출액	84
〈표 III-4-6〉 연도별 시도별 유아교육진흥 지출액	85
〈표 III-5-1〉 육아휴직 지원금액(2010-2017년)	87
〈표 IV-1-1〉 효과성 분석의 성과 지표 및 분석 개요	99
〈표 IV-2-1〉 교육·보육비용 분석 대상 특성 : 독립변인	101
〈표 IV-2-2〉 교육·보육비용 분석 대상 특성 : 종속변인	103
〈표 IV-2-3〉 교육·보육비용 부담 정도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 정도 : 종속변인 · 103	
〈표 IV-2-4〉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확률에 미친 영향 요인 (Heckman 2stage의 1단계 결과) · 108	
〈표 IV-2-5〉 교육·보육비용에 미친 영향 요인 (Heckman 2stage의 2단계 결과) · 110	

〈표 IV-2-6〉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확률(교육보육비 부담 모형 1단계 결과)	111
〈표 IV-2-7〉 영유아 교육·보육 부담에 미친 영향 요인 (Heckman 2stage의 2단계 결과) ...	112
〈표 IV-3-1〉 연도별 시도별 고용율(2016년)	115
〈표 IV-3-2〉 조사별 시도 고용율(2015년) : 지역별고용조사 vs 인구주택총조사 ...	116
〈표 IV-3-3〉 인구주택총조사(2015) 개인 특성 : 15세 이상 여성	117
〈표 IV-3-4〉 여성 고용율 제고 효과	118
〈표 IV-3-5〉 여성의 취업 여부 결정에 미친 효과	119
〈표 IV-4-1〉 출산율 관련 효과 분석 설명변수	120
〈표 IV-4-2〉 종속변수	121
〈표 IV-4-3〉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이 여성의 초혼연령에 미친 영향 추정결과 ...	122
〈표 IV-4-4〉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이 여성의 초산연령에 미친 영향 추정결과 ...	123
〈표 IV-4-5〉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이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 추정결과	123
〈표 IV-4-6〉 유아교육 지원이 여성의 초혼연령에 미친 영향 추정 결과	124
〈표 IV-4-7〉 유아교육 지원이 여성의 초산연령에 미친 영향 추정 결과	124
〈표 IV-4-8〉 유아교육 지원이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 추정 결과	125
〈표 IV-5-1〉 효과성 분석 결과 요약	126
〈표 V-1-1〉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121
〈표 V-1-2〉 자녀 연령	133
〈표 V-1-3〉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입 규모에 대한 인지	134
〈표 V-1-4〉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자 적정성에 대한 인식	135
〈표 V-1-5〉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 확대 규모	137
〈표 V-1-6〉 육아정책분야 예산 투입 확대가 필요한 분야	139
〈표 V-1-7〉 육아정책분야 예산 투입 축소가 필요한 분야	140
〈표 V-1-8〉 응답자 특성별 육아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원 방식	145
〈표 V-1-9〉 육아 지원이 필요한 정책 대상 연령	146
〈표 V-1-10〉 보육료 지원금 수준 조정	148
〈표 V-1-11〉 누리과정 지원금 수준 조정	149
〈표 V-1-12〉 가정양육수당 지원금 수준 조정	150
〈표 V-1-13〉 보육료 지원 대상 조정	152
〈표 V-1-14〉 누리과정 지원 대상 조정	153
〈표 V-1-15〉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조정	154
〈표 V-1-16〉 응답자 특성별 아동수당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156
〈표 V-1-17〉 응답자 특성별 아동수당 지급 연령 범위	158

〈표 V-1-18〉 아동수당 외 추가 지원 필요 대상과 자녀당 지원 금액	159
〈표 V-1-19〉 성별 육아휴직 지원 제도 조정 필요성 및 지급 기간 기준	161
〈표 V-1-20〉 육아휴직급여액 관련 조정 내용	162
〈표 V-1-21〉 성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인지	162
〈표 V-1-22〉 성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아버지 참여 독려 효과	163
〈표 V-1-23〉 성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이유 ..	164
〈표 V-1-24〉 성별 아빠 육아 참여 지원 제도의 확대 필요성	165
〈표 V-1-25〉 향후 재정 투자 확대가 가장 필요한 사업	168
〈표 V-1-26〉 육아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동의 정도	170
〈표 V-2-1〉 전문가 조사 응답자 특성	171
〈표 V-2-2〉 육아정책 분야의 재정 투자액의 확대가 필요한 분야	173
〈표 V-2-3〉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지에 있어 정책 목표 설정 시 우선되는 측정 기준 ...	173
〈표 V-2-4〉 육아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정부의 재정 지원 방식 ...	174
〈표 V-2-5〉 정부의 지원 설계 시 우선 고려되어야 할 정책 목표	175
〈표 V-2-6〉 정부의 지원을 설계 시 정책목표별 효과성	176
〈표 V-2-7〉 육아 정책의 효과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이유	177



그림 목차

[그림 I-4-1] 육아정책분야 범주	21
[그림 II-1-1] 보육비용 지원 체계(2019년 기준)	30
[그림 III-1-1] 연도별 중앙정부 육아정책사업 예산	68
[그림 III-2-1] 연도별 소관기관별 중앙정부 육아정책사업 예산	70
[그림 III-2-2] 연도별 소관기관별 중앙정부 육아정책사업 수	71
[그림 III-3-1] 연도별 시도별 영유아 1인당 지방자치단체 육아정책사업 예산 ...	74
[그림 III-3-2] 연도별 시도별 지방자치단체 육아정책사업 수	76
[그림 III-3-3] 연도별 사업유형별 지방자치단체 육아정책사업 예산	77
[그림 III-3-4] 연도별 사업유형별 지방자치단체 육아정책사업 수	78
[그림 III-4-1] 연도별 유아교육재정 지출액	80
[그림 III-4-2] 연도별 시도별 유아1인당 유아교육재정 지출액	81
[그림 III-4-3] 연도별 목그룹별 누리과정 지출액	82
[그림 III-4-4] 연도별 시도별 유아1인당 누리과정 지출액	83
[그림 III-4-5] 연도별 목그룹별 유아교육진흥 지출액	84
[그림 III-4-6] 연도별 시도별 유아1인당 유아교육진흥 지출액	86
[그림 III-6-1] 2016년 보육 예산의 분포	88
[그림 III-6-2] 2016년 5세이하 영유아 분포 및 영유아 1인당 예산 분포	88
[그림 III-6-3] 2012~2017년 시도교육청 유아교육 예산의 지역별 분포	90
[그림 III-6-4] 2012~2017년 5세 이하 영유아의 지역별 분포	91
[그림 III-6-5] 2012~2017년 영유아 1인당 시도교육청 유아교육 예산의 지역별 분포 ...	92
[그림 III-6-6] GDP 대비 ECEC에 대한 공공 지출 비중(OECD, 2013년 기준) ...	93
[그림 III-6-7] GDP 대비 가족급여(family benefits) 대한 공공 지출 비중(OECD, 2013년 기준) ...	94
[그림 IV-2-1] 육아가구의 교육·보육비용 변화 추이(2010~2017)	104
[그림 IV-2-2] 육아가구의 자녀연령별 교육·보육비용	105
[그림 V-1-1] 육아 정책 분야의 정책 목표 우선 순위	141
[그림 V-1-2] 육아 정책 분야의 목표별 재정 투입 효과성에 대한 인식	142
[그림 V-1-3] 육아정책의 낮은 효과성에 대한 이유	143
[그림 V-1-4] 육아정책 지원금 조정 시 취약계층 우선 지원 대상	155
[그림 V-1-5] 지급 연령별 아동수당 희망 지급액	158

[그림 V-1-6] 아동수당 지원 정책 반대 이유	160
[그림 V-1-7] 보육 및 유아 교육 기관 지원 사업별 재정 확대 필요성 혼인상태별 비교 ..	166
[그림 V-1-8] 보육 및 유아 교육 기관 지원 사업별 재정 확대 필요성 연령별 비교 ..	167
[그림 V-2-1] AHP 모형1 : 재정투자액 확대 필요 분야	172
[그림 V-2-2] AHP 모형2 : 재정투자액 정책목표 설정 시 우선되는 측정 기준 ...	173
[그림 V-2-3] AHP 모형3 : 효과성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재정 지원 방식 ...	174
[그림 VI-2-1] 육아정책 지원 대상 연령 및 지원 수준 확장(안)	187



부록 표 목차

〈부표 1-1〉 선행연구 경향성 분석에 활용된 문헌 목록	211
〈부표 2-1〉 제1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2006-2010)	214
〈부표 2-2〉 제2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2011-2015)	217
〈부표 2-3〉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2016-2020)	225
〈부표 3-1〉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3-2017)	228
〈부표 3-2〉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	230
〈부표 4-1〉 1차 중장기보육계획(2006-2010)	231
〈부표 4-2〉 아이사랑 플랜(2009-2012)	233
〈부표 4-3〉 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3-2017)	235
〈부표 4-4〉 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237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경주되면서,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도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왔음.
- ☐ 본 연구는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육아지원 분야 지원 정책의 재정 투자 규모를 살펴보고, 총합적 차원의 재정 투자가 어떠한 정책적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고찰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함.
- ☐ 이를 통해 향후 육아정책분야 지원 정책의 방향 설정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나. 연구 내용

- ☐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의 범주를 설정하고 해당 분야의 현황을 정리.
- ☐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의 특징을 파악하고,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의 효과성을 자녀 양육부담 완화, 여성 고용에 대한 효과, 출산 관련 효과로 구분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함.
- ☐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의 방향성과 개선점 등에 대해 영유아 부모 및 전문가 의견을 살펴보고, 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함.

나. 연구 방법

- ☐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행정 통계 및 패널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계량적으로 분석함. 또한, 정책 우선 순위와 성과 분석을 위해 전문가 조사(AHP)를 실시하고, 재정 투자의 성과에 대한 수요자 인식 조사 및 방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

2. 연구 배경

-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입의 범주에 속하는 보육정책, 유아교육정책, 일가정양립 지원 등 유관분야의 주요 정책 현황을 제시함.
- 선행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육아정책’, ‘보육정책’, ‘유아교육 정책’, ‘육아지원’, ‘저출산’ 등의 정책 분야와 ‘재정 성과’, ‘효과성’ 등의 단어를 조합하여 검색되는 논문들을 중심으로, 성과 변수와 연구 범위, 정책 분야 등을 분석하였음.
- 선행연구들의 대다수는 보육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으며(103개 논문 중 70개), 일·가정양립과 관련된 연구가 15개, 저출산 정책이 12개였음.
- 효과성 지표(종속변수)별로는 출산 관련 지표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음.
- 효과성 지표별로는 지표가 무엇이나에 무관하게 국가통계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지만, 특히 출산 관련 효과를 검증한 경우에 국가통계를 활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

3.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 현황

- 육아정책분야의 재정 규모를 추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에서 제공하는 상세재정통계DB의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연도별 자료와 각 시도 교육청의 내부자료에 해당하는 103 및 104장표를 수집하여 정리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를 알아보기 위해 지방재정365 홈페이지의 재정데이터 개방 세부사업별 세출현황 연도별 자료를 활용.

가. 육아정책사업 총액

- 교육부 예산을 제외한 중앙정부 재정투자에 시도교육청 재정투자 유치원 지출 총액을 더한 총액(1)은 2010년 4조 4,334억원에서 계속 증가해 2017년 13조 2,626억원으로 나타남.
- 교육부 예산을 제외한 중앙정부 재정투자에 대표적인 시도교육청 재정투자 사업인 유아교육진흥 예산과 누리과정 예산을 더한 총액(2)는 2010년 3조 2,854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11조 8,867억원이었음.

- 국비를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투자에 시도교육청 재정투자 유치원 지출 총액, 육아휴직 지원금 등을 합산한 총액(3)은 2017년 기준 17조 7,274억원으로 나타남.

나. 부문 및 부처별 재정 투자 현황

- 중앙정부 재정 투자는 2010년 육아정책사업 총액은 3조 890억원이었다가 증감을 반복하지만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2017년 7조 6,734억원, 2018년 8조 6,507억원까지 증가함.
- 2016년 11조 5,245억원, 2018년 12조 8,673억원으로 나타나 2016년 대비 2018년이 1조 3,428억원 늘어남.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018년 3조 890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서울 2조 4,383억원, 부산 1조 4,170억원 순으로 예산이 큼.
- 2010년 유아교육재정 지출총액은 1조 3,868억원에서 2017년 5조 6,478억원까지 증가. 2012년 이후 유아교육 재정의 급증은 누리과정 시행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음.
- 2010년 육아휴직 지원 금액은 1,781억에 불과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3.8배가량 증가한 6,804억원이었음. 여전히 적은 비중이기는 하나 최근 들어서는 남성 육아휴직 지원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이 고무적임.

4.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의 효과성 분석

가. 주요 성과 지표 및 분석 개요

- 육아정책분야 재정투자의 효과 분석은 분석 자료의 시점인 2017년도 이전의 정책 목표를 고려하여, 자녀 양육부담 관련 지표, 여성 고용 관련 지표, 출산 관련 지표로 구분하여 검증함.
- 효과성 분석의 주요 성과 지표는 자녀 양육부담 관련 지표로 총 4개지표, ①교육보육서비스 이용 여부, ②교육보육비용, ③교육보육비용 부담 정도, ④사교육비 부담 경감정도이며, 여성 고용 관련 지표로 ①기혼 여성(20~45세) 고용률, ②여성의 취업 여부임. 출산 관련 지표로는 ①초혼연령, ②초산연령, ③합

계출산율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집계자료(행정통계) 등임.

나. 자녀 양육부담 완화에 대한 효과성 분석

- 한국노동패널조사 13년도(2010년)부터 20차년도(2017년) 총 8개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여, Heckman 2stage를 활용하여 분석함.

1)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확률에 미친 영향

- 중앙정부예산과 누리과정예산, 유아교육진흥예산을 매칭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 결과, 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모의 연령이 20대인 경우에 비해 30대인 경우, 고졸에 비해 전문대졸인 경우, 취업모인 경우, 가구소득은 높을수록, 가구원수는 적을수록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육아예산(1인당) 규모가 클수록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확률이 높아짐.
- 무상 보육·유아교육의 도입 이후(2013~2017년) 데이터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1인당) 육아예산규모는 유의한 효과는 없음.
- 누리과정과 유아교육진흥지자체 예산과 지자체 예산을 매칭한 자료를 활용(2016~2017년)한 분석 결과에서는 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서비스 이용 확률이 높아졌으며, 취업모 여부가 양의 영향력을 보임. 한편,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금 수혜 여부는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확률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2) 교육·보육비용 경감 효과

- 전체 년도(2010~2017년)의 중앙정부예산 및 누리과정, 유아교육진흥예산을 매칭한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모의 연령이 30대일 때와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400만원이상인 구간에서 교육보육비용 지출이 많음. 한편,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전체적으로 교육보육비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 (1인당) 육아예산규모는 예산 규모가 커질수록 의외로 교육보육비용이 증가하

는 현상이 포착됨. 이는 서비스 이용 확률의 증가에 따라 교육보육비 지출 가구가 증가하여 전체적인 평균 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추측됨.

- 무상보육·유아교육 도입 이후(2013~2017년) 중앙정부, 누리과정, 유아교육진흥예산을 사용한 분석 결과에서는 (1인당) 육아예산규모의 계수는 양수지만 유의한 효과는 발견되지 않음.
- 2016~2017년 지자체예산과 누리과정, 유아교육진흥예산을 활용한 분석에서는 (1인당) 육아예산규모는 음수지만 유의한 효과는 발견되지 않음.

3) 교육·보육비 부담 완화 효과 및 사교육비 경감 정도

- (1인당) 육아예산규모는 교육·보육비용 부담 정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중앙정부예산과 누리과정, 유아교육진흥예산(2013~2017)은 교육보육 비용 부담 정도와 양의 관계, 지자체예산과 누리과정, 유아교육진흥예산(2016~2017)은 음의 관계를 보였으나, 둘 다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는 않음.
- 사교육비 부담 경감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중앙정부예산과 누리과정, 유아교육진흥예산(2013~2017)이 부담 경감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지자체예산 및 누리과정, 유아교육진흥예산(2016~2017)을 사용한 경우에도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계수는 양수임을 확인할 수 있음. 즉, 육아가구들은 육아지원예산의 증가가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음.

다. 여성 고용 관련 지표에 대한 효과성 분석

- 지역별 고용조사 및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층모형을 활용한 분석을 실시함.
- 지역 내 남성 지배 산업 종사자 비중이 높을수록, 성경합산업의 종사자 비중이 높을수록 여성 고용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 여성 고용율 제고 효과를 분석한 다층 모형의 분석 결과에서는 (1인당) 육아예산규모의 경우에는 양의 방향성을 보이지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분석되어, 지역별 육아예산의 지원 규모에 따라 지역의 여성 고용율 자체가 제고되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육아 예산이 여성의 취업 여부 결정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모형의 결과에서는 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취업 확률은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취업모일 가능성이 높음. 반면, 더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일수록 모의 취업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1인당) 육아예산규모가 클수록 모의 취업 확률이 낮아지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초등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가구 여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라. 출산율 관련 지표의 효과성 분석

- 통계청의 행정통계자료로 국가단위의 집계 자료(조혼인율, 가임여성 수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주요 분석 방법은 GMM을 활용한 동적패널모형임. 예산 자료의 한계로 일부 모형은 OLS를 활용하여 분석함.
- 시도 본청의 보육 예산 자료는 2016년 이전 자료가 없기 때문에 2016년 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단순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시도본청과 시도교육청의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정책은 여성의 결혼 및 출산시기를 늦추고 출산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 시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예산자료(2012~2017년) 자료를 활용하여 동적패널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정책은 여성의 초혼 및 초산연령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합계출산율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됨. 유아교육 지원 정책이 출산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결과가 도출됨.

5.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에 대한 의견

가.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자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 대국민 인식 조사는 총 1,055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응답자 연령, 자녀 연령 및 지역규모 등을 고려하여 표집함.
- 육아정책 분야에 현재 재정 투자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4점

만점에 2.4점으로 나타났으며, 부족한 편이라는 응답이 49.2%로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재정 투자 규모가 부족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도 10.9%함.

- 응답자의 연령대에 따라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육아정책 분야에 재정 투자 확대 규모가 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 예산 투입 확대가 필요한 육아정책 분야(중복응답)로는 어린이집,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 지원 분야에 응답한 비율이 54.5%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육아휴직,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 일가정 양립 지원 분야에 예산 투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4.2%였음.
- 육아정책 분야에서 정부 지원의 정책 목표 우선순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정책 목표의 1순위 응답 기준 양육비용 부담 완화가 40.5%, 출산율 제고 21.8%,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유인이 12.4%,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이 9.3%, 수요에 부응한 육아가구 만족도 증진이 8.1%, 동등한 출발선 보장이 7.7%, 기타 응답이 0.3%순으로 나타남.
- 현행 육아 정책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이 각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출산율 제고가 2.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동등한 출발선 보장도 3.0점으로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남. 반면, 아동의 삶의 질 향상 목표는 3.4점으로 재정 투입 효과성이 가장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비용 부담 완화와 육아 가구의 만족도 증진이 3.3점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육아 지원이 필요한 정책 대상의 연령 상한선을 질문한 후 응답의 평균을 도출한 결과 9.9세, 약 10세까지 육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육아정책 분야의 주요 사업들 중 향후 재정 투자 확대가 가장 필요한 사업은 1순위에서 3순위까지 합산한 결과 기준 육아휴직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33.1%,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이 32.2%, 보육료 지원이 31.3%, 저소득층 지원은 27.9%, 아동수당이 20% 순이었음.

나.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자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 육아정책 재정 투자의 방향성에 대해 전문가 20명에게 실시한 AHP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사 실시함.

- 육아정책 분야의 재정 투자액의 확대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AHP 조사 결과, 상대적 중요도에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분야는 돌봄 취약 계층 지원 분야로 전문가들은 한부모, 다문화, 장애 가구 등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육아 지원이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됨.
-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육아휴직,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 > 보육지원(어린이집 지원,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등) > 유아교육(유치원 지원, 누리과정 지원 등) 지원 순으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기타 저출산 지원(아동 안전 지원, 아동 건강 지원, 출산 지원, 인식 개선 등)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는 0.086에 그쳐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임.
-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자에 있어 정책 목표 설정 시 우선되는 측정 기준에 대한 쌍대 비교 평가에서는 전문가들은 형평성이 가장 우선하며, 다음으로 효과성, 재정 효율성 순으로 응답됨.
-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 육아정책 분야 재정 지원 방식으로 가장 적합한 방식에 대해서는 시간 지원(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가장 적합하다는 응답이 0.340점으로 가장 높고, 기관 지원(국공립 기관 확충, 교사 지원, 어린이집 및 유치원 모니터링 등)이 다음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반면 서비스 지원(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 의료 서비스 지원 등)의 가중치는 0.204점이고, 비용지원이 0.188점으로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보임.
- 정부 지원 설계 시 우선 고려되어야 할 정책 목표에 대해서는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이 7점 만점에 6.3점으로 가장 높고, 동등한 출발선 보장(사회적 형평성 제고)가 5.6점으로 다음이었음.
- 육아가구의 만족도 증진(수요자 요구에 부응)해야한다는 의견은 7점 만점에 4점으로 전문가들로부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음.
- 육아정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입이 실제로 제시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게 평가함.

6. 결론 및 정책 제언

- 정책 목표 변화에 대응한 재정 투입 재구조화

- 육아정책의 방향은 기존과 같은 양적 성장이나 단기적 성과보다는 보다 미래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라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재정 투입 계획이 필요함.
 - 현행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자에서 영유아 가구에 대한 보편적이고 직접적인 비용 지원(보육료, 누리과정지원금, 가정양육수당)액은 약 45~65%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육아정책 분야 재정의 최대 절반가량이 패러다임 변화에 활용이 가능함.
- 포용적 복지국가를 향한 지원 강화
- 육아정책 분야 재정 지원의 확대 시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전문가가 다소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지원 대상은 돌봄 취약계층 특히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수준이 증가해야한다는 것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2010년 이후 취약계층에 대한 육아지원 예산은 모두 합쳐 육아정책 분야 재정 총액에서 2~3%내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임.
 -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전반적인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저소득 가구 및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현재보다는 훨씬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추가적인 비용 지원은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재구조화 혹은 아동수당 지원 제도의 개선 등과 함께 논의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 단, 현행 아동 수당은 아동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보편 지원 형태로 정책이 설계되어 있는바 지원금의 명칭을 아동수당플러스 혹은 아동급여(가칭)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이 제도의 목적은 보편 지원이 아닌 사회적 형평성 제고 등에 있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지원금 수준은 최소 10만원이상이 되어야 정책에 대한 체감 혹은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지원 대상의 연령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으로는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와 함께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과 초등돌봄교실 등이 대표적 검토 대상 사업에 해당함.
-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원 방식 모색
- 시간 지원 및 서비스 지원(일가정 양립 지원)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육아 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 및 상한액 상향조정을 위한 예산 확보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직장 문화 개선 혹은 사업체 지원금의 확대 등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 사료됨.

-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관성이 높거나 전달체계의 일원화가 가능한 사업 등을 좀 더 큰 사업 단위로 묶어주거나 연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등 정책 사업의 재구조화 및 정비가 필요.

□ 비용 지원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정립

- 육아정책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의 수행을 위해 일관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한 재정 조달 구조의 정비가 시급히 요구됨.

□ 육아지원 정책의 지역별 격차 축소 필요

- 지역별 여건의 차이로 인해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와 아동의 삶의 질에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정책 사업의 기준보조율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확충의 경우 임 정책적으로 크게 확장 국면에 있으며 이러한 정책 기조는 유지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 외에도 육아 친화 환경 조성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시급히 모색할 필요성이 높음.

□ 신뢰성 있는 육아정책 재정 자료 구축 체계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료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아 지역별 재정 상황 비교나 시계열 현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
- 지방재정 현황을 공시할 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통일되고 일관된 기준에 맞춰 재정 현황을 공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정보 제공 강화를 통한 체감도 증진 필요

- 현재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이미 구축되어 통합 지원 서비스의 기초를 이미 마련되어 있음. 다만 이와 같은 홈페이지에 대한 육아 가구의 인지가 아직까지는 높지 않은 바 이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임.

I

서론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다른 OECD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지속해오고 있으며(OECD Family Database¹⁾), 2018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명이하인 0.98명으로 떨어지는 등(통계청, 2019.2: 3) 유례없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001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초저출산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6년 이후 저출산 기본 대책 등을 수립하며 심혈을 기울여 왔다. 초기 저출산 극복 지원 정책은 주로 생애 초기인 영유아기 자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육아지원에 집중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다(관계부처 합동, 2006).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적용 기간에 속하는 2011~2015년 사이에는 무상보육·유아교육 지원 제도의 도입과 이에 따르는 지원이 크게 증가하며(대한민국정부, 2011), 보편적 복지로서의 보육이 자리를 잡은 시기였다. 이후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기존의 지원 체계를 큰 틀에서 유지하되, 돌봄의 지원 시기를 초등학교까지 확장하는 한편 임신·출산 지원을 미혼 남녀의 결혼 지원으로까지 확장하는 양상으로 확대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6).

그 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재정 투자의 증가와 중점 추진 과제의 무게 중심이 조금씩 변화하긴 하였으나, 지난 20여년간의 정부의 저출산 지원 정책은 여전히 인구 정책으로서의 출산율의 제고에 방점이 두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결국 정부는 2018년 12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통해 저출산 지원 정책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2018년 12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로드맵’에 따르면, 기존 저출산 지원 정책과 달리 향후에는 모든 세대의 삶의 질

1) OECD Family Database, SF_2_1_Family_rate 파일 참조,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19. 3. 9 인출).

개선과 성 평등 확립에 역량을 집중한 저출산 지원 정책으로의 전환이 예고되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12).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의 정책 과제를 정비하고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하며, 이미 변화한 인구 구조에 대응하는 고용, 교육, 보건 의료 등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의 개편을 수반한 4차(2021~2025)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준비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12).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육아지원분야 지원 정책의 재정 투자 규모를 살펴보고, 종합적 차원의 재정 투자가 어떠한 정책적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고찰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여년 간에도 육아지원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여전히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재정 투자 비중이 높지 않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OECD, Family Database²⁾).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정책 사업 등에 국한한 연구와 특정 지표에 대한 효과성 검증 연구는 종종 진행되긴 하였으나,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선행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좀 더 큰 틀에서 정부의 총체적 재정 투자가 정책의 애초 목표에 어떠한 양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보다 효과적인 지원 방식은 무엇인지 유추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육아정책분야 지원 정책의 방향 설정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의 범주를 설정하고, 해당 분야의 현황을 정리하였다. 이때, 육아정책분야는 보육정책, 유아교육정책과 저출산 지원 정책 중 자녀 돌봄 혹은 육아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재정 투자를 살펴보았다. 둘째, 기존 재정 투자 현황을 중심으로 한국의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의 특징을 파악하고, 성과 분석의 틀을 마련하였다. 셋째,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의 효과성을 자녀 양육부담 완화, 여성 고용에 대한 효과, 출산 관련 효과로 구분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재정 투자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넷

2) OECD Family Database, PF1_1_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파일 참조,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19. 3. 9 인출).

째,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의 방향성과 개선점 등에 대해 영유아 부모 및 전문가 의견을 살펴보고, 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육아정책분야의 범위 확정 및 성과 분석 틀 확정 등을 위해 선행 연구를 폭넓게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입 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현재 육아정책 관련 예산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시도 지자체 및 교육청 등 여러 부처에 걸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육아정책 분야의 범위를 확정한 상태에서 연구 범위에 속하는 사업 및 정책 예산을 식별하여 투입 재정을 확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재정 투자의 효과 분석을 위해 기존 선행연구들이 수행한 분석 지표 및 분석 방법 등에 대한 폭넓은 검토를 통해, 효과성 검증을 위한 분석 틀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나. 2차 자료 분석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 국내의 행정 통계 및 패널 자료 등을 탐색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계량적 분석 방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성과 지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른 방법론과 다른 자료가 활용되었으며, 거시 자료로 여성고용율, 출산율 등과 같은 행정통계와 지역별 고용조사, 인구주택총조사, 한국노동패널 등을 활용하였다.

다.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전문가 조사

육아정책분야 정책 전문가, 재정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성과분석 방법 및 분석 틀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정책 우선 순위와 성과 분석을 위해 전문가 조사(AHP)를 실시하였다³⁾. 또한, 연구의 방향 설정,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입의 특

3) 전문가 자문회의로 충분하다고 사료될 경우 수행하지 않을 수 있음.

징과 주요 쟁점, 향후 정책 방안 마련 등 연구 전반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라. 수요자 인식 조사

재정 투자의 성과에 대한 수요자 인식 조사 및 방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를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대국민 실태조사는 혼인여부 및 첫째 자녀 연령대를 고려하여 할당 표집하며, 총 1,000명을 목표로 온라인 조사로 수행하였다. 이때, 할당 표집의 기준은 아니지만 응답자의 성별과 가구의 맞벌이 여부, 자녀수(다자녀 가구) 등을 고려하여 표본의 치우침이 없도록 하였다.

〈표 I-3-1〉 실태조사 목표 표본

단위: 명

구분		첫째 자녀 연령대			
		자녀없음	영유아	초등학교령기	중·고등학교령기
응답자	미혼	200	-	-	-
혼인상태	기혼	200	200	200	200

주: 1) 집단 내에서 응답자의 성별, 응답 가구의 맞벌이 여부, 지역 등을 고려하여 표집함.

2) 첫째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므로, 초등학교령기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영유아 자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마. 정책실무협의회 및 외부 연구진과의 협업

육아정책분야 재정 현황 파악, 제도 개선 요구 및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유관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구 결과의 타당성과 정책 기여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한편, 육아정책연구소 내부 연구진 뿐 아니라 외부 공동연구진 및 연구협력진을 활용하여, 연구 수행과 분석 결과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보다 풍부하고 종합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4. 연구 범위

육아정책분야 재정투자의 성과 분석을 위해 우선 '육아정책분야'가 포괄하는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보육정책, 유아교육정책 등을 시작으로 일가정 양립 지

원과 육아지원 정책, 가장 넓게는 저출산 관련 정책 모두가 ‘육아정책분야’에 포괄될 수 있을 것이다.

가. 선행연구 및 문헌에 나타난 ‘육아정책분야’ 범주

선행연구에 나타난 ‘저출산 정책’의 범주는 협소하게는 출산장려금과 같이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직접적 현금 지원 정책을 의미하는 경우(최준욱·송헌재, 2010; 김민곤·천지은, 2016)가 있는가 하면,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이나 보육료 지원 사업 넓게는 어린이집⁴⁾ 지원 사업과 확충 사업까지를 포괄하는(이명석·장한나·이승연 외, 2012; 이삼식·유계숙·윤홍식 외, 2008; 이삼식·최효진·정혜은, 2010; 정성호, 2012 등) 연구까지 용어의 활용 범주가 매우 넓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일가정 양립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선행연구의 경우에는 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간제 근로와 같이 맞벌이 혹은 여성 고용 등과 관련된 정책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으며(김인경, 2017; 박종서·김문길·임지영, 2016; 류연규·백승호, 2013), 윤자영·홍민기·김향아 외(2013)이나 이동선(2016)과 같이 보육료 지원 사업과 양육수당, 초등 돌봄 등을 포함한 경우가 일부 있었다. 한편, 김근주(2017)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의 유형을 검토해 보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는 모성휴가, 부성 휴가 등을 포괄하는 부모 휴가와 유연근무제 정도로 구분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한편, 보육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보육료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홍정림·이미화·김영란 외, 2013; 이해원, 2013; 윤희숙, 2014; 김은정·이혜숙, 2016 등)이었으며, 인프라 즉 보육시설 관련 지원을 지칭하는 경우(유승현, 2011)가 일부 있었다. 또한, 박미경·조민효(2014) 등은 보육정책을 보육료 지원사업과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으로 정의하여, 현재 보육사업안내 등에 제시된 보육재정에 매우 근접한 범주의 사업을 보육정책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최성은·우석진(2009) 등의 연구는 보육지원 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보육료 지원 사업 뿐 아니라 육아휴직 등을 정책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4) 원문에는 논문 작성 당시 용어인 ‘보육시설’ 등으로 표기되어 있음.

이에 반해, 유아교육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영역으로 정책 효과성을 측정한 연구가 많지 않았는데⁵⁾, 유아교육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에는 유치원 취원율에 서부터 교사에 대한 처우, 유아학비 지원 등을 모두 포괄하여 사용(권미경·김문정, 2012; 김소정·이채정, 2012; 최은영·이진화·김승진 2015)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한편, 저출산 지원 정책을 총 망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에 따르면, 1차 기본 계획에서 총 96개 과제, 2차 기본계획에서 95개 과제가 저출산 지원 정책에 해당하는 것으로⁶⁾ 분석됐으며(대한민국정부, 2016 : 20), 3차 기본계획에서는 46개 과제가 제시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6: 194~196). 3차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의 범위를 살펴보면, 맞춤형 보육체계 등 보육정책부터 초등 돌봄, 지역 사회 돌봄 여건 조성⁷⁾과 같은 돌봄 지원 정책부터 사교육부담 경감, 공교육 역량 강화 등 교육정책,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확산,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등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청년 고용, 신혼부부 주거 지원과 임신 출산 등과 관련된 지원 정책까지가 저출산 정책으로 포괄되어 있었다(대한민국정부, 2016: 194~196).

한편, 보육 중장기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1차년도 기본계획(2006~2008)은 5개의 추진과제, 2차 기본계획(2013~2017)은 6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으며, 3차년도 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5대 정책과제가 제시되었으며 4개 분야 총 14개 지표가 제시되었다. 14개의 지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 열린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 표준보육과정 개선, 표준보육비용 재계측, 보육교사 양성체계, 보수교육관리, 보조·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평가인증제도 개선, 부모교육 실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시간제 보육반 등이다(보건복지부, 2017. 12 : 17).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에 따르면, 유아교육의 주요 추진 과제로 국공립 유치원 확대, 안정적 지원체계 강화(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 편성), 저소득 유아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다문화 유아 및 가정에 대한 교육확대, 특수유아에 대한 통합교육 확대 운영, 공영형 사립 유치원 도입, 공공위탁을 통한 운영 방식 다양화, 사립유치원의 법인 전환 활성화, 놀이·유아 중심의 누리과정 혁신, 혁신 유치

5) 주로 보육정책과 함께 유아교육이 언급되는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이는 유아기 누리과정 지원금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모두 적용되는데다, 교육 영역에 속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6) 성장 동력,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직접적 관련성이 낮다고 보이는 사업을 제외함.

원 확대, 유아 중심으로 방과후과정 개편, 돌봄교실 운영 확대, 건전한 유치원 운영 지원, 학부모 안심인증제 도입·운영, 공립유치원 급식 개선, 유아 안심 알리미, 학부모 참여 활성화, 행정인력 확충, 누리과정 지원금 지급방식 검토, 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평가제도 개선, 사립유치원 교원 및 행정 업무 지원 등이 제시되었다(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2018. 3 : 9~28).

[그림 I-4-1] 육아정책분야 범주

		저출산 기본 계획 (2016~2020)	
보육 중장기 기본계획 (2018~ 2022)		보육공공성 강화(1), 보육체계 개편(2), 보육서비스 품질향상(3), 부모양육지원 확대(4), 실행기반 강화(5)	맞춤형 보육(3-1), 돌봄지원체계 강화(3-2),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2018~ 2022)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교 육의 희망사다리(1), 교실혁명을 통한 유아교육중심의 문 화 조성(2), 교육공동체와 함께 유아의 건강한 발달지원(3), 유아교육 혁신을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4)	교육개혁 추진(3-3)
가족 및 고용 정책	일가정 양립지원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 확산 (4-1), 남성·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일· 가정양립 실천 여건 강화(4-2),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활성화 (4-3)
	육아지원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 (2-2),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건 조 성(2-3)
기타			청년고용 활성화(1-1),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강화(1-2), 임신·출산 사회 책임시스템 구축(2-1)

주: 괄호 안은 과제번호를 의미함.

자료: 1) 대한민국정부(2016).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p.194~196.

2) 보건복지부(2017. 1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p.17.

3)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2018).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 공공성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p.9~28.

한편, 경기도 가족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에는 핵심 영역으로 가족관계 역량강화, 가족친화문화조성, 일-가정-삶의 균형,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강화, 가족정책 전달체계 강화 등이 제시되어 있는데, 세부 사업 정책 과제 중 일하는 부모의 돌봄 참여 문화 조성, 한부모 가족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 이혼위기가족·재혼가족·조선행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등(이나련·정혜원·임혜슬, 2017 : 67~69)이 육아 지원과 중첩되는 지점이다.

이처럼 육아 및 저출산 관련 주요 부처의 기본계획과 선행연구의 연구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육아지원 분야는 [그림 I-4-1]의 굵은 선 안의 추진 과제 정도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예산 계정 과목을 중심으로 살펴본 ‘육아정책분야’ 범주

그런데 위와 같은 영역을 육아지원분야로 포괄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이러한 범주에 포괄되는 재정 투입은 개별 정책 사업 혹은 지원 제도의 재정 투입액을 합산하여 산출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예결산의 계정 과목 등을 고려하여 범주를 확정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해당 지원 정책들의 정책 목표 등이 어느 정도 유사한 경우를 기준으로 정책을 분류하는 것이 이 후 지표별 효과성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서 위에 제시된 육아정책분야와 관련을 가진 단위사업을 추출해보면, <표 I-4-1>에 제시된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의 육아정책분야 단위 사업은 2019년 정책을 기준으로 32개 사업 정도로 정리되며, 아동·보육 부문의 보육지원 강화, 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 지원 프로그램과 여성·가족·청소년 부문의 여성·아동인권보호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이 이에 속한다. 단,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의 예산 계정에는 유아및초중등교육 예산이 통합되어 있어 유아교육 예산이 별도로 분리되지 않아, 유아교육 예산 계정은 별도로 살펴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과 같이 고용보험 등을 통해 지원되는 경우에도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는 파악이 어려워, 별도로 살펴보았다.

〈표 I-4-1〉 예산 계정 과목을 중심으로 살펴본 육아정책분야 사업 분류(2019년 기준)

단위: 개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수
아동·보육	보육지원강화	가정양육수당	1
		어린이집 관리	9
		어린이집 지원	2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2
		영유아 보육료 지원	2
	아동보호 및 복지강화	가정입양 및 위탁 지원	2
		방과후 돌봄 지원	1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	아동수당 지원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관리		4	
저출산대응인구정책		1	
여성·가족·청소년	여성·아동인권보호및가족지원	가족친화환경조성	1
		한부모가족지원(기금)	3
		가족친화환경조성	1
		아이돌봄지원	1
		취약·위기가족역량강화 지원	1
		계	32

주: 유아교육 예산은 유치중등교육 예산으로 묶여 있어 분리가 어려워 포함하지 못함.

자료: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세출지출사업 예산편성 현황(총지출). <http://www.openfiscaldata.go.kr/portal/service/openInfPage.do?mld=B002> (2019. 3. 7 인출)

한편, 유아교육 예산은 기능별·정책사업별로 예산을 검색해보아도 유아교육 예산이 명시되어 있는 사업은 교수활동지원 영역의 유아교육지원, 유치원 방과후 지원과정 운영,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사립유치원 지원 등 4개 영역의 예산과 누리과정지원 예산만이 조회될 뿐이다(지방교육재정알리미, 사업별 세출\기능별·정책사업별, <http://eduinfo.go.kr/portal/intg/intgInfTColBudgPage.do?%20return%20false;>, 2019. 3. 8 인출). 즉, 유치원 교직원의 인건비, 학교재정지원 관리,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등에서 유치원에 대한 예산을 분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초등 혹은 학교급 전체의 예산과 묶여서 보고되는 유아교육 예산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세입세출이 구분되는 104장표(혹은 103장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협력진의 도움을 받아, 유아교육 예산 장부를 취합, 정리하였으며, 유치원급으로 분류되는 예산 전체와 누리과정, 유아교육진흥 예산 등을 합산하여 유아교육 예산을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여성·가족·청소년 지원 분야 예

산은 기본적인 사항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은 근로자 지원으로 분류되고, 고용보험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별도로 살펴보아야 한다. 즉, 관련 예산은 고용보험DB 분석 등을 통해 확보가 가능한데, 현재 개략적인 예산의 수준은 e-나라지표 등을 통해 오픈되어 있어(e-나라지표,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⁷⁾), 이를 활용하였다.

문제는 해마다 단위사업이 조금씩 변동되기 때문에 예결산 자료에 나타난 사업의 범주도 해마다 조금씩 변동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구진이 연도별 예산 자료를 검토하여 위에서 정의한 육아정책분야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단위사업을 찾아낸 후, 해당 사업의 예산 혹은 결산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해당 분야의 재정투입 총액을 산출하였다. 재정투입 규모 산출 과정 및 내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III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육아지원분야 재정 투자라 함은 앞서 제시된 정책 추진 과제와 예산 계정 과목 수준에서의 예산 총액 혹은 결산 총액을 의미한다. 다만, 정책 추진과제와 시행되고 있는 정책 사업들은 새롭게 생겨나거나 소멸되면서 시점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연도별 재정 투자 규모는 특정 사업들에 대한 예산액의 변동이라기 보다는 이상에 제시된 범주와 연관성이 높은 사업들을 총체적으로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해주시기 바란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은 2018년 9월부터이기 때문에 2018년 이전의 예산액에는 해당 예산이 포함되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수당 지원을 육아정책분야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포함하여 재정 투자에 포함할 수도 있다⁸⁾.

7) e-나라지표, 고용노동부,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4, (2019. 3. 11 인출).

8) 실질적으로 2019년도 성과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에, 효과성 분석 과정에는 2018년 하반기 도입된 아동수당은 제외됨.

II

연구 배경

01 육아정책분야 지원 정책 개관

02 선행 연구의 경향성 분석

II. 연구 배경

1. 육아정책분야 지원 정책 개관

육아정책분야에 속하는 사업의 포괄범위가 매우 넓고 해마다 사업 내용이 약간씩 변동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포괄하는 예산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산 주체 등을 기준으로 사업을 구분하고, 해당 부문의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현황과 변화 과정을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무상보육·유아교육과 직접적 관련성을 갖는 영유아 가구에 대한 보육료·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금) 지원의 경우에는 예산의 규모가 매우 클 뿐 아니라 두 개 부분에 중첩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가. 보육 정책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보육 정책 중 어린이집을 매개로 한 지원을 살펴보면, 교사 인건비지원, 인건비 및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 지원, 시설비 지원, 기본보육료, 가구에 대한 지원(보육료 지원) 등이 있다(그림 II-1-1 참조). 여기서 가구에 대한 지원금은 누리과정 지원금 및 가정 양육수당 등과 함께 별도의 항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며, 이 항에서는 주로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지원금을 중심으로 지원 정책을 정리하였다.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보육 비용에 대한 지원은 모든 사업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자체의 예산을 매칭하는 형태로 지원이 이뤄진다.

[그림 II-1-1] 보육비용 지원 체계(2019년 기준)

	교사 인건비 지원	인건비 및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시설지원	기본보육료	가구지원 (아동지원)												
국공립 /법인	원장 80% 영아 80% 유아 30%			미지원	1. 0~2세 보육료 (단위: 천원) <table><tr><td>연령</td><td>종일반</td><td>맞춤반</td></tr><tr><td>0세</td><td>454</td><td>354</td></tr><tr><td>1세</td><td>400</td><td>311</td></tr><tr><td>2세</td><td>331</td><td>258</td></tr></table>	연령	종일반	맞춤반	0세	454	354	1세	400	311	2세	331	258
연령	종일반	맞춤반															
0세	454	354															
1세	400	311															
2세	331	258															
민간 /가정	미지원		어린이집 확충 기능보강 기타 지원 -차량운행비 -교재·교구비	1. 기본보육료 (단위: 천원) <table><tr><td>연령</td><td>단가</td></tr><tr><td>0세</td><td>485</td></tr><tr><td>1세</td><td>264</td></tr><tr><td>2세</td><td>179</td></tr><tr><td>장애아</td><td>543</td></tr></table>	연령	단가	0세	485	1세	264	2세	179	장애아	543	2. 돌봄 취약계층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료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맞춤반(긴급보육바우처)		
연령	단가																
0세	485																
1세	264																
2세	179																
장애아	543																
지원 대상	기관지원				가구지원												
지원 주체	중앙정부 + 지방 자치단체 + 기초지자체																

주: 1)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의 경우 3~5세 누리과정지원을 받지만, 누리과정 지원금은 유아교육 예산(2019년 기준, 유아교육 특별회계)에서 집행되므로, 이 표에서 제외.
 2) 지원 비용은 2019년 기준 지원 단가임.
 자료: 1) 최윤경·박진아·최효미 외(2017), 표준보육비용 산정 모형개발 연구, [그림 III-1-1]을 수정 보완함.
 2) 보건복지부(2019a), 2019 보육사업안내, p.332, p.395.

1) 기본 보육료 지원

기본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제 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 24조 (비용의 보조)에 근거하여 지원되며, 지원 대상은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다.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포함하되,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의 장애아 종일반은 제외한다(보건복지부, 2019a: 395).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 보육료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증액되어 왔는데, 2010년에 0세 35만원, 1세 16만9천원, 2세 11만2천원이던 기본보육료는 2019년도에는 0세 48만5천원, 1세 26만4천원, 2세 17만8천원으로 증가하였다(보건

복지부, 각년도). 한편, 장애아에 대한 기본보육료는 2015년까지는 0세아와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었으나, 2016년 이후에는 장애아반 운영의 고충을 감안하여 0세아보다도 조금 더 많은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보건복지부, 각년도).

〈표 II-1-1〉 기본 보육료 변화 추이 (2010~2019)

단위: 천원

연도	지원 금액				지원 대상
	0세	1세	2세	장애아	
2010	350	169	112	350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 린이집으로 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
2011	361	174	115	361	
2012~2014	361	174	115	361	
2015	372	180	118	372	
2016	383	185	121	402	
2017	395	191	125	402	
2018	437	238	161	490	
2019	485	264	179	543	

자료: 1) 보건복지부(2010a). 보육사업안내. p.305. 2) 보건복지부(2011a). 보육사업안내. p.81.
 3) 보건복지부(2012a). 보육사업안내. p.352. 4) 보건복지부(2013a). 보육사업안내. p.343.
 5) 보건복지부(2014a). 보육사업안내. p.368. 6) 보건복지부(2015a). 보육사업안내. p.320.
 6) 보건복지부(2016a). 보육사업안내. p.335. 8) 보건복지부(2017a). 보육사업안내. p.366.
 9) 보건복지부(2018a). 보육사업안내. p.385. 10) 보건복지부(2019a). 보육사업안내. p.395.

2)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금

가) 인건비 및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등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9a: 363). 인건비는 우선적으로 기본보육료와 가구에 지원되는 보육료 지원금을 수령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영아전담·장애아전담 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9a: 363)⁹⁾. 지원 수준은 앞서 [그림 II-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원장 및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한다. 이 외에 시간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교사 인건비 지원,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 농어촌 등 취약지원 추가 인건비 지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 등이 있다(보건복지부, 2019a: 363~369).

9) 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지급기준 이상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보건복지부, 2019a: 363).

한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3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 중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원시설 내 원장,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치료사 인건비 등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19a: 372).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액은 원장은 월지급액의 80%, 보육교사 혹은 특수교사는 80%, 치료사는 100%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한편, 보육교사 혹은 특수교사와 치료사는 1인당 월 30만원의 수당이 추가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19a: 373~374). 이외에도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는 장애아 방과후 보육교사 지원, 조리원 1명에 한해 월 지급액의 100% 인건비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9a: 374).

〈표 II-1-2〉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기준 (2019년 기준)

구분	원장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지원조건	장애아동현원이 12명 이상이고, 4개반 이상 편성된 경우 (단, 미취학장애아 현원이 9명 이상이고, 장애아 종일반이 3개반 이상 편성되어야 함)	소요현원(정원이내)에 대하여 지원(아동 3명을 기준으로 현원 2명인반의 교사)	정규인력으로 채용된 경우에 한해 아동 9명당 1명 지원 (교사대 아동비율 및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준수 시)
지원액	월 지급액의 80%	월지급액의 80%	월지급액의 100%
수당(월·인)	-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에 한해 30만원 아동 현원이 1명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해 지원	30만원
현원감소 시 지원 기준	12명 및 9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달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해 지원	아동 현원이 1명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해 지원	현원이 5명으로 감소시까지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2019a). 2019 보육사업안내. p.372~374.

한편,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장과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 조건은 영아 현원이 18명 이상인 경우 원장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며, 보육교사 인건비도 배치 기준에 따라 정원 내 소요현원에 대해 월 지급액의 80%까지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9a: 381). 이때, 원장의 경우에는 현원이 18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되며,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반별 아동현원이 0세반은 2명, 1세반 3명, 2세반 4명이 될 때까지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19a: 381). 또한,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영아전담시설(민간지정시설 제외)이 유아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의 30%가 추가적으로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19a: 381).

〈표 II-1-3〉 영아전담 어린이집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2019년 기준)

지원 대상	- 만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 2004년 이전 영아전담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영아전담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설
지원조건	- 원장 : 영아 현원이 18명 이상인 경우 - 보육교사 : 배치 기준에 따라 정원내 소요현원에 대한 지원
지원액	- 월 지급액의 80%
현원감소시 지원 기준	- 원장 : 영아 현원이 18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 보육교사 : 0세반 3명 기준 아동현원 2명, 1세반 5명 기준 아동현원 3명, 2세반 7명 기준 아동현원 4명까지 지원
기타 사항	- 교사겸직 원장의 경우 국공립·법인 등 시설의 지원 기준 동일 적용 - 보육교사의 경우 유아를 2세반과 혼합보육할 경우 영아가 50%(4명) 이상일 경우만 지원 -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영아전담시설(민간지정시설 제외)이 유아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할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의 30%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2019a). 2019 보육사업안내. p.380~381.

나)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등 지원

한편,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1일 8시간, 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월 22만원의 교사 근무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9a: 430). 또한,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에 대해서는 월 7만5천원의 수당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19a: 431).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교사겸직 원장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1-4〉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및 교사 겸직 원장 지원 (2019년 기준)

구분	지원 대상	지원 수준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 인가받은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및 특수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지자체 지원 포함)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시간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한 사람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는 제외	월 22만원
교사겸직 원장 지원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	월 7만5천원

자료: 보건복지부(2019a). 2019 보육사업안내. p.430-432.

다)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농촌지역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한다. 농촌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으로 임면보고된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로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적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자 혹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는 농촌지역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적으로 월 15일이상 실 근무한 경우에는 월 11만원의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9a: 429).

〈표 II-1-5〉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지원 (2019년 기준)

구분	지원 목적 및 지원 대상	지원 수준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 농촌 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특별근무수당을 지원 • 농촌 등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 및 치료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기준을 충족한 사람 -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 월 15일 이상 농촌 등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에서 근무한 자 -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및 대표자, 담임교사 등록되어 있으나 담임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는 제외	월 11만원

자료: 보건복지부(2019a). 2019 보육사업안내. p.428-429.

라) 어린이집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지원

보육교사의 업무 경감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 등을 위해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도 지원된다. 2019년 기준 대체교사의 인건비 지원액은 월 217만8천원(교통비 100천원, 관리자 기본수당 월300천원, 4대 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등 제비용 포함)이며, 보조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은 1일 4시간(주20시간) 근무 기준 월 973천원(4시간 기준)이다(보건복지부, 2019a: 435).

〈표 II-1-6〉 어린이집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지원 (2019년 기준)

구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사유	지원 수준
대체 교사 지원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 근무하는 담임교사	-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공백 발생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 - 보수교육(주중 1~5일, 최대 10일)	-지원 사유에 따라 1~10일 -1일 8시간(주40시간) 근무 기준

구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사유	지원 수준
		참석, 본인 결혼 등 연가, 건강검진, 예비군 훈련, 긴급 사유 발생시	월 2,178천원
보조 교사 지원	-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평가 인증유지, 정원충족율 70% 이상인 어린이집 - 장애아 현원 6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전문/통합 어린이집	- 어린이집당 보조교사 1명 - 장애아 현원 12명이상, 영아반 6개 이상 어린이집은 1명 추가 지원	1일 4시간(주 20시간) 근무시 월 973천원

자료: 보건복지부(2019a). 2019 보육사업안내. p.433~440.

마)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한편, 기준 보육시간(7:30~19:30) 이외의 시간에 추가보육을 실시하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인건비가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19a: 383~392). 시간연장형 보육은 기준 보육시간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운영되는 시간연장 보육, 7:30~익일 7:30까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24시간 보육,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휴일 보육 등이 있다(보건복지부, 2019a: 383~392). 각 사업별 지원 내용은 <표 II-1-7>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 II-1-7>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2019년 기준)

지원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원	-기준보육시간(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 -원칙적으로 별도의 교사를 두어야 함. 단, 시간연장 보육교사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 겸직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시간연장반 교사 겸임 가능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는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 • 정부지원시설 : 월 지급액의 80% 지원 • 직장어린이집 : 월 지급액의 80% 지원(정부지원시설 인건비 지원체계에 따라 호봉을 책정한 경우에 한하고 그 외 시설은 민간시설에 준해 지원) • 정부미지원시설 : 1인당 1,343,200원 지원 -주간 보육교사(교사 겸직 원장 포함)가 초과 근무 형태로 시간 연장 보육한 경우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한 경우 지원에는 시간연장반별 월 445천원의 근무수당을 지원
24시간 어린이집	-24시간동안(7:30~익일7:30)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야간보육 : 19:30~익일7:30에 이뤄지는 보육 • 24시보육 : 주간보육과 야간보육을 모두 이용하는 형태	-인건비는 시간연장 보육교사와 새벽근무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 • 정부지원시설, 직장어린이집 : 월 지급액의 80% 지원 • 정부미지원시설 : 1인당 월 1,343,200원 지원
휴일 어린이집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로, 국공립·법인시설(사회복지시설, 학교·종교부설 설치비 지원 어린이집 포함) 및 직장어린이집 중 휴일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	-보육교사 1인당 2명이상 영유아를 5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 실제 근무보육교사에 대해 각각 휴일 근무 수당 일일 52,200원 지원 •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없이 기존의 보육교사가 순환 근무할 경우에도 휴일근무 수당을 지원할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2019a). 2019 보육사업안내. p.383~392.

3) 시설에 대한 지원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비 및 어린이집에 증·개축비 및 개보수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a: 402).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신축 지원, 국공립 전환 지원, 장기임차 방식의 국공립 전환 지원, 기자재구입비 지원 등의 지원 사업이 시행 중이다(보건복지부, 2019a: 402~406). 지원대상과 지원의 내용은 <표 II-1-8>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 II-1-8>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2019년 기준)

사업명	지원 대상 및 우선 순위	지원 내용
국공립시설 신축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동주택단지(500세대이상),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산업단지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국방부 군사지역, 다문화가족 밀집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지역, 뉴스테이 단지 등에 우선 설치	- 개소당 551m²까지 지원하되, 예산 범위내에서 660m²까지 단력적으로 지원가능 1,397천원/m²(국비, 지방비 포함) - 국비최대지원액 : 461,010천원
기존시설의 국공립 전환 등	법인·민간·가정어린이집 또는 기존건물을 매입·기부 채납받거나 매입·기부채납 받은 후 리모델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 건물매입비 및 리모델링비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국비최대지원액 : 461,010천원까지 지원 가능 - 최대지원액
장기임차 방식의 국공립 전환	공동주택내 의무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중 지자체가 장기임차 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	-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장기임차 : 110,000천원/개소 - 민간어린이집 : 210,000천원/개소
개원 예정인 국공립 시설에 기자재 구입비 지원	2018년 중에 준공가능하거나, 개원 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또는 민간시설 매입의 경우 사업비와 동시 신청 가능	신축, 전환, 무상임대 등 : 10,000천원/개소

자료: 보건복지부(2019a). 2019 보육사업안내. p.402-406.

장애아 보육을 위한 보육 시설인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신축비용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보건복지부, 2019a: 371), 지자체별로 부지·건물을 확보하고 세부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다음, 지원대상 후보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현지점검 후 최종 결정된다(보건복지부, 2019a: 407). 지원금은 개소당 673제곱미터까지 지원되는데, 제곱미터 당 139만7천원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19a: 407).

〈표 II-1-9〉 장애아전문시설 신축 지원(2019년 기준)

지원대상 및 우선 순위	지원 내용
-지자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인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장애아전문 시설 -시도에서는 관내 시·군·구별로 보육수요 및 장애아전문(통합) 시설 운영현황을 감안하여 추진하되, 전문시설이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천 (단, 최근 3년 이내 지원받은 시·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지원하지 않음)	-개소당 673m ² 까지 지원 -1,397천원/m ² (국비, 지방비 포함) · 국비최대지원액 : 470,090천원

자료: 보건복지부(2019a). 2019 보육사업안내. p.407.

신축이나 전환이 아닌 증·개축과 같은 기능보강 사업으로는 증·개축비 지원, 시설 개·보수비 지원, 장비비 지원, 장애아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이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중 증·개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소당 132제곱미터(제곱미터 당 751,440원)까지 증·개축비가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19a: 409). 또한 시설 개보수와 장비비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 등 정부 지원시설을 중심으로 지원된다. 시설개보수비와 장비비는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단인근 지역의 영세한 어린이집이나 실내 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 시설이 공기질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에 우선 지원되며,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는 평가인증 기관에 우선 지원하게 된다(보건복지부, 2019a: 410~411).

한편, 장애아시설의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축 지원 뿐 아니라, 시설 개·보수비 및 장비비 등이 지원되는데, 개·보수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서 개소당 200만원이 지원되며, 장비비는 20인미만 장애아전문 혹은 통합 어린이집은 개소당 300만원, 20인이상 시설은 개소당 400만원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19: 411~413). 장애아 시설에 대한 개·보수비와 장비비의 매칭 비율은 국비가 최대 50%까지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19a: 411~413).

〈표 II-1-10〉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2019년 기준)

구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증·개축비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인 시설 중 증·개축이 필요한 시설 -농어촌지역, 저소득밀집지역,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공단 인근 지역의 영세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개소당 132m ² 까지 지원하며, 증·개축 면적에 따라 지원 -751,440원/m ² (국비, 지방비 포함) -국비최대지원액 : 49,595천원
시설 개보수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중 개·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	-시설의 규모, 개·보수의 필요정도에 따라 실제 개·보수 금액을 지원하되 관계

구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어린이집의 노후화 및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단인근지역의 영세한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 시설이 공기질 측정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하며,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에 대해 우선 지원이 가능함	공무원 확인 후 결정 30,000천원/개소당 (국비, 지방비 포함)
장비비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중 장비비가 필요한 어린이집 장비 노후화 및 보육아동 증가한 경우,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단인근지역의 영세한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 시설이 공기질 측정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에 대해 우선 지원 가능	2,000천원/개소당 (국비, 지방비 포함) 국비최대지원액 : 1,000천원 장비는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이거나 단가 5만원 이상인 물품이며, 통학차량의 후방카메라, 블랙박스, 어린이집 cctv설치비 등으로 사용 가능
장애아 시설 개·보수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 등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중 개·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최근 3년 이내 지원받은 어린이집은 제외	30,000천원/개소당(국비, 지방비 포함) 국비최대지원액 : 15,000천원
장애아 시설 장비비	장애아전문 또는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중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20인미만 시설은 3,000천원/개소당, 20인 이상 시설은 4,000천원/개소당 지원 국비최대지원액 1,500~2,000천원

자료: 보건복지부(2019a). 2019 보육사업안내. p.409~413.

4) 운영비 등 기타 지원

가)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농어촌 소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냉·난방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공과금, 차량운행비, 교직원인건비 등 운영비의 일부가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19a: 442). 지원 금액은 어린이집 규모 및 정원충족률에 따라 달라지는데, 매월 최하 200천원에서 최대 280천원까지 차이가 있다(보건복지부, 2019a: 442).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정원규모가 크지만 정원충족률은 낮은 어린이집일수록 운영비 지원이 많아지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9a: 442).

〈표 II-1-11〉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2019년 기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농어촌 소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냉·난방비, 급간식, 교재교구비, 공과금, 차량운행비, 교직원 인건비 등의 운영비 일부 지원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음.					
	단위: 천원/월					
	정원구분	60인이하	61~80인 이하	81~100인 이하	101~120인 이하	121인이상
	60%이하	240	250	260	270	280
	61~80%	220	230	240	250	260
	81~100%	200	210	220	230	240

자료: 보건복지부(2019a). 2019 보육사업안내. p.442.

나) 기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그 외에 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으로는 차량운행비 지원과 교재·교구비 지원 등이 있다. 차량 운행비는 정부 지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에 대해 지원되면 개소당 연 240만원(월 20만원)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19a: 400). 한편, 교재·교구비는 전년도(2018년) 12월말 기준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연간 개소당 평균 100만원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19a: 401). 단, 직장어린이집 중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보건복지부, 2019a: 401).

〈표 II-1-12〉 차량 운행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2019년 기준)

지원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차량 운행비 지원	-정부 지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개소당 연 240만원(월 20만원) 지원
교재·교구비 지원	-2018년 12월말 기준 지원시점까지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중에서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제외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도 제외	개소당 평균 100만원/년 · 지자체는 예산범위, 지원시점의 어린이 집 현원 및 평가인증 시기 등을 감안하 여 우선순위, 지원액 등 지원 기준을 조 정하여 지원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2019a). 2019 보육사업안내. p.400~401.

나. 유아교육 정책

이 항에서는 유치원을 중심으로 지원되는 유아교육 지원 사업과 유아교육진흥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책에 대해 개관한다. 유아교육 지원 정책은 각 지역 교육청별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큰 틀에서 큰 차이는 없으나 지역별로 약간씩 상이한 특징이 있다. 다만, 이들 지역의 정책을 모두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은 지면상 제약이 있어¹⁰⁾, 정책 현황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 유치원 지원 (서울 지역)

서울시의 유치원에 대한 정부 사업은 크게 교원 기본급 보조, 학급운영비 지원, 교재·교구비 지원, 단기대체 강사비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 정책 등이 있다. 이들 지원금은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원비인상률을 준수하며, 에듀파인 도입 또는 도입 의향서를 제출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이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9)¹¹⁾.

〈표 II-1-13〉 유치원 지원 사업 현황 (2019년, 서울 기준)

구분	교원기본급 보조 지원	학급운영비 지원	교재·교구비 지원	단기대체강사비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
지원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립유치원에만 재정 지원 - 2020학년도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 의향서 제출 - 2019학년도 원비 인상률(1.4%) 준수 - 2019학년도 '에듀파인' 도입 또는 도입 의향서 제출 * 단, 2019학년도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은 원장기본급보조 및 학급운영비 지원 중단				
지원 금액	인 당 월 65만원	학급 당 월 15만원	학급 당 월 5만원	회 당 67천원	결제액의 0.01%
지원 사유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	유아 모집·회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공공성 강화에 기여한 유치원 ※ 원비 동결·인하 유치원은 교재·교구비 5만원 추가 지원	유아 모집·회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원비안정화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기여한 유치원	정규교원의 수업결손에 대하여 대체강사를 채용한 비용 일부 지원	학부모부담금 등을 신용카드로 수납한 경우 결제 수수료 지원
지원 대상	사립유치원 교원 정원기준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임용 보고된 원장, 원감, 담임교사(방과후 과정보반 포함)	유아 모집·회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기여한 유치원	유아 모집·회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원비안정화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기여한 유치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별표 2에 정한 사유로 인한 수업결손으로 대체강사를 채용한 경우	2018. 11월 ~ 2019. 11월 학부모 부담금 신용카드 사용분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2019),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계획. P.1-9

10) 유아교육예산은 교육청별 예산을 수합하여 전국에 걸쳐 합산한 금액을 활용함.

11) 공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인건비부터 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므로, 별도로 제시하지 않음.

교원 기본급을 보조하는 정책은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며, 학급운영비 지원 및 교재·교구비 지원은 유아 모집 및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비를 동결하거나 인하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원금에 더하여 교재·교구비를 5만원씩 추가로 지원한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9: 7). 또한 단기대체 강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정규 교원의 수업 결손에 대해 교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각 사업별 지원 금액은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은 교사 1인당 월 65만원을 지원하며, 학급운영비는 학급당 월 15만원, 교재·교구비는 학급당 월 5만원, 단기 대체강사비는 회당 6만7천원, 신용카드 수수료는 결제액의 0.01%를 지원한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9: 3).

서울시의 유치원에 대한 지원 사업은 2019년도에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지원금 지급 기준이 명시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2019년도 유치원에 대한 교원기본급 보조나 운영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유치원이 2020학년도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에 참여 의향서를 제출해야 하며, 2019학년도 원비인상률(1.4%)를 준수하고, 에듀파인을 도입하거나 또는 도입 의향서를 제출한 유치원에 국한하는 것으로 명시되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9: 3). 이때, 2019학년도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은 원장기본급보조 및 학급 운영비 지원을 중단한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9: 3). 즉, 지원 대상을 분명하게 명시할 뿐 아니라 다소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다. 이는 2018년도에 있었던 사립 유치원 원비 유용 사건으로 인해, 사립 유치원에 대한 국가의 관리 감독 강화 및 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른 조치로 보여진다.

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의 수준은 2018년도 이전에 비해 상향조정하여 국가 정책에 대한 참여도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느껴진다. 먼저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은 1인당 월 65만원으로 2018년 월 59만원에 비해 6만원 상승하였다(서울특별시교육청, 각년도). 또한 2018년까지 지급하지 않던 학급운영비를 학급당 월 15만원씩 지원하며, 학급수와 정부 지침 지원 조건 만족 여부에 따라 원당 50~300만원을 차등 지원하던 교재교구비의 경우에는 학급당 월 5만원, 원비를 동결하거나 인하면 월 5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형태로 변경되었다(서울특별시교육청, 각년도). 단기대체 강사에 대한 지원금도 1회당 월 6만1천원이던 것을 6만7천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한다(서울특별시교육청, 각년도).

〈표 II-1-14〉 유치원 지원 사업의 변화(2017~2019년, 서울 기준)

구분		2017~2018	2019
지원사업명	지원기준	사업 별 세부 지침에 따름 ※별도 차등 지원 기준 없음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립유치원에만 재정 지원 - 2020학년도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 의향서 제출 - 2019학년도 원비 인상률(1.4%) 준수 - 2019학년도 '에듀파인' 도입 또는 도입 의향서 제출 * 단, 2019학년도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은 원장기본급보조 및 학급운영비 지원 중단
	교원 기본급보조 지원	·1인당 월 59만원 - 기본급보조 46만원, 담임수당 13만원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인당 월 65만원 - 기본급보조 49만원, 담임수당 13만원, 장기근속수당 3만원 - 기본급보조 3만원 인상, 장기근속수당* 3만원 신설 * 5년 이상 경력자 대상 지급
	학급운영비 지원	·지원 내역 없음	·2019년도 신규 지원 ·학급 당 월 15만원 지원
	교재교구비 지원	·원 당 50만원~300만원 - 학급 수에 비례하여 지원 ·원비인상률준수, 입학금 감면, 신용카드 사용 등 지원조건 만족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 ·교재·교구 구입	·학급 당 월 5만원 ·원비 동결·인하 시 월 5만원 추가 지원
	단기대체강사비 지원	·1회당 월 61,000원 지원 ·정규 교원의 수업 결손 지원	·회 당 월 67,000원 지원 - 회 당 지원 단가 6천원 인상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의 0.01% 지원	·변동 없음

자료: 1) 서울특별시교육청(2017),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계획. p.1-9
 2) 서울특별시교육청(2018),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계획. p.1-9
 3) 서울특별시교육청(2019),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계획. p.3

2) 유아교육 진흥 사업 (서울 지역)

서울시의 유아교육 진흥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교원 지원 사업 중 직무연수, 유아교육프로그램 개발, 멀티미디어 제작실 운영, 교재·교구 대여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이 있으며, 체험교육프로그램으로는 영역별 체험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 체험 교육프로그램, 가족체험 프로그램, 새싹도우미 사업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지원 사업으로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학부모교육원 운영 사업 등이 수행 중이다(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¹²⁾, 2019. 6. 20 인출). 각 사업별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은 아래의 〈표 II-1-14〉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12) <http://seoul-i.sen.go.kr/FUS/CV/M1000000000000 000187.do> (2019. 6. 20 인출).

〈표 II-1-15〉 유아교육 진흥 사업 (2019년, 서울 기준)

구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교원지원	직무연수	- 특수분야 직무연수 · 21C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할 교원의 정보화 능력 함양 · 수준별 교수·학습방법을 통한 창의적이고 질 높은 수업 전개 · 내용 : 연수학점제 15시간(1학점), 30시간(2학점) - 생애주기별 연수 · 경력에 따른 맞춤형 연수를 통해 교육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전문성 제고 · 수요자 중심의 연수 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의 질적 효과 증진 - e-편한 사이버 연수 · 연수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홈페이지 활용 연수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 적합한 프로그램 현장 지원 - 영역별 창의적인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2종) - 웹용 교육자료 개발(5영역)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 따른 교육자료 개발·보급	
	멀티미디어 제작지원실 운영	- 지원대상 : 교원 및 예비교사, 유아교육 관련자 - 지원내용 : 수업동영상, 학습자료, 유치원 안내 영상, 동화·동시 등 다양한 영상 자료제작 지원	
	교재·교구 대여 프로그램 운영	공·사립 유치원	교재·교구 및 교육행사용 자료 무상 대여
체험교육 프로그램	영역별체험교육 프로그램	서울시 공·사립 유치원 유아	과학탐구, 자연탐구, 언어, 건강안전, 사회문화, 조형, 음률, 쌓기, 목공, 실외(10개 영역)
	문화예술체험교육 프로그램		공연관람, 샌드아트, 예절, 난타, 요리, 찾아가는 안전, 과학, 여름, 민속, 겨울, 사랑나눔 희망 쑥쑥
	가족체험 프로그램		토요일 가족 영역체험, 사회적 배려 대상 가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체험하는 프로그램
	새싹도우미		방문객 안내, 교육활동 보조, 환경 청결 및 미화, 장애인 도우미 활동 등
학부모지원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① 유아상담(모래놀이 상담 치료실 운영) ② 학부모 상담(자녀교육에서 발생하는 육아관련 제반 애로사항) ③ 교원 상담(유치원 교육과정, 발달장애 및 유아교육 일반)	
	학부모교육원 운영	(가) 유아교육관련 전문 지식 및 유아관련 교육내용으로 교과과정 구성 (나) 일반연수(단기, 심화)과정, 현장지원연수, 학부모동아리 활동운영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사업안내, <http://seoul-i.sen.go.kr/FUS/CV/M1000000000000000187.do> (2019. 6. 20 인출).

다. 영유아 (부모)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영유아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은 2012년을 전후한 무상보육의 실시를 계기로 육아정책에서 예산 규모가 매우 커진 부문으로, 별도의 항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영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보육 예산에 속하며, 유아에 대한 보육료 및 유아학비라 볼 수 있는 누리과정 지원금은 교육 예산에서 지출된다. 또한, 가정양육수당

또한 보육 예산으로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다. 한편, 2018년 9월부터 지원되기 시작한 아동수당은 저출산 지원 예산으로 제도 시행이 길지 않아 아직까지 이에 대한 결산자료의 활용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¹³⁾.

1) 부모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부모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8년 이전까지는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달라졌다. 2009년 7월 이후에는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차등하던 방식에서 영유아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었다. (부모)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은 2012~2013년에 걸친 전면적인 무상보육·유아교육 이전까지는 지원 대상의 가구소득 수준을 하향 조정하여 지원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식으로 확장되었다. 이후 2012년도에는 2세 이하의 영아와 5세 유아에 대해 가구의 소득 수준에 무관하게 100% 지원되었으며, 3~4세는 여전히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었다. 한편, 2013년도 이후로는 전 연령의 모든 영유아에 대해 (부모)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금의 무상 보육 지원 체계가 완성되었다(최효미·김나영·김태우, 2017: 41).

〈표 II-1-16〉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변화 과정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2008	-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기준 - 법정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 - 소득50%이하는 80% 지원 - 소득70%이하는 60% 지원 - 소득100%는 30% 지원 - 자녀수에 따른 차등지원 및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 상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 100% 무상

13) 즉, 2018년도 예산에 아동수당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긴 하나, 본 연구의 정책 효과 분석 시에는 제도 시행 이후 시기의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아동수당 정책의 도입에 따른 효과 분석에는 한계가 있음.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2009.7	- 영유아가구소득 기준 - 소득하위50%이하 100%지원 - 소득60%이하 60% 지원 - 소득100%이하는 30% 지원 - 자녀수에 따른 차등지원 및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 상이 2010년은 맞벌이가구에 대한 지원 신설					영유아가구소득 기준 100% 무상
2011	영유아가구소득기준 소득하위 100%이하는 100%지원			영유아가구소득기준 소득100%이하는		영유아가구소득 기준 100% 무상
2012	소득 무관 100% 지원			100% 지원		소득 무관 100% 지원
2013이후	소득 무관 100% 지원					

- 주: 1) 2010년 이전은 보육료 지원 기준이지만 원칙적으로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 기준에 차이가 없음.
 소득 기준이 금액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율로 환산함.
 2) 아동의 연령은 보육연령을 기준으로 하며, 0-4세는 교육·보육료 차등 지원 기준, 5세는 무상 교육·보육 지원 기준임. 영유아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 기준이며, 기본 보육료 지원은 제외함.
 3) 2009년 6월까지의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기준, 2009년 7월부터는 영유아 가구 소득 기준으로 변경됨.
 4) 모든 연도에 장애아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이 이뤄졌으므로, 표에는 이를 별도 표기하지 않음.
- 자료: 1)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V). <표 II-2-1> 인용.
 2) 보건복지부(2019a), 2019 보육사업안내, p.332.

(부모)보육료 및 유아학비에 대한 정부 지원 단가는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연령이 어릴수록 금액이 높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만0세의 (부모)보육료는 39만4천원이었는데, 2015년도 이후로 조금씩 증가하여(최효미·김나영·김태우, 2017: 42) 2019년도에는 45만4천원이 되었다(보건복지부, 2019a: 332). 만1세와 만2세의 경우에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금씩 (부모)보육료 및 유아학비가 상향조정되면서 확장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유아의 경우에는 2012년에는 만3세 19만7천원, 만4세 17만7천원, 만5세 20만원이었다가 전면적인 무상보육·유아교육이 실시된 2013년에 22만원으로 상승하였으나(최효미·김나영·김태우, 2017: 42), 이후 2019년도까지 지원 금액이 고정된 채 상향조정되지 않았다. 한편, 만2세 이하 영아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 맞춤반 보육이 도입되면서, 지원 금액이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따라 종일반과 맞춤반 지원금으로 나누어져 지원되었다. 맞춤반 이용자에 대한 (부모)보육료 지원 금액은 2017년과 2018년에는 만0세 34만4천원, 만1세 30만2천원, 만2세 25만원이었으며(최효미·김나영·김태우, 2017: 42), 2019년도에는 맞춤반 이용자에 대한 지원 금액도 약간 상승하여 만0세 35만4천원, 만1세 31만1천원, 만2세 25만8천원이었다(보건복지부, 2019a: 332).

〈표 II-1-17〉 (부모)보육료·유아학비 정부 지원 단가 추이

단위: 천원

년도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국공립 유치원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만3세	만4세	만5세
2011			298	197	177	177	59	59	59
2012	394	347				200	59(30)*		
2013			286	220	220	220	60	60	60
2014									
2015	406	357	295						
2016	418	368	304						
2017	430 (344)	378 (302)	313 (250)						
2018	441 (344)	388 (302)	321 (250)						
2019	454 (354)	400 (311)	331 (258)						

주: 1) 보육료 지원 금액은 정부지원시설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12년 5세 누리과정 실시, 2013년 부터 3~5세 누리과정 실시.

2) 2012년에는 국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 지원 단가가 달랐으며, ()는 공립 유치원 지원금 기준임.

3) 2017년 이후 어린이집 영아반의 맞춤반 도입으로 이용시간에 따라 지원 단가가 달라, 종일반 지원 단가를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는 맞춤반 지원 단가.

자료: 1)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V). 〈표 II-2-2〉 수정 인용.

2) 보건복지부(2018a), 2018 보육사업안내, p.325.

3) 보건복지부(2019a), 2019 보육사업안내, p.332.

한편, 보육료 지원금은 연령별로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돌봄 취약여부에 따라서도 다소 차이가 나는데, 2019년도 기준 장애아 보육료와 시간연장형 보육(시간 연장 보육, 야간 보육,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등)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한편, 다문화 보육료는 일반 영유아 가구와 보육료 지원금은 동일하여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장애 보육료는 아동의 연령에 상관없이 46만2천원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19a: 342).

이외에 시간연장 보육을 받는 경우에는 월 60시간 한도 내에서 일반아동의 경우 시간당 3,100원씩 최대 18만6천원까지 지원하며,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시간당 4,100원씩 최대 24만6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9a: 348). 야간 보육의 경우에는 주간보육을 대체하여 야간보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보육료는 주간 이용 아동과 동일한 금액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19a: 332). 한편, 24시간 보육의 경우에는 보육시간이 장시간인 점을 감안 만0세 68만1천원, 만1세 60만원, 만2세 49만6,500원, 만3~5세는 33만원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19a: 332).

〈표 II-1-18〉 돌봄 취약계층 보육료 지원 : 자격 기준 및 지원 금액(2019년 기준)

서비스 내용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단가 및 지원 한도																				
장애아 보육료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소지한 만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3~5세 - 질병 등으로 취학을 유예한 경우	0~5세 동일하게 462,000원 - 교사대아동비용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 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보육료 상한액 적용																				
시간연장 보육	평일 19:30~24:00, 토요일 15:30~24:00 혹은 주간 7:30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단위 : 원 <table><tr><td>구분</td><td>지원단가</td><td>지원한도액</td><td colspan="3">지원한도시간</td></tr><tr><td>일반아동</td><td>3,100</td><td>186,000</td><td colspan="3" rowspan="2">월 60시간</td></tr><tr><td>장애아동</td><td>4,100</td><td>246,000</td></tr></table>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한도시간			일반아동	3,100	186,000	월 60시간			장애아동	4,100	246,000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한도시간																			
일반아동	3,100	186,000	월 60시간																			
장애아동	4,100	246,000																				
야간 보육료	19:30~익일 7:30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단위 : 천원 <table><tr><td>0세</td><td>1세</td><td>2세</td><td>3세</td><td>4세</td><td>5세</td></tr><tr><td>454</td><td>400</td><td>331</td><td colspan="3">220</td></tr></table>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454	400	331	220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454	400	331	220																			
24시간 보육	7:30~익일 7:30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즉, 주간보육(7:30~19:30)과 야간보육(19:30~익일7:30) 동시 이용	단위 : 천원 <table><tr><td>0세</td><td>1세</td><td>2세</td><td>3세</td><td>4세</td><td>5세</td></tr><tr><td>681</td><td>600</td><td>496.5</td><td colspan="3">330</td></tr></table>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81	600	496.5	330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81	600	496.5	330																			
휴일 보육	휴일보육을 이용한 경우	- 정부지원 일 보육료×150% - 휴일어린이집지정 기관인 경우 일보육료×100%																				

자료: 보건복지부(2019a), 2019 보육사업안내, p.327~350.

2) 가정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는 가정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은 전면적인 무상보육·유아교육이 실시된 2013년 이후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영유아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자녀의 월령에 따라 12개월 미만인 경우 월 20만원, 12~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24개월 이상은 월 10만원의 수당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19a: 351). 보육료 지원금과 달리 가정양육수당은 2013년 이후 2019년까지 한 번도 인상된 바 없으며, 지원 수준이 보육료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013년 이전의 가정양육수당은 (부모)보육료 지원 체계와 유사하게 저소득층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서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선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최효미·김나영·김태우, 2017: 49). 2010에는 차상위 계층 이하 가구의 24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서만 월 1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2011년에는 36개월 미만 영아까지 확대하면서 월령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최효미·김나영·김태우, 2017: 49). 이후 2013년도에는 월령별 지원금의 수

준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하되, 가구 선별 기준을 없애고 모든 가구에 지원하게 되었으며 지원 연령도 취학 전까지로 확대하였다(최효미·김나영·김태우, 2017: 49).

〈표 II-1-19〉 가정 양육 수당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변화 과정 (일반가구기준)

구분	12개월 미만	12개월~ 24개월미만	24개월~ 36개월미만	36개월이상~ 84개월미만
2009.7 2010	• 차상위 계층 이하 • 월 10만원 지원			
2011 2012	• 차상위계층이하 • 월 20만원	• 차상위계층이하 • 월 15만원	• 차상위계층이하 • 월 10만원	
2013이후	• 소득무관 • 월 20만원	• 소득무관 • 월 15만원	• 소득무관 • 월 10만원	

주: 84개월 미만이라도 초등학교에 취학한 아동은 제외.
 자료: 1)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V). 〈표 II-2-7〉 인용.
 2) 보건복지부(2018a), 2018 보육사업안내, p.325.
 3) 보건복지부(2019a), 2019 보육사업안내, p.351.

한편,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차등 지원되듯이 가정양육수당 또한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차등지원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가정양육수당의 차등 지원의 대상자 구분은 농어촌 지역 거주자와 장애아동으로, 농어촌양육수당은 12~24개월 미만 17만7천원, 24~36개월미만 15만6천원, 36~48개월미만12만9천원, 48~84개월미만 10만원으로 월령별로 세분하여 일반가구에 비해 약간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a: 351). 이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여 접근성 면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가구의 상황을 고려한 제도 설계로 판단된다. 장애아동을 가정에서 양육 경우 지원되는 장애아동양육수당은 36개월 미만인 경우 20만원, 36~84개월인 경우에는 10만원이다(보건복지부, 2019a: 351). 농어촌양육수당과 장애아동양육수당 또한 일반가구에 대한 양육수당과 마찬가지로 2013년 이후로는 인상되지 않았다¹⁴⁾.

14) 보건복지부(각년도), 보육사업안내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I-1-20〉 가정양육수당 연령별 지원 금액 현황(2013~2019년)

단위: 천원

구분	12개월 미만	12개월~ 24개월미만	24개월~ 36개월미만	36개월~ 48개월미만	48개월~ 84개월미만
(일반가구)가정양육수당	200	150	100		
농어촌양육수당		177	156	129	100
장애아동양육수당	200			100	

주: 84개월 미만이라도 초등학교에 취학한 아동은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각년도). 2013년도 이후 각년도별 보육사업안내.

라. 취약 가구에 대한 육아 지원

저출산 지원 정책 중에는 취약 가구에 대한 육아지원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사업을 중심으로 한부모 가구 지원, 장애아동 지원, 다문화 가구 지원 등을 정리하였다¹⁵⁾.

1) 한부모 가구 지원 정책

한부모 가구에 대한 육아지원 정책으로는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생계비(생활보조금) 지원 등이 있다¹⁶⁾. 한부모 가구 지원 정책은 한부모이면서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선별 지원 사업으로,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아동교육비지원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에 대해 지원되며, 생계비는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 1. 1). 또한, 이들 정책은 부모의 연령 기준을 만 25세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 정책이 별도로 시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은 아동양육비는 만18세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까지이며,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 1. 1). 추가 아동양육비는 미혼 한부모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도 다른 한부모 지원 정책과 다른 부분이다. 한편, 지원 금액은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는 월 5만원이 추가 지원된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1.1).

15) 취약 가구에 대한 육아지원 예산 또한 주로 이들 정책을 중심으로 정리되었음.

16) 청소년 한부모 지원 사업과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는 주된 지원대상이 영유아가 아니거나 지원내용이 육아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워 제외함.

〈표 II-1-21〉 한부모 가구 지원 정책 현황(2019년 기준)

정책명	소득기준액	부모 기준 연령	자녀 연령	지원 금액
아동 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 모가족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	가구당 월 5만원

자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9. 1. 1). 2019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고시문.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2015년까지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130%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던 것이 2016년 이후에는 중위소득 기준 52%이하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자녀의 연령도 2016년까지는 만 12세 미만이었으나 2017년도에는 만13세 미만, 2018년 이후로는 만 14세 미만까지 확대되었다. 지원 수준 또한 조금씩 상승하여 2012년에는 월 5만원, 2014년에는 월 7만원, 2015년과 2016년에는 월 10만원, 2017년에는 월 12만원, 2018년 이후로는 월 13만원이 지원된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각년도).

〈표 II-1-22〉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변화(2012~2019)

구분	2012	2014	2015	2016	2017	2018년 이후
소득 인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자녀연령	만 12세 미만				만 13세미만	만 14세미만
지원금액 (자녀1인당)	월 5만원	월 7만원	월 10만원	월 12만원	월 13만원	월 13만원

자료: 1)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2. 2. 7). 2012년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고시문.
2)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3. 1. 24). 2013년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고시문.
3)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4. 1. 22). 201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고시문.
4)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5. 7. 1). 201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고시문.
5)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6. 1. 1). 201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고시문.
6)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7. 1. 1). 2017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고시문.
7)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8. 1. 1). 2018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고시문.
8)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9. 1. 1). 2019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고시문.

한부모 추가 양육비의 경우에도 아동양육비와 마찬가지로 2016년도를 기점으로 소득 인정 기준이 변경되었다. 다만, 추가 양육비 지원은 2012년 이후 지원 금액이 지속적으로 월 5만원으로 증액되지 않았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각년도).

〈표 II-1-23〉 한부모 추가양육비 지원 기준 변화(2012~2019)

구분	2015년 이전	2016년 이후
소득 인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자녀연령	만 5세 이하 아동	
지원금액(자녀1인당)	월 5만원	

자료: 1)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2. 2. 7). 2012년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고시문.
 2)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3. 1. 24). 2013년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고시문.
 3)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4. 1. 22). 201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고시문.
 4)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5. 7. 1). 201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고시문.
 5)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6. 1. 1). 201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고시문.
 6)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7. 1. 1). 2017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고시문.
 7)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8. 1. 1). 2018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고시문.
 8)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9. 1. 1). 2019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고시문.

한편, 한부모 생계보조금 또한 2015년 이전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던 소득 인정 기준을 2016년 이후로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한부모 생계보조금의 지원 금액은 2012년 이후 2019년까지 인상되지 않았으며 가구당 월 5만원이 지원된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각년도).

〈표 II-1-24〉 한부모 생계보조금 지원 기준 변화(2015~2016)

구분	2015년 이전	2016년 이후
소득 인정 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지원금액	가구당 월 5만원	

자료: 1)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2. 2. 7). 2012년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고시문.
 2)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3. 1. 24). 2013년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고시문.
 3)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4. 1. 22). 201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고시문.
 4)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5. 7. 1). 201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고시문.
 5)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6. 1. 1). 201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고시문.
 6)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7. 1. 1). 2017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고시문.
 7)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8. 1. 1). 2018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고시문.
 8)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9. 1. 1). 2019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고시문.

2) 장애아동 수당

장애아동 지원 정책 중 보호 및 재활 등 의료 지원이 아닌 육아지원과 연관성이 높은 정책으로는 장애아동 수당 지원 사업을 들 수 있다. 장애아동 수당 지원 정책은 만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지원되는 정책이다. 장애 등급과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은 차등 지원되며, 중

증 장애인이라면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월 20만원으로 지원금이 가장 큰 구조를 가지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d: 219~221).

〈표 II-1-25〉 장애아동수당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2019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급 방법
만18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만18~만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	단위 : 만원/월			-지급원칙 : 매월 20일
	구분	중증 장애인	경증 장애인	-지급개시 :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0	10	-지급종료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15	10	-지급방법 :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차상위계층	15	10	-지급절차 : 장애인의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에 의해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7	2	

자료: 1) 보건복지부(2019d),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포함. p.219-221.

2) 보건복지부, 장애인 장애인자립 기반,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303&PAGE=3&topTitle= (2019. 6. 17 인출).

2011년 이후 장애아동 지원은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수급 대상자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경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2017년 이후 차상위 계층 이하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는 등 약간의 변화를 거치고 있다. 위낙에 선별 지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지원 대상의 포괄성이 높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의 변화는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각년도).

〈표 II-1-26〉 장애아동수당 지원 내용 변화 과정(2011~2019)

장애종류	구분	2015년 이전	2016	2017년 이후
중증 장애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월 20만원	월 20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월 15만원	
	차상위계층	-	-	월 15만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	-	월 7만원
경증 장애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월 10만원	월 10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월 10만원	
	차상위계층	-	월 10만원	-

장애종류	구분	2015년 이전	2016	2017년 이후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	월 2만원	-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29% 이하인 자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자

자료: 1) 보건복지부(2011b),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포함, p.127-132
 2) 보건복지부(2012b),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포함, p.129-132
 3) 보건복지부(2013b),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포함, p.121-125
 4) 보건복지부(2014b),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포함, p.141-144
 5) 보건복지부(2015b),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포함, p.157-161
 6) 보건복지부(2016b),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포함, p.178-183
 7) 보건복지부(2017b),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포함, p.189-195.
 8) 보건복지부(2018b),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포함, p.185-191.
 9) 보건복지부(2019d),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포함, p.219-221.

3) 다문화 가정 지원

다문화 가정을 지원으로는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사업과 부모교육서비스 제공을 들 수 있다. 한국어 교육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의 포괄 범위가 중도입국 자녀로 포괄 범위가 좀 더 큰 사업으로 80회 교육 기준으로 1번 무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여성가족부, 2019: 160~161). 부모교육서비스의 경우에는 생애주기별로 각 1회씩 최대 15개월을 지원하며, 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로 구분하여 총 3회 지원된다(여성가족부, 2019: 160~161).

〈표 II-1-27〉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사업 현황(2019년)

구분	한국어 교육서비스	부모교육 서비스
지원 대상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취업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서비스 지원 가능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5개월, 총 3회 지원) ①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 ~ 생후 12개월 이하) ② 유아기(12개월 초과 ~ 48개월 이하) ③ 아동기(48개월 초과 ~ 만 12세 이하)
지원 금액	무상	무상
지원 방법	주 2회, 회당 2시간 서비스 제공 ※ 2시간 중 20분 이내 휴식시간 설정 가능	
제공 기간	1회(80회) 원칙	1회(40회) 원칙, 생애주기별 3회 지원

자료: 여성가족부(2019), 가족사업안내 p.160-161

다문화 가족 자녀 생활서비스는 만3~12세 이하의 다문화 가족 자녀 및 중도입국 자녀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달라지는 형태로 되어 있다. 가구소득별 정부 지원금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기 바란다(여성가족부, 2019: 177).

〈표 II-1-28〉 다문화 가족 자녀 생활서비스(2019년)

구분	자녀 생활 서비스																											
지원대상	만 3세 ~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 ※ 서비스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애아동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계 ※ 대기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만 5세 이상 우선 지원 ※ 위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초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도 지원 가능 ※ 중도입국자녀는 자녀생활서비스 와 한국어교육서비스 중 1개 서비스만 제공 가능																											
지원금액	1) 서비스 시간당 단가 : 13,050원(회당 26,100원) ※ 4주 기준(8회, 16시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선입금 2) 정부지원금 ○ 소득기준에 따라 시간당 11,050원~13,050원 차등 지원 3) 본인부담금 ○ 소득기준에 따라 시간당 무상~2,000원 차등 부담 <table><tr><th rowspan="2">유형</th><th rowspan="2">소득기준</th><th colspan="2">단가</th><th rowspan="2">비고(4주 부담금)</th></tr><tr><th>정부지원</th><th>본인부담</th></tr><tr><td>가형</td><td>기준중위소득 65% 이하</td><td>13,050원</td><td>무상</td><td>무상</td></tr><tr><td>나형</td><td>기준중위소득 85% 이하</td><td>12,050원</td><td>1,000원</td><td>16,000원</td></tr><tr><td>다형</td><td>기준중위소득 120% 이하</td><td>11,550원</td><td>1,500원</td><td>24,000원</td></tr><tr><td>라형</td><td>기준중위소득 120% 초과</td><td>11,050원</td><td>2,000원</td><td>32,000원</td></tr></table>	유형	소득기준	단가		비고(4주 부담금)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13,050원	무상	무상	나형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12,050원	1,000원	16,000원	다형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1,550원	1,500원	24,000원	라형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1,050원	2,000원	32,000원
유형	소득기준			단가			비고(4주 부담금)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13,050원	무상	무상																								
나형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12,050원	1,000원	16,000원																								
다형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1,550원	1,500원	24,000원																								
라형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1,050원	2,000원	32,000원																								
지원방법	주 2회, 회당 2시간 서비스 제공 ※ 2시간 중 20분 이내 휴식시간 설정 가능																											
제공기간	1회(8회) 원칙																											

자료: 여성가족부(2019), 가족사업안내, p.177

한국어 교육서비스 정책의 지원 대상자는 2015년 이전에는 입국 5년이하 결혼 이민자 및 중도입국 자녀로 만 19세 미만의 자녀이던 것이 2016년 이후 만 24세까지 확대되었다. 제시된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의 제공기간은 최대 서비스 이용 기간을 제한하던 방식에서 횟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여성가족부, 각년도).

〈표 II-1-29〉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변화과정(2014~2019)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한국어 교육 서비스	지원 대상	입국 5년 이하 결혼 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만 19세 미만)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만 24세 이하)			
	제공 기간	1회(10개월 까지) 원칙					1회(80회기)원칙
부모교육 서비스	제공 기간	1회(5개월) 원칙, 생애주기별 3회 지원					1회(40회기) 원칙, 생애주기별3회
자녀 생활 서비스	지원 대상	만 3세~만 12세 이하 초등학교생			만3세~만12세 이하 다문화 가족자녀, 중도입국 자녀		
	제공 기간	1회(10개월까지) 원칙					1회(80회기) 원칙
지원 방법		주 2회, 회당2시간	2시간 중 20분 이내 휴식시간 설정 가능				

자료: 1) 여성가족부(2015), 가족사업안내 p.121~122, p.139~141.
 2) 여성가족부(2016), 가족사업안내 p.125~149.
 3) 여성가족부(2017), 가족사업안내 p.139~162.
 4) 여성가족부(2018), 가족사업안내 p.201~208, p.222~223.
 5) 여성가족부(2019), 가족사업안내 p.157~161, p.177.

이 외에도 만 12세이하 자녀에게 지원되는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이나, 한국어 교육 운영 지원 사업 등이 있다(여성가족부, 2019).

마.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육아 휴직은 양육대상인 자녀가 만0~8세(초등 2학년)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자녀가 대상 연령이 되는 기간 내에는 자유로이 기간을 정하되 총 1년 이내에서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월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하되, 상한액을 150만원, 하한액을 70만원으로 두고 있으며, 나머지 9개월간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을 지원한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¹⁷⁾, 2019. 6. 17 인출).

한편, 아빠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남성 육아휴직 권장을 위해 보너스제가 적용되어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되, 상한액을 150만원으로 하고 있으며,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17)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경력단절 여성 지원 정책, http://www.mogef.go.kr/cs/cbw/cs_cbw_s002d.do?mid=gnr108&div1=CWSP04&tid=tab_04&bbsn=325. (2019. 06. 17 인출).

둘째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아빠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¹⁸⁾, 2019. 6. 17 인출).

〈표 II-1-30〉 육아휴직 제도 현황(2019년)

지원대상	양육대상인 자녀가 만0~8세(초등학교 2학년)인 근로자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인 근로자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받지 않아야 함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내용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자유로이 시기와 기간을 정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음(1회만 분할 사용 가능)
지원금액	-육아휴직 첫 3개월간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나머지 9개월간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월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150만원, 2017.7.1.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상한액 200만원)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음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경력단절 여성 지원 정책, http://www.mogef.go.kr/cs/cbw/cs_cbw_s002d.do?mid=gnr108&div1=CWSP04&tid=tab_04&bbsn=325. (2019. 06. 17 인출).

육아휴직 제도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도 1월에 지원 대상자를 만8세까지로 확대했으며, 동년 9월에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1개월 급여를 상향 조정하였다. 이후로도 육아휴직 급여의 상향조정과 대상자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2018. 6: 100~101).

〈표 II-1-31〉 육아휴직 제도 변화 과정(2010~2019년)

시행일	개정일	주요 내용	비고
2010.2.4.	2010.2.4.	-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휴직 가능 * 단, '08.1.1.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2011.1.1.	2010.12.31.	- 육아휴직 급여액 : 통상임금의 40% * 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 - 육아휴직 급여의 15%는 육아휴직 종료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18)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경력단절 여성 지원 정책, http://www.mogef.go.kr/cs/cbw/cs_cbw_s002d.do?mid=gnr108&div1=CWSP04&tid=tab_04&bbsn=325. (2019. 06. 17 인출).

시행일	개정일	주요 내용	비고
2012.8.2.	2012.2.1.	-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활용촉진 *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또는 파견법의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2014.1.14.	2014.1.14.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 진 근로자는 육아휴직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2014.10.1.	2014.9.30.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1개월 급여 상향(통상임금의 100%, 상한 150만원(아빠의 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2015.7.1	2015.6.30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비율 확대 (종전 15% → 25% 확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
2016.1.1	2015.12.4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 통상임금의 100%, 상한 150만원(종전 1개월→3개월로 기간 확 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2017.6.28.	2017.6.27.	- 근로계약 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기 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사후지급금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2017.7.1	2017.7.1	- 2017.7.1.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상한액 200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2017.9.1.	2017.9.1.	-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하한액 70만원)	고용보험법 제95조
2018.5.29.	2018.5.29.	- 육아휴직 허용 요건 재직기간 6개월 이상으로 완화 - 육아휴직 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	남녀고평법 시행령 10조 근로기준법 제60조
2018.7.1.	2018.7.1.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고보법 시행령 95조의2

자료: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2018. 6).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p.100~10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제도이다. 이때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는 사업주가 부담하되,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19. 6. 17 인출). 즉, 육아로 인해 줄어드는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지원하여, 육아 시간을 확보해주는 지원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앞서 살펴본 육아휴직과 더불어 1년 이내 기간 내에서 전일제 육아휴직을 쓰든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든지 혹은 이를 분할하여 사용하면서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에 근로시간 단축비율(단축된 근로시간을 단축 전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에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19. 6. 17 인출).

〈표 II-1-3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2019)

지원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근로자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인 자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함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음
지원내용	-육아휴직기간 : 1년 이내 -근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단축된 근로 시간에 대한 급여를 국가가 지원함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음) -육아휴직 1회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분할할 수 있음) -전일제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 시간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
지원 금액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하고, 국가는 단축 근무자의 급여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자료: 1)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경력단절 여성 지원 정책, http://www.mogef.go.kr/cs/cbw/cs_cbw_s002d.do?mid=gnr108&tid=tab_04&bbtSn=324 (2019. 06. 17 인출).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여성,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woman/list5.do> (2019. 06. 17 인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도 2014년에 급여대체율을 상향조정한 후, 2018년에도 다시 한번 통상임금의 80%×근로시간 단축비율까지 급여대체율을 상향하였다(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2018. 6: 150)

〈표 II-1-3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2011~2019년)

시행일	개정일	주요 내용	비고
2011.9.21.	2011.6.3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 육아휴직 급여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2012.8.2.	2012.2.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 기간제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또는 파견법의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2014.10.1	2014.9.3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통상임금의 60% × 근로시간 단축 비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 2
2018.1.1	2018.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통상임금의 80% × 근로시간 단축 비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 2

자료: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2018. 6),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p.150.

2. 선행 연구의 경향성 분석

육아정책분야의 성과 분석을 위해 먼저 선행 연구들이 어떠한 성과 지표로 어떠한 정책들의 효과를 검증했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분석의 범위를 조정하고, 특히 어떠한 성과 지표로 효과성을 검증할 것인지 성과 지표를 선정하며, 분석에 필요한 분석 자료와 분석 방법 등을 결정하는데 참고였다. 자료 검색에 활용된 키워드는 ‘육아정책’, ‘보육정책’, ‘유아교육 정책’, ‘육아지원’, ‘저출산’ 등의 정책 분야와 ‘재정 성과’, ‘효과성’ 등의 단어를 조합하여 검색되는 논문들로, 2000년대 이후의 자료만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표 II-2-1〉 선행연구 분류 : 분석대상 사업 및 효과성 지표별

단위: 개

구분		분석 대상 사업					계
		보육정책	사회보장	유아교육	일가정양립	저출산정책	
활용된 효과성 지표	양육비용	12	0	0	0	0	12
	여성고용	13	1	0	5	0	19
	주관적인식	10	0	0	1	0	11
	출산	22	1	0	6	12	41
	기타	13	1	3	3	0	20
계		70	3	3	15	12	103

주: 1) 2가지 이상의 영역에 속하는 논문은 각각의 주제별로 다수의 영역에 포함하였으므로, 총계는 논문 수 보다 많음.

2) 기타 범주에는 인프라 공급률, 서비스 질, 학업성취도, 생산유발효과, 교사 처우개선 등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경우임.

자료: 분류에 활용한 자료의 목록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먼저, 육아정책분야 재정 혹은 정책 효과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대다수는 보육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일·가정양립과 관련된 연구와 저출산 정책이 각 15개, 12개였다. 이는 무상보육·유아교육의 도입으로 인해 보육정책 관련 부분의 재정이 크게 확대된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육아정책분야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측정 지표(종속변수)로 가장 많이 활용된 지표는 출산 관련 지표로 출산율, 출산확률, 후속 출산 의도 등이었다. 다음으로 여성 고용의 효과를 본 경우도 상당수 있어 19개의 논문이 여성 고용의 효과를 고찰하고 있으며, 12개의 논문은 양육비용 경감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한편, 인프라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공급률이나 취원을 등을 지표로 활용하거나 학업성취도, 생산유발효과, 교사 처우개선 등을 지표로 활용한 경우도 20개 정도 되어 상당히 다양한 변인으로 정책으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분석에 활용된 자료의 연도를 기준으로 선행연구를 분류해보면, 무상보육의 도입 이전인 2012년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훨씬 많아서, 총 76개 논문 중에서 58개 논문이 2012년 이전의 자료를 활용한 연구였다. 전면 무상보육·유아교육이 실시된 해인 2013년 이후 자료를 활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총 18개였는데, 이 중 보육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9개,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와 저출산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각 4개씩이었다.

〈표 II-2-2〉 선행연구 분류 : 분석대상 사업 및 분석자료 연도별

단위: 개

구분		분석 대상 사업					
		보육정책	사회보장	유아교육	일가정양립	저출산정책	계
분석 자료의 연도	2009년 이전	20	0	0	6	5	31
	2010~2012	17	2	2	3	3	27
	2013년이후	9	0	1	4	4	18
계		46	2	3	13	12	76

주: 1) 2가지 이상의 영역에 속하는 논문은 각각의 주제별로 다수의 영역에 합산하였으므로, 총계는 논문 수 보다 많음.

2) 분석 자료의 기간을 알 수 없는 논문은 제외하였음.

자료: 분류에 활용한 자료의 목록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효과성 지표(종속변수)별로는 출산 관련 지표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는데, 분석 자료의 시점과 무관하게 모든 시기에 출산 관련 지표를 분석 대상 변수로 본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한편, 육아정책분야 재정 혹은 정책의 양육비용의 경감 효과 등을 검토하고 있는 논문은 2010~2012년 자료를 활용한 경우가 가장 많아 총 12개 논문 중 8개 논문이 이 시기의 자료를 활용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정책의 도입을 전후하여 해당 정책의 목표에 상응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시도가 증가하는 양상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지며, 무상 보육·유아교육의 전면적인 실시 배경 중 주요 정책 목표가 양육비용 경감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다만, 무상 보육·유아교육이 모든 연령에 대해 전면적으로 실시된 2013년 이후 자료를 포함한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은 아쉬운 지점이다¹⁹⁾.

〈표 II-2-3〉 선행연구 분류 : 효과성 지표 및 분석자료 연도별

단위: 개

구분		효과성 지표					
		양육비용	여성고용	주관적인식	출산	기타	계
분석	2009년 이전	2	11	5	16	7	41
자료의	2010~2012	8	5	1	12	9	35
연도	2013년이후	2	2	4	11	2	21
계		12	18	10	39	18	97

주: 1) 2가지 이상의 영역에 속하는 논문은 각각의 주제별로 다수의 영역에 합산하였으므로, 총계는 논문 수 보다 많음.

2) 분석 자료의 기간을 알 수 없는 논문은 제외하였음.

자료: 분류에 활용한 자료의 목록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분석 자료의 유형에 따라서는 (합계)출산율, 여성 고용율 등과 같이 국가통계자료를 활용한 경우가 32개로 가장 많았고,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17개, OECD 등 국외통계를 활용한 경우와 연구자별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각 10개였다. 주로 저출산 정책과 보육정책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거시 지표를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통계나 행정통계, 국외 통계 자료 등을 많이 활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II-2-4〉 선행연구 분류 : 분석대상 사업 및 분석자료 유형별

단위: 개

구분		분석 대상 사업					
		보육정책	사회보장	유아교육	일가정양립	저출산정책	계
분석 자료 유형	국외통계	6	1	0	1	2	10
	국가통계	19	0	2	5	6	32
	행정통계	1	1	2	0	2	6
	패널조사	10	0	0	5	2	17
	실태조사	8	0	0	2	0	10
	기타	6	0	1	0	0	7
계		50	2	5	13	12	82

주: 2가지 이상의 영역에 속하는 논문은 각각의 주제별로 다수의 영역에 합산하였으므로, 총계는 논문 수 보다 많음.

자료: 분류에 활용한 자료의 목록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효과성 지표별로는 지표에 관계없이 국가통계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지만, 특히 출산 관련 효과를 검증한 경우에 국가통계를 활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출

19) 분류 기준이 분석 자료의 연도이므로, 2012년자료까지를 활용한 연구의 발간 연도는 2013년 이후이라는 점에 주의를 요함.

산 관련 효과 지표가 주로 합계출산을 등의 거시 지표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편, 국가 통계자료를 제외하고는 양육비용, 여성고용, 출산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위해서는 패널 조사가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주관적 인식(만족도 등)과 관련된 효과성을 검증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실태조사 및 기타자료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표 II-2-5〉 선행연구 분류 : 효과성 지표 및 분석자료 유형별

단위: 개

구분		효과성 지표					
		양육비용	여성고용	주관적인식	출산	기타	계
분석 자료 유형	국외통계	0	4	0	5	4	13
	국가통계	6	7	5	18	7	43
	행정통계	0	0	1	2	3	6
	패널조사	4	5	0	9	3	21
	실태조사	2	1	3	5	3	14
	기타	0	1	3	0	2	6
계		12	18	12	39	22	103

주: 2가지 이상의 영역에 속하는 논문은 각각의 주제별로 다수의 영역에 합산하였으므로, 총계는 논문 수보다 많음.

자료: 분류에 활용한 자료의 목록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람.

III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 현황

- 01 육아정책사업 총액
- 02 중앙정부 재정 투자: 2010-2018
- 03 지방자치단체(일반재정) 재정 투자: 2016-2018
- 04 시도교육청(교육재정) 재정 투자: 2010-2017
- 05 육아휴직 지원 재정 투자
- 06 지도로 본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
- 07 OECD 국가의 육아지원정책 분야 재정 투자

Ⅲ.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 현황

육아정책분야의 재정 규모를 추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정보 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에서 제공하는 상세재정통계DB의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²⁰⁾ 연도별 자료와 각 시도 교육청의 내부자료에 해당하는 103 및 104장표를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를 알아보기 위해 지방재정365 홈페이지의 재정데이터 개방 세부사업별 세출현황 연도별 자료를 활용하였다²¹⁾.

위에 제시된 원자료를 추출 받아 연구진이 해당 사업 내역 등을 일일이 검토하여 육아정책분야에 속하는 사업만 식별하여 남기고, 이를 다시 합산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재정 투자 규모를 산출하였다. 열린 재정을 통해서는 주로 중앙정부 예산이 파악되는데, 육아정책분야 재정 중에서는 보육 예산과 저출산 예산이 주로 이를 통해 확인된다. 반면, 지방재정365의 자료는 각 지역별 자료가 산출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육아정책분야에 해당하는 정책들을 추출하여 지역별 예산을 산출한 후 모든 지역의 예산을 합산하여 총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거쳤다²²⁾. 따라서, 모든 기초자치단체까지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하기에는 자료의 양이 지나치게 방대한 반면 실익이 낮아, 각 지역본청의 예산 자료만을 기준으로 지자체 예산을 산출하였음을 밝혀둔다.

1. 육아정책사업 총액

중앙정부 재정투자, 지방자치단체 재정투자(일반재정), 시도교육청 재정투자(교

20) 열린재정/상세재정통계DB/결산/세출/지출세부사업예산편성현황(총지출)에서 원자료 추출, [http:// www.openfiscaldata.go.kr/portal/service/openInfPage.do?mId=B002](http://www.openfiscaldata.go.kr/portal/service/openInfPage.do?mId=B002) (2019. 3. 7. 인출).

21) 지방재정365/재정데이터 개방/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에서 원자료 추출, <http://lofin.mois.go.kr/portal/service/openInfPage.do?infId=0GAR4HBB8LWEB8L4NIHZ817053&srvCd=> (2019. 3. 20.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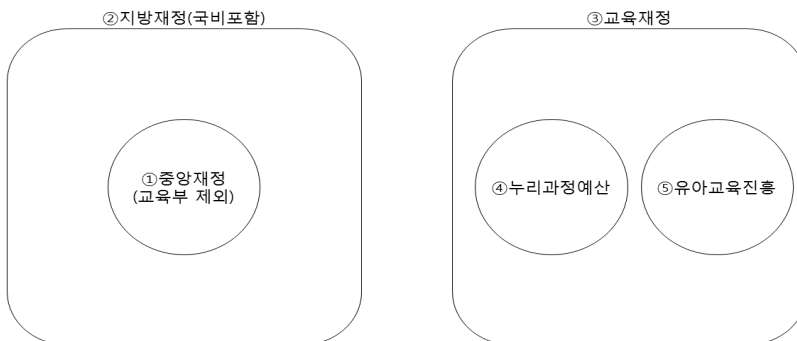
22) 문제는 지역별로 시행되는 사업의 내용과 사업명이 약간씩 상이하기 때문에, 연구진이 가능한 일일이 확인하며 자료를 정제하였으나 일부 사업은 누락되어 있을 수 있음.

육재정)자료를 합산하여 육아정책사업 총액을 산출하였다. 자료의 한계로 3가지 산출방법을 통해 총액을 계산하였다.

총액(1)은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 교육부 예산을 제외한 중앙정부 재정투자에 시도교육청 재정투자 유치원 지출총액을 더한 값이다. 단, 여기에는 지자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총액(2)는 교육부 예산을 제외한 중앙정부 재정투자에 대표적인 시도교육청 재정투자 사업인 유아교육진흥 예산과 누리과정 예산을 더한 값이다. 이는 시계열 자료의 연속성이 확보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비용이 포괄된 총액(3)은 국비를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투자에 시도교육청 재정투자 유치원 지출총액을 합산한 값이다(그림 III-1-1 참조). 단, 총액(3)은 포괄 범주는 가장 넓지만 시계열 자료의 활용이 가능한 연도가 달라 2017년도만 산출된 한계가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산출결과 총액(1)은 2010년 4조 4,334억원에서 계속 증가해 2017년 13조 2,626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액(2)는 2010년 3조 2,854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11조 8,867억원이었고, 자료의 한계로 2017년만 산출되는 총액(3)은 17조 7,274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1] 연도별 중앙정부 육아정책사업 예산



〈표 III-1-1〉 연도별 산출방법별 육아정책사업 총액

단위: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액(1)	44,334	53,877	71,093	96,761	117,910			132,626
총액(2)	32,854	39,245	56,767	87,098	106,678	109,911	114,834	118,867
총액(3)								177,274

주: 1) 총액(1)은 [그림 II-2-1]의 ①+③으로 산출함.
 2) 총액(2)는 [그림 II-2-1]의 ①+④+⑤로 산출함.
 3) 총액(3)은 [그림 II-2-1]의 ②+③으로 산출함.

2. 중앙정부 재정 투자: 2010-2018

중앙정부의 육아정책사업은 기획재정부 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서 제공하는 상세재정통계DB의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연도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에 나타난 각 세부사업이 육아정책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하여 자료를 정리하였다²³⁾.

연도별 육아정책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 육아정책사업 총액은 3조 890억원이었고, 점차 증가해 2012년 4조 4,506억원, 2014년 7조 78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15년 6조 8,659억원으로 다소 줄고, 2016년 7조 3,126억원으로 회귀한후, 2017년 7조 6,734억원, 2018년 8조 6,507억원까지 증가하였다.

소관기관별로 살펴보면, 2010년에는 보건복지부 2조 4,335억원, 고용노동부 3,999억원, 행정자치부 974억원, 기획재정부 906억원, 교육부 425억원, 여성가족부 206억원, 기타 46억원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에는 보건복지부 6조 5,471억원, 고용노동부 1조 5,827억원, 여성가족부 3,020억원, 기타 1,159억원, 교육부 539억원, 기획재정부 491억원으로 나타났다.

〈표 III-2-1〉 연도별 소관기관별 중앙정부 육아정책사업 예산

단위: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액	30,890 (100.0)	36,929 (100.0)	44,506 (100.0)	57,358 (100.0)	70,078 (100.0)	68,659 (100.0)	73,126 (100.0)	76,734 (100.0)	86,507 (100.0)
고용노동부	3,999 (12.9)	4,851 (13.1)	7,046 (15.8)	7,591 (13.2)	8,325 (11.9)	9,495 (13.8)	11,013 (15.1)	13,129 (17.1)	15,827 (18.3)

23) 교육부의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누리과정 예산)은 해당 자료상 2017년 이후에만 반영되어 있어 일괄 제외하고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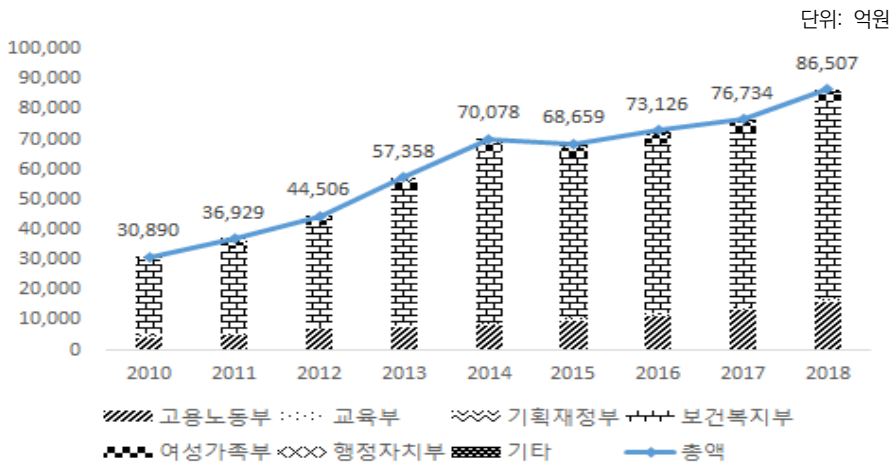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교육부	425 (1.4)	501 (1.4)	452 (1.0)	496 (0.9)	542 (0.8)	507 (0.7)	565 (0.8)	586 (0.8)	539 (0.6)
기획재정부	906 (2.9)	300 (0.8)	156 (0.4)	158 (0.3)	484 (0.7)	555 (0.8)	516 (0.7)	496 (0.6)	491 (0.6)
보건복지부	24,335 (78.8)	28,031 (75.9)	33,977 (76.3)	45,213 (78.8)	56,471 (80.6)	53,262 (77.6)	56,810 (77.7)	58,169 (75.8)	65,471 (75.7)
여성가족부	206 (0.7)	2,007 (5.4)	1,865 (4.2)	2,432 (4.2)	2,806 (4.0)	3,184 (4.6)	2,552 (3.5)	3,074 (4.0)	3,020 (3.5)
행정자치부	974 (3.2)	1,154 (3.1)	866 (1.9)	1,000 (1.7)	641 (0.9)	526 (0.8)	130 (0.2)	0 (0.0)	0 (0.0)
기타	46 (0.1)	85 (0.2)	144 (0.3)	468 (0.8)	809 (1.2)	1,129 (1.6)	1,540 (2.1)	1,280 (1.7)	1,159 (1.3)

주: 1) 기타에는 경찰청, 국방부, 국세청,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조달청, 환경부 등이 포함됨.

2) 교육부의 누리과정 예산은 제외하고 산출함.

자료: 열린재정/상세재정통계DB/결산/세출/지출세부사업예산편성현황(총지출)에서 원자료 추출, <http://www.open.fiscaldata.go.kr/portal/service/openInfPage.do?mld=B002> (2019. 3. 29. 인출).

[그림 III-2-1] 연도별 소관기관별 중앙정부 육아정책사업 예산



주: 1) 기타에는 경찰청, 국방부, 국세청,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조달청, 환경부 등이 포함됨.

2) 교육부의 누리과정 예산은 제외하고 산출함.

자료: 열린재정/상세재정통계DB/결산/세출/지출세부사업예산편성현황(총지출)에서 원자료 추출, <http://www.open.fiscaldata.go.kr/portal/service/openInfPage.do?mld=B002> (2019. 3. 29. 인출).

연도별 육아정책사업 수를 살펴보면, 2010년 81개에서 2011년 100개로 늘어난 후, 2012년 91개, 2013년 79개로 줄었고, 2014년 83개로 늘었으나, 2015년 81개, 2016년 68개, 2017년 68개, 2018년 67개로 줄었다. 사업 자체가 사라진 것도 있지만, 사업이 통폐합되어 줄어든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소관기관별 육아정책사업 수를 살펴보면, 2010년 보건복지부 52개, 교육부 9개, 기획재정부 5개, 고용노동부 5개, 기타 5개, 행정자치부 3개, 여성가족부 2개로 나타났다. 이후로는 사업이 대체로 줄어 2018년 보건복지부 32개, 여성가족부 11개, 기타 9개, 교육부 7개, 기획재정부 5개, 고용노동부 3개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0개가 줄어 가장 많이 줄었고, 여성가족부가 9개가 늘어나 11개로 유일하게 늘어난 기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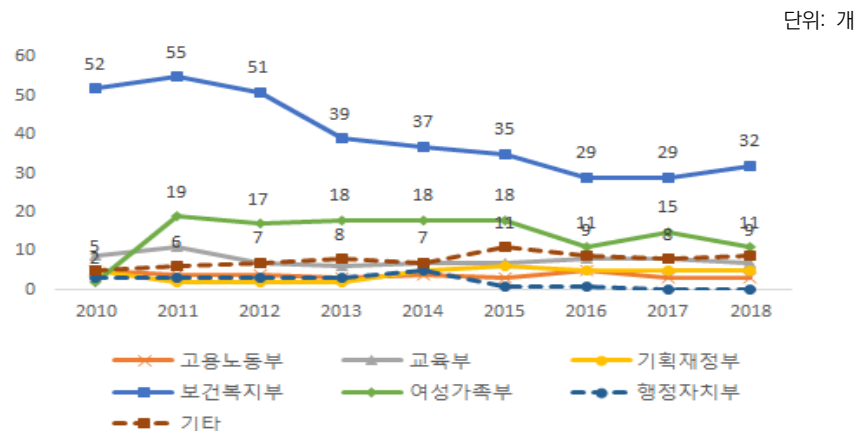
〈표 III-2-2〉 연도별 소관기관별 중앙정부 육아정책사업 수

단위: 개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계	81	100	91	79	83	81	68	68	67
고용노동부	5	4	4	3	4	3	5	3	3
교육부	9	11	7	6	7	7	8	8	7
기획재정부	5	2	2	2	5	6	5	5	5
보건복지부	52	55	51	39	37	35	29	29	32
여성가족부	2	19	17	18	18	18	11	15	11
행정자치부	3	3	3	3	5	1	1	0	0
기타	5	6	7	8	7	11	9	8	9

주: 1) 기타에는 경찰청, 국방부, 국세청,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조달청, 환경부 등이 포함됨.
 2) 교육부의 누리과정 사업은 제외하고 계산함.
 자료: 열린재정/상세재정통계DB/결산/세출/지출세부사업예산편성현황(총지출)에서 원자료 추출, <http://www.openfiscaldata.go.kr/portal/service/openInfPage.do?mld=B002> (2019. 3. 29. 인출).

[그림 III-2-2] 연도별 소관기관별 중앙정부 육아정책사업 수



주: 1) 기타에는 경찰청, 국방부, 국세청,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조달청, 환경부 등이 포함됨.
 2) 교육부의 누리과정 사업은 제외하고 계산함.
 자료: 열린재정/상세재정통계DB/결산/세출/지출세부사업예산편성현황(총지출)에서 원자료 추출, <http://www.openfiscaldata.go.kr/portal/service/openInfPage.do?mld=B002> (2019. 3. 29. 인출).

연도별로 육아정책사업을 사업유형별로 정리하였다. 2010년 양육지원 2조 5,812억원, 기관지원 1,320억원, 아동안전지원 1,057억원, 장애지원 878억원, 아동건강지원, 639억원, 일가정양립지원 440억원, 다문화지원, 347억원, 출산지원 310억원, 인식개선사업 70억원, 교사지원 1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양육지원 5조 2,428억원, 일가정양립지원 1조 4,388억원, 교사지원 9,906억원, 기관지원 4,961억원, 아동건강지원 1,604억원, 장애지원 1,418억원, 한부모지원 933억원, 아동안전지원 723억원, 인식개선사업 107억원, 다문화지원 3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지원이 2016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 때문이며, 2015년에 기관지원이 일시적으로 대폭 늘어난 것은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위한 보육돌봄서비스 사업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3〉 연도별 사업유형별 중앙정부 육아정책사업 예산

단위: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액	30,890 (100.0)	36,929 (100.0)	44,506 (100.0)	57,358 (100.0)	70,078 (100.0)	68,659 (100.0)	73,126 (100.0)	76,734 (100.0)	86,507 (100.0)
양육지원	25,812 (83.6)	27,212 (73.7)	37,780 (84.9)	48,601 (84.7)	60,189 (85.9)	51,392 (74.9)	54,618 (74.7)	45,486 (59.3)	52,428 (60.6)
출산지원	310 (1.0)	368 (1.0)	368 (0.8)	48 (0.1)	0 (0.0)	0 (0.0)	0 (0.0)	0 (0.0)	0 (0.0)
일가정양립지원	440 (1.4)	233 (0.6)	746 (1.7)	869 (1.5)	961 (1.4)	986 (1.4)	655 (0.9)	11,924 (15.5)	14,388 (16.6)
아동안전지원	1,057 (3.4)	1,296 (3.5)	1,020 (2.3)	1,357 (2.4)	1,134 (1.6)	1,271 (1.9)	935 (1.3)	774 (1.0)	723 (0.8)
아동건강지원	639 (2.1)	801 (2.2)	611 (1.4)	1,047 (1.8)	1,421 (2.0)	1,610 (2.3)	1,663 (2.3)	2,046 (2.7)	1,604 (1.9)
기관지원	1,320 (4.3)	5,333 (14.4)	1,907 (4.3)	2,967 (5.2)	3,832 (5.5)	10,729 (15.6)	4,270 (5.8)	4,459 (5.8)	4,961 (5.7)
교사지원	19 (0.1)	19 (0.1)	6 (0.0)	21 (0.0)	21 (0.0)	20 (0.0)	8,195 (11.2)	9,046 (11.8)	9,906 (11.5)
인식개선	70 (0.2)	85 (0.2)	82 (0.2)	97 (0.2)	63 (0.1)	70 (0.1)	75 (0.1)	74 (0.1)	107 (0.1)
장애지원	878 (2.8)	1,054 (2.9)	1,041 (2.3)	1,197 (2.1)	1,259 (1.8)	1,255 (1.8)	1,287 (1.8)	1,312 (1.7)	1,418 (1.6)
한부모지원	0 (0.0)	40 (0.1)	383 (0.9)	525 (0.9)	550 (0.8)	761 (1.1)	759 (1.0)	944 (1.2)	933 (1.1)
다문화지원	347 (1.1)	488 (1.3)	562 (1.3)	629 (1.1)	649 (0.9)	565 (0.8)	669 (0.9)	669 (0.9)	39 (0.0)

자료: 열린재정/상세재정통계DB/결산/세출/지출세부사업예산편성현황(총지출)에서 원자료 추출, <http://www.openfiscaldata.go.kr/portal/service/openInfPage.do?mld=B002> (2019. 3. 29. 인출).

연도별 사업유형별 육아정책사업 수를 살펴보면, 2010년 기관지원 19개, 양육지원 16개, 아동건강지원 16개, 아동안전지원 9개, 장애지원 8개, 다문화지원 4개, 일가정양립지원 3개, 인식개선사업 3개, 교사지원 2개, 출산지원 1개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기관지원 17개, 양육지원 13개, 아동안전지원 9개, 아동건강지원 8개, 장애지원 7개, 인식개선사업 5개, 일가정양립지원 3개, 교사지원 2개, 한부모지원 2개, 다문화지원 1개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0년에 비해 아동건강지원과 다문화지원이 각각 8개 3개 줄었고, 나머지 사업은 대체로 2010년과 비슷한 수를 나타냈다.

〈표 III-2-4〉 연도별 사업유형별 중앙정부 육아정책사업 수

단위: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계	81	100	91	79	83	81	68	68	67
양육지원	16	23	17	14	14	12	16	13	13
출산지원	1	3	3	2	0	0	0	0	0
일가정양립지원	3	2	3	3	3	3	2	3	3
아동안전지원	9	11	11	12	17	16	9	9	9
아동건강지원	16	16	14	11	13	12	9	10	8
기관지원	19	20	21	18	19	21	15	16	17
교사지원	2	2	1	1	1	1	2	2	2
인식개선	3	5	6	5	4	4	4	4	5
장애지원	8	13	10	9	8	8	7	7	7
한부모지원	0	1	2	2	2	2	2	2	2
다문화지원	4	4	3	2	2	2	2	2	1

자료: 열린재정/상세재정통계DB/결산/세출/지출세부사업예산편성현황(총지출)에서 원자료 추출, <http://www.openfiscaldata.go.kr/portal/service/openInfPage.do?mld=B002> (2019. 3. 29. 인출).

3. 지방자치단체(일반재정) 재정 투자: 2016-2018

지방자치단체(일반재정) 육아정책사업 자료는 지방재정365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육아정책사업 구분을 위해 사업별로 예산이 구분된 자료를 선택하였으며, 각 시도 본청에 해당하는 자료를 받아 사업명을 보고 육아정책사업 여부를 식별하여 정리하였다. 해당 자료는 2016년 이후 자료만이 공개되어 있다. 한편 매칭사업의 경우, 국비와 시비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육아정책사업 예산총액은 2016년 11조 5,245억원, 2017년 12조 796억원,

2018년 12조 8,673억원으로 나타나 2016년 대비 2018년이 1조 3,428억원 늘어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018년 3조 890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서울 2조 4,383억원, 부산 1조 4,170억원 순으로 육아정책사업 예산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 연도별 시도별 지방자치단체 육아정책사업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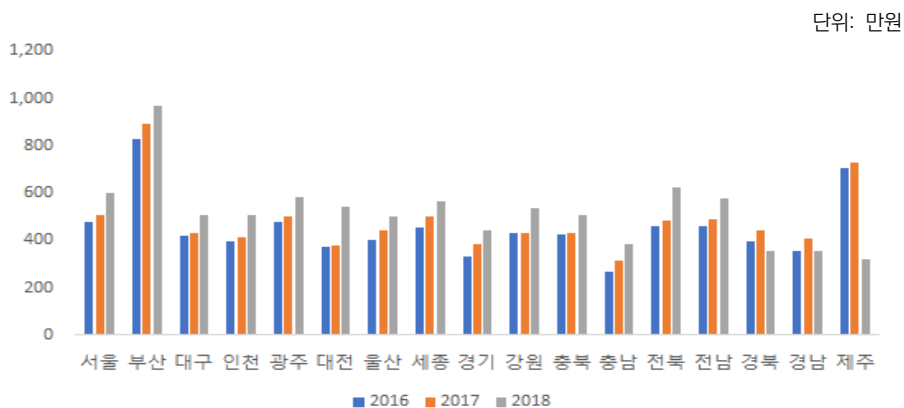
단위: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전국	115,245	120,796	128,673
서울	22,090	22,283	24,383
부산	13,365	13,771	14,170
대구	5,125	5,134	5,731
인천	6,372	6,422	7,482
광주	3,976	3,968	4,376
대전	3,163	3,060	4,060
울산	2,857	2,991	3,228
세종	900	1,109	1,413
경기	24,537	27,713	30,890
강원	3,009	2,885	3,362
충북	3,544	3,525	3,935
충남	3,169	3,621	4,234
전북	4,225	4,203	5,071
전남	4,250	4,345	4,752
경북	5,300	5,693	4,379
경남	6,724	7,383	6,053
제주	2,638	2,691	1,154

주: 2018년 경북, 경남, 제주의 자료는 일부만으로 분석하였음.

자료: 지방재정365/재정데이터 개방/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에서 원자료 추출, <http://lofin.mois.go.kr/portal/service/openInfPage.do?infId=0GAR4HBB8LWEBSL4NIHZ817053&srvcCd=> (2019. 4. 22. 인출)

〈그림 III-3-1〉 연도별 시도별 영유아 1인당 지방자치단체 육아정책사업 예산



주: 2018년 경북, 경남, 제주의 자료는 일부만으로 분석하였음.

자료: 1) 지방재정365/재정데이터 개방/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에서 원자료 추출, <http://lofin.mois.go.kr/portal/service/openInfPage.do?infId=0GAR4HBB8LWEBSL4NIHZ817053&srvcCd=> (2019. 4. 22. 인출)
 2) KOSIS 국가통계포털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 <http://kosis.kr/> (2019. 7. 10. 인출)

연도별 시도별 지방자치단체 육아정책사업 수를 살펴보면, 2016년에 1,435개, 2017년 1,826개, 2018년 1,962개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다. 시도별로는 2018년 경기도가 164개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47개, 대구 140개, 제주 131개, 충북 129개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 육아정책사업의 수는 많았으나 사업별 예산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2, 그림 III-3-2 참조).

지방자치단체 육아정책사업을 사업유형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III-3-3>과 [그림 III-3-3]과 같다. 사업유형별로는 2016년에 양육지원 8조 5,468억원, 기관지원 1조 3,450억원, 교사지원 9,820억원, 한부모지원 1,532억원, 아동안전지원 1,443억원 장애지원 1,164억원, 아동건강지원 1,129억원, 다문화지원 631억원, 출산지원 573억원, 인식개선 31억원, 일가정양립지원 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양육지원 9조 3,084억원, 교사지원 1조 6,531억원, 기관지원 1조 3,093억원, 한부모지원 1,784억원, 출산지원 1,009억원, 아동안전지원 950억원, 다문화지원 786억원, 장애 653억원, 아동건강지원 481억원, 일가정양립지원 269억원, 인식개선 33억원 순으로 나타나 2016년 비해 양육지원, 출산지원, 일가정양립지원, 교사지원, 인식개선, 한부모지원, 다문화지원은 늘어났으나, 나머지 사업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육지원(7,616억원)과 교사지원(6,711억원)이 크게 늘어 육아정책사업 예산 총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2> 연도별 시도별 지방자치단체 육아정책사업 수

구분	단위: 개			
	2016	2017	2018	
전국	1,435	1,826	1,962	
서울	115	150	147	
부산	113	129	126	
대구	105	124	140	
인천	86	115	125	
광주	59	83	85	
대전	60	71	104	
울산	60	79	93	
세종	59	73	85	
경기	143	153	164	
강원	85	115	125	
충북	101	110	129	
충남	43	85	97	
전북	66	96	102	
전남	70	102	101	
경북	68	97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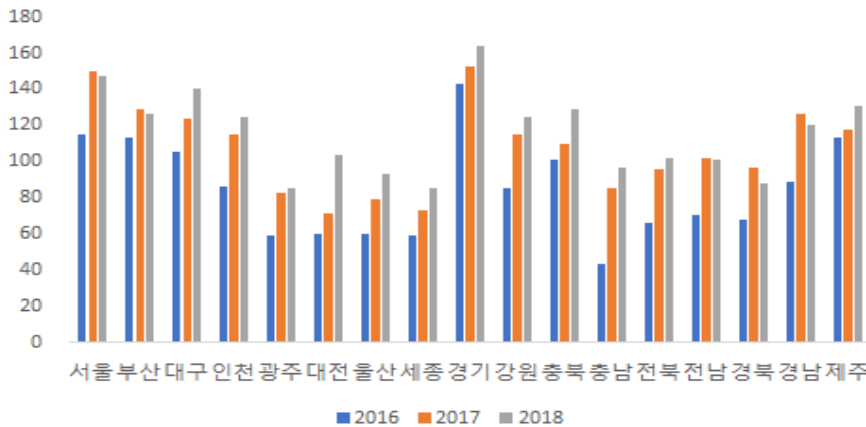
구분	2016	2017	2018
경남	89	126	120
제주	113	118	131

주: 2018년 경북, 경남, 제주의 자료는 일부만으로 분석하였음.

자료: 지방재정365/재정데이터 개방/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에서 원자료 추출, <http://lofin.mois.go.kr/portal/service/openInfPage.do?infId=0GAR4HBB8LWEBSL4NIHZ817053&svCd=> (2019. 3. 20. 인출)

[그림 III-3-2] 연도별 시도별 지방자치단체 육아정책사업 수

단위: 개



주: 2018년 경북, 경남, 제주의 자료는 일부만으로 분석하였음.

자료: 지방재정365/재정데이터 개방/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에서 원자료 추출, <http://lofin.mois.go.kr/portal/service/openInfPage.do?infId=0GAR4HBB8LWEBSL4NIHZ817053&svCd=> (2019. 3. 20. 인출)

<표 III-3-3> 연도별 사업유형별 지방자치단체 육아정책사업 예산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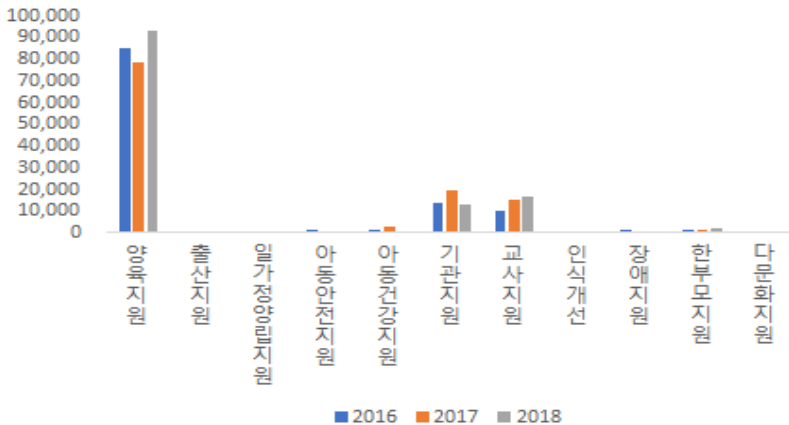
구분	2016		2017		2018	
총액	115,245	(100.0)	120,796	(100.0)	128,673	(100.0)
양육지원	85,468	(74.2)	78,971	(65.4)	93,084	(72.3)
출산지원	573	(0.5)	581	(0.5)	1,009	(0.8)
일가정양립지원	5	(0.0)	112	(0.1)	269	(0.2)
아동안전지원	1,443	(1.3)	554	(0.5)	950	(0.7)
아동건강지원	1,129	(1.0)	2,556	(2.1)	481	(0.4)
기관지원	13,450	(11.7)	19,839	(16.4)	13,093	(10.2)
교사지원	9,820	(8.5)	15,291	(12.7)	16,531	(12.8)
인식개선	31	(0.0)	31	(0.0)	33	(0.0)
장애지원	1,164	(1.0)	489	(0.4)	653	(0.5)
한부모지원	1,532	(1.3)	1,723	(1.4)	1,784	(1.4)
다문화지원	631	(0.5)	648	(0.5)	786	(0.6)

주: 2018년 경북, 경남, 제주의 자료는 일부만으로 분석하였음.

자료: 지방재정365/재정데이터 개방/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에서 원자료 추출, <http://lofin.mois.go.kr/portal/service/openInfPage.do?infId=0GAR4HBB8LWEBSL4NIHZ817053&svCd=> (2019. 3. 20. 인출)

[그림 III-3-3] 연도별 사업유형별 지방자치단체 육아정책사업 예산

단위: 억원



주: 2018년 경북, 경남, 제주의 자료는 일부 누락된 자료가 있으므로 주의.
 자료: 지방재정365/재정데이터 개방/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에서 원자료 추출, <http://lofin.mois.go.kr/portal/service/openInfPage.do?infId=0GAR4HBB8LWEBSL4NIHZ817053&svCd=> (2019. 3. 20. 인출)

연도별 사업유형별 지방자치단체 육아정책사업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기관지원 435개로 가장 많고, 양육지원 275개, 아동안전지원 186개, 아동건강지원 115개, 장애지원 97개, 한부모지원 79개, 인식개선 67개, 출산지원 64개, 다문화지원 62개, 교사지원 51개, 일가정양립지원 4개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기관지원 637개, 양육지원 403개, 아동안전지원 233개, 아동건강지원 146개, 다문화지원 117개, 장애지원 106개, 한부모지원 102개, 출산지원 81개, 교사지원 78개, 인식개선 45개, 일가정양립지원 14개로 나타나 2016년에 비해 인식개선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사업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4〉 연도별 사업유형별 지방자치단체 육아정책사업 수

단위: 개

구분	2016	2017	2018
총계	1,435	1,826	1,962
양육지원	275	385	403
출산지원	64	62	81
일가정양립지원	4	20	14
아동안전지원	186	145	233
아동건강지원	115	159	146
기관지원	435	547	637
교사지원	51	101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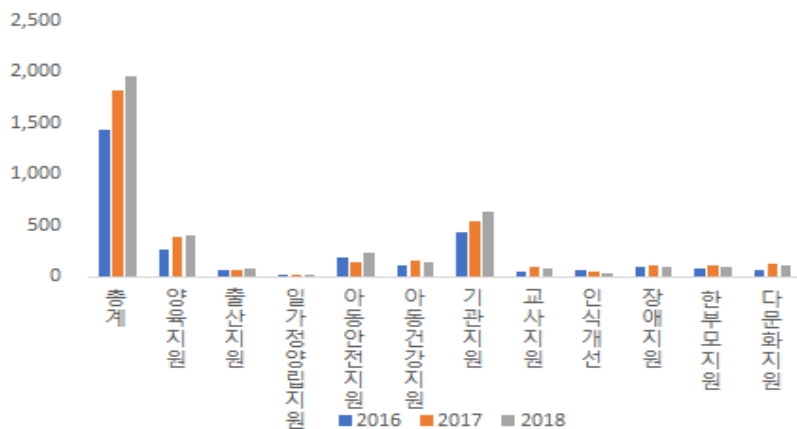
구분	2016	2017	2018
인식개선	67	53	45
장애지원	97	112	106
한부모지원	79	108	102
다문화지원	62	134	117

주: 2018년 경북, 경남, 제주의 자료는 일부 누락된 자료가 있으므로 주의.

자료: 지방재정365/재정데이터 개방/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에서 원자료 추출, <http://lofin.mois.go.kr/portal/service/openInfPage.do?infId=0GAR4HBB8LWEBSL4NIHZ817053&svCd=> (2019. 3. 20. 인출)

[그림 III-3-4] 연도별 사업유형별 지방자치단체 육아정책사업 수

단위: 개



주: 2018년 경북, 경남, 제주의 자료는 일부 누락된 자료가 있으므로 주의.

자료: 지방재정365/재정데이터 개방/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에서 원자료 추출, <http://lofin.mois.go.kr/portal/service/openInfPage.do?infId=0GAR4HBB8LWEBSL4NIHZ817053&svCd=> (2019. 3. 20. 인출)

4. 시도교육청(교육재정) 재정 투자: 2010~2017

각 시도교육청의 내부자료에 해당하는 104장표를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104장표에는 유치원 지출액이 구분되어 있으나, 2010~2014, 2017만이 수집되어 해당 자료 산출 결과를 정리하였다. 104장표 상 유치원 지출액은 사업에 관계없이 모든 지출액을 유아교육재정 지출액으로 보았으며, 누리과정 지출액과 유아교육진흥사업에 대한 지출액은 사업특성에 따라 유치원 지출액뿐만 아니라 전체 지출액을 유아교육재정 지출액으로 보았다.

2010년 유아교육재정 지출총액은 1조 3,868억원에서 2011년 1조 7,449억원, 2012년 2조 7,039억원, 2013년 3조 9,898억원, 2014년 4조 8,374억원, 2017

년 5조 6,478억원까지 늘어났다. 2012년 이후 늘어나는 것은 누리과정 시행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부문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지출액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는 누리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직업 교육에서 유아교육재정 지출액은 정확한 내역은 알 수 없으나 소액이 지출되었으며, 교육일반 부문에서 2017년에 186억원이 유아교육 관련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유아교육재정 지출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 유아교육재정 지출액은 경기도가 2,835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서울 1,360억원, 경남 1,285억원, 경북 1,163억원 순으로 나타났고, 제주가 167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도별 비중은 2017년까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에 서울과 경기도가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2017년 경기 1조 4,328억원, 서울 7,473억원으로 나타났다(표 III-4-2, 그림 III-4-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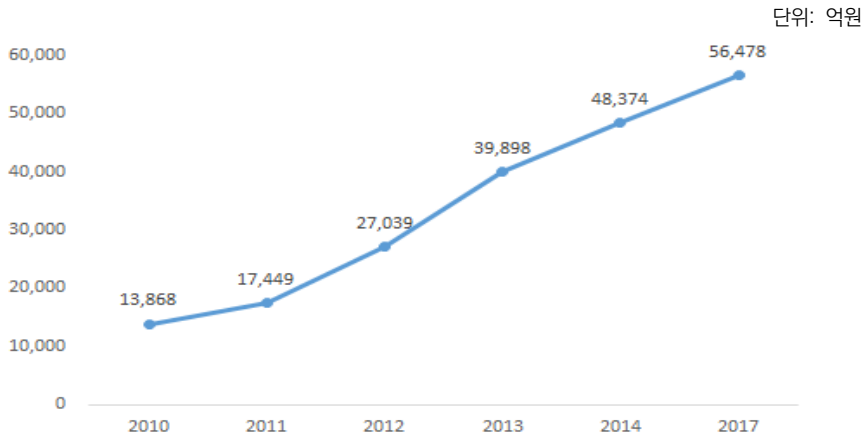
〈표 III-4-1〉 연도별 사업별 유아교육재정 지출액

단위: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7
총액	13,868	17,449	27,039	39,898	48,374	56,478
계	13,846	17,422	27,017	39,848	48,301	56,292
인적자원운동	4,217	4,607	5,048	5,539	6,129	8,128
교수-학습활동지원	2,543	2,997	3,016	3,982	3,830	3,994
유아및초중등교육 교육격차해소	5,302	7,217	0	0	0	0
교육복지지원	0	0	15,601	26,487	33,533	39,174
보건/급식/체육활동	37	89	168	557	586	751
학교재정지원관리	1,343	1,900	2,492	1,878	2,043	2,495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403	612	692	1,404	2,179	1,750
평생·계	0.09	0.13	0.00	0.00	0.00	0.08
직업 평생교육	0.09	0.13	0.00	0.00	0.00	0.08
교육 직업교육	0	0	0	0	0	0
계	22	26	23	51	73	186
교육행정일반	21	22	19	50	72	181
기관운영관리	1.27	4.34	2.61	0.54	0.86	4.32
지방채상환및리스로	0.00	0.00	0.00	0.00	0.00	0.00
예비비및기타	0.00	0.00	0.84	0.00	0.00	0.00

주: 각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지출액을 합산하였으며, 누리과정과 유아교육진흥 사업에 대한 지출액은 지출 총액을 합산하여 산출함.
 자료: 시도교육청 내부자료(각 연도별)

[그림 III-4-1] 연도별 유아교육재정 지출액



자료: 시도교육청 내부자료(각 연도별)

〈표 III-4-2〉 연도별 시도별 유아교육재정 지출액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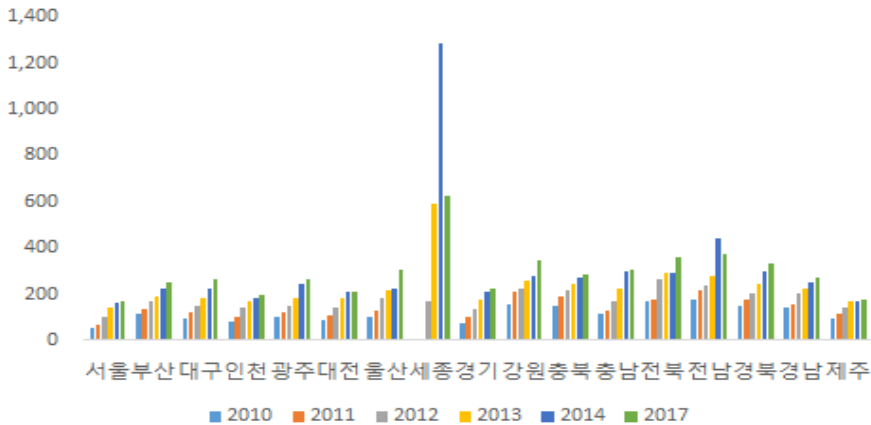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7
전국	13,868	17,449	27,039	39,898	48,374	56,478
서울	1,360	1,738	3,233	5,986	6,505	7,473
부산	849	1,053	1,486	2,049	2,534	3,043
대구	590	830	1,178	1,631	2,038	2,421
인천	698	860	1,437	1,974	2,243	2,932
광주	485	565	949	1,236	1,701	1,854
대전	405	503	844	1,227	1,451	1,587
울산	368	445	705	1,014	1,190	1,399
세종	0	0	56	292	653	892
경기	2,835	3,932	6,260	10,263	12,726	14,328
강원	621	820	1,065	1,375	1,669	1,954
충북	620	858	1,196	1,619	1,924	2,094
충남	793	846	1,357	1,943	2,410	3,066
전북	814	926	1,506	1,824	2,104	2,400
전남	817	999	1,438	1,761	2,141	2,690
경북	1,163	1,362	1,700	2,216	2,811	3,401
경남	1,285	1,505	2,282	2,963	3,627	4,142
제주	167	204	348	526	647	802

주: 각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지출액을 합산하였으며, 누리과정과 유아교육진흥 사업에 대한 지출액은 지출 총액을 합산하여 산출함.

자료: 시도교육청 내부자료(각 연도별)

[그림 III-4-2] 연도별 시도별 유아1인당 유아교육재정 지출액

단위: 만원



자료: 1) 시도교육청 내부자료(각 연도별)

2) KOSIS 국가통계포털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 <http://kosis.kr/>, (2019. 5. 20 인출).

누리과정 지출액은 104장표의 유치원 지출액이 아닌 지출총액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103장표의 2015, 2016년 자료를 활용하여 2012~2017 전체 기간을 분석할 수 있었다. 유아교육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누리과정 지출액을 살펴보면, 2012년에 9,891억원에서 2013년 2조 6,398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후, 2014년 3조 3,460억원, 2015년 3조 8,403억원, 2016년 3조 8,780억원, 2017년 3조 8,993억원으로 계속 늘어났다. 목그룹별로 살펴보면, 2014년까지는 전출금 비중이 가장 컸으나, 2016년 이후로는 이전지출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건비의 비중은 매우 작으며, 인건비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4-3〉 연도별 목그룹별 누리과정 지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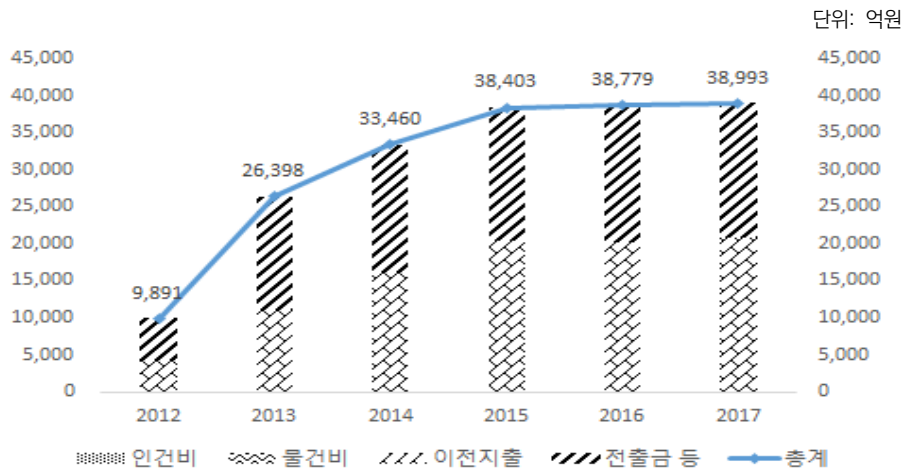
단위: 억원(%)

구분	총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전출금 등
2012	9,891 (100.0)	0.02 (0.0)	11 (0.1)	4,331 (43.8)	5,549 (56.1)
2013	26,398 (100.0)	0.00 (0.0)	16 (0.1)	11,102 (42.1)	15,279 (57.9)
2014	33,460 (100.0)	0.00 (0.0)	11 (0.0)	16,127 (48.2)	17,321 (51.8)
2015	38,403 (100.0)	0.00 (0.0)	11 (0.0)	20,473 (53.3)	17,918 (46.7)

구분	총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전출금 등
2016	38,779 (100.0)	0.00 (0.0)	11 (0.0)	20,211 (52.1)	18,558 (47.9)
2017	38,993 (100.0)	0.00 (0.0)	11 (0.0)	20,820 (53.4)	18,161 (46.6)

자료: 시도교육청 내부자료(각 연도별)

[그림 III-4-3] 연도별 목그룹별 누리과정 지출액



자료: 시도교육청 내부자료(각 연도별)

시도별 누리과정 지출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의 경우, 경기 2,438 억원, 서울 1,601억원, 경남 715억원, 부산 588억원 순으로 나타났고, 2017년에는 경기 1조 36억원, 서울 5,918억원, 경남 2,874억원, 인천 2,32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에 관계 없이 경기, 서울의 지출액이 가장 컸으며, 세종의 지출액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4〉 연도별 시도별 누리과정 지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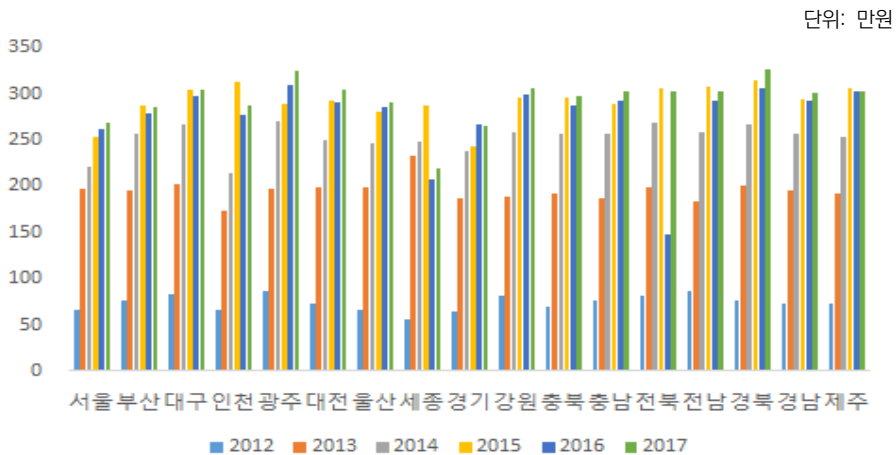
단위: 억원

시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국	9,891	26,398	33,460	38,403	38,779	38,993
서울	1,601	4,576	5,082	5,912	6,066	5,918
부산	588	1,508	2,000	2,314	2,296	2,282
대구	530	1,270	1,663	1,912	1,896	1,888
인천	535	1,411	1,749	2,589	2,328	2,327
광주	392	881	1,190	1,281	1,369	1,370

시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전	338	907	1,126	1,305	1,281	1,272
울산	229	681	859	999	1,034	1,017
세종	15	88	111	224	214	248
경기	2,438	7,095	8,944	9,229	10,389	10,036
강원	312	717	964	1,109	1,121	1,086
충북	301	833	1,103	1,290	1,256	1,266
충남	459	1,116	1,532	1,748	1,800	1,816
전북	396	940	1,275	1,479	724	1,411
전남	397	825	1,172	1,443	1,404	1,409
경북	515	1,326	1,760	2,117	2,120	2,182
경남	715	1,883	2,467	2,873	2,887	2,874
제주	130	341	462	580	596	591

자료: 시도교육청 내부자료(각 연도별)

[그림 III-4-4] 연도별 시도별 유아1인당 누리과정 지출액



자료: 1) 시도교육청 내부자료(각 연도별)

2) KOSIS 국가통계포털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 <http://kosis.kr/>, (2019. 5. 20 인출).

유아교육진흥 지출액은 누리과정과 마찬가지로 지출총액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2010~2014, 2017년은 104장표를 활용해 분석하였으며, 2015, 2016년은 103장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유아교육진흥 지출액은 2010년 2,389억원에서, 2011년 2,817억원, 2012년 2,822억원, 2013년 3,838억원으로 점차 늘어나나, 2014년 3,682억원으로 다소 줄고, 2015년 3,357억원까지 줄었으며, 2016년에 3,494억원으로 증가, 2017년 3,727억원까지 증가하였다.

목그룹별로는 2010년 전출금이 1,961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컸으나, 물건비 지출액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2014년에 물건비 비중이 가장 커졌으며, 2017년에는 물건비 2,140억원, 전출금 1,430억원, 인건비 94억원, 이전지출 41억원, 자산취득 2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표 III-4-5, 그림 III-4-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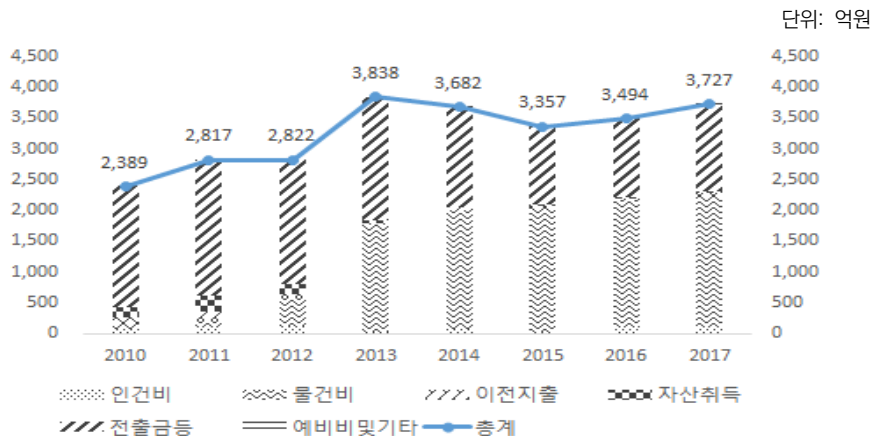
〈표 III-4-5〉 연도별 목그룹별 유아교육진흥 지출액

단위: 억원

구분	총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전출금등	예비비및기타
2010	2,389 (100.0)	72 (3.0)	104 (4.4)	82 (3.4)	170 (7.1)	1,961 (82.1)	0.00 (0.0)
2011	2,817 (100.0)	104 (3.7)	109 (3.9)	138 (4.9)	257 (9.1)	2,208 (78.4)	0.00 (0.0)
2012	2,822 (100.0)	124 (4.4)	455 (16.1)	55 (1.9)	174 (6.2)	2,014 (71.4)	0.14 (0.0)
2013	3,838 (100.0)	23 (0.6)	1,731 (45.1)	25 (0.6)	58 (1.5)	2,001 (52.1)	0.03 (0.0)
2014	3,682 (100.0)	62 (1.7)	1,947 (52.9)	26 (0.7)	23 (0.6)	1,624 (44.1)	0.13 (0.0)
2015	3,357 (100.0)	22 (0.7)	2,029 (60.5)	12 (0.4)	35 (1.0)	1,258 (37.5)	0.00 (0.0)
2016	3,494 (100.0)	89 (2.6)	2,069 (59.2)	34 (1.0)	28 (0.8)	1,273 (36.4)	0.00 (0.0)
2017	3,727 (100.0)	94 (2.5)	2,140 (57.4)	41 (1.1)	22 (0.6)	1,430 (38.4)	0.13 (0.0)

자료: 시도교육청 내부자료(각 연도별)

[그림 III-4-5] 연도별 목그룹별 유아교육진흥 지출액



자료: 시도교육청 내부자료(각 연도별)

시도별 유아교육진흥 지출액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경북 336억원, 경기 238억원, 강원 235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나, 2011년 경북 374억원, 강원 309억원, 경기 280억원, 2012년 강원 309억원, 경남 306억원, 경북 289억원, 2013년 이후로는 경기와 서울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2017년 경기 594억원, 서울 410억원, 충남 33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에 관계없이 세종이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4-6, 그림 III-4-6 참조).

〈표 III-4-6〉 연도별 시도별 유아교육진흥 지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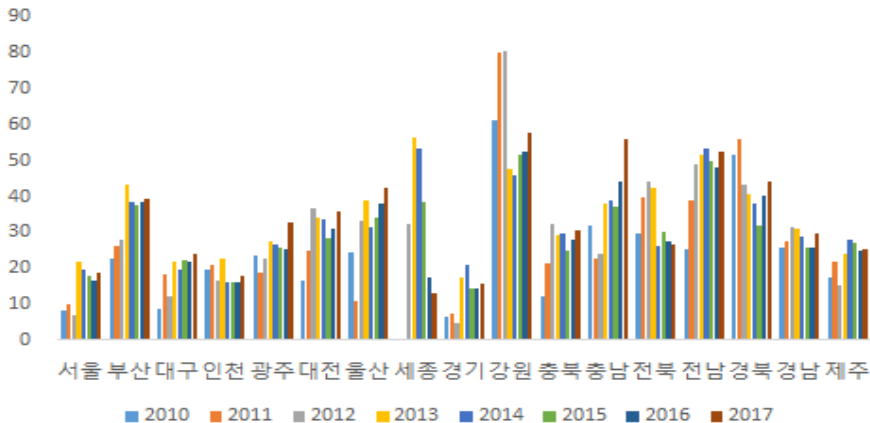
단위: 억원

시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국	2,389	2,817	2,822	3,838	3,682	3,357	3,494	3,727
서울	197	242	164	512	457	421	386	410
부산	170	200	215	334	301	303	319	313
대구	54	116	78	138	122	139	140	148
인천	147	165	134	186	133	136	136	145
광주	105	85	104	124	117	115	113	138
대전	73	112	169	155	151	126	136	149
울산	78	36	113	133	109	121	137	148
세종	0	0	9	21	24	30	18	15
경기	238	280	183	655	790	544	568	594
강원	235	309	309	181	172	194	197	205
충북	51	92	140	127	127	108	122	130
충남	186	138	145	228	233	225	271	336
전북	140	191	212	201	125	145	134	124
전남	114	177	224	231	242	233	233	244
경북	336	374	289	269	250	215	277	294
경남	235	262	306	300	278	252	256	283
제주	31	39	28	43	51	51	49	50

자료: 시도교육청 내부자료(각 연도별)

[그림 III-4-6] 연도별 시도별 유아1인당 유아교육진흥 지출액

단위: 만원



자료: 1) 시도교육청 내부자료(각 연도별)

2) KOSIS 국가통계포털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 <http://kosis.kr/>, (2019. 5. 20 인출).

5. 육아휴직 지원 재정 투자

육아휴직 지원 금액은 주로 여성 근로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아직까지 남성 육아휴직의 비중이 낮은 한국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육아휴직 지원 금액은 6,804억원으로 여성 근로자에게 6,253억원, 남성 근로자에게 552억원이 지원되었다(e-나라지표, 고용노동부,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²⁴), 2019. 3. 11 인출). 2010년 육아휴직 지원 금액은 1,781억에 불과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3.8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e-나라지표, 고용노동부,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²⁵), 2019. 3. 11 인출). 전체적으로 육아휴직 지원 금액은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으며, 비록 여전히 적은 비중이기는 하나 최근 들어서는 남성 육아휴직 지원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이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24) e-나라지표, 고용노동부,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4 (2019. 3. 11 인출).

25) e-나라지표, 고용노동부,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4 (2019. 3. 11 인출).

〈표 III-5-1〉 육아휴직 지원금액(2010~2017년)

단위: 억원

구분	여성근로자	남성근로자	계
2010	1,756	25	1,781
2011	2,705	58	2,763
2012	3,486	92	2,578
2013	4,086	117	4,202
2014	4,827	179	5,007
2015	5,922	274	6,197
2016	5,852	401	6,252
2017	6,253	552	6,804

자료: e-나라지표, 고용노동부,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4 (2019. 3. 11 인출).

6. 지도로 본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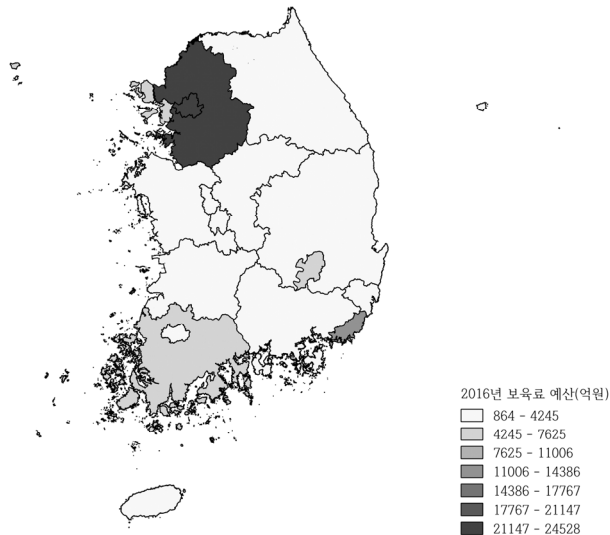
이 항은 2016년도 보육 예산의 분포와 2012~2017년도 유아교육 예산의 분포를 지도로 제시하였다. 시도 본청의 보육 예산 자료는 2016년 이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가 활용 가능한 최종 연도인 2016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재정 규모를 제시하였다²⁶⁾ 반면, 유아교육 예산의 경우에는 2012~2017년 누리과정지원 및 유아교육 진흥 예산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지역별 재정 투자 규모를 연도별로 제시하였다.

가. 2016년도 보육 예산의 지역별 분포

2016년 각 광역 자치단체의 보육 예산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III-6-1). 그러나 5세 이하 영유아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역시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그림 III-6-2 좌측지도) 단순한 예산 총액은 정책의 강도를 비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광역 자치단체의 보육 예산을 해당 자치단체의 영유아 수로 나누어 영유아 1명당 보육 예산의 지역별 분포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이다(그림 III-6-2 우측지도). 영유아 1명당 보육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부산광역시가 보육 정책의 강도가 높고, 경기도와 충청도의 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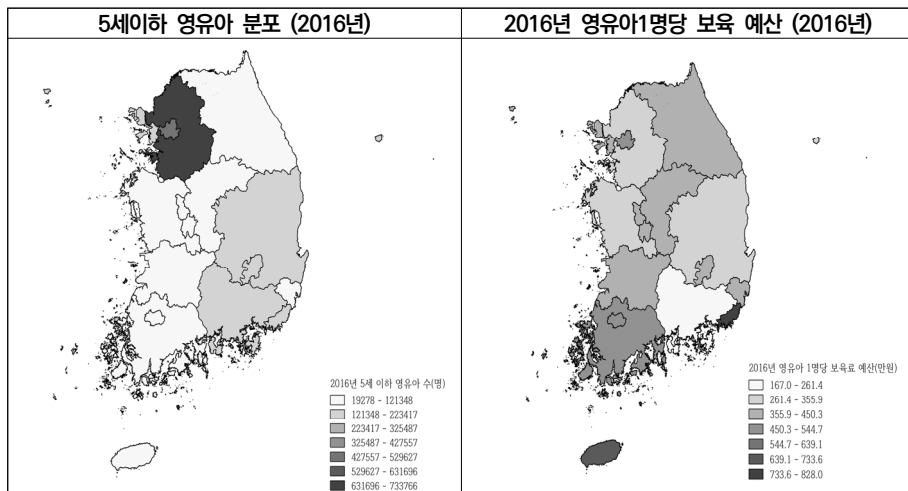
26) 또한 출산 관련 지표의 분석에서 활용된 연도가 2016년이기 때문에 최근 연도가 아닌 2016년 자료의 예산 규모를 지도로 제시함.

[그림 III-6-1] 2016년 보육 예산의 분포



자료: 1) 지방재정365/재정데이터 개방/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에서 원자료 추출, <http://lofin.mois.go.kr/portal/service/openInfPage.do?infId=OGAR4HBB8LWEBSL4NIHZ817053&svCd=>, (2019. 4. 22. 인출).
 2) KOSIS 국가통계포털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 <http://kosis.kr/>, (2019. 5. 17. 인출).

[그림 III-6-2] 2016년 5세이하 영유아 분포 및 영유아 1인당 예산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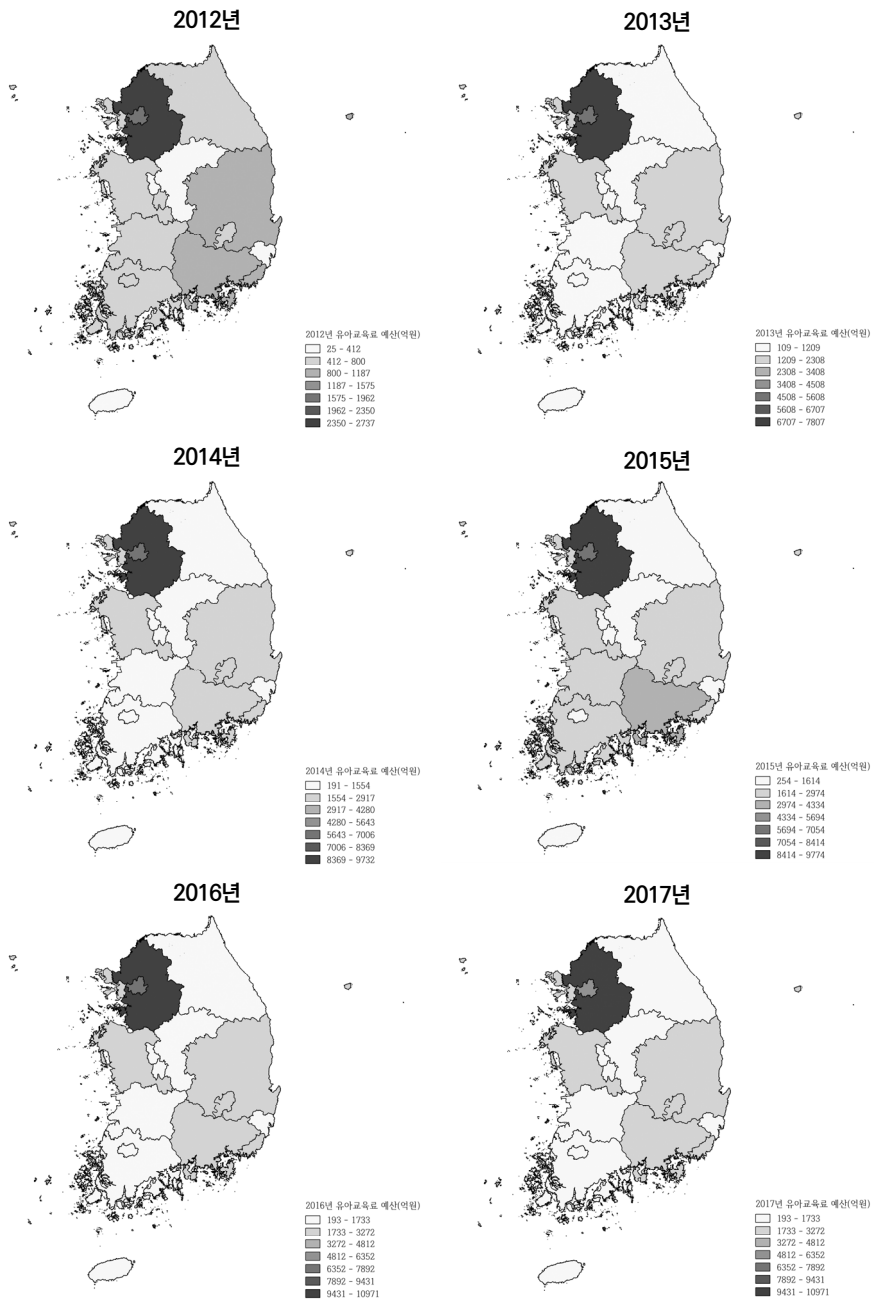
주: 영유아 1명당 보육 예산은 해당 광역 자치단체의 보육료 예산을 5세 이하 영유아 수로 나누어 산출함.
 자료: 1) 지방재정365/재정데이터 개방/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에서 원자료 추출, <http://lofin.mois.go.kr/portal/service/openInfPage.do?infId=OGAR4HBB8LWEBSL4NIHZ817053&svCd=>, (2019. 4. 22. 인출).
 2) KOSIS 국가통계포털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 <http://kosis.kr/>, (2019. 5. 17. 인출).

나. 유아교육 예산 지역별 분포의 시간적 추이

2012~2017년 각 광역 자치단체 교육청의 유아교육 예산을 살펴보면, 역시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III-6-3). 그러나 5세 이하 영유아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역시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그림 III-6-4) 단순한 예산 총액은 정책의 강도를 비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각 광역 자치단체의 보육료 예산을 해당 자치단체의 영유아 수로 나누어 영유아 1명당 보육 예산의 지역별 분포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그림 III-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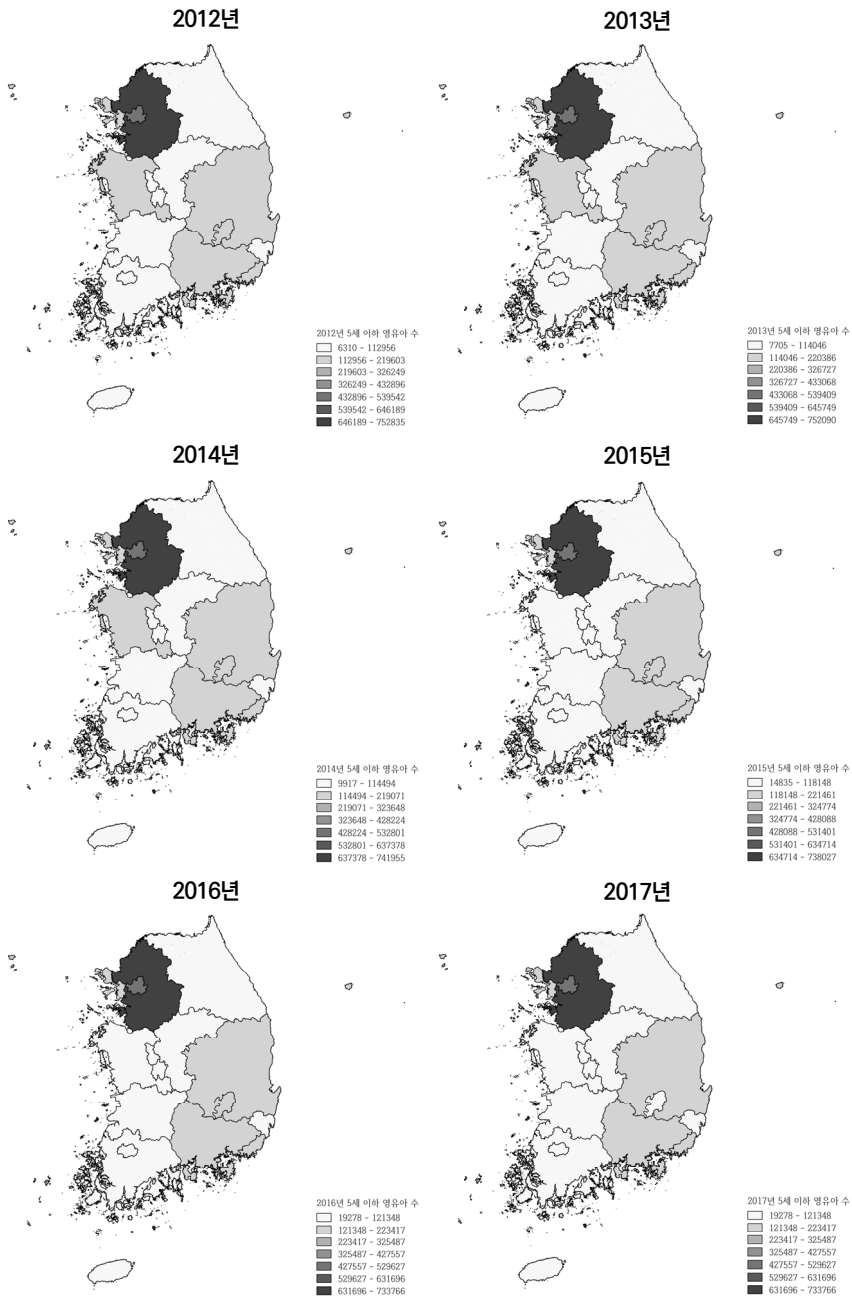
각 광역 자치단체의 보육 예산을 해당 자치단체의 영유아 수로 나누어 영유아 1명당 보육 예산의 분포를 비교해 보면, 지역별, 시간별로 상당한 변이(variations)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2012년에는 서울, 경기도의 유아교육 정책의 강도가 낮고, 강원도 유아교육 정책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3년에는 대전과 전라북도의 정책 강도가 높고, 2016년도에는 충청남도과 경상북도의 정책 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림 III-6-3] 2012~2017년 시도교육청 유아교육 예산의 지역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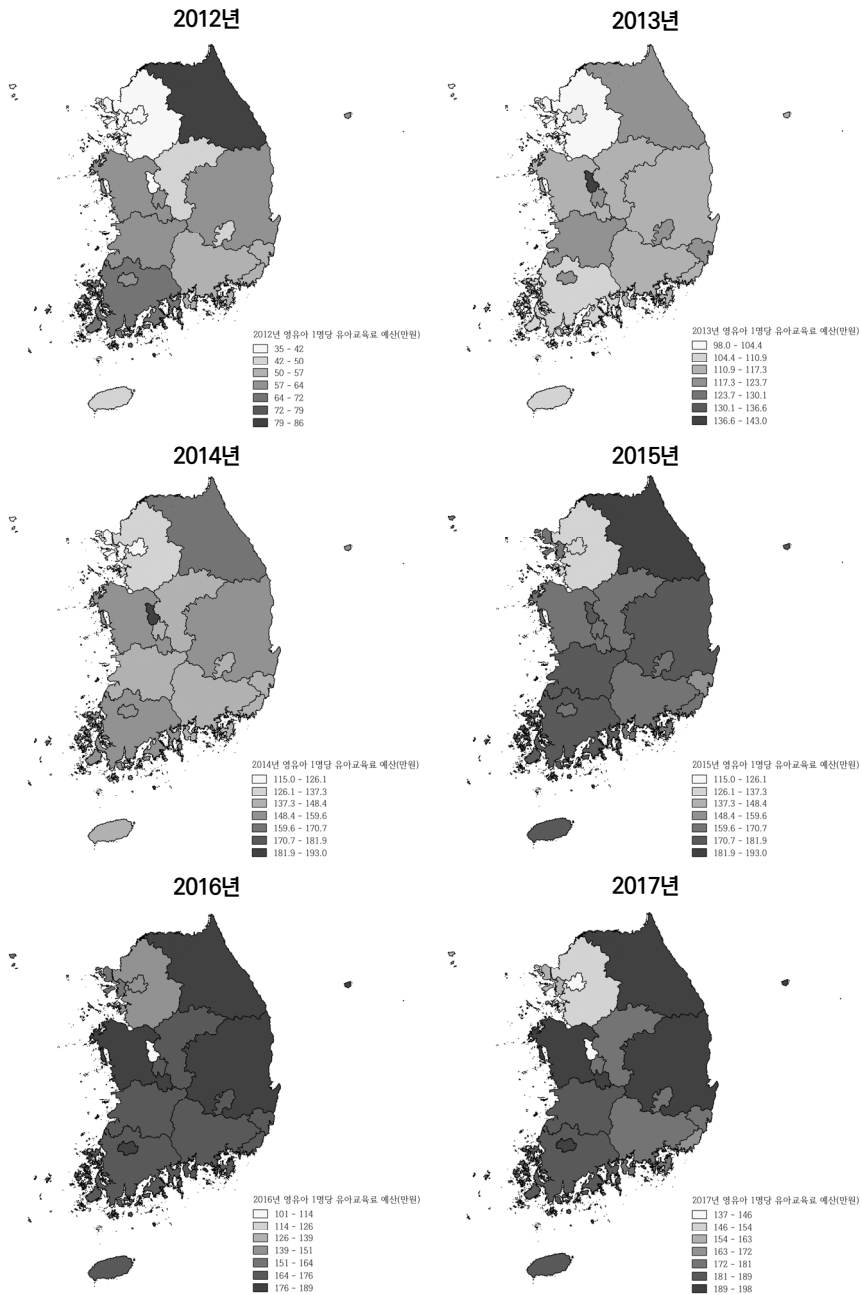
자료: 시도교육청 내부자료(각년도).

[그림 III-6-4] 2012~2017년 5세 이하 영유아의 지역별 분포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 <http://kosis.kr/>, (2019. 5. 17. 인출).

[그림 III-6-5] 2012~2017년 영유아 1인당 시도교육청 유아교육 예산의 지역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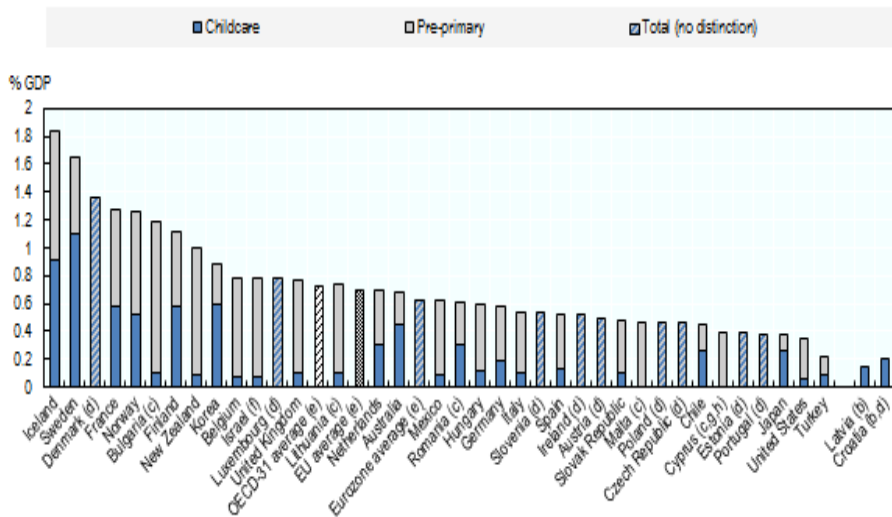
주: 영유아 1명당 보육 예산 = 해당 광역 자치단체의 보육료 예산/5세 이하 영유아 수
 자료: 1) 시도교육청 내부자료(각년도).
 2) KOSIS 국가통계포털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 <http://kosis.kr/>, (2019. 5. 17. 인출).

7. OECD 국가의 육아지원정책 분야 재정 투자

한국의 육아지원정책 분야 예산을 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먼저 GDP 대비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에 대한 공공지출 비중은 2013년 기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는데, 이는 2013년도에 전면적인 무상 보육·유아교육의 실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 보육에 대한 예산 비중이 유치원에 대한 예산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이는데, 스웨덴의 경우와 한국과 유사한 비중을 보이지만 GDP대비 전체 예산은 매우 높은 나라임을 알 수 있다. 반면, 프랑스나 아이슬란드 등의 나라는 유아교육과 보육이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노르웨이나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가 훨씬 높은 특징을 보였다(OECD Family Database²⁷⁾).

[그림 III-6-6] GDP 대비 ECEC에 대한 공공 지출 비중(OECD, 2013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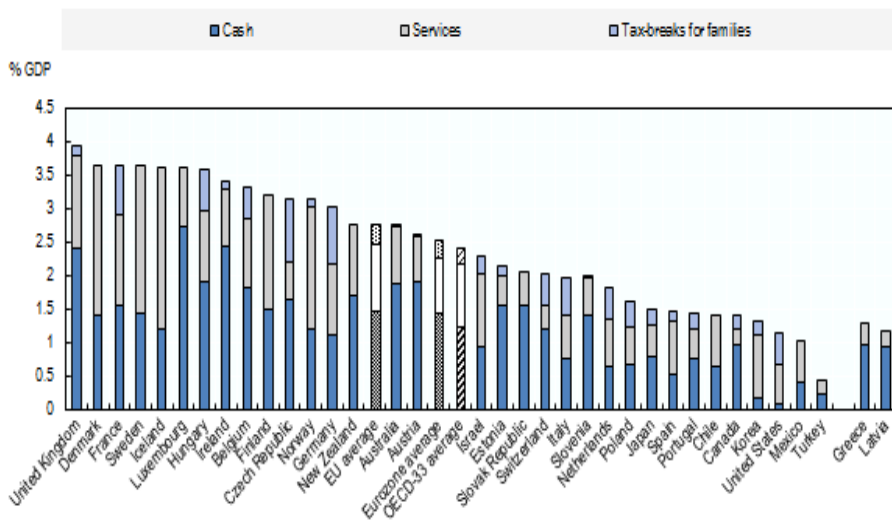
자료: OECD Family Database, PF3_1_public spending on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Chart PF3.1.A 인용.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19. 3. 9 인출).

27) PF3_1_public spending on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19. 3. 9 인출).

반면, 한국의 GDP 대비 가족급여(family benefits)에 대한 공공지출은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편에 속하여, 2013년 기준 1.3%에 그쳤다. 이는 OECD 35개 국가 중 32위에 속하는 것으로 OECD-33개국 평균은 2.43%였다(OECD Family Database²⁸). 한편, 가족급여(family benefits)와 관련된 예산의 경우 한국의 경우에는 주로 서비스 지원 형태의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금지원과 세제 지원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OECD 다수 나라들이 가족급여(family benefits)에 있어서는 현금 지원의 비중이 더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어 한국과 매우 상반된 양상을 보인다. 한편, 독일이나 프랑스, 헝가리, 체코 등의 경우에는 세제 지원 혜택의 비중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그림 III-6-7] GDP 대비 가족급여(family benefits) 대한 공공 지출 비중(OECD, 2013년 기준)

단위: %



주: 가족급여(Family benefits)에는 아동수당(Child payment and allowances), 육아휴직수당(parental leave benefits), 양육수당(Childcare support) 등이 포함됨.

자료: OECD Family Database, PF1_1_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tits, Chart PF1.1.A 인용.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19. 3. 9 인출).

28) OECD Family Database, PF1_1_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파일 참조,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19. 3. 9 인출).

즉, 한국은 2013년도 무상 보육·유아교육의 실시로 ECEC 예산은 어느 정도 확대되어 OECD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낮지 않은 수준을 보이지만, 가족급여(family benefits)에 대한 정부 지원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ECEC는 유아교육보다는 보육에 대한 예산 비중이 높고, 가족 급여는 현금이나 세제 지원보다는 서비스 지원에 대한 예산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다만 OECD 자료가 2013년 기준의 자료로, 최근 도입된 아동수당 지원 예산 등을 반영하면 최근의 경향성에서 가족급여(family benefits)에서 현금성 지원의 규모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IV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의 효과성 분석

- 01 주요 성과 지표 및 분석 개요
- 02 자녀 양육부담 완화에 대한 효과성 분석
- 03 여성 고용 관련 지표에 대한 효과성 분석
- 04 출산율 관련 효과성 분석
- 05 소결

IV.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의 효과성 분석

IV장에서는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자의 효과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계량 경제학적 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육아정책 분야 재정투자의 효과와 한계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1. 주요 성과 지표 및 분석 개요

육아정책분야 재정투자의 효과 분석은 분석 자료의 시점인 2017년도 이전의 정책 목표를 고려하여, 주제별로 자녀 양육부담 관련 지표, 여성 고용 관련 지표, 출산 관련 지표로 구분하여 검증하였다. 2017년 이전 육아지원 정책은 육아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여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모의 취업을 유인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극심한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율을 제고하는 것을 지향하였다(대한민국 정부,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육아 정책 분야의 재정 투입이 이러한 주요 정책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점검하고자 한다. 효과성 검증을 위한 성과 지표 및 분석 방법 등의 개요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1-1〉 효과성 분석의 성과 지표 및 분석 개요

구분	성과 지표	분석 자료	분석 연도	분석 방법
양육부담관련 지표	교육보육서비스 이용여부	한국노동패널조사	2010~2017	heckman 2stage
	교육보육비용	한국노동패널조사	2010~2017	
	교육보육비용 부담 정도	한국노동패널조사	2013~2017	
	사교육비 부담 경감정도	한국노동패널조사	2013~2017	
여성 고용관련 지표	기혼 여성(20~45세) 고용률	지역 별 고용 조사 (통계청)	2015~2016	multi-level logistics
	여성의 취업 여부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15 (예산자료 2016)	multi-level logistics
출산관련지표	초혼연령	통계청 집계자료	2012~2017년	GMM을 활용한 동적패널모형
	초산연령	통계청 집계자료	2012~2017년	
	합계출산율	통계청 집계자료	2012~2017년	

다만, 예산 자료와 활용 가능한 행정자료 혹은 2차 자료를 매칭하여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한계가 발생하여, 각 지표별로 사용한 예산자료 및 분석자료, 분석 방법 등이 분석 모형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2. 자녀 양육부담 완화에 대한 효과성 분석

가. 양육 부담 경감 효과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1) 분석 지표 및 분석 자료

육아가구의 양육부담은 교육·보육비용과 교육보육비에 대한 부담감을 주요 지표로 하여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육아가구의 양육비용에서 교육보육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양육비용 부담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며(최효미·강은진·조미라 외, 2018 : 130), 식비와 같은 다른 양육비용의 경우에는 필수재적 성격이 강하여 소비된 비용을 기준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육아 정책분야 재정 투자가 무상 보육·교육에 집중되어 있어, 정책 목표의 하나인 교육·보육비용의 경감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조사 13차년도(2010년)부터 20차년도(2017년) 총 8개년도의 자료로, 패널 자료가 아닌 횡단면 시계열 자료로 활용한 측면이 크다는 점을 밝혀둔다²⁹⁾. 분석 대상은 해당 차수에 매년 만0세부터 만12세까지 자녀가 있는 가구이다. 육아가구를 어디까지로 정의할 것이냐 또한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되나, 현재 육아정책분야 재정 사업의 범주에는 초등학교령기를 포함하는 사업들도 다수 포함되기 때문에 재정투자의 효과 분석에 있어 자녀 교육·보육비 산출 범주를 초등학교령기 자녀가 1명이라도 포함되어 있는 가구까지로 정의하였다. 이 때, 초등학교령기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당연히 순위 형제자매의 존재에 따라 중고등학생 자녀의 유무 등(가구 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본 분석에서 활용된 교육·보육비는 가구별 교육·보육비가 아닌 아동별 교육·보육비이므로 중고등학생의 교육·보육비에 대한 분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지하는 바이다.

29) 자료를 패널로 연결할 경우 자료 손실이 많을 뿐 아니라 분석 기간 내 영유아기 연령 전체의 절단이 없는 자료는 2010년생과 2011년생 두 연령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2010년 이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의 활용이 가능하지만, 예산 자료가 2010 이전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이전 차수 자료는 활용하지 않음.

분석에 활용된 분석 대상자의 기초통계는 다음과 같다. 분석에 사용된 총 관측치는 총 8년 동안 18,920명으로, 전면적인 무상보육·유아교육 실시 이전인 2010~2012년까지 7,240명 2013~2017년까지 5개년도 동안 11,680명이다. 남아와 여아의 비중은 큰 차이는 없지만, 남아가 여아에 비해 5%가량 많은 9,986명이었다. 분석 대상 육아가구 중 영아 자녀가 있는 가구는 37.9%, 유아 가구가 있는 가구는 43.6%,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62.0%였으며, 평균 자녀 연령은 6.3세였다.

모 특성별로는 30대가 67.2%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이하 36.7%, 전문대졸 30.0%, 4년제 대졸이상 33.3%였다. 분석년도가 최근일수록 모의 학력은 조금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취업모 비중은 전체 기준 43.9%였으며, 2013년 이후 자료에서 취업모 비중이 다소 상승하여 44.9%가 취업 중이었다. 한편,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38.2%로, 취업모 비중에 비해서는 5%p가량 낮았다.

가구소득은 299만원 이하인 경우가 29.3%로 가장 많았고, 600만원 이상 가구의 비중은 13.9%였다. 다만, 8개년이라는 시차가 있어, 최근 자료일수록 299만원 이하 가구의 비중이 낮고 600만원 이상 가구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에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교육·보육비용 등 모든 비용을 실질 비용으로 산출하여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평균 가구소득은 412만1천원이었다. 평균 가구원 수는 4.1명으로 영아 자녀의 수는 0.5명, 유아자녀 수 0.5명, 초등학생 자녀 수는 0.9명이었다.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금을 수혜하고 있는지 여부는 전면적 무상보육·교육이 실시된 2013년(16차조사) 이후로 질문한 문항이다.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금(바우처)를 받았다고 응답한 가구는 35.8%로, 지원 대상인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면 2/3가량이 수혜했다고 응답하였다.

〈표 IV-2-1〉 교육·보육비용 분석 대상 특성 : 독립변인

단위: 명(%), 세, 만원

변수명			전체 (2010~2017)	전면무상보육시행전 (2010~2012)	전면무상보육시행후 (2013~2017)
자녀 특성	자녀 성별	남아	9,986 (52.8)	3,809 (52.6)	6,177 (52.9)
		여아	8,934 (47.2)	3,431 (47.4)	5,503 (47.1)
	자녀 유무	영아있음(=1)	7,171 (37.9)	2,930 (40.5)	4,241 (36.3)
		유아있음(=1)	8,250 (43.6)	3,140 (43.4)	5,110 (43.8)
		초등있음(=1)	11,734 (62.0)	4,397 (60.7)	7,337 (62.8)
		평균연령(세)	6.3	6.2	6.4
모	연령	20대	899 (4.8)	404 (5.6)	495 (4.2)

변수명			전체 (2010~2017)		전면무상보육시행전 (2010~2012)		전면무상보육시행후 (2013~2017)	
특성		30대	12,719	(67.2)	5,249	(72.5)	7,470	(64.0)
		40대	5,210	(27.5)	1,548	(21.4)	3,662	(31.4)
		50대이상	90	(0.5)	39	(0.5)	51	(0.4)
	학력	고졸이하	6,934	(36.7)	3,118	(43.1)	3,816	(32.7)
		전문대졸	5,678	(30.0)	2,021	(27.9)	3,657	(31.3)
		4년제대졸이상	6,291	(33.3)	2,095	(28.9)	4,196	(35.9)
취업모(=1)		8,313	(43.9)	3,072	(42.4)	5,241	(44.9)	
가구 특성	맞벌이가구 여부(=1)		7,224	(38.2)	2,659	(36.7)	4,565	(39.1)
	가구 소득	299만원이하	5,534	(29.3)	2,750	(38.0)	2,784	(23.8)
		300~399만원	4,600	(24.3)	1,789	(24.7)	2,811	(24.1)
		400~499만원	3,209	(17.0)	1,123	(15.5)	2,086	(17.9)
		500~599만원	2,433	(12.9)	700	(9.7)	1,733	(14.8)
		600만원이상	2,628	(13.9)	718	(9.9)	1,910	(16.4)
	평균가구소득 (만원)		412.1		367.3		439.8	
	가구원 수		4.1		4.1		4.1	
	영아자녀 수		0.5		0.5		0.4	
	유아자녀 수		0.5		0.5		0.5	
	초등자녀 수		0.9		0.8		0.9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금 수혜여부(=1)			4,176	(22.1)	-	-	4,176	(35.8)
N			18,920		7,240		11,680	

주: 1) 자녀 유무는 중복 응답.

2) 바우처는 16차(2013년) 이후 질문한 문항으로, 취학전 아동만을 대상으로 할 때 66.6%가 바우처를 받고 있음.

자료: 한국노동패널 13차(2010년)~20차(2017년).

교육·보육서비스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뿐 아니라, 아이돌보미 등 개별돌봄 서비스, 학원, 학습지 등 사교육을 하기 위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서비스를 하나라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5,550명(82.2%)에 달했다. 서비스 이용 비중은 전면무상보육·유아교육이 적용된 2013년 이후에 평균 84.7%로 2010~2012년까지 78.2%였는데 반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표 IV-2-2 참조).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은 명목 기준 평균 26만3천원, 실질 기준 26만8천원 이었다. 무상 보육·유아 교육 실시 시기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아도, 실질비용으로 환산된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이 평균 23만원에서 29만1천원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무상 보육·교육정책의 도입을 전후로 교육·보육서비스의 이용도 증가하고, 비용도 상승했음을 알 수 있었다(표 IV-2-3 참조).

〈표 IV-2-2〉 교육·보육비용 분석 대상 특성 : 종속변인

단위: 명(%), 만원

변수명	전체 (2010~2017)	전면무상보육시행전 (2010~2012)	전면무상보육시행후 (2013~2017)
서비스이용여부 (=1)	15,550 (82.2)	5,662 (78.2)	9,888 (84.7)
교육·보육서비스 명목	26.3	21.7	29.2
이용비용 실질	26.8	23.0	29.1
N	18,920	7,240	11,680

자료: 한국노동패널 13차(2010년)~20차(2017년).

〈표 IV-2-3〉 교육·보육비용 부담 정도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 정도 : 종속변인

단위: 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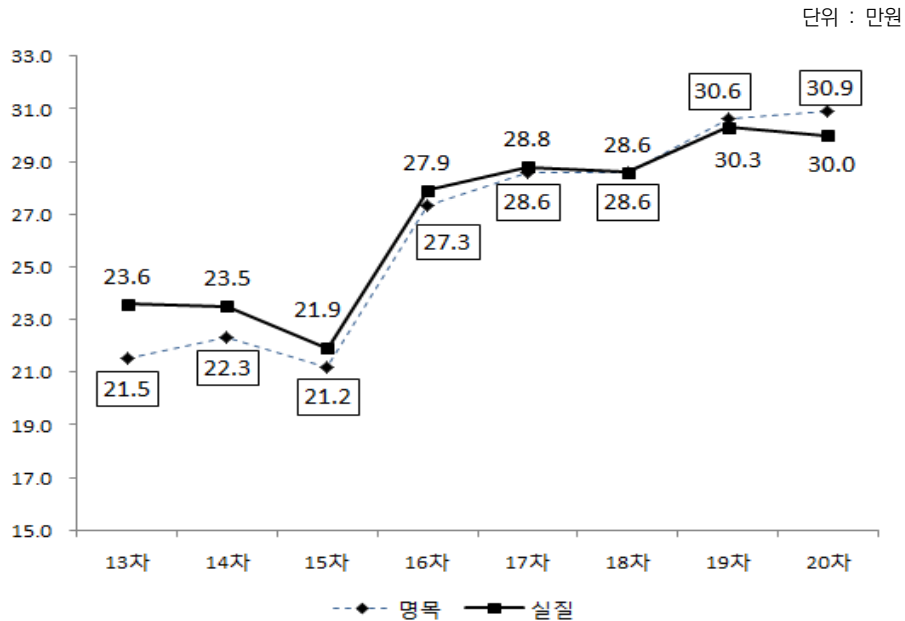
변수명	평균 점수	부담 정도 및 경감 정도				
		1	2	3	4	5
교육보육비용 부담 정도	3.0	11.2	17.5	35.1	30.5	5.8
사교육비 부담 경감 정도	4.1	1.0	3.0	13.4	48.5	34.2
N		7,499				

주: 교육보육비용 부담 정도와 사교육비 부담 경감 정도는 5점 척도로, 부담 정도는 부담이 클수록 숫자가 높아지며, 사교육비 부담 경감 정도는 도움 정도가 클수록 숫자가 높아짐.

자료: 한국노동패널 16차(2013년)~20차(2017년).

본 연구에서 주요 종속변수 중 하나인 육아가구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실질 비용을 기준으로 2010년(13차조사) 23만6천원에서 영아 및 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유아교육이 실시된 2012년(15차조사)에 21만9천원으로 소폭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유아 모든 연령에 대한 무상 보육·유아교육이 실시된 2013년도에 교육·보육비용 지출액은 크게 증가하여 27만9천원으로 증가하였고, 이후 소폭의 등락을 보이지만 30만원 내외의 비용 지출이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IV-2-1] 육아가구의 교육·보육비용 변화 추이(2010~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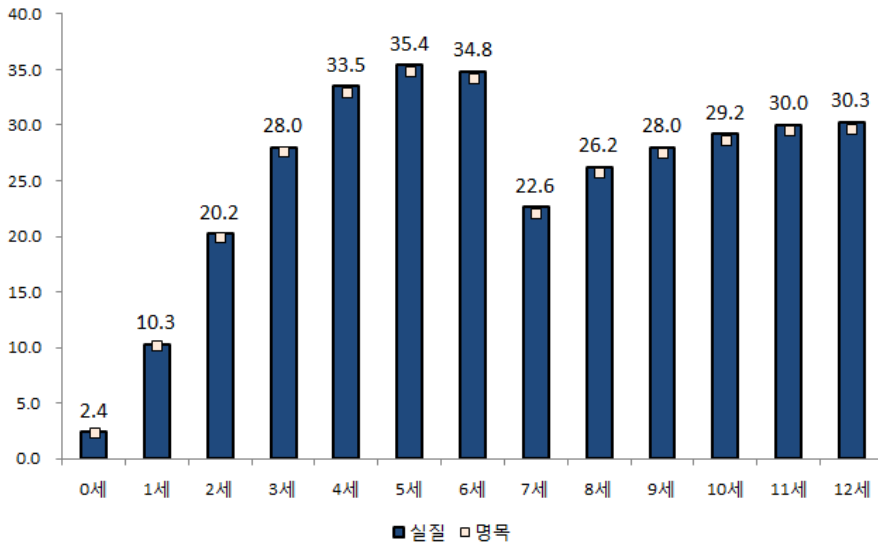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 13차(2010년)~20차(2017년).

한편, 육아가구의 자녀 연령별 교육·보육비용은 0세가 2만4천원으로 매우 적고, 5세가 35만4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0세의 교육·보육비용이 적은 것은 교육·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부모가 직접 돌보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한편, 초등학교 진학 연령인 만7세의 경우에는 교육·보육비용 지출이 유아기에 비해 10만원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이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다시 비용이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6학년인 만12세의 교육·보육비용은 평균 30만3천원이었다.

[그림 IV-2-2] 육아가구의 자녀연령별 교육·보육비용

단위 : 만원



주: 수치는 실질 비용으로 환산된 값을 의미하며, 지출하지 않는 경우 0으로 처리하여 평균함.
 자료: 한국노동패널 13차(2010년)~20차(2017년).

2) 분석 방법³⁰⁾

육아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Heckman 표본선택 편의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교육·보육 지출 비용은 교육·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관측되는 변수로서, 이와 같은 서비스 선택 기제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교육·보육비용 지출 결정요인의 효과가 왜곡되기 쉽다. 즉 특정 서비스를 선택하는 응답자가 선택적 편의를 가지고 있을 때, 표본 선택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OLS 추정을 하게 되면 오차항의 평균이 0이 되지 않아 추정치에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표본 선택 모형의 1단계 표본선택 방정식(selection equation)은 (식 IV-3-1)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된다.

30) Heckman 2-stage 분석방법에 대한 논의는 stata 가이드 Heckman selection model (<https://www.stata.com/manuals13/rheckman.pdf>, 2019. 9. 9 인출)과 Probit model with sample selection (<https://www.stata.com/manuals13/rheckprobit.pdf>, 2019. 9. 9 인출)의 내용을 참조하여 포괄 인용되었음.

$$z_i^* = w_i\gamma + u_i$$

$$z_i = \begin{cases} 1 & \text{if } z_i^* > 0 \\ 0 & \text{if } z_i^* \leq 0 \end{cases} \dots\dots\dots (\text{식 IV-3-1})$$

Heckman 표본선택편의 모형의 기본적인 추정 방정식은 (식 IV-3-2)과 같으며, 이때 u_i 와 ϵ_i 가 상관되어 있다면 β 를 추정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y_i = \begin{cases} x_i\beta + \epsilon_i & \text{if } z_i^* > 0 \\ 0 & \text{if } z_i^* \leq 0 \end{cases} \dots\dots\dots (\text{식 IV-3-2})$$

일반적으로 두 오차항 사이의 관계를 (식 IV-3-3)과 같이 가정하는데, 즉 평균이 0이고 상관계수가 ρ 인 이변량 정규 분포(bivariate normal distribution)을 가정한다.

$$u_i \sim N(0, 1), \epsilon_i \sim N(0, \sigma^2), \text{corr}(u_i, \epsilon_i) = \rho \dots(\text{식 IV-3-3})$$

위의 식은 결국 다음과 같이 전개되는데,

$$\begin{aligned} E[y_i | y_i \text{ is observed}] &= E[y_i | z_i^* > 0] \\ &= E[x_i\beta + \epsilon_i | w_i\gamma + u_i > 0] \\ &= x_i\beta + E[\epsilon_i | w_i\gamma + u_i > 0] \\ &= x_i\beta + E[\epsilon_i | u_i > -w_i\gamma] \dots (\text{식 IV-3-4}) \end{aligned}$$

만약 ϵ_i 와 u_i 가 독립적이라면, $E[\epsilon_i] = 0$ 이 되어 OLS 추정과 동일해진다. 그러나 만약 두 개의 오차항 ϵ_i 와 u_i 가 상관되어 있다면 $E[\epsilon_i | u_i > -w_i\gamma]$ 를 고려해야만 한다.

$$E[\epsilon_i | u_i > -w_i\gamma] = \rho \sigma_\epsilon \lambda_i(\alpha_u) \dots\dots\dots (\text{식 IV-3-5})$$

$$\text{이때, } \alpha_i = \frac{-w_i\gamma}{\sigma_u} \text{ 이고, } \lambda(\alpha_u) = \frac{\phi(\frac{-w_i\gamma}{\sigma_u})}{1 - \Phi(\frac{-w_i\gamma}{\sigma_u})} = \frac{\phi(\frac{w_i\gamma}{\sigma_u})}{\Phi(\frac{w_i\gamma}{\sigma_u})} \text{ 이다.}$$

$$\begin{aligned} \text{결국 } E[y_i | y_i \text{ is observed}] &= x_i\beta + E[\epsilon_i | u_i > -w_i\gamma] \\ &= x_i\beta + \rho\sigma_\epsilon \left[\frac{\phi(\frac{w_i\gamma}{\sigma_u})}{\Phi(\frac{w_i\gamma}{\sigma_u})} \right] \\ &= x_i\beta + \rho\sigma_\epsilon \lambda_i(\alpha_u) \\ &= x_i\beta + \beta_\lambda \lambda_i(\alpha_u) \quad \dots\dots\dots (\text{식 IV-3-6}) \end{aligned}$$

이 되므로, 최종 추정식은

$$\begin{aligned} y_i | z_i^* > 0 &= E[y_i | z_i^* > 0] + \nu_i \\ &= x_i\beta + \beta_\lambda \lambda_i(\alpha_u) + \nu_i \quad \dots\dots\dots (\text{식 IV-3-7}) \end{aligned}$$

이 된다. 결국 OLS의 추정치는 $\beta_\lambda(\alpha_u)$ 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편향되고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하게 되므로, Heckman 표본선택편의모형을 이용하여 이를 교정하는 방식이다.

나. 교육·보육비용 경감 효과 분석 결과

먼저 전체 분석 대상과 중앙정부예산과 누리과정예산, 유아교육진흥예산을 매칭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Heckman 2stage 분석의 1단계에 해당하는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확률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모의 연령이 20대인 경우에 비해 30대인 경우, 고졸에 비해 전문대졸인 경우, 취업모인 경우, 가구소득은 높을수록, 가구원수는 적을수록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본 연구의 주요 관심 변수인 육아예산(1

인당) 규모가 클수록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무상 보육·유아교육의 도입 이후 데이터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한 분석에서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가구원 수로 무상 보육 도입 이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확률에 가구원 수는 더 이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취업모 여부는 제도 도입 전후와 무관하게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확률에 매우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1인당) 육아예산규모는 전체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는 양의 유의한 효과가 발견되었으나, 무상 보육·교육지원 정책이 도입된 이후의 자료(2013~2017년)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유의한 효과는 없었다. 이를 통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예산의 증가가 서비스 이용 확률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온 주요 요인임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한편, 누리과정과 유아교육진흥 예산과 지자체 예산을 매칭한 자료를 활용한 분석은 지자체 예산 현황이 파악되는 2016년 이후 자료만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서비스 이용 확률이 높아졌으며, 취업모 여부가 양의 영향력을 보였다. 한편, 가구소득은 높을수록 서비스 이용확률을 높이긴 했으나, 전체 데이터와 비교해서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금 수혜 여부는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확률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IV-2-4〉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확률에 미친 영향 요인 (Heckman 2stage의 1단계 결과)

단위: 개

구분	변수명		중앙정부+누리과정 +유아진흥예산 (2010~2017년)	중앙정부+누리과정 +유아진흥예산 (2013~2017년)	지자체+누리과정 +유아진흥예산 (2016~2017)
자녀 특성	자녀 성별		-0.020	0.007	-0.070
	자녀 연령		0.181 ***	0.292 ***	0.246 ***
모 특성	연령	30대	0.238 ***	0.173	0.155
		40대	-0.130 *	-0.039	0.138
		50대이상	-0.961 ***	-0.619 *	-0.463
	학력	전문대졸	0.102 **	0.161 **	0.159 *
		4년제대졸이상	-0.001	0.119 *	0.126
	취업모(=1)		0.167 ***	0.225 ***	0.227 ***
가구 특성	가구 소득	300~399만원	0.286 ***	0.379 ***	0.055
		400~499만원	0.409 ***	0.464 ***	0.169 *
		500~599만원	0.491 ***	0.657 ***	0.280 **

구분	변수명	중앙정부+누리과정 +육아진흥예산 (2010~2017년)	중앙정부+누리과정 +육아진흥예산 (2013~2017년)	지자체+누리과정 +육아진흥예산 (2016~2017)
	600만원이상	0.726 ***	0.982 ***	1.052 ***
	가구원 수	-0.049 **	-0.153 ***	-0.051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금 수혜여부(=1)		8.770	4.988
	육아예산규모(1인당)	0.000 ***	-0.000	-0.000
	상수	-0.581 ***	-1.219 ***	-0.821
	N	18,920	11,680	4,579

주: 1) 범주형 변수의 Base는 모 연령 20대, 모 학력 고졸이하,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임.

2) 한국노동패널자료에서 보육료 및 누리과정 바우처(아이사랑카드) 사용 여부를 16차년도(2013년조사)부터 질문하기 시작하였고, 지자체 예산이 2016년 이후만 존재하여 모형별로 분석 시기가 다를 수 있음.

3) 예산액은 영유아 1인당 예산액 기준.

자료: 한국노동패널 13차~20차 및 연도별 육아분야 재정 정리 자료(본 연구).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교육·보육비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년도의 중앙정부예산 및 누리과정, 유아교육진흥예산을 매칭한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모의 연령이 30대일 때,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400만원이상인 구간에서 교육보육비용 지출이 많았다. 한편,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전체적으로 교육보육비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교육·보육비용이 자녀별(1인당) 교육·보육비이기 때문이다. (1인당) 육아예산규모는 예산 규모가 커질수록 의외로 교육보육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포착되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육아지원 예산이 교육·보육비 경감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 될 수도 있으나, 서비스 이용 확률의 증가에 따라 교육보육비 지출 가구가 증가하여 전체적인 평균 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한편, 2013~2017년 중앙정부, 누리과정, 유아교육진흥예산을 사용한 분석 결과에서는 (1인당) 육아예산규모의 계수는 양수지만 유의한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2016~2017년 지자체예산과 누리과정, 유아교육진흥예산을 활용한 분석에서는 (1인당) 육아예산규모는 음수지만 유의한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IV-2-5〉 교육·보육비용에 미친 영향 요인 (Heckman 2stage의 2단계 결과)

단위: 개

구분	변수명		중앙정부+누리과정 +유아진흥예산 (2010~2017년)	중앙정부+누리과정 +유아진흥예산 (2013~2017년)	지자체+누리과정 +유아진흥예산 (2016~2017)
자녀 특성	자녀 성별		-0.421	-0.884 *	-1.522 *
	자녀 연령		0.345 ***	0.725 ***	2.393 ***
모 특성	연령	30대	3.359 **	2.946 *	3.890
		40대	1.948	2.259	3.303
		50대이상	-2.448	-4.400	-3.170
	학력	전문대졸	3.868 ***	4.119 ***	4.690 ***
4년제대졸이상		6.073 ***	6.228 ***	5.586 ***	
가구 특성	맞벌이가구여부(=1)		-0.421	1.161 *	1.218
	가구 소득	300~399만원	0.268	-0.819	0.119
		400~499만원	4.224 ***	1.985 **	4.357 ***
		500~599만원	6.598 ***	4.859 ***	6.720 ***
		600만원이상	14.274 ***	13.597 ***	17.828 ***
	자녀 구성	영아자녀 수	-2.258 ***	-1.274 *	-1.235
		유아자녀 수	-1.321 ***	2.568 ***	-4.475 ***
		초등자녀 수	-6.102 ***	-5.061 ***	-5.468 ***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금 수혜여부(=1)			8.479 ***	21.624 ***	
육아예산규모(1인당)			0.001 ***	0.000	
상수			25.118 ***	21.551 ***	
N			18,920	11,680	
				4,579	

주: 1) 범주형 변수의 Base는 모 연령 20대, 모 학력 고졸이하,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임.

2) 한국노동패널자료에서 보육료 및 누리과정 바우처(아이사랑카드) 사용 여부를 16차년도(2013년조사)부터 질문하기 시작하였고, 지자체 예산이 2016년 이후만 존재하여 모형별로 분석 시기가 다른데 유의.

3) 예산액은 영유아 1인당 예산액 기준.

자료: 한국노동패널 13차~20차 및 연도별 육아분야 재정 정리 자료(본 연구).

* $p < .05$, ** $p < .01$, *** $p < .001$.

다. 교육보육비 부담 완화 효과 분석 결과

이 항에서는 종속변수로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이 아니라 교육·보육비용 부담 정도와 사교육비 경감 정도를 활용하였는데, 이 두 변수는 육아 가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측정한 변수이다. 먼저 교육·보육비용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 정도는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부담 혹은 경감 정도가 클수록 큰 수를 갖도록 역코딩하였다.

먼저 종속변수가 교육·보육비용 부담 정도인 모형의 1단계 분석 결과에서는 중앙정부예산과 누리과정, 유아교육진흥예산(2013~2017)은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확률에 음의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자체예산을 활용한 분석

(2016~2017)은 음의 영향이 포착되긴 하지만 유의한 영향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종속변수가 사교육비 부담 경감 정도인 모형의 1단계 분석 결과에서도 중앙정부예산과 누리과정, 유아교육진흥예산(2013~2017)은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확률에 음의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예산을 활용한 분석(2016~2017)은 음의 영향이 포착되긴 하지만 유의한 영향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표 IV-2-6〉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확률(교육보육비 부담 모형, 1단계 결과)

단위: 개

구분	변수명		교육보육비용 부담 정도		사교육비 부담 경감 정도	
			중앙정부+누리과정+유아진흥예산 (2013~2017년)	지자체+누리과정+유아진흥예산 (2016~2017)	중앙정부+누리과정+유아진흥예산 (2013~2017년)	지자체+누리과정+유아진흥예산 (2016~2017)
자녀 특성	자녀 성별		-0.070	-0.273	-0.067	-0.258
	자녀 연령		0.301 ***	0.329 ***	0.301 ***	0.328 ***
모 특성	연령	30대	0.009	-0.021	0.019	-0.013
		40대	-0.099	-0.189	-0.085	-0.133
	학력	전문대졸	-0.007	0.160	-0.007	0.183
		4년제대졸이상	-0.109	-0.108	-0.102	-0.092
	취업모(=1)		1.197 ***	1.140 ***	1.196 ***	1.152 ***
가구 특성	가구 소득	300~399만원	0.110	0.239	0.102	0.224
		400~499만원	0.254 *	0.410	0.246	0.360
		500~599만원	0.372 **	0.347	0.373 **	0.332
		600만원이상	0.754 ***	1.195 ***	0.753 ***	1.181 ***
	가구원 수		-0.036	-0.207	-0.042	-0.215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금 수혜여부(=1)			8.386	8.701	8.375	8.711
육아예산규모(1인당)			-0.000 *	-0.000	-0.000 *	-0.000
상수			-1.220 **	-1.073	-1.192 **	-0.819
N			5,889	2,244	4,579	2,244

주: 1) 부담 정도는 5점 척도로 부담이 클수록 숫자가 높아지며, 사교육비 부담 경감 정도는 도움 정도가 클수록 숫자가 높아짐.

2) 범주형 변수의 Base는 모 연령 20대, 모 학력 고졸이하,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임.

3) 한국노동패널자료에서 (미취학자녀의) 보육교육비 부담과 보육료 및 누리과정 바우처(아이사랑카드) 사용 여부를 16차년도(2013년조사)부터 질문하기 시작하였고, 지자체 예산이 2016년 이후만 존재하여 모형별로 분석 시기가 다름에 유의.

4) 예산액은 영유아 1인당 예산액 기준.

자료: 한국노동패널 13차~20차 및 연도별 육아분야 재정 정리 자료(본 연구).

* $p < .05$, ** $p < .01$, *** $p < .001$.

(1인당) 육아예산규모는 교육·보육비용 부담 정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예산과 누리과정, 유아교육진흥예산(2013~

2017)은 교육보육 비용 부담 정도와 양의 관계, 지자체예산과 누리과정, 유아교육진흥예산(2016~2017)은 음의 관계를 보였으나, 둘 다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즉, 육아가구가 느끼는 교육·보육비용 부담은 정부의 지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표 IV-2-7〉 영유아 교육·보육 부담에 미친 영향 요인 (Heckman 2stage의 2단계 결과)

단위: 개

구분	변수명		교육보육비용 부담 정도		사교육비 부담 경감 정도	
			중앙정부+누리과정 +유아진흥예산 (2013~2017년)	지자체+누리과정 +유아진흥예산 (2016~2017)	중앙정부+누리과정 +유아진흥예산 (2013~2017년)	지자체+누리과정 +유아진흥예산 (2016~2017)
자녀 특성	자녀 성별		0.049	0.063	-0.044	-0.066
	자녀 연령		0.041 **	0.034	-0.058 ***	-0.023
모 특성	연령	30대	0.080	0.137	-0.147 **	-0.219 **
		40대	-0.023	0.040	-0.067	-0.151
	학력	전문대졸	-0.055	-0.019	-0.025	-0.104 *
		4년제대졸이상	-0.103 **	-0.133 *	-0.023	-0.080
가구 특성	맞벌이가구여부(=1)		-0.005	-0.114 *	0.015	-0.022
	가구 소득	300~399만원	-0.099 **	-0.027	0.001	0.030
		400~499만원	-0.136 **	-0.015	0.015	0.035
		500~599만원	-0.097	-0.067	-0.047	-0.059
		600만원이상	-0.139 **	-0.087	-0.172 ***	-0.115
	자녀 구성	영아자녀 수	0.017	0.121 *	0.173 ***	0.110 **
		유아자녀 수	0.336 ***	0.397 ***	0.147 ***	0.045
		초등자녀 수	0.040	0.068	0.015	0.012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금 수혜여부(=1)			-0.080	-0.320	0.478 ***	0.513 ***
육아예산규모(1인당)			0.000	-0.000	0.000 ***	0.000
상수			2.780 ***	3.053 ***	3.342 ***	3.787 ***
N			5,889	2,244	5,889	2,244

주: 1) 범주형 변수의 Base는 모 연령 20대, 모 학력 고졸이하,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임.

2) 한국노동패널자료에서 보육료 및 누리과정 바우처(아이사랑카드) 사용 여부를 16차년도(2013년조사)부터 질문하기 시작하였고, 지자체 예산이 2016년 이후만 존재하여 모형별로 분석 시기가 다르며 유의.

3) 예산액은 영유아 1인당 예산액 기준.

자료: 한국노동패널 13차~20차 및 연도별 육아분야 재정 정리 자료(본 연구).

* $p < .05$, ** $p < .01$, *** $p < .001$.

반면, 사교육비 부담 경감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중앙정부예산과 누리과정, 유아교육진흥예산(2013~2017)이 부담 경감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자체예산 및 누리과정, 유아교육진흥예산(2016~2017)을 사용한

경우에도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계수는 양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육아가구들은 육아지원예산의 증가가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여성 고용 관련 지표에 대한 효과성 분석

가. 여성 고용 관련 지표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1) 분석 지표 및 분석 자료

여성 고용과 관련한 효과성 분석은 기혼 여성(20~45세)의 고용율과 영유아 가구 모의 취업 여부(확률)를 주요 지표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성 고용율과 육아가구 재정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2015년과 2016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영유아 가구의 모 취업 여부는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하였다.

지역별 여성 고용율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활용한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는 지역 단위 대표성을 갖는 국가통계자료로서 지역별 고용율 분석에 활용되는 대표적 자료이다. 다만, 광역시이상의 지역 단위가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분리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권이 다른 집단(남성 혹은 청년층)에 비해 매우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광역시 단위에서는 통상 단일 노동시장권을 형성하고 있는 현상(최효미, 2014 : 55~57)을 고려할 때,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가 구분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오히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고용조사’의 광역시이상 지자체의 구분이 명료하지 않다는 문제보다도 가구 특성 중 영유아 가구 혹은 육아 가구를 분리할 수 없다는 점이 보다 근본적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즉, 지역별 여성 고용율을 분석한 본 연구의 경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의 한계로 인해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가임기 연령대(20~45세) 기혼 여성의 고용율을 대리 변수로 사용하고 있음에 유의해야한다.

한편, 2015 ‘인구주택총조사’는 자녀의 연령이 구분되어 육아가구를 식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인구주택총조사’의 여성 고용율은 ‘지역별 고용조사’에 비해 다소 낮게 추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가구소득 변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³¹⁾.

2) 분석 방법³²⁾

이 항의 분석을 위해서는 다층 모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가 지역별 여성 고용률이라는 지역 단위 집계 자료이기 때문이다. 이때 분석 자료가 지역을 기준으로 이중의 다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층위의 자료 특성을 반영한 다층 모형을 통한 분석이 적합하다고 보인다. 다만, 본 연구에 활용된 예산 자료도 17개 시도를 기준으로 집계되어 있어, 예산 자료와 지역 층위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지역의 특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육아예산이 여성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므로 육아예산 변인을 1층에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다층모형의 구조를 간략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1층 모형은 (식 IV-4-1)과 같다.

$$P(y = 1 | \beta) = \phi \quad \dots\dots (\text{식 IV-4-1})$$

$$\eta_{ij} = \log\left(\frac{\phi_{ij}}{1 - \phi_{ij}}\right) = \beta_{0j} + \sum_{k=1}^K \beta_{kj} X_{kij} + \epsilon_{ij}$$

이때, 종속변수는 지역별고용조사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시군구별 고용률이며,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한 모형에서는 모의 취업 여부이다. i 는 개인, j 는 지역의 특성이다. 한편, 1층 모형의 상수인 β_{0j} 는 2층 모형의 종속변수로, 2층 모형은 (식 IV-4-2)와 같다.

$$\beta_{0j} = \gamma_{00} + \sum_{m=1}^M \gamma_{0m} Z_{mj} + u_{0j} \quad \dots\dots\dots (\text{식 IV-4-2})$$

여기서 γ_{0m} 은 지역별 특성을 나타내는 2층 모형의 추정 계수를 의미한다.

나. 여성 고용률 현황

육아예산과 여성 고용률 사이의 관계 분석에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인으로 활용된 지역별 여성 고용률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전국 평균 전체 고용률은 60.7%이

31) '지역별 고용조사' 또한 가구소득은 구분되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 지역별 고용조사는 지역변수만을 활용하여 개인 특성 변수가 큰 의미를 갖지는 않음.

32) 다층분석 모형에 대한 논의는 최효미(2014)와 Ene, M., Leighton, E, Bule., G, Bell(2015)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며 전체 여성의 고용율은 10%p가량 낮은 51.4%이다. 그런데, 20~45세 유배우 여성의 고용율은 55.1%로 전체 여성 고용율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45세 유배우 여성 고용율을 기준으로 지역별로는 제주 지역이 68.1%로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은 고용율을 보였으며, 전북(59.9%), 충북(59.5%), 대구(59.3%) 등에서 높았다. 반면 울산(43.6%), 경남(49.6%) 등의 지역은 20~45세 유배우 여성 고용율이 낮은 지역인 것으로 분석됐다.

〈표 IV-3-1〉 연도별 시도별 고용율(2016년)

단위: %

지역명	전체 고용율	전체 여성 고용율	20-45세 유배우 여성 고용율
전국	60.7	50.5	54.4
서울	60.1	51.4	55.1
부산	56.2	46.9	51.6
대구	59.0	49.6	59.3
인천	61.8	51.0	52.0
광주	58.0	47.8	56.1
대전	60.6	51.3	56.7
울산	59.1	43.9	43.6
경기	61.6	50.2	53.8
강원	59.6	51.7	59.0
충북	62.5	53.5	59.5
충남	63.0	50.5	52.5
전북	60.5	51.2	59.9
전남	62.6	54.8	57.7
경북	62.6	51.4	54.3
경남	60.4	48.4	49.6
제주	69.0	63.0	68.1

주: 1) 15세 이상 인구 기준, 시도 가중치 적용하여 산출함.

2) 예산 자료 매칭이 가능한 2016년도 자료 기준으로 산출.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시군자료 2016년 상하반기 원자료(MDIS 2019. 8. 10 인출).

한편, 본 연구에서는 육아 가구의 모가 식별되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하여 취업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시군구 단위의 고용율은 지역별 고용조사를 활용하여 매칭하였다. 그런데, 지역별고용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는 조사 방식과 표본의 차이로 인해 약간의 고용율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15년 자료를 기준으로 지역별 고용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 사이의 고용율을 비교해보면, 지역별 고용조사의 고용율이 인구주택총조사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체 고용율에서의 차이에 비해 20~45세 유배우 여성 고용율은 두 조사 간 격차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2% 표본자료) 세부 집단까지 지역별 대표성을 확보되지 않는 기 때문에 지역별고용조사에 비해 지역에 따라서는 고용율 격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오히려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의 고용율이 높은 경우도 있었다.

〈표 IV-3-2〉 조사별 시도 고용율(2015년) : 지역별고용조사 vs 인구주택총조사

단위: %

지역명	전체 고용율		여성 고용율		20-45세 유배우 여성 고용율	
	지역별 고용조사	인구주택총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인구주택총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인구주택총조사
전국	60.6	56.9	50.3	45.9	53.9	52.7
서울	59.8	56.7	50.9	47.1	53.3	56.0
부산	56.1	51.9	46.8	41.5	52.1	50.8
대구	59.0	52.6	48.6	41.9	57.3	50.0
인천	61.2	57.3	50.7	45.8	50.4	50.2
광주	58.1	53.3	48.4	43.6	57.1	53.6
대전	60.3	54.8	50.0	44.6	55.7	54.1
울산	58.9	57.4	41.7	41.1	43.7	42.7
세종	-	60.2	-	48.1	-	54.6
경기	61.8	58.1	50.2	45.9	52.7	50.9
강원	59.0	56.9	51.1	47.5	59.8	56.9
충북	63.5	57.8	54.2	47.6	58.8	57.2
충남	63.6	61.6	51.8	50.2	53.6	54.3
전북	59.5	54.6	50.1	44.3	58.8	53.7
전남	62.0	58.9	53.3	48.0	58.8	54.5
경북	63.1	58.6	52.3	47.3	53.4	52.1
경남	60.6	58.1	48.9	46.3	53.4	52.0
제주	67.8	64.3	60.5	57.1	65.6	65.5

주: 지역별고용조사는 시도가중치 적용, 인구주택총조사는 15세이상인구만 남긴 후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
 자료: 1) 지역별고용조사, 시군자료 2015년 상하반기 원자료(MDIS 2019. 8. 10. 인출).
 2) 인구주택총조사-인구자료 2015년 2% 표본자료(MDIS 2019. 8. 10. 인출).

취업 여부 분석의 분석 대상인 인구주택총조사(2015) 15세 이상 여성의 인적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48.4%이며, 학력은 고졸이하가 70.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편, 영아자녀가 있는 가구 비중은 5.9%, 유아자녀가 있는 가구는 6.1%, 초등자녀가 있는 가구 비중은 11.4%였다.

〈표 IV-3-3〉 인구주택총조사(2015) 개인 특성 : 15세 이상 여성

(단위 : 세, %, 명)

변수명		전체 고용율
평균 연령		48.4
학력	고졸이하	70.2
	전문대졸	10.2
	4년제대학졸	16.4
	대학원이상	3.2
자녀 구성	영아자녀 유무	5.9
	유아자녀 유무	6.1
	초등자녀 유무	11.4
N		416,648

주: 15세 이상 여성만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수치임.
 자료: 인구주택총조사-인구자료 2015년 2% 표본자료(MDIS 2019. 8.10. 인출).

다. 여성 고용율 제고 및 취업 여부 결정 효과 분석 결과

먼저 여성 고용율 제고 효과를 분석한 다층 모형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 고용율은 시군구 단위의 지역별 여성 고용율, 즉 집계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한 것으로 2층 수준은 도단위 지역을 통제하였다. 이 모형은 종속변수가 시군구 단위 지역별 여성 고용율로 집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에 1층의 독립변수로 지역 단위의 집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지역별 여성 고용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진 지역별 성별 지배 산업 혹은 지배 직종 종사자 비중을 독립 변인으로 투입하여 추정하였다. 전국 자료를 기준으로 성별 지배 산업 혹은 지배 직종은 해당 산업 혹은 직종에서 여성 종사자 비중이 30%미만인 경우 남성 지배 산업 혹은 직종, 30~70%이면 성경합 산업 혹은 직종, 70%이상이면 여성 지배 산업 혹은 직종으로 분류한다(최효미, 2014 : 53).

분석 결과, 지역 내 남성 지배 산업 종사자 비중이 높을수록, 성경합산업의 종사자 비중이 높을수록 여성 고용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역 내 산업 구조가 여성 지배 산업³³⁾ 위주로 되어 있을 경우 오히려 여성의 취업도 국한됨을 암시하는데, 이는 주로 여성이 부가노동자로서 남성 지배 산업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여성의 일자리 기회 자체가 확대되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33) 예를 들어 음식·숙박서비스업이나 이미용·예식및의료보조서비스직 등이 이에 속함.

〈표 IV-3-4〉 여성 고용을 제고 효과

변수명	여성 고용을 제고 효과 : 지방정부+누리과정+유아진흥예산(2016)
1 level : 시군구 여성 고용율	
남성 지배 산업 종사자 비중	0.400 *
경합 산업 종사자 비중	0.634 ***
남성 지배 직종 종사자 비중	-0.002
경합 직종 종사자 비중	0.137
1인당 육아예산규모	0.000
상수	-17.516
2 level : 지역	
상수	0.924
잔차	9.986 ***
N (지역 수)	252

주: 1) 자료는 2015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하였으나, 예산 자료는 지방 정부 예산 자료가 활용가능한 2016년 자료를 매칭하였으므로 주의를 요함.
 2) 지역별 1인당 육아예산규모는 '지방(육아지원)예산+누리과정+유아진흥예산'을 합산하여 지역별 영유아 수로 나누어 산출함.
 3) 지배 직종과 지배 산업의 종사자 비중은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 후에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매칭함.
 자료: 1) 인구주택총조사-인구자료 2015년 2% 표본자료(MDIS 2019. 8.10. 인출).
 2) 지역별고용조사, 시군자료 2015년 상하반기 원자료(MDIS 2019. 8. 10. 인출).
 3) 2016 예산자료 (본 연구)
 * $p < .05$, *** $p < .001$.

한편, 본 연구의 주요 관심 변수인 1인당 육아예산규모의 경우에는 양의 방향성을 보이지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지역별 육아예산의 지원 규모에 따라 지역의 여성 고용율 자체가 제고되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 활용된 육아예산규모는 지역(시도본청)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나, 지자체별(시군구)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시군구 단위 예산까지를 반영하여 분석할 경우 다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인구주택총조사(2015)를 활용하여 육아 예산이 여성의 취업 여부 결정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모형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취업 확률은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모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더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일수록 모의 취업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IV-3-5〉 여성의 취업 여부 결정에 미친 효과

구분	변수명		전체 여성		초등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	
1 level : 취업 여부						
모 특성	연령	연령	0.040	***	0.044	***
		연령의 제곱	-0.000	***	-0.000	***
	학력	전문대졸	0.156	***	0.059	***
		4년제대졸	0.148	***	0.081	***
		대학원이상	0.230	***	0.217	***
자녀 특성	영아자녀가 있는 가구		-0.178	***	-0.088	***
	유아자녀가 있는 가구		-0.073	***	-0.018	***
	초등자녀가 있는 가구		-0.778	***	0.009	
	1인당 육아예산규모		-0.000	*	-4.56E6	
상수			-0.186	***	-0.418	***
2 level : 지역						
상수			0.011	***	0.007	***
잔차			0.206	***	0.220	***
N			414,538 (252개 지역)		77,707(252지역)	

주: 1) 자료는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활용하였으나, 예산 자료는 지방 정부 예산 자료가 활용 가능한 2016년 자료를 매칭하였으므로 주의를 요함.

2) 지역별 1인당 육아예산규모는 '지방(육아지원)예산+누리과정+유아진흥예산'을 합산하여 지역별 영유아 수로 나누어 산출함.

자료: 1) 인구주택총조사-인구자료 2015년 2% 표본자료(MDIS 2019. 8.10. 인출).

2) 지역별고용조사, 시군자료 2015년 상하반기 원자료(MDIS 2019. 8. 10. 인출).

3) 2016 예산자료 (본 연구)

* $p < .05$, *** $p < .001$.

본 연구가 주로 관심을 두고 있는 육아예산의 경우에는 1인당 육아예산규모가 클수록 모의 취업 확률이 낮아지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초등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가구 여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여성을 분석 대상으로 한 모형의 경우에도 5%수준에서 유의미한 음의 효과가 발견되기는 했으나 계수 값이 매우 작아 그 효과를 단정 짓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이처럼 1인당 육아예산이 육아 가구 모의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되는 이유는 1인당 육아예산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보육료 등 비용 지원을 받는 영유아가 많은 지역으로, 이들 지역에 육아 가구 비중이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어린 자녀가 있을수록 모의 취업이 제약되는 현상이 예산 지원의 효과를 압도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즉, 육아 가구 모의 취업 여부에는 자녀의 연령과 같은 개인 차원의 가구 특성이 정부 지원과 같은 지역 특성에 비해 여전히 훨씬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4. 출산을 관련 효과성 분석

가. 자료 및 변수 설명

정부의 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 강도를 나타내는 변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시도 본청의 보육료 예산과 유아를 대상으로 한 시도 교육청의 유아교육비 예산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제공한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세출 예산자료를 이용하였다. 먼저, 시도 본청의 보육 예산 자료는 2016년 이전 자료가 없기 때문에 2016년 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반면, 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지원 및 유아교육 진흥 예산자료는 2012~2017년 자료를 이용할 수 있었다.

〈표 IV-4-1〉 출산을 관련 효과 분석 설명변수

변수명	년도	단위	출처
시도 본청의 보육료 예산	2016년	천억원	육아정책연구소
시도 교육청의 유아교육료 예산 (누리과정지원, 유아교육진흥)	2012~2017년	천억원	육아정책연구소
0~5세 영유아 수	2012~2017년	천명	통계청
1인당 지역내총생산	2012~2017년	천만원	통계청
조혼인율	2012~2017년	율	통계청
총 가임여성 수(15~49세)	2012~2017년	천명	통계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2012~2017년	율	통계청

자료: 1) 통계청, 지역계정,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2019. 5. 17. 인출).

2)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2019. 5. 17. 인출).

통제변수로는 해당 광역 자치단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포함된다.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5세 이하 영유아수, 1인당 지역내총생산, 조혼인율, 총 가임여성 수(15~49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자료를 이용한다. 정책의 성과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출산과 관련된 거시변수를 이용한다. 정책의 단기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합계출산율을 사용하며, 장기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여성의 초혼 및 초산연령을 사용한다. 해당 자료들은 모두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다.

〈표 IV-4-2〉 종속변수

변수명	년도	단위	출처
합계출산율	2012~2017년	율	통계청
여성의 초혼연령	2012~2017년	세	통계청
여성의 초산연령	2012~2017년	세	통계청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2019. 5. 17. 인출).

나. 추정 모형

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의 확대가 주요 성과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단순 선형회귀모형과 함께 다음과 같은 동적패널모형을 이용하였다.

$$y_{i,t} = \alpha y_{i,t-1} + \gamma z_{i,t} + x_{i,t} \beta + v_i + \epsilon_{i,t} \quad (i = 1, \dots, N, \quad t = 1, \dots, T) \quad \cdots (1)$$

$y_{i,t}$: 성과변수

$y_{i,t-1}$: 이전 기 성과변수

$z_{i,t}$: 정책변수

$x_{i,t}$: 통제변수

v_i : 광역 자치단체 i 의 고정효과(fixed effect)

$\epsilon_{i,t}$: 미관측 이질성

식(1)은 광역 자치단체 i 의 t 시점에서의 성과변수가 정책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추정하기 위한 식이다. 성과변수인 여성의 초혼 및 초산연령, 출산율은 과거값이 현재값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y_{i,t-1}$ 를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관계(autocorrelation)를 허용하였다. 또한 해당 광역 자치단체의 관찰가능한 특성 $x_{i,t}$ 을 통제하였다. $x_{i,t}$ 에는 각 광역 자치단체별 영유아 수, 1인당 지역내총생산, 혼인율, 총 가임여성 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포함된다. v_i 는 광역 자치단체의 특성 중 관찰되지 않는 특성들이며, 다른 독립변수들과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 $\epsilon_{i,t}$ 는 다른 독립변수들과 상관관계가 없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Delta y_{i,t} = \alpha \Delta y_{i,t-1} + \Delta \gamma z_{i,t} + \Delta x_{i,t} \beta + \Delta \epsilon_{i,t} \quad \dots (2)$$

$$(i = 1, \dots, N, \quad t = 1, \dots, T)$$

식(1)을 1계차분하여 이와 같은 식(2)를 구할 수 있다. 종속변수의 시차변수가 설명변수로 포함되어 있는 동적패널모형은 고정효과가 제거된 식(2)에서도 여전히 내생성의 문제가 있다. $\Delta y_{i,t-1} = y_{i,t-1} - y_{i,t-2}$ 과 $\Delta \epsilon_{i,t} = \epsilon_{i,t} - \epsilon_{i,t-1}$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Allerano, M., & Bond(1991)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Delta y_{i,t-1}$ 의 도구변수를 구축하여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추정을 하였다.

다.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정책의 효과

1) 2016년 시·도본청, 시·도교육청 예산 자료 분석 결과

시도 본청의 보육 예산 자료는 2016년 이전 자료가 없기 때문에 2016년 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단순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현재 모형은 설명변수 중 일부가 강한 외생성을 갖지 않아 내생성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종속변수의 계열상관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표 IV-4-3〉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이 여성의 초혼연령에 미친 영향 추정결과

변수명	로그 여성의 초혼연령(OLS)
보육, 유아교육 예산(로그)	0.026
영유아수	-0.0001 *
1인당지역내총생산	-0.007 **
조혼인율	0.018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0.0002
상수항	3.276 ***
N	16

주: 연도 더미를 통제하였음.

자료: 1) 통계청, 지역계정,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2019. 5. 17. 인출).

2)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2019. 5. 17. 인출).

3) 2016 예산자료 (본 연구).

* $p < .05$, ** $p < .01$, *** $p < .001$.

단순 선형회귀분석 결과, 시도본청과 시도교육청의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정책은 여성의 결혼 및 출산시기를 늦추고 출산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출산율 제고 정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IV-4-4〉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이 여성의 초산연령에 미친 영향 추정결과

변수명	로그 여성의 초산연령(OLS)
보육, 유아교육 예산(로그)	0.028 **
영유아수	-0.0001 *
1인당지역내총생산	-0.006 *
조혼인율	0.020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0.001
상수항	3.346 ***
N	16

주: 연도 더미를 통제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표 IV-4-5〉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이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 추정결과

변수명	로그 합계출산율(OLS)
보육, 유아교육 예산(로그)	-0.208 ***
영유아수	0.001 *
1인당지역내총생산	0.063 **
조혼인율	-0.107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0.008
상수항	0.478
N	16

주: 연도 더미를 통제하였음.

자료: 1) 통계청, 지역계정,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2019. 5. 17. 인출).

2)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2019. 5. 17. 인출).

3) 2016 예산자료 (본 연구).

* $p < .05$, ** $p < .01$, *** $p < .001$.

2) 2012~2017년 시·도교육청 예산 자료 분석 결과

시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예산자료는 2012~2017년 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 패널 분석이 가능하다. Allerano and Bond(1991)의 동적패널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모형은 앞의 단순 선형회귀모형과 달리 종속변수의 계열상관성을 고려하였고, 고정효과를 포함하여 광역 자치단체의 관찰되지 않는 특성이 다른 독립변수들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허용하였다.

동적패널분석 결과,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정책은 여성의 초혼 및 초산연령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한편 합계출산율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12~2017년 패널분석은 유아교육 지원 정책이 출산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IV-4-6〉 유아교육 지원이 여성의 초혼연령에 미친 영향 추정 결과

변수명	Pooled OLS	Difference-GMM
전년도 여성의 초혼연령(로그)		0.386 **
교육청의 유아교육예산(로그)	0.0150 ***	0.00564
영유아수	-0.0000237	0.0000163
1인당지역내총생산	-0.00351 **	0.0131 **
조혼인율	0.00319	-0.00320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0.000865 **	0.000274
상수항	3.338 ***	
N	96	64

주: 1) 종속변수는 여성의 초혼연령에 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함.
 2) 연도 더미를 통제하였음.
 3) Difference-GMM 분석에 사용된 광역자치단체수는 16개임.
 자료: 1) 통계청, 지역계정,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2019. 5. 17. 인출).
 2)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2019. 5. 17. 인출).
 3) 2010~2017 예산자료 (본 연구).
 ** $p < .01$, *** $p < .001$.

〈표 IV-4-7〉 유아교육 지원이 여성의 초산연령에 미친 영향 추정 결과

변수명	Pooled OLS	Difference-GMM
전년도 여성의 초혼연령(로그)		0.651 ***
교육청의 유아교육예산(로그)	0.0227 ***	0.00574
영유아수	-0.0000354	-0.000116
1인당지역내총생산	-0.00200	0.00578
조혼인율	0.00406	-0.00153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0.000508	0.000245
상수항	3.377 ***	
N	96	64

주: 1) 종속변수는 여성의 초산연령에 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함.
 2) 연도 더미를 통제하였음.
 3) Difference-GMM 분석에 사용된 광역자치단체수는 16개임.
 자료: 1) 통계청, 지역계정,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2019. 5. 17. 인출).
 2)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2019. 5. 17. 인출).
 3) 2010~2017 예산자료 (본 연구).
 *** $p < .001$.

〈표 IV-4-8〉 유아교육 지원이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 추정 결과

변수명	Pooled OLS		Difference-GMM	
전년도 여성의 초혼연령(로그)			0.297	**
교육청의 유아교육예산(로그)	-0.127	***	0.389	***
영유아수	0.000207		-0.000515	
1인당지역내총생산	0.0481	***	-0.217	***
초혼인율	-0.0231		0.118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0.00284		-0.00104	
상수항	0.105			
N	96		64	

주: 1) 종속변수는 여성의 초혼연령에 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함.

2) 연도 더미를 통제하였음.

3) Difference-GMM 분석에 사용된 광역자치단체수는 16개임.

자료: 1) 통계청, 지역계정,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2019. 5. 17. 인출).

2)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2019. 5. 17. 인출).

3) 2010~2017 예산자료 (본 연구).

** $p < .01$, *** $p < .001$.

5. 소결

이상의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입의 효과성 분석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양육부담 관련 지표의 경우 사교육과 개별돌봄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교육·보육서비스 이용여부와 교육보육비용, 사교육비 부담 경감 정도와 합계출산율 등에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입 규모가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즉, 아동 1인당 재정 투입이 많아질수록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확률이 높아지고, 교육보육비용 지출도 약간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사교육비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합계출산율도 장기적으로는 약간은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된 경우에도 그 효과의 크기가 매우 미미하여, 재정 투입 대비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효과가 있었다고 해야할지 없다고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여성 고용 지표와 초혼 연령, 초산 연령 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입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고 미미한 수준이지만, 정책적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단언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요약될 수 있다.

〈표 IV-5-1〉 효과성 분석 결과 요약

구분	성과 지표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	육아정책분야 재정의 효과
양육부담관련 지표	교육보육서비스 이용여부	자녀 연령 (+), 모 연령, 모 학력, 취업모 여부 가구소득 (+)	유의미한 양의 영향이 발견되나, 계수의 크기가 크지 않아 미미한 수준의 효과만 발견됨
	교육보육비용	자녀 연령 (+), 모연령: 30대(+) 모 학력 (+), 가구소득 (+) 자녀 구성 (-) *(2013~2017년 자료 활용시)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금(+)	유의미한 양의 영향이 발견되나, 계수의 크기가 크지 않아 미미한 수준의 효과만 발견됨
	교육보육비용 부담 정도	자녀 연령 (+), 모 학력 (-) 가구소득 (-), 유아자녀수 (+)	유의미하지 않음
	사교육비 부담 경감정도	자녀연령 (-), 모연령: 30대(-), 가구소득: 600만원이상(-), 영아자녀수(+), 유아자녀수(+),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금(+)	유의미한 양의 영향이 발견되나, 계수의 크기가 크지 않아 미미한 수준의 효과만 발견됨
여성 고용관련 지표	기혼 여성(20-45세) 고용률	남성 지배 산업 종사자 비중(+), 경합산업 종사자 비중(+)	유의미하지 않음
	여성의 취업 여부	모연령(+), 모연령제곱(-), 모학력(+), 자녀유무(-)	유의미하지 않음
출산관련지표	초혼연령	전년도 초혼연령 (+) 1인당지역내총생산 (+)	유의미하지 않음
	초산연령	전년도 여성 초혼연령(+)	유의미하지 않음
	합계출산율	전년도 여성 초혼연령 (+) 1인당 지역내 총생산 (-) 초혼인율 (+)	유의미한 양의 영향이 발견되었 으나, 계수의 크기는 크지 않음

주: 1) 효과의 부호가 없는 경우는 효과가 섞여서 나타난 경우로, 본문의 분석결과를 참고하기 바람.
 2) 양육부담 관련 지표는 중앙정부+누리과정+유아교육진흥예산을 활용한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정리함.
 3) 여성고용관련 지표는 초등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 가구 기준 모형을 중심으로 정리함.
 4) 출산 관련 지표에 대한 분석 결과는 Difference_GMM 모형의 결과를 기준으로 하며, 육아재정은 유
 아교육 지원 예산을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임.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에 대한 의견 조사

01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자에 대한 인식 조사

02 전문가 조사 결과

V.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에 대한 의견 조사

V장은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전문가 의견을 정리하였다. 육아정책의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정책 목표 달성 등의 효과성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과 유관 전문가들의 의견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본 연구는 총량적 차원의 정책 효과성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 정책의 효과가 증첩되거나 효과성이 상쇄되는 등 효과성 분석만으로는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정책 목표 중 정책대상자 만족도 혹은 선호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1.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자에 대한 인식 조사

1절에서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자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본 조사의 내용은 크게 육아 정책 분야 재정 투자에 대한 인식, 육아 지원 분야 지원 내용 조정에 대한 의견, 육아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육아정책의 개선 사항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가. 응답자 특성

본 조사의 응답자는 총 1,055명이며, 이 중 남성이 49.3%, 여성은 50.7%이다. 응답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가 48.9%로 가장 많았고, 40대 36.0%, 20대 10.3%, 50대 이상은 4.7% 순이었다. 응답자를 혼인상태별로 구분해보면, 기혼이 78.9%, 미혼은 21.1%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60.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문대 졸업이 19.5%, 대학원 이상이 10.7%였으며, 고졸

이하가 9.5%로 가장 적었다. 응답자의 취업상태를 살펴보면, 취업 중인 응답자가 77.3%로 가장 높았고, 무직 및 기타에 응답한 비율도 15.8%로 적지 않게 나타났으며, 구직자는 6.4%, 학생이 0.6% 순이었다.

본 조사 전체 응답자의 가구 월평균 소득은 약 580만 9천원으로 통계청의 2019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발표한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인 약 470만원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600만원 이상 월가구소득이 31.4%로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하 소득구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500~599만원 이하 구간이 18.3%, 300~399만원 이하 18%, 400~499만원 이하 17%, 299만원 이하가 15.4% 순으로 상당히 고르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평균 자녀수는 약 1.6명이었으며, 자녀가 없다는 응답이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명은 28.5%, 1명이 26.7%였으며, 3명 이상의 다자녀를 둔 응답자는 4.2%였다. 평균 가구원수는 3.2명이었고, 4인 가구가 3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3인 가구가 32.2%, 2인 가구가 22.2%, 5인 이상 가구는 7.9%였으며, 1인 가구가 4.7%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표 V-1-1〉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만원

구분		육아정책 재정 투자 인식 조사
전체		1,055(100.0)
성별	남성	520(49.3)
	여성	535(50.7)
연령	20대(만 25~29세)	109(10.3)
	30대(만 30~39세)	516(48.9)
	40대(만 40~49세)	380(36.0)
	50대 이상	50(4.7)
혼인상태	미혼	223(21.1)
	기혼	832(78.9)
학력	고졸 이하	100(9.5)
	전문대 졸업	206(19.5)
	4년제 대학 졸업	636(60.3)
	대학원 이상	113(10.7)
취업상태	취업	815(77.3)
	구직 중	67(6.4)

구분		육아정책 재정 투자 인식 조사
월 가구소득	학생	6(0.6)
	무직/기타	167(15.8)
	299만원 이하	162(15.4)
	300~399만원 이하	190(18.0)
	400~499만원 이하	179(17.0)
	500~599만원 이하	193(18.3)
자녀수	600만원 이상	331(31.4)
	가구 월평균 소득(만원)	580.9
	없음	428(40.6)
	1명	282(26.7)
	2명	301(28.5)
	3명 이상	44(4.2)
가구원수	평균 자녀수	1.6
	1명	50(4.7)
	2명	234(22.2)
	3명	340(32.2)
	4명	348(33.0)
	5명 이상	83(7.9)
평균 가구원수		3.2

자료: 본 연구의 대국민 의견 조사 결과임.

응답자의 자녀 연령 구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13~18세 자녀가 있다는 응답이 256명으로 가장 많고, 0~3세 자녀가 있는 경우가 243명, 9~12세 자녀가 있다는 응답이 220명이었다. 한편 자녀의 출생순위별로는 4~6세 자녀가 둘째 자녀인 비중이 다른 연령 구간에 비해 약간 높고, 13~18세는 첫째자녀의 비중이 다소 높은 특징을 보였다.

〈표 V-1-2〉 자녀 연령

단위: %(명)

구분	자녀 연령				
	0~3세	4~6세	7~8세	9~12세	13~18세
전체	100.0 (243)	100.0 (179)	100.0 (126)	100.0 (220)	100.0 (256)
첫째 자녀	62.2	45.2	60.2	56.4	76.2
둘째 자녀	32.1	46.4	32.6	38.6	22.6
셋째 자녀 이상	5.7	8.4	7.1	5.0	1.2

자료: 본 연구의 대국민 의견 조사 결과임.

나.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자에 대한 인식

1) 재정 투자 규모

가) 재정 투입 규모 인지

현재 육아정책 분야 예산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육아정책 분야 재정을 어느 정도 규모로 인지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혀 모르겠다는 응답이 45%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5~10조원 미만에 응답한 비율이 18.9%, 5조원 미만이 11.2%로 제시된 보기 중 하위 2개에 대한 응답 비율이 다른 보기에 대한 응답의 합보다 높게 나타났다. 10~15조원 미만이 10.0%였으며, 2018년 기준 아동수당을 제외한 총예산 약 19조가 속해있는 구간인 15~20조원 미만에 응답한 비율은 8.3%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국민들이 육아에 투입되는 재정의 규모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 규모 자체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응답자 성별에 따라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입 규모에 대한 인지 정도를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은 전혀 모르겠다는 응답이 50.7%로 절반을 상회하였고, 남성에 비해 11.5%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남성이 재정 투입 규모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전반적으로 10조원 미만 2개 범주에 응답한 남성의 비율이 35.1%로 여성보다 9.5% 높게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육아정책 분야 재정 규모가 작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3〉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입 규모에 대한 인지

단위: %(명)

구분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입규모에 대한 인지							계
		5조원 미만	5~10조원 미만	10~15조원 미만	15~20조원 미만	20~25조원 미만	25조원 이상	전혀 모르겠음	
전체		11.2	18.9	10.0	8.3	2.9	3.6	45.0	100.0(1,055)
성별	남성	13.8	21.3	9.8	8.1	2.7	5.0	39.2	100.0(520)
	여성	8.6	16.4	10.3	8.6	3.2	2.2	50.7	100.0(535)
	χ^2	23.410***							

자료: 본 연구의 대국민 의견 조사 결과임.

*** $p < .001$.

나) 재정 투자 적정성 인식

일반적인 재정 투자 규모에 대한 인지 정도를 알아본 후 아동수당을 제외한 육아정책의 2018년 총예산이 약 19조임을 고지하였다. 이후 육아정책 분야에 현재 재정 투자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4점 만점에 2.4점으로 나타났으며, 부족한 편이라는 응답이 49.2%로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재정 투자 규모가 부족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도 10.9%로 나타났다. 반면, 충분한 편이라는 응답은 31.4%로 나타났으며, 과도하다는 응답은 8.5%였다.

응답자 특성별 결과를 살펴보면 기혼 응답자에 비해 미혼자가 육아정책 재정 투입 규모가 충분하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정 투자 적정성 평균점수는 30대가 4점 만점에 2.3점으로 가장 낮았고, 20대가 2.4점, 40대와 50대 이상은 모두 2.5점이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 육아정책 분야에 재정 투입이 과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30대에서 부족한 편과 매우 부족한 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수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첫째 자녀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는 분명한 경향성을 보였다. 즉, 첫째 자녀 연령이 많을수록 재정 투자 규모가 충분하거나 과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성향별 응답을 보면, 보수에서 중도, 진보로 갈수록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가 과도하거나 충분하다는 응답이 감소하였다. 진보와 무성향 집단은 평균은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매우 부족한 편이라는 응답이 무성향 집단에서 진보 집단보다 8.1%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치적 무성향 집단은 실질적인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중요하게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월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4〉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자 적정성에 대한 인식

단위: 점, %(명)

구분		평균점수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 적정성				계
			과도한 편	충분한 편	부족한 편	매우 부족한 편	
전체		2.4	8.5	31.4	49.2	10.9	100.0(1,055)
혼인	미혼	2.5	11.7	40.4	39.0	9.0	100.0(223)
상태	기혼	2.3	7.7	29.0	51.9	11.4	100.0(832)

구분		평균점수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 적정성				계
			과도한 편	충분한 편	부족한 편	매우 부족한 편	
	t / χ^2	3.678***	17.445***				
연령	20대(만 25~29세)	2.4	9.2	36.7	42.2	11.9	100.0(109)
	30대(만 30~39세)	2.3	6.8	26.7	52.5	14.0	100.0(516)
	40대(만 40~49세)	2.5	9.7	36.6	46.6	7.1	100.0(380)
	50대 이상	2.5	16.0	28.0	50.0	6.0	100.0(50)
	F / χ^2	7.119***	27.209**				
자녀 수	없음	2.4	10.5	33.9	44.9	10.7	100.0(428)
	1명	2.3	8.9	25.5	53.2	12.4	100.0(282)
	2명	2.4	6.0	34.2	49.5	10.3	100.0(301)
	3명 이상	2.3	4.5	25.0	63.6	6.8	100.0(44)
	F / χ^2	1.974	16.189				
첫째 자녀 연령	0~3세	1.9	0.7	15.9	60.3	23.2	100.0(151)
	4~6세	2.2	6.2	21.0	60.5	12.3	100.0(81)
	7~8세	2.3	7.9	25.0	60.5	6.6	100.0(76)
	9~12세	2.4	8.1	36.3	46.0	9.7	100.0(124)
	13~18세	2.6	11.8	41.5	43.1	3.6	100.0(195)
	F / χ^2	19.663***	78.156***				
월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3	9.3	29.0	43.8	17.9	100.0(162)
	300~399만원 이하	2.3	5.8	30.5	54.2	9.5	100.0(190)
	400~499만원 이하	2.4	8.9	30.2	52.0	8.9	100.0(179)
	500~599만원 이하	2.4	8.3	35.8	47.7	8.3	100.0(193)
	600만원 이상	2.4	9.7	31.1	48.3	10.9	100.0(331)
	F / χ^2	0.989	15.740				
정치 성향	보수	2.6	16.3	34.6	40.4	8.7	100.0(104)
	중도	2.4	8.9	32.7	49.8	8.6	100.0(474)
	진보	2.3	5.3	30.4	54.7	9.7	100.0(247)
	정치성향 없음	2.3	7.8	28.3	46.1	17.8	100.0(230)
	F / χ^2	5.139**	28.883***				

주: 4점 척도로, 과도하다는 응답이 4점임.

자료: 본 연구의 대국민 의견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다) 바람직한 재정 투자 확대 규모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자 적정성에 대한 질문에서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확대 규모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 응답자가 판단하는 재정 투자 규모는 평균 31조 9천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규모를 구간별로 나누어 보면 30조 이상 35조 미만이라는 응답이 30.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40조 이상으로 27.8%, 25조 이상 30조 미만은 23%, 20조 이상 25조 미만은 16.9%로 나타났으며, 35조 이상 40조 미만은 2.1%에 그쳤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육아정책 분야에 재정 투자 확대 규모가 커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대에서는 40조 이상의 대대적 확대를 지지하는 비율이 42.4%로 다른 연령대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고, 50대 이상에서는 재정 확대에 찬성하더라도 재정 규모를 지금보다 크게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녀 연령별로는 13~18세 첫째 자녀를 둔 응답자의 평균 재정 투자 확대 규모가 29조 2천억 원으로 나타나 가장 적었다. 그 다음으로 7~8세 첫째 자녀 연령을 둔 집단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V-1-5〉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 확대 규모

단위: 조원, %

구분		평균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 확대 규모				
			20조 이상 25조 미만	25조 이상 30조 미만	30조 이상 35조 미만	35조 이상 40조 미만	40조 이상
전체		31.9	16.9	23.0	30.3	2.1	27.8
연령	20대	34.6	20.3	15.3	20.3	1.7	42.4
	30대	32.5	13.1	23.3	32.1	3.2	28.3
	40대	30.6	20.6	22.5	31.9	0.5	24.5
	50대 이상	27.5	28.6	39.3	17.9	0.0	14.3
	F / χ^2	1.410	28.351**				
첫째 자녀 연령	0~3세	33.1	13.5	23.8	27.8	1.6	33.3
	4~6세	33.8	15.3	11.9	33.9	5.1	33.9
	7~8세	29.3	19.6	27.5	35.3	2.0	15.7
	9~12세	33.3	8.7	26.1	33.3	2.9	29.0
	13~18세	29.2	23.1	24.2	34.1	0.0	18.7
	F / χ^2	4.442**	23.930				

자료: 본 연구의 대국민 의견 조사 결과임.

** $p < .01$.

2) 예산 투입 분야 확대 및 축소

가) 예산투입 확대 필요 분야

예산 투입 확대가 필요한 육아정책 분야를 모두 선택하도록 한 결과, 한 분야라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수는 1,014명이었다. 이 중 어린이집,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 지원 분야에 응답한 비율이 54.5%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육아휴직,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 일가정 양립 지원 분야에 예산 투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4.2%였다. 아동 안전 및 건강 지원, 출산 지원, 인식 개선 등 기타 저출산 지원에 응답한 비율이 44%, 돌봄 취약계층 지원이 43.8%, 유치원 및 누리과정 지원 등 유아교육 지원이 4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에 따른 차이를 보면, 20대는 일가정 양립 지원이 재정 확대가 필요한 분야라고 응답한 비율이 65.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보육 지원이 61.3%로 나타났다. 30대는 보육이 59.8%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 일가정 양립 지원은 2순위로 56%가 응답하였다. 20, 30대에서 가장 낮은 응답 비율을 나타낸 돌봄 취약계층 지원이 40대 이상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가정 양립 지원 응답 비율은 40대 이상에서도 두 번째로 높았다. 종합해보면, 일가정 양립의 문제는 모든 연령대에서 경험하고 있는 문제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결혼 및 출산이 이루어지는 시기인 20, 30대에서 특히 영유아 보육 지원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자녀 연령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집단에서 보육 지원 분야에 예산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영유아기 첫째 자녀를 둔 응답자는 일가정 양립에 응답한 비율도 다른 집단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학령기가 시작되는 연령인 7~8세 아동을 둔 응답자가 가장 많이 응답한 분야는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54.1%였다. 첫째 자녀 연령이 9세 이상인 응답자 집단이 가장 많이 응답한 분야는 돌봄 취약계층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선 40대 이상 연령대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진다.

정치 성향에 따른 분석에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를 보였다. 보수에서 보육과 유아교육 지원이 진보보다 다소 높고, 돌봄 취약계층과 일가정양립 지원에서 진보가 보수보다 높게 나타나 기본적인 정치 성향은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집단에서 보육과 일가정 양립 지원은 2순위 내 응답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보수와 진보에서 보육 지원과 유아교육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에 비해 중도와 무성향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과 돌봄 취약계층 지원의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타 저출산 분야를 응답한 비율은 정치적 무성향 집단에서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났다.

〈표 V-1-6〉 육아정책분야 예산 투입 확대가 필요한 분야

단위: %(명)

구분		육아정책분야 예산 투입 확대가 필요한 분야					계
		보육	유아 교육	돌봄 취약계층	일가정 양립	기타 저출산	
전체		54.5	42.0	43.8	54.2	44.0	100.0(1,014)
연령	20대	61.3	42.5	37.7	65.1	40.6	100.0(106)
	30대	59.8	46.9	38.0	56.0	45.9	100.0(505)
	40대	47.0	34.6	51.8	49.6	43.9	100.0(353)
	50대 이상	40.0	44.0	58.0	46.0	32.0	100.0(50)
	χ^2	69.221***					
첫째 자녀 연령	0~3세	71.3	58.0	33.3	56.0	54.7	100.0(150)
	4~6세	62.0	54.4	32.9	57.0	39.2	100.0(79)
	7~8세	48.6	37.8	36.5	54.1	40.5	100.0(74)
	9~12세	49.6	35.5	55.4	49.6	38.8	100.0(121)
	13~18세	39.9	34.8	58.4	51.7	39.3	100.0(178)
	χ^2	108.060***					
정치 성향	보수	60.6	45.5	30.3	47.5	43.4	100.0(99)
	중도	50.5	40.7	46.6	53.4	41.0	100.0(459)
	진보	58.2	43.5	41.8	53.1	40.6	100.0(239)
	정치성향 없음	56.2	41.5	46.1	60.4	54.4	100.0(217)
	χ^2	34.329**					

자료: 본 연구의 대국민 의견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나) 예산투입 축소 필요 분야

반면, 예산 투입 축소가 필요한 육아정책 분야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한 분야라도 축소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수는 496명이었고, 예산투입 확대 필요 분야와 비교해보면 응답자 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중복 응답한 분야 수도 적어서 각 분야별 응답비율도 낮게 나타났다. 분야별 전체 응답에서 유아교육 분야에 예산 투입 축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육 지원에 응답한 비율이 28.8%, 일가정 양립 지원이 27.6%, 기타 저출산 지원이 24.4%, 돌봄 취약계층 지원이 23.2% 순으로 나타났다. 무상 보육·유아교육 지원 정책과 관련된 분야의 예산 축소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일부에서는 해당 분야에 의견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대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는 유아 교육 지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돌봄 취약계층 예산 축소가 25.6%로 뒤를 이었으며, 보육 지원 분야는 14%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때 가장 적게 응답하였다. 30

대는 각 분야에 응답한 비율이 대체로 고르게 나타났으며, 40대에서는 보육과 유아 교육 지원 분야를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 50대 이상에서는 일가정 양립과 돌봄 취약계층 지원이 다소 높았으며, 기타 저출산 지원 분야에 대한 응답은 낮은 편이었다.

첫째 자녀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특히 보육 지원 분야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해당 분야에 예산 투입 축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증가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한편, 첫째 자녀 연령이 유아 교육 지원의 대상이 되는 4~6세 집단에서는 유아 교육 지원의 예산 축소 응답 비율이 다른 집단과 상당한 격차로 적게 나타난 반면, 일가족 양립 지원 분야의 예산 투입 축소는 38.7%, 돌봄 취약계층 지원은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관측치가 많지 않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표 V-1-7〉 육아정책분야 예산 투입 축소가 필요한 분야

단위: %(명)

구분		육아정책분야 예산 투입 축소가 필요한 분야					계
		보육	유아 교육	돌봄 취약계층	일가정 양립	기타 저출산	
전체		28.8	31.9	23.2	27.6	24.4	100.0(496)
연령	20대	14.0	41.9	25.6	23.3	23.3	100.0(43)
	30대	24.5	25.3	25.7	30.0	24.1	100.0(237)
	40대	37.5	38.5	18.2	24.5	26.0	100.0(192)
	50대 이상	29.2	25.0	33.3	37.5	16.7	100.0(24)
	χ^2	34.315**					
첫째 자녀 연령	0~3세	8.8	29.8	28.1	31.6	21.1	100.0(57)
	4~6세	19.4	12.9	35.5	38.7	19.4	100.0(31)
	7~8세	23.1	41.0	20.5	20.5	28.2	100.0(39)
	9~12세	35.8	23.9	19.4	29.9	31.3	100.0(67)
	13~18세	44.5	37.3	12.7	26.4	23.6	100.0(110)
	χ^2	53.420***					

자료: 본 연구의 대국민 의견 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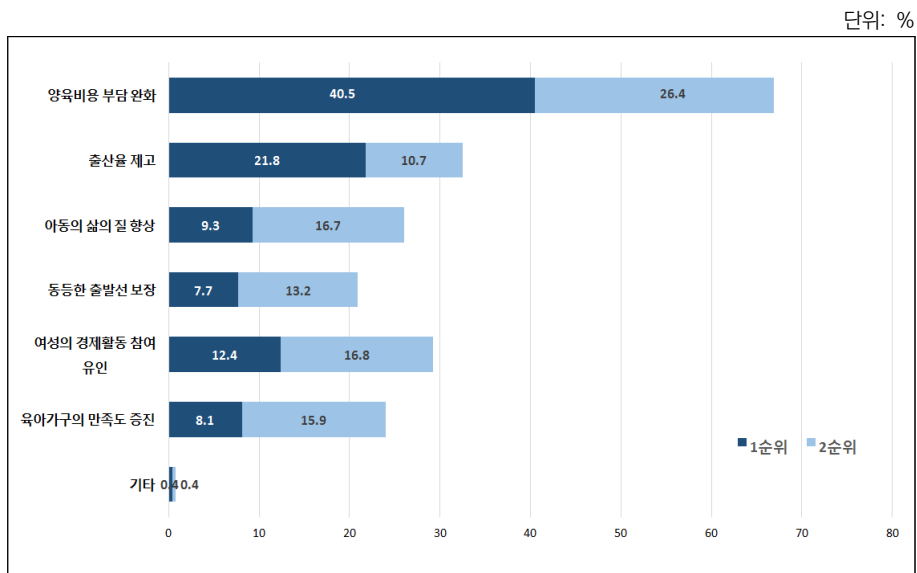
** $p < .01$, *** $p < .001$.

3) 정부 지원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

육아정책 분야에서 정부 지원의 정책 목표 우선순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정책 목표의 1순위는 양육비용 부담 완화가 40.5%, 출산율 제고 21.8%,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유인이 12.4%,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이 9.3%, 수요에 부응한 육

아가구 만족도 증진이 8.1%, 동등한 출발선 보장이 7.7%, 기타 응답이 0.3%순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에서는 양육비용 부담 완화가 26.4%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유인이 16.8%,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이 16.7%, 육아 가구의 만족도 증진이 15.9%, 동등한 출발선 보장이 13.2%, 출산율 제고가 10.7%, 기타 응답이 0.4%로 나타났다. 양육비용 부담 완화가 1순위에서 뿐만 아니라, 2순위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나 육아정책에서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최우선 정책 목표로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산율 제고는 1순위에서는 두 번째로 높았으나 2순위에서는 기타를 뺀 목표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른 정책 목표들은 1순위와 2순위에서 유사한 순위를 보여, 1순위와 2순위 누적 응답 비율은 1순위 응답 순위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최근의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정책목표가 아직 국민들에게는 크게 확산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림 V-1-1] 육아 정책 분야의 정책 목표 우선 순위



주: 1+2순위 응답자 2,110명을 대상으로 산출한 수치임.
 자료: 본 연구의 대국민 의견 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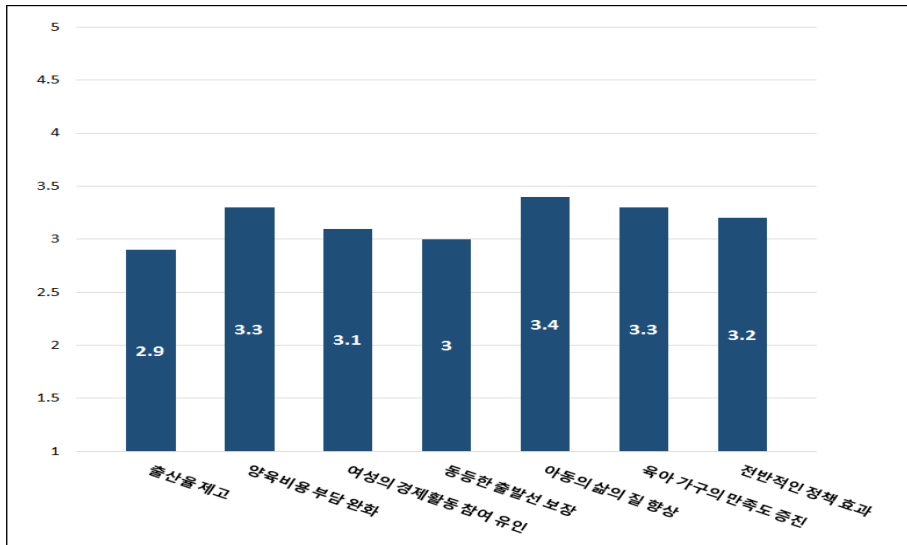
4) 재정 투입 효과성

가) 목표별 재정 투입 효과성 인식

현행 육아 정책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이 각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이지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보통’에 해당하는 3점을 기준으로 편차가 크지 않았으나, 출산을 제고와 2.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동등한 출발선 보장도 3.0점으로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아동의 삶의 질 향상 목표는 3.4점으로 재정 투입 효과성이 가장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비용 부담 완화와 육아 가구의 만족도 증진이 3.3점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재정 투입 대비 전반적인 정책 효과가 3.2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유인이 3.1점으로 나타났다. 앞선 정책 목표 우선순위의 결과와 종합해보면, 양육비용 부담 완화는 정책 목표 중요도도 높고 예산을 투입했을 때 효과성도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산을 제고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요인은 육아정책의 주요 목표라고 인지하고 있지만 재정 투입 효과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V-1-2] 육아 정책 분야의 목표별 재정 투입 효과성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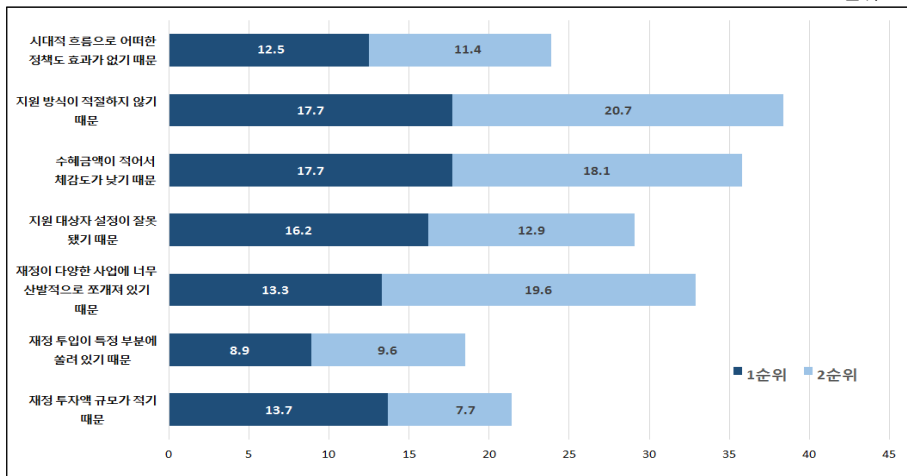
주: 5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효과적임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의 대국민 의견 조사 결과임.

나) 낮은 재정 투입 효과성의 이유

육아정책 분야의 목표별 재정 투입 효과성에 대한 질문에서 1점이나 2점에 응답하여 효과성이 적다고 인지한 항목이 있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1순위에서는 지원방식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과 수혜금액이 적어서 체감도가 낮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원 대상자 설정이 잘못 됐기 때문이라고 응답은 16.2%, 재정이 다양한 사업에 너무 산발적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3.3%, 재정이 다양한 사업에 너무 산발적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3.3%, 시대적 흐름으로 어떠한 정책도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12.5%였으며, 재정 투입이 특정 부분에 쏠려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8.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합한 누적 비율을 살펴보면, 역시 지원 방식의 부적절성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으며, 적은 지원 금액으로 체감도가 낮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사업에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재정의 문제와 지원 대상자의 잘못된 설정으로 재정 투입 효과성이 낮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시대적 흐름으로 육아정책 자체가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24.0%로 낮지 않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V-1-3] 육아정책의 낮은 효과성에 대한 이유

단위: %



주: 1+2순위 응답자 수 542명에 대한 분석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대국민 의견 조사 결과임.

5) 육아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원 방식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여 육아정책의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지원 방식을 직접적 비용 지원, 시간 지원, 서비스 지원, 보육 및 교육 관련 기관 지원 등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육아 가구에게 직접적인 비용 지원 방식이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응답이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육아를 위한 시간지원이 27.1%, 보육 및 교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기관 지원이 18%, 의료 등 서비스 지원이 9.1%, 어떠한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응답이 4.3%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비교 결과를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직접적 비용 지원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지만, 특히 30대에서 46.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20대, 40대, 5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육아를 위한 시간 지원 방식도 30대에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서비스 지원 방식을 선호하는 연령대는 40대 이상으로, 40대가 14.5%, 50대 이상이 12%로 나타났다. 기관 지원 방식이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0대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첫째 자녀 연령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직접적 비용 지원방식은 영유아기 부모 집단에서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 지원은 7~8세 초기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 집단에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의료 등 서비스 지원은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 집단에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7세 이후 연령대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서비스 지원 방식의 효과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관 지원 방식의 경우는 첫째 자녀 연령대이 7~8세인 경우에 21.1%로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으로 높은 구간에서 보육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기관 지원에 응답한 비중이 20.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500~599만원인 가구는 육아를 위한 시간 지원 서비스가 효과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육아가구에게 직접적인 비용 지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은 모든 소득 구간에 높은 응답 비중을 보이기는 했으나, 특히 가구소득이 300~399만원인 가구에서 53.2%로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 V-1-8〉 응답자 특성별 육아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원 방식

단위: %(명)

구분		육아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원 방식					계
		육아 가구에 직접적인 비용 지원	육아를 위한 시간 지원	의료 등 서비스 지원	보육 및 교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기관 지원	어떠한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 같음	
전체		41.5	27.1	9.1	18.0	4.3	100.0(1,055)
연령	20대	40.4	30.3	6.4	19.3	3.7	100.0(109)
	30대	46.1	29.1	5.4	15.1	4.3	100.0(516)
	40대	36.3	23.4	14.5	20.8	5.0	100.0(380)
	50대 이상	36.0	28.0	12.0	24.0	0.0	100.0(50)
	χ^2	37.429***					
첫째 자녀 연령	0~3세	53.6	25.2	4.0	15.9	1.3	100.0(151)
	4~6세	48.1	28.4	3.7	13.6	6.2	100.0(81)
	7~8세	38.2	32.9	5.3	21.1	2.6	100.0(76)
	9~12세	44.4	25.8	11.3	16.9	1.6	100.0(124)
	13~18세	32.3	26.2	16.9	20.5	4.1	100.0(195)
	χ^2	40.385***					
월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46.3	22.8	8.6	16.0	6.2	100.0(162)
	300~399 만원 이하	53.2	21.6	7.9	14.2	3.2	100.0(190)
	400~499 만원 이하	44.7	22.3	8.4	20.7	3.9	100.0(179)
	500~599 만원 이하	33.2	37.8	10.9	16.1	2.1	100.0(193)
	600 만원 이상	35.6	28.7	9.4	20.8	5.4	100.0(331)
	χ^2	37.554**					

자료: 본 연구의 대국민 의견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6) 육아지원 필요 대상의 연령

한편, 육아 지원이 필요한 정책 대상의 연령 상한선을 질문한 후 응답의 평균을 도출한 결과 9.9세, 약 10세까지 육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자녀 연령 대를 구분하여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9~12세가 33.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7~8세가 24.5%, 13~18세도 21.7%로 적지 않은 비율로 나타났다.

미혼과 기혼이 생각하는 육아 지원 필요 정책 대상의 연령 상한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응답의 평균연령은 9.3세, 기혼은 10.1세로 나타났고, 미혼이 가장 많이 응답한 연령 범주는 7~8세, 그 다음이 4~6

세인데 비해 기혼의 경우는 9~12세 연령 범주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7~8세였다. 연령대로는 30대가 10.2세로 육아 지원의 연령 상한선을 가장 높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40대가 9.9세, 20대가 9.4세, 50대 이상은 9.1세로 나타났다.

〈표 V-1-9〉 육아 지원이 필요한 정책 대상 연령

단위: 세/ %(명)

구분		평균연령	육아 지원이 필요한 정책 대상 연령					계
			0~3세	4~6세	7~8세	9~12세	13~18세	
전체		9.9	2.1	18.6	24.5	33.2	21.7	100.0 (1,055)
혼인 상태	미혼	9.3	1.8	24.7	29.6	23.3	20.6	100.0 (223)
	기혼	10.1	2.2	16.9	23.1	35.8	22.0	100.0 (832)
	t / χ^2	-2.779**	17.241**					
연령	20대	9.4	4.6	24.8	21.1	26.6	22.9	100.0 (109)
	30대	10.2	1.9	15.1	26.6	32.6	23.8	100.0 (516)
	40대	9.9	1.8	19.7	22.4	36.3	19.7	100.0 (380)
	50대 이상	9.1	0.0	32.0	26.0	30.0	12.0	100.0 (50)
	F / χ^2	2.118	24.094*					

자료: 본 연구의 대국민 의견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다. 육아정책 분야 지원 내용 조정에 대한 의견

1) 지원금 수준 조정

가) 보육료 지원금 수준 조정

보육료 지원금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7.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1.9%였고,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10.6%에 그쳤다. 확대 또는 축소에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금 조정 기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았고, 자녀 연령 기준이 28.5%,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등 조정이 18.6%, 서비스 이용 시간 기준이 8.8%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보육료 지원금 수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대로 56.6%가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0대에서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7.7%로 가장 높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46.8%였다. 40대에서는 보육료 지원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45.5%로 확대나 축소 응답보다 높았으며, 50대 이상에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비율이 54%로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원금 수준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20, 30대에 비해 40, 50대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40대에서 1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육료 지원금 조정 기준에 대한 연령대별 의견을 비교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가구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4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다소 낮았다. 자녀 연령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에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으며, 30대에서 32.3%로 가장 높았다. 반면,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등 지원은 30대에서 12.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첫째 자녀 연령에 따라 보육료 지원금을 어떤 수준으로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확대와 축소 의견에서 분명한 경향성이 드러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첫째 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보육료 지원금 수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첫째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0~3세 첫째 자녀를 둔 부모는 보육료 지원금 수준을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에 불과하였고,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31.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보육료 지원금 조정 기준에 대한 첫째 자녀 연령별 응답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가구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한 차등 지원에서는 응답 비율이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7~8세 자녀를 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33.3%였다. 첫째 자녀가 7~8세인 응답자는 서비스 이용 시간에 따른 차등 지원에 14.3%가 응답하여, 다른 연령대 자녀를 둔 부모보다 서비스 이용 시간을 기준으로 한 차등 지원에도 적지 않은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4~6세 첫째 자녀를 둔 응답자는 자녀 연령에 따른 차등 지원에 응답한 비율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보육료 지원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등 지원은 영유아기 이후 자녀를 둔 응답자에게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V-1-10〉 보육료 지원금 수준 조정

단위: %(명)

구분		보육료 지원금 수준 조정 에 대 한 의 견			계	보육료 지원금 조정 기준에 대 한 의 견				계
		확대	유지	축소		자녀 연령에 따라 차등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차등	서비스 이용 시간에 따라 차등	
전체		47.5	41.9	10.6	100.0(1,055)	28.5	44.0	18.6	8.8	100.0(613)
연령	20대	47.7	46.8	5.5	100.0(109)	25.9	44.8	20.7	8.6	100.0(58)
	30대	56.6	37.0	6.4	100.0(516)	32.3	46.5	12.9	8.3	100.0(325)
	40대	37.1	45.5	17.4	100.0(380)	25.1	39.1	26.1	9.7	100.0(207)
	50대 이상	32.0	54.0	14.0	100.0(50)	13.0	52.2	26.1	8.7	100.0(23)
	χ^2	54.855***				19.430*				
첫째 자녀 연령	0~3세	66.9	31.1	2.0	100.0(151)	38.5	44.2	6.7	10.6	100.0(104)
	4~6세	58.0	38.3	3.7	100.0(81)	44.0	42.0	4.0	10.0	100.0(50)
	7~8세	47.4	44.7	7.9	100.0(76)	31.0	33.3	21.4	14.3	100.0(42)
	9~12세	38.7	46.8	14.5	100.0(124)	36.4	39.4	21.2	3.0	100.0(66)
	13~18세	33.3	43.6	23.1	100.0(195)	20.9	43.6	27.3	8.2	100.0(110)
	χ^2	68.556***				33.206***				

자료: 본 연구의 대국민 의견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나) 누리과정 지원금 수준 조정

누리과정 지원금 수준을 어떻게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확대에 응답한 비율이 50.5%로 가장 높았으며,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0.8%,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8.7% 순이었다. 확대 또는 축소에 응답한 응답자가 누리과정 지원금 조정 기준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보면, 가구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차등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1.9%로 가장 높았고, 자녀 연령에 따른 차등 지원이 26.9%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등 조정이 22.1%, 서비스 이용 시간 기준이 9.1%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누리과정 지원금 수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30대에서 58.9%로 가장 높았고, 20대와 50대에서도 절반 이상이 확대 의견을 나타냈다. 하지만 40대에서는 지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9%로 확대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도 13.7%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누리과정 지원금 조정 기준에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구소득 수준을 기

준으로 한 차등 지원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 30대에서는 자녀 연령과 서비스 이용 시간에 따른 누리과정 지원금 차등 지원이 40대 이상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40대 이상에서는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등 지원이 높게 나타났다.

첫째 자녀 연령에 따른 누리과정 지원금 수준 조정에 대한 의견의 경향성은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 첫째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누리과정 지원금 수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지와 축소의 응답 비율은 첫째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누리과정 지원금 조정 기준에서는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등 지원에서 첫째 자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자녀 연령에 따른 차등 지원은 4~6세 첫째 자녀를 둔 응답자가 가장 선호하였으며 13~18세 자녀를 둔 집단은 가장 낮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에서는 4~6세와 7~8세 자녀를 둔 집단이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1〉 누리과정 지원금 수준 조정

단위: %(명)

구분		누리과정 지원금 수준 조정에 대한 의견			계	누리과정 지원금 조정 기준에 대한 의견				계
		확대	유지	축소		자녀 연령에 따라 차등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차등	서비스 이용 시간에 따라 차등	
전체		50.5	40.8	8.7	100.0(1,055)	26.9	41.9	22.1	9.1	100.0(625)
연령	20대	56.0	39.4	4.6	100.0(109)	25.8	45.5	18.2	10.6	100.0(66)
	30대	58.9	35.3	5.8	100.0(516)	31.4	43.4	14.7	10.5	100.0(334)
	40대	37.4	48.9	13.7	100.0(380)	21.1	38.7	32.5	7.7	100.0(194)
	50대 이상	52.0	38.0	10.0	100.0(50)	16.1	38.7	45.2	0.0	100.0(31)
	χ^2	49.036***				37.074***				
첫째 자녀 연령	0~3세	67.5	30.5	2.0	100.0(151)	35.2	43.8	9.5	11.4	100.0(105)
	4~6세	61.7	32.1	6.2	100.0(81)	40.0	36.4	14.5	9.1	100.0(55)
	7~8세	52.6	39.5	7.9	100.0(76)	34.8	34.8	19.6	10.9	100.0(46)
	9~12세	42.7	46.8	10.5	100.0(124)	28.8	40.9	24.2	6.1	100.0(66)
	13~18세	35.9	47.7	16.4	100.0(195)	18.6	41.2	36.3	3.9	100.0(102)
	χ^2	49.741***				31.939**				

자료: 본 연구의 대국민 의견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다) 가정양육수당 지원금 수준 조정

가정양육수당 지원금 수준 조정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54.9%로 가장 높았으며,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3.6%,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11.5% 순이었다. 확대 또는 축소에 응답한 응답자가 가정양육수당지원금 조정 기준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가구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차등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4.3%로 가장 높았고, 자녀 연령 기준 차등 지원이 28.7%,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23.1%, 서비스 이용 시간 기준 차등 지원이 3.9% 순이었다.

〈표 V-1-12〉 가정양육수당 지원금 수준 조정

단위: %(명)

구분		가정양육수당 지원금 수준 조정 에 대한 의견			계	가정양육수당 지원금 조정 기준에 대한 의견				계
		확대	유지	축소		자녀 연령에 따라 차등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차등	서비스 이용 시간에 따라 차등	
전체		54.9	33.6	11.5	100.0(1,055)	28.7	44.3	23.1	3.9	100.0(700)
연령	20대	56.9	37.6	5.5	100.0(109)	26.5	52.9	19.1	1.5	100.0(68)
	30대	62.6	30.8	6.6	100.0(516)	34.2	45.4	16.5	3.9	100.0(357)
	40대	43.9	36.6	19.5	100.0(380)	22.8	39.0	33.6	4.6	100.0(241)
	50대 이상	54.0	32.0	14.0	100.0(50)	17.6	52.9	26.5	2.9	100.0(34)
	χ^2	52.316***				31.724***				
첫째 자녀 연령	0~3세	74.2	23.8	2.0	100.0(151)	46.1	40.0	10.4	3.5	100.0(115)
	4~6세	61.7	32.1	6.2	100.0(81)	43.6	38.2	14.5	3.6	100.0(55)
	7~8세	52.6	34.2	13.2	100.0(76)	32.0	48.0	20.0	0.0	100.0(50)
	9~12세	49.2	40.3	10.5	100.0(124)	41.9	33.8	23.0	1.4	100.0(74)
	13~18세	43.1	33.8	23.1	100.0(195)	14.7	42.6	39.5	3.1	100.0(129)
	χ^2	57.323***				51.199***				

자료: 본 연구의 대국민 의견 조사 결과임.

*** $p < .001$.

응답자 연령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지원금 수준 조정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특히 30대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6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0대는 30대에 비해 확대에 응답한 비율이 거의 20% 정도 낮게 나타났으며, 40대 이상에서 축소에 응답한 비율이

20, 30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지원금 조정 기준에서는 자녀 연령에 따른 차등 지원을 30대가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이 20대, 40대, 50대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에서는 40대의 선호가 가장 낮았으며,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등 지원은 40대 이상에서 선호하는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첫째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가정양육수당 지원금 수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자녀 연령이 9~12세 집단까지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다가 13세~18세 집단에서 다소 감소하고, 13~18세 집단에서는 가정양육수당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23.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가정양육수당 지원금 조정 기준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등 지원은 첫째 자녀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2) 지원 대상 조정

가) 보육료 지원 대상 조정

보육료를 지원하는 대상을 조정해야 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50.2%로 가장 높았고, 유지 응답 비율이 39%,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10.8%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연령에 따른 보육료 지원 대상 조정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20, 30대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0대 이상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40대, 50대 이상에서 축소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첫째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지와 축소에 응답한 비율은 대체로 첫째 자녀 연령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보육료 지원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보육료 지원 대상의 시작 연령과 종료 연령을 질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총 지원 기간을 도출한 결과, 응답한 평균 지원 시작 연령은 0.7세, 지원 종료 연령은 만 4.1세로 총 지원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4년으로 1.6년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3〉 보육료 지원 대상 조정

단위: %(명)/ 세, 년

구분		보육료 지원 대상 조정에 대한 의견			계	보육료 지원 대상 연령 기준 축소 시 지원 기간		
		확대	유지	축소		지원 시작 연령	지원 종료 연령	총 지원 기간
전체		50.2	39.0	10.8	100.0(1,055)	0.7	4.1	3.4
연령	20대	56.9	39.4	3.7	100.0(109)	0.0	2.8	2.8
	30대	56.2	36.8	7.0	100.0(516)	1.0	4.2	3.1
	40대	40.5	42.1	17.4	100.0(380)	0.6	4.1	3.5
	50대 이상	48.0	36.0	16.0	100.0(50)	0.6	4.5	3.9
	χ^2 / F	42.016***				0.810	0.840	1.280
첫째 자녀 연령	0~3세	64.2	31.1	4.6	100.0(151)	0.0	4.0	4.0
	4~6세	60.5	34.6	4.9	100.0(81)	0.8	4.3	3.5
	7~8세	48.7	38.2	13.2	100.0(76)	1.3	4.7	3.4
	9~12세	43.5	41.1	15.3	100.0(124)	1.3	4.3	3.0
	13~18세	37.4	41.0	21.5	100.0(195)	0.5	4.1	3.6
	χ^2 / F	41.650***				1.422	0.240	1.165

자료: 본 연구의 대국민 의견 조사 결과임.

*** $p < .001$.

나) 누리과정 지원 대상 조정

누리과정 지원 대상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49.2%로 가장 높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3.1%,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7.7%로 나타났다. 응답자 연령별 누리과정 지원 대상 조정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20, 30대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유지 및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40대 이상에서 20, 30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첫째 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누리과정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첫째 자녀 연령이 0~3세인 경우에는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2.6%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13~18세에서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14.9%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누리과정 지원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누리과정 지원 대상의 연령 기준에 대해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시작 연령은 현행 기준보다 다소 낮은 만 2.8세로 나타났으나 종료 연령은 만 4.3세로 총 지원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4〉 누리과정 지원 대상 조정

단위: %(명)/ 세, 년

구분		누리과정 지원 대상 조정에 대한 의견			계	누리과정 지원 대상 연령 기준 축소 시 지원 기간		
		확대	유지	축소		지원 시작 연령	지원 종료 연령	총 지원 기간
전체		49.2	43.1	7.7	100.0(1,055)	2.8	4.3	1.5
연령	20대	56.0	40.4	3.7	100.0(109)	2.8	4.0	1.3
	30대	55.6	38.8	5.6	100.0(516)	3.2	4.5	1.3
	40대	39.2	49.5	11.3	100.0(380)	2.5	4.2	1.7
	50대 이상	44.0	46.0	10.0	100.0(50)	2.8	4.2	1.4
	χ^2 / F	31.467***				1.736	0.366	1.067
첫째 자녀 연령	0~3세	61.6	35.8	2.6	100.0(151)	2.8	4.3	1.5
	4~6세	55.6	39.5	4.9	100.0(81)	3.3	4.8	1.5
	7~8세	53.9	42.1	3.9	100.0(76)	3.7	5.0	1.3
	9~12세	42.7	50.0	7.3	100.0(124)	1.8	3.8	2.0
	13~18세	36.9	48.2	14.9	100.0(195)	2.8	4.2	1.5
	χ^2 / F	37.394***				1.279	0.598	0.349

자료: 본 연구의 대국민 의견 조사 결과임.

*** $p < .001$.

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조정

가정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을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52.1%로 가장 높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8.2%, 축소에 응답한 비율은 9.7%로 나타났다. 응답자 연령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조정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20, 30대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0대 이상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40대 이상에서 축소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첫째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첫째 자녀 연령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한편 월가구소득에 따른 결과에서는 대체로 월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400만원 이상 월가구소득 집단에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자에게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의 연령 기준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결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0.2세부터 만 3세까지 총 2.8년간 지원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작 연령에서 50대 이상이 1.2세로 응답하여 다른 연령대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V-1-15〉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조정

단위: %(명)/ 세, 년

구분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조정에 대한 의견			계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연령 기준 축소시 지원 기간		
		확대	유지	축소		지원 시작 연령	지원 종료 연령	총 지원 기간
전체		52.1	38.2	9.7	100.0(1,055)	0.2	3.0	2.8
연령	20대	53.2	42.2	4.6	100.0(109)	0.0	2.8	2.8
	30대	59.9	34.1	6.0	100.0(516)	0.4	3.1	2.7
	40대	42.1	41.8	16.1	100.0(380)	0.1	3.0	2.8
	50대 이상	46.0	44.0	10.0	100.0(50)	1.2	3.2	2.0
	χ^2 / F	44.227***				5.066**	0.234	0.958
첫째 자녀 연령	0~3세	68.9	28.5	2.6	100.0(151)	0.0	3.8	3.8
	4~6세	59.3	35.8	4.9	100.0(81)	0.5	3.3	2.8
	7~8세	55.3	36.8	7.9	100.0(76)	0.5	2.7	2.2
	9~12세	49.2	40.3	10.5	100.0(124)	0.1	2.5	2.5
	13~18세	39.0	43.6	17.4	100.0(195)	0.3	3.1	2.8
	χ^2 / F	42.960***				0.699	1.554	1.644
월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61.1	30.2	8.6	100.0(162)	0.4	3.2	2.8
	300~399만원 이하	54.2	41.6	4.2	100.0(190)	0.3	3.4	3.1
	400~499만원 이하	50.3	37.4	12.3	100.0(179)	0.2	3.1	3.0
	500~599만원 이하	49.2	39.9	10.9	100.0(193)	0.0	2.7	2.7
	600만원 이상	49.2	39.6	11.2	100.0(331)	0.3	2.9	2.6
	χ^2 / F	15.588*				0.903	0.958	0.608

자료: 본 연구의 대국민 의견 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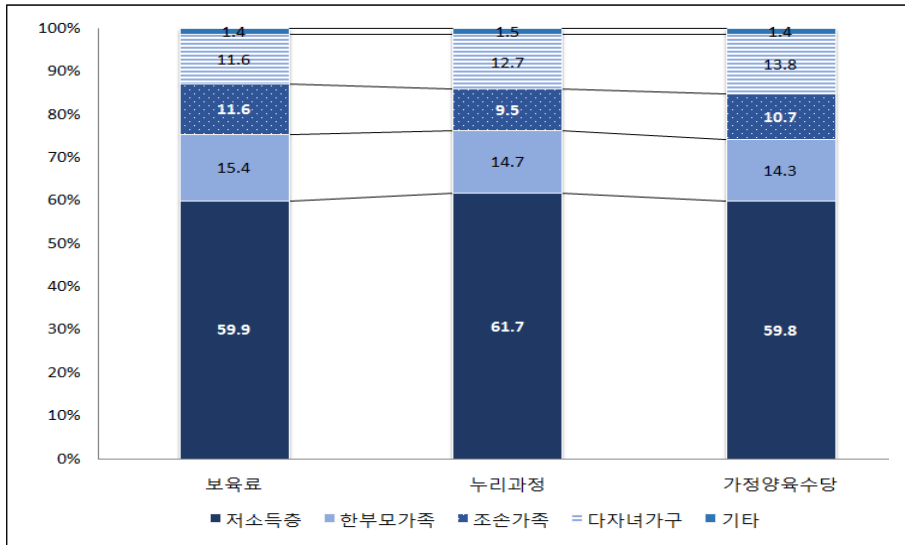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라) 우선 지원 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응답자에 한해 어떤 취약계층 대상을 우선 지원해야 할지 질문한 결과, 제시한 보육료, 누리과정, 가정양육수당 모두 우선 지원해야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응답 비율이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60% 내외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한부모 가족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조손가족과 다자녀가구에 대한 응답은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조손가족을 대상으로는 보육료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누리과정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고,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가정양육수당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림 V-1-4] 육아정책 지원금 조정 시 취약계층 우선 지원 대상

단위: %



주: 보육료는 644명, 누리과정은 600명, 가정양육수당은 652명에 대한 분석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대국민 의견 조사 결과임.

3) 아동수당

가) 아동수당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2019년 1월부터 가구소득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고 모든 가구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년 9월부터 만 7세로 지급연령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아동수당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아동수당 지원 자체는 찬성하지만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8.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현재 정책 방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응답이 35.3%로 나타났다. 지원 자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10.8%였으며, 빨리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라는 응답은 5.7%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응답을 비교한 결과, 현재 아동수당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응답이 여성에 비해 남성 응답에서 5.6%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수당을 재고해야 하는 정책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여성에게서 5%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결과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40대 연령 집단이 현재 아동수당 정책을 다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응답이 40대에서 가장 낮았

고, 그 다음으로 50대 이상에서 낮게 나타났다. 한편 아동수당 제도를 재고해보아야 한다는 응답과 신속히 폐지되어야 할 제도라는 응답도 40대에서 가장 높고 50대 이상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현재 만 7세이기 때문에 자녀의 연령이 이미 지급 상한선을 넘은 자녀를 둔 부모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감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첫째 자녀 연령별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6세 이하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서 현재 아동수당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응답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지원 자체는 찬성하지만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8세, 9~12세 자녀를 둔 부모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원 자체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과 신속히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아동수당 상한 연령을 현재보다 단계적으로 상승시키더라도 지급 받을 가능성이 낮은 13~18세 자녀를 둔 응답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상한 연령에 해당하는 7~8세 자녀를 둔 응답자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 분석 결과에서는 보수에서 중도, 진보로 갈수록 현재 아동수당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원 자체를 재고하거나 빨리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진보에서 중도, 보수로 갈수록 높게 나타났다. 지원 자체는 찬성하지만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중도에서 가장 높고, 보수, 진보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편적 수당제도에 대해 보수보다 진보 성향의 집단이 더 선호하는 일반적 경향이 아동수당 정책에서도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V-1-16〉 응답자 특성별 아동수당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단위: %(명)

구분		아동수당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계
		현재 정책 방향을 전적으로 지지함	지원 자체는 찬성하지만, 일부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지원 자체도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빨리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함	
전체		35.3	48.2	10.8	5.7	100.0(1,055)
성별	남성	38.1	48.3	8.3	5.4	100.0(520)
	여성	32.5	48.2	13.3	6.0	100.0(535)
	χ^2	8.577*				
연령	20대	35.8	51.4	9.2	3.7	100.0(109)
	30대	38.6	49.4	7.8	4.3	100.0(516)
	40대	30.8	45.5	15.5	8.2	100.0(380)

구분		아동수당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계
		현재 정책 방향을 전적으로 지지함	지원 자체는 찬성하지만, 일부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지원 자체도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빨리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함	
	50대 이상	34.0	50.0	10.0	6.0	100.0(50)
	χ^2	24.061**				
첫째 자녀 연령	0~3세	50.3	42.4	7.3	0.0	100.0(151)
	4~6세	48.1	42.0	4.9	4.9	100.0(81)
	7~8세	25.0	57.9	9.2	7.9	100.0(76)
	9~12세	35.5	52.4	8.1	4.0	100.0(124)
	13~18세	25.6	44.6	19.5	10.3	100.0(195)
	χ^2	59.800***				
정치 성향	보수	23.1	51.0	13.5	12.5	100.0(104)
	중도	29.3	53.2	11.2	6.3	100.0(474)
	진보	48.6	39.7	8.5	3.2	100.0(247)
	정치성향 없음	38.7	46.1	11.3	3.9	100.0(230)
	χ^2	43.549***				

자료: 본 연구의 대국민 의견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나) 아동수당 지급 연령 범위 및 지원 수준

아동수당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에 한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 범위와 지원 수준을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현행 아동수당 지급 기준으로는 출생 후 신청하면 0세부터 만 7세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데, 조사 결과는 평균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시작 연령이 만 0.7세로 나타나 현행 기준보다 다소 늦고, 지급 종료 연령은 만 8세로 지금보다 1년 정도 길게 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지급 기간은 7.4년으로 현재보다 평균 0.4년 길게 응답하여 아동수당 조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들은 대체로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 상한선을 다소 상향 조정하기를 희망했다.

첫째 자녀 연령별 비교에서는 7~8세, 9~12세 자녀를 둔 응답자가 아동수당 지급 종료 연령을 가장 높이길 희망하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총 지급 기간에서는 7~8세 첫째 자녀를 둔 응답자가 8.4년으로 가장 길게 응답하였으며, 13~18세 자녀를 둔 집단이 6.6년으로 가장 짧게 응답하였다. 이는 자신의 혜택 여부를 기준으로 정책에 대한 선호를 결정하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표 V-1-17〉 응답자 특성별 아동수당 지급 연령 범위

단위: 세(만), 년

구분		아동수당 지급 연령 범위		
		지급 시작 연령	지급 종료 연령	총 지급 기간
전체		0.7	8.0	7.4
첫째 자녀 연령	0~3세	0.3	8.3	8.0
	4~6세	0.6	8.1	7.5
	7~8세	0.5	9.0	8.4
	9~12세	1.0	8.6	7.7
	13~18세	0.9	7.5	6.6
	F	1.881	2.651*	3.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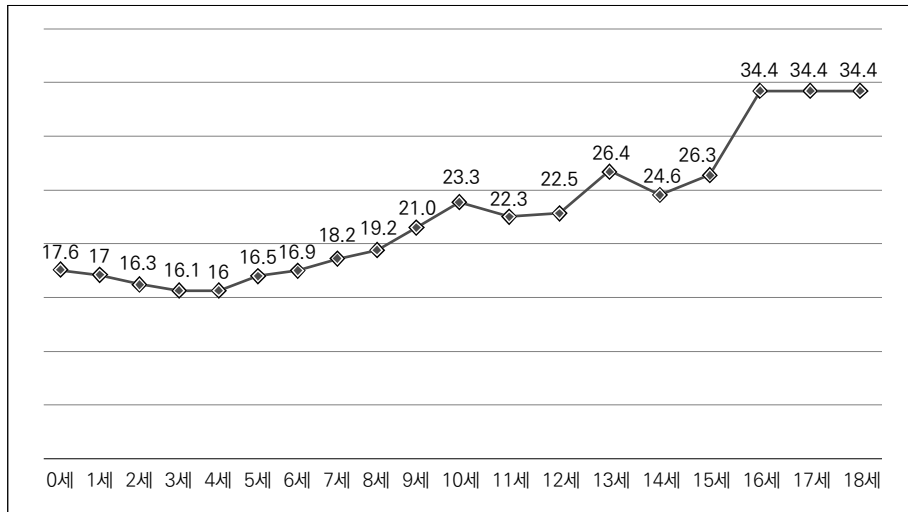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의 대국민 의견 조사 결과임.

* $p < .05$.

다음으로, 응답한 아동수당 지급 기간에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급액을 기입하도록 하여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의 평균 아동수당 지급액은 17만 6천원으로 현행 기준과 비교했을 때 7만 6천원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V-1-5〉 지급 연령별 아동수당 희망 지급액

단위: 만원



자료: 본 연구의 대국민 의견 조사 결과임.

〈그림 V-1-5〉에서 현재 기준인 만 7세 이하 연령에 응답한 연령별 아동수당 지급액을 살펴보면, 만 7세에서 18.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이 만 0세로 17.6만원으로 나타났고 그 이후에는 차츰 감소하여 만 4세에는 16만원으로 가장

적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4세 이후에는 만10세까지 계속 증액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11세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수 자체가 상당히 적지만,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 16세, 즉 고등학교 입학 시기까지 대체로 지급액이 연령 증가에 따라 상승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액도 증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에 소요되는 교육비용 등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 아동수당 외 추가 지원

아동수당 제도를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자에게 아동수당 외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추가 지원이 가장 필요한 대상과 추가 지원액의 수준을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저소득층을 추가 지원이 가장 필요한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자녀 가구,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각 지원 대상별 바람직한 추가 지원액 수준은 기타 응답이 18만 8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저소득층이 17만 8천원, 한부모가족이 16만 3천원, 다자녀가구는 16만 3천원, 조손가족은 15만 8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V-1-18〉 아동수당 외 추가 지원 필요 대상과 자녀당 지원 금액

단위: %(명), 만원

구분	아동수당 외 추가 지원 필요 대상과 자녀당 지원 금액					계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자녀가구	기타	
추가 지원 필요 대상	73.3	36.8	26.5	23.4	1.4	100.0(555)
자녀당 지원 금액(만원)	17.8	16.3	15.8	16.3	18.8	100.0(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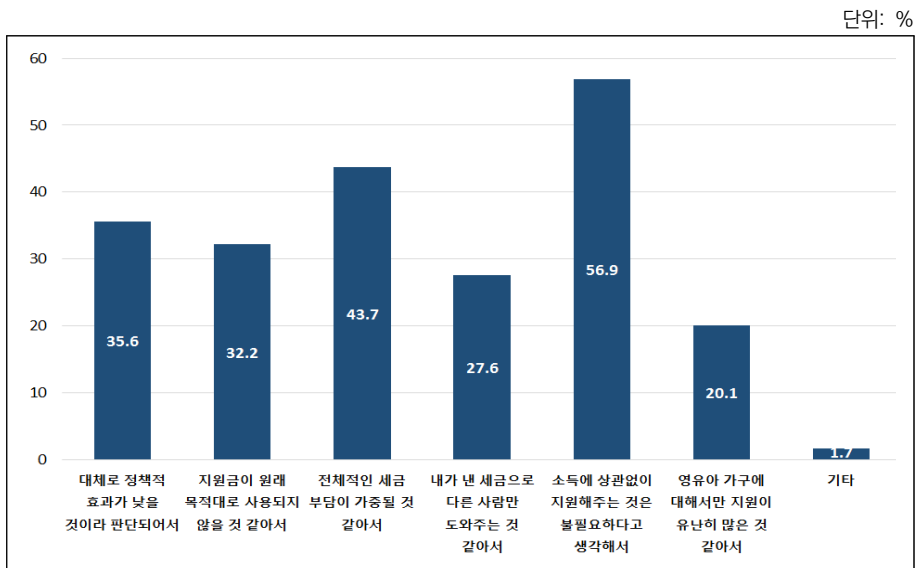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의 대국민 의견 조사 결과임.

라) 아동수당 지원 정책 반대 이유

앞서 아동수당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에서 지원 자체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거나 빨리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응답한 대상자에게 아동수당 지원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해주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응답자 중 56.9%로 가장 높았고,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가중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43.7%, 대체로 정책적 효과가 낮을 것이라 판단되어서라는 응답이 35.6%, 지원금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2.2%, 내가 낸 세금으로 다른 사람만 도와주는 것 같아서라는 응답은 27.6%, 영유아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이 유난히 많은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20.1%, 기타 응답이 1.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V-1-6] 아동수당 지원 정책 반대 이유



주: 중복 응답 문항으로, 총 379명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대국민 의견 조사 결과임.

4) 육아휴직제도 조정

가) 육아휴직급여 조정

육아휴직 지원 제도의 지원수준과 지원 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질문한 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자에게 지원 대상의 자녀 상한 연령과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육아휴직 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54.7%였고,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41.1%였으며, 육아휴직 제도 자체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4.2%였다. 육아휴직 지원 대상의 자녀 상한 연령

은 만 9.7세로 현재 만 8세보다 1.7세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기간은 2.2년으로 현행 1년 보다 1.2년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V-1-19〉 성별 육아휴직 지원 제도 조정 필요성 및 지급 기간 기준

단위: %(명)/ 세, 년

구분		육아휴직 지원 제도	
		조정 필요성	조정 내용
전체		100.0(1,055)	
조정할 필요 없음		41.1	
조정 필요성이 있음	자녀 상한 연령	54.7	9.7(세)
	육아휴직 가능 기간		2.2(년)
육아휴직 제도 자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음		4.2	

자료: 본 연구의 대국민 의견 조사 결과임.

육아휴직 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육아휴직급여액과 관련한 조정 사항들을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현재 육아휴직제도의 소득대체율은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초기 기간에는 80%이고 4개월부터는 50%이다. 조사 결과에서는 초기 상향 소득대체율 적용 기간을 평균 6개월까지 늘려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기 상향 소득대체율은 80.3%로 조정이 거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반면, 4개월 이후 소득대체율을 10% 정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현재 초기 3개월 간 상향된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며, 4개월부터는 월 120만원이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5.8개월로 초기 상향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기 상향 상한액은 24만 1천원, 초기 상향 기간 이후 상한액은 23만 2천원 증액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육아휴직 하한액은 70만원이며, 조사 결과 95만 4천원으로 25만 4천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상한액보다 하한액에서 다소 높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0〉 육아휴직급여액 관련 조정 내용

단위: 월, %, 만원

구분		육아정책 재정 투자 인식 조사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월/%)	초기 상향 소득대체율 개월수	6.0
	초기 상향 소득대체율	80.3
	이후 소득대체율	60.2
상한액 규정(월/만원)	초기 상향 상한액 개월 수	5.8
	초기 상향 상한액	174.1
	이후 상한액	143.2
하한액 규정(만원)	육아휴직급여 하한액	95.4

자료: 본 연구의 대국민 의견 조사 결과임.

나)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는 동일 자녀에 대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이 초기 3개월 간 통상 임금의 100%를 월 25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를 설문 이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질문한 결과, 제도의 존재 여부는 알고 있었다는 응답이 60.9%였고, 잘 알지 못했다는 응답도 31.5%로 낮지 않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해당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7.7%에 그쳤다. 한편,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는 남성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V-1-21〉 성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인지

단위: %(명)

구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인지			계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었음	제도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음	잘 알지 못했음	
전체		7.7	60.9	31.5	100.0(1,055)
성별	남성	8.3	60.0	31.7	100.0(520)
	여성	7.1	61.7	31.2	100.0(535)
	χ^2	0.612			

자료: 본 연구의 대국민 의견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가 실제 아버지들의 육아 휴직을 독려하는 효과가 있

다고 생각하는지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3.2점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이 31.3%, 다소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31.4%로 크지는 않지만 제한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우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13.2%였고, 전혀 효과가 없다는 응답도 13%로 적지 않았다.

제도 인지 결과에서와 동일하게 성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연령별 차이에서는 50대가 3.4점으로 가장 높고, 20대가 3.4점, 40대가 3.3점, 30대가 3.1점으로 나타나, 이용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30대에서 제도의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0대의 결과를 보면, 전혀 효과 없다는 응답이 17.8%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30대에서 가장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이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제도 자체의 효과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대답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1-22〉 성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아버지 참여 독려 효과

단위: 점, %(명)

구분		평균점수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아버지 참여 독려 효과					계
			전혀 효과없음	거의 효과없음	보통	다소 효과적임	매우 효과적임	
전체		3.2	13.0	11.2	31.3	31.4	13.2	100.0 (1,055)
성별	남성	3.2	15.6	11.0	30.0	29.8	13.7	100.0 (520)
	여성	3.3	10.5	11.4	32.5	32.9	12.7	100.0 (535)
	t / χ^2	-1.492	6.865					
연령	20대	3.4	9.2	9.2	27.5	36.7	17.4	100.0 (109)
	30대	3.1	17.8	10.3	32.6	24.4	14.9	100.0 (516)
	40대	3.3	8.2	13.2	31.1	38.2	9.5	100.0 (380)
	50대 이상	3.4	8.0	10.0	28.0	40.0	14.0	100.0 (50)
	F / χ^2	4.212**	43.796***					

주: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효과적임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의 대국민 의견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가 아버지의 참여를 증진하는 효과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남성이 육아휴직 쓰는 것을 회사가 허용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6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 그 다음이 남성이 육아휴직 쓰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선에서 바라볼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12.2%로 뒤를 이었고, 육아휴직은 부모 중 누구든 1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7.8%로 세 번째 높게 나타났다.

〈표 V-1-23〉 성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이유

단위: %(명)

구분	전체	성별		χ^2	연령				χ^2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전체	100.0 (255)	100.0 (138)	100.0 (117)		100.0 (20)	100.0 (145)	100.0 (81)	100.0 (9)	
육아휴직은 부모 중 누구든 1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7.8	4.3	12.0	14.332 *	0.0	3.4	14.8	33.3	37.603 **
소득 대체 상한액(월 250만원)이 너무 작기 때문	2.4	3.6	0.9		5.0	2.1	2.5	0.0	
소득 대체 상한액의 지급 기간(3개월)이 너무 짧기 때문	5.1	4.3	6.0		0.0	5.5	6.2	0.0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는 것을 아빠 스스로 싫어할 것 같아서	4.3	5.8	2.6		0.0	2.8	6.2	22.2	
남성이 육아휴직 쓰는 것을 회사가 허용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66.3	63.8	69.2		75.0	73.1	56.8	22.2	
남성이 육아휴직 쓰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선에서 바라볼 것 같아서	12.2	16.7	6.8		20.0	10.3	12.3	22.2	
기타	2.0	1.4	2.6		0.0	2.8	1.2	0.0	

자료: 본 연구의 대국민 의견 조사 결과임.

제도 인지와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응답에서는 성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으나 제도의 낮은 효과성의 이유에서는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의식한 대답이 여성에 비해 남성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 집단에서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아빠 보너스 제도의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고 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어릴수록 남성이 육아휴직 쓰는 것을 회사가 허용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직급이 낮은 20, 30대에서는 우리 사회의 경직된 조직문화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제약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는 것을 아빠 스스로 싫어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해당 응답이 20대에서는 전혀 없었

고 30대에서 2.8%인데 비해, 50대에서는 22.2%로 나타나 육아에 아버지 참여에 대한 남성 스스로의 인식이 젊은 세대에서 훨씬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육아휴직은 부모 중 누구든 1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도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했으며, 특히 50대 이상에서 33.3%로 높게 나타났다.

아빠의 육아 참여 지원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 4점으로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에서 반드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7.8%로 가장 높았다. 성별 비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대별 비교를 보면,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 제도가 전혀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30대에서 필요성 동의 점수가 4.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확대 필요에 응답한 비율도 48.1%로 가장 높았다. 20, 30대에서는 5점(확대 필요)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4점(다소 확대 필요)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20, 30대에서 남성들의 육아 참여를 위한 지원 제도에 대한 정책적 요구도가 더 강하게 표출되었다.

〈표 V-1-24〉 성별 아빠 육아 참여 지원 제도의 확대 필요성

단위: 점, %(명)

구분		평균점수	아빠 육아 참여 지원 제도의 확대 필요성					계
			축소 필요	다소 축소 필요	현행 유지	다소 확대 필요	확대 필요	
전체		4.0	2.4	3.4	21.7	34.7	37.8	100.0 (1,055)
성별	남성	4.0	3.1	2.7	22.7	32.7	38.8	100.0 (520)
	여성	4.0	1.7	4.1	20.7	36.6	36.8	100.0 (535)
		t / χ^2	-0.211	5.649				
연령	20대	4.1	0.9	2.8	22.0	32.1	42.2	100.0 (109)
	30대	4.2	1.7	1.9	18.4	29.8	48.1	100.0 (516)
	40대	3.8	3.4	5.5	25.8	41.8	23.4	100.0 (380)
	50대 이상	3.9	4.0	4.0	24.0	36.0	32.0	100.0 (50)
		F / χ^2	16.515***	63.709***				

주: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확대 필요 동의도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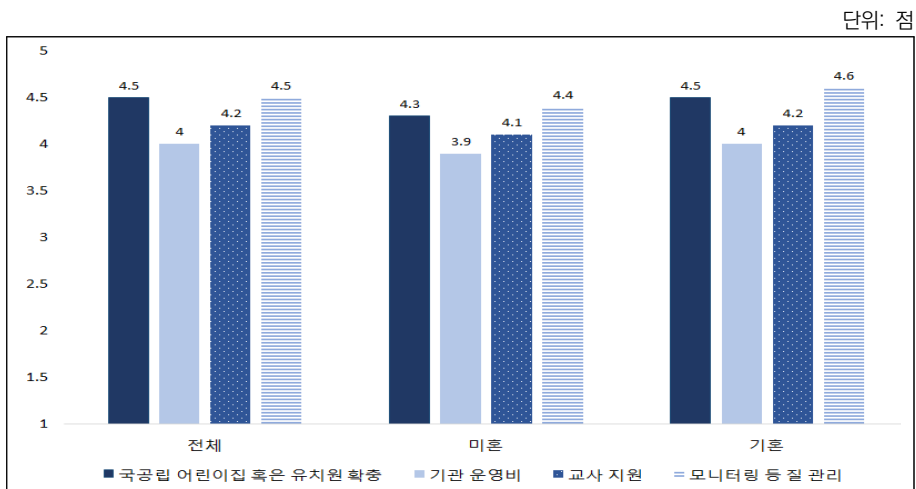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의 대국민 의견 조사 결과임.

*** $p < .001$.

5) 보육 및 유아교육 기관 지원 사업 재정 확대 필요성

보육 및 유아 교육 기관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대한 기관 지원 사업별로 정부의 재정 투자 조정이 필요한지 질문하였다. 보육 및 유아 교육 기관 지원 사업 별 차이를 용이하게 파악하기 위해 제시된 <그림 V-1-7>을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과 모니터링 등 질 관리에서 4.5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보육 및 유아 교육 분야에서 기관의 공공성과 보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적 관리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질 관리에 대한 요구도가 공공 보육시설 못지않게 높은 재정 투자 필요성을 나타낸 것은 최근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 및 안전에 대한 이슈가 크게 부각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혼인상태별 비교를 보면 미혼도 보육 및 유아 교육 기관에 재정을 확대할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혼이 미혼에 비해 모든 기관 지원 사업에서 재정 투자 확대의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V-1-7] 보육 및 유아 교육 기관 지원 사업별 재정 확대 필요성: 혼인상태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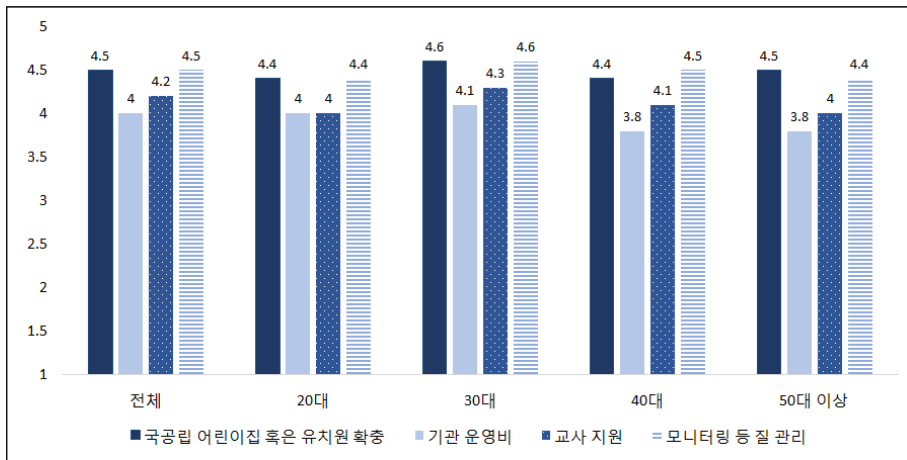
주: 각 문항별 1,055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대국민 의견 조사 결과임.

<그림 V-1-8>에서 연령대에 따라 기관 지원 사업별 재정 투자 확대에 대한 응답을 비교해보면, 20대에서는 기관운영비를 제외한 국공립 보육 시설 확충, 교사지원, 질 관리 등 모든 분야에서 전체 응답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30대는 전체 응

답과 가장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나, 전체 응답보다 모든 지원 부문에서 재정 투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0대에서는 기관 질 관리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50대 이상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을 제외한 다른 부문에서 전체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림 V-1-8] 보육 및 유아 교육 기관 지원 사업별 재정 확대 필요성: 연령별 비교

단위: 점



주: 각 문항별 1,055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대국민 의견 조사 결과임.

6) 향후 재정 투자 확대가 필요한 사업

육아정책 분야의 주요 사업들 중 향후 재정 투자 확대가 가장 필요한 사업을 3순위까지 질문한 결과, 1순위에서 보육료 지원이 1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17.0%), 육아휴직(12.0%),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9.4%), 저소득층 지원(8.7%), 아동수당(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육아휴직이 1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11.0%), 가정양육수당 지원(10.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9.3%), 저소득층 지원(9.0%), 보육료 지원(6.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3순위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이 1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저소득층 지원(10.0%)이 뒤를 이었다.

1순위에서 3순위까지 합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육아휴직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33.1%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 국공립 어

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이 32.2%, 보육료 지원이 31.3%, 저소득층 지원은 27.9%, 아동수당이 20%로 나타났다. 유의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에게 지급하는 직접적 현금 지원정책이 뒤늦게 도입되었고, 가정양육수당이 아동수당보다 먼저 도입되었기 때문에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제도 인지와 수용 정도가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앞선 결과에서 월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가정양육수당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는데(표 V-1-12 참조),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가정양육수당이 계층화된 사용 양상을 보이면서 아동의 조기 교육과 저소득층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기 때문에(송다영, 2011; 김은지·최인희·선보영 외, 2018), 이에 대한 해석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V-1-25〉 향후 재정 투자 확대가 가장 필요한 사업

단위: %

구분		향후 재정 투자 확대가 가장 필요한 사업			
		1순위	2순위	3순위	1+2+3순위
계		100.0	100.0	100.0	300.0
비용 지원	보육료 지원	19.3	6.0	6.0	31.3
	가정양육수당 지원	17.0	10.2	5.9	33.1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	5.4	3.2	4.0	12.6
	아동수당	8.0	5.9	6.2	20.0
시간 지원	육아 휴직	12.0	14.1	7.1	33.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8	9.3	4.5	17.6
	시간 연장반 및 시간제 보육 등 지원	2.2	4.5	3.7	10.4
취약 계층 지원	한부모 가구 지원	2.9	4.0	5.1	12.0
	다자녀 가구 지원	2.0	3.1	4.0	9.1
	장애 가구 지원	2.5	3.8	4.0	10.2
	저소득층 지원	8.7	9.0	10.1	27.9
기관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	9.4	11.0	11.8	32.2
	기관 운영비	0.4	1.3	1.5	3.2
	교사 지원	1.5	3.1	5.7	10.3
	모니터링 등 질 관리	1.6	5.2	6.5	13.4
서비스 및 인프라 지원	아동 건강검진 등 의료 지원	0.9	2.6	4.7	8.2
	아이돌보미 등 돌봄 지원	1.1	1.9	5.5	8.5
	아동 관련 지역 인프라 지원	1.0	1.7	3.6	6.4
	기타	0.2	0.0	0.0	0.2

자료: 본 연구의 대국민 의견 조사 결과임.

한편, 합산 결과에서 육아 휴직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합산 결과를 지원 분야

별로 보면, 비용 지원 분야에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비용 지원 부문에 보육료 지원 및 누리과정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결국 보육시설 이용 지원과 맞물려 있으며, 앞선 기관 지원 사업 분야에 대한 결과를 고려해보았을 때 보육의 질에 대한 요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현재의 높은 비용지원 요구는 부모의 보육 부담 완화와 믿을만한 보육 서비스 지원과도 연결되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라. 육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인식

육아 정책 분야에서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보편적 비용 지원에 대해서 다소 동의한다는 응답이 28.6%로 가장 높았고, 동의 정도는 5점 만점에 3.3점으로 나타났다. 세금 부담을 이유로 보편적 복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는 2.9점으로 다소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보편적 복지의 확대로 축소되어 사회적 형평성이 저해됐다는 진술에는 3.3점으로 다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투자 확대 필요 사업의 결과를 함께 고려했을 때, 육아 지원에서 보편적 비용 지원 방식을 선호하면서도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러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일종의 우리나라의 이중적 복지태도가 육아 정책 분야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지원 형태는 현금 급여 형태보다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는 서비스 형태가 보다 바람직하다는 진술에 다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 및 유아교육 기관 지원에서 민간시설로도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는 보통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와 국가 간에 돌봄 책임에 대한 견해를 알아볼 수 있는 진술들을 살펴보면, 부모가 국가에 자녀 출산 및 육아 지원에 대하여 지나치게 요구한다는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는 3점으로 나타났으나,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의 돌봄은 국가의 전적인 책임이라는 진술에는 3.5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동의 정도를 보였다. 이는 아동 돌봄에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성이 강조되어 돌봄이 가족에서 벗어나 국가 또는 사회로 이전되는 돌봄의 탈가족화 경향이 일반적인 인식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결과라 하겠다.

연령별 지원에서 영유아에 지원이 집중된다는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는 3.5점으

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영유아 지원보다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지원이 보다 증가해야 한다는 진술에도 다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육아 정책에서 돌봄의 대상을 영유아를 넘어선 아동까지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저출산 지원 정책에서 고령자 지원과 결혼 지원의 증가와 중요성에 대한 진술에서는 2.9점으로 상대적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출산을 제고를 위해 아동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이 바람직한 변화라는 진술에는 3.6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 정도를 보여,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아동의 삶의 질에 초점을 두는 것을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6〉 육아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점수	육아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동의 정도					계
		전혀 동의하 지 않음	거의 동의하 지 않음	보통	다소 동의함	전적으 로 동의함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보육료, 아동수당 등 비용 지원을 하는 현행 지원 정책은 앞으 로도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3.3	13.6	11.1	27.4	28.6	19.2	100.0 (1,055)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세금 부담만 가중시 킬 뿐 효과가 낮으므로 지금까지도 폐지되 는 것이 맞다	2.9	15.6	18.6	33.6	19.4	12.7	100.0 (1,055)
보편적 복지의 확대로 인해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축소되는 것 같아, 사회 적 형평성이 저해됐다고 생각된다	3.3	8.2	13.7	33.6	30.3	14.1	100.0 (1,055)
현금성 지원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훨씬 좋다	3.3	7.1	12.4	34.9	31.7	13.9	100.0 (1,055)
민간 어린이집이나 사립 유치원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것이 마땅하다	3.0	12.6	17.0	37.5	24.7	8.2	100.0 (1,055)
요즘 부모들은 자녀 출산 및 육아 지원에 대해서 지나치게 국가에 요구하는 바가 많 다	3.0	13.3	17.1	34.8	24.1	10.8	100.0 (1,055)
영유아 뿐 아니라 아동의 돌봄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하는 일이다	3.5	3.8	9.8	33.5	37.4	15.5	100.0 (1,055)
지금의 저출산 대책은 영유아에게 너무 집 중되어 있다	3.5	4.4	9.1	34.4	35.6	16.5	100.0 (1,055)
영유아에 대한 지원보다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이 더 증가해야한다	3.2	4.3	18.1	42.0	25.6	10.0	100.0 (1,055)
저출산에 대한 지원보다도 고령자에 대한 지원이 더 증가되어야 한다	2.9	11.5	19.3	42.4	20.1	6.7	100.0 (1,055)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라면 육아 지원보다	2.9	13.4	20.2	34.8	22.7	9.0	100.0

구분	평균 점수	육아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동의 정도					계
		전혀 동의하 지 않음	거의 동의하 지 않음	보통	다소 동의함	전적으 로 동의함	
결혼 지원이 더 중요하다							(1,055)
정부의 정책 방향이 출산을 제고에서 아동의 삶의 질 향상으로 변화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변화이다	3.6	1.9	6.4	37.0	39.2	15.5	100.0 (1,055)

자료: 본 연구의 대국민 의견 조사 결과임.

2. 전문가 조사 결과

이 항에서는 육아정책 재정 투자의 방향성에 대해 전문가 20명에게 실시한 AHP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전문가 조사 참여 대상자는 연구진이 기존 선행 연구 등을 검토하여 본 연구와의 연관성이 높은 전문가 순으로 총 30명 선정하여 리스트 작업한 후, 우선순위가 높은 전문가 순으로 연락을 하여 총 20명까지 응답을 받았다³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총 20명으로 교수가 11명, 연구원에 소속된 경우가 9명이었다. 전공분야별로는 보육분야 6명, 유아교육 5명, 사회복지, 경제, 사회 등 분야 9명이었다.

〈표 V-2-1〉 전문가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전문가 조사 응답자 특성
전체		20 (100.0)
성별	여성	18 (90.0)
	남성	2 (10.0)
연령	30대	3 (15.0)
	40대	8 (40.0)
	50대 이상	9 (45.0)
직업	교수	11 (55.0)
	연구원	9 (45.0)
전공 분야	보육	6 (30.0)
	유아교육	5 (25.0)
	사회복지, 경제, 사회, 기타	9 (45.0)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 결과.

34) 현재 국내 체류 중이지 않거나 응답을 거부한 경우 다음 순위 전문가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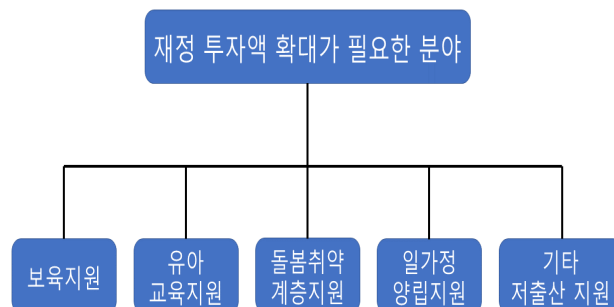
가. AHP 조사 결과

전문가 조사의 주요 설문 내용은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자의 방향성 확인을 위한 것으로, AHP 설문은 주된 문항이다. AHP 설문은 크게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는데, 먼저 육아정책 분야의 재정 투자액의 확대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쌍대 비교, 재정 투자에 있어 정책 목표 설정 시 우선되어야 하는 측정 기준에 대한 쌍대 비교,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지원 방식에 대한 쌍대비교로 구성하였다.

한편, 응답자 편의를 고려하여 재정 투자에 있어 정책 목표 설정 시 우선되어야 하는 측정 기준을 묻는 문항 뒤에는 정책 목표의 우선 순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현행 육아정책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이 제시된 정책 목표 달성에 얼마나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는지 일반 설문 문항을 추가하여 질문하였다.

먼저, 육아정책 분야의 재정 투자액의 확대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AHP 조사의 모형은 아래와 같으며, 전문가는 총 10개의 조합에 대해 응답하였다. 분석 결과 상대적 중요도에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분야는 돌봄 취약 계층 지원 분야로 전문가들은 한부모, 다문화, 장애 가구 등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육아 지원이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육아휴직,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 > 보육지원(어린이집 지원,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등) > 유아교육(유치원 지원, 누리과정 지원 등) 지원 순으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기타 저출산 지원(아동 안전 지원, 아동 건강 지원, 출산 지원, 인식 개선 등)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는 0.086에 그쳐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그림 V-2-1] AHP 모형1 : 재정투자액 확대 필요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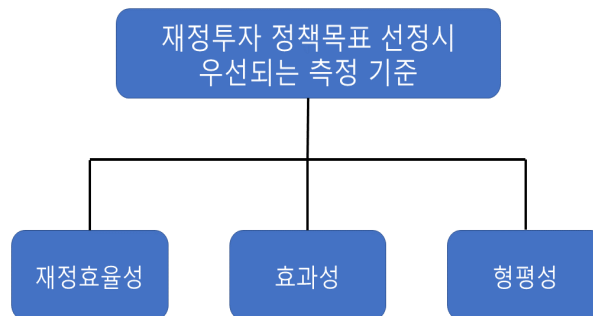
〈표 V-2-2〉 육아정책 분야의 재정 투자액의 확대가 필요한 분야

분야	상대적 중요도	CR값
보육 지원	0.198	0.0028
유아 교육 지원	0.177	
돌봄 취약계층 지원	0.310	
일가정 양립 지원	0.229	
기타 저출산 지원	0.086	

주: 상대적 중요도는 1을 기준으로 산출됨.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 결과.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자에 있어 정책 목표 설정 시 우선되는 측정 기준에 대한 쌍대 비교 평가에서는 전문가들은 형평성이 가장 우선하며, 다음으로 효과성, 재정 효율성 순으로 응답하였다. 즉,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와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 높은 동의를 보였다.

[그림 V-2-2] AHP 모형2 : 재정투자액 정책목표 설정 시 우선되는 측정 기준



〈표 V-2-3〉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자에 있어 정책 목표 설정 시 우선되는 측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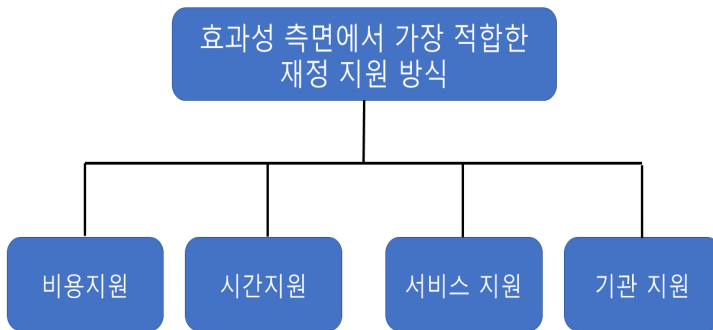
분야	상대적 중요도	CR값
재정 효율성	0.207	0.0002
효과성	0.351	
형평성	0.443	

주: 상대적 중요도는 1을 기준으로 산출됨.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 결과.

한편,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 육아정책 분야 재정 지원 방식으로 가장 적합한 방

식에 대해서는 시간 지원(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가장 적합하다는 응답이 0.340점으로 가장 높고, 기관 지원(국공립 기관 확충, 교사 지원, 어린이집 및 유치원 모니터링 등)이 다음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서비스 지원(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 의료 서비스 지원 등)의 가중치는 0.204 점이고, 비용지원이 0.188점으로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자액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분야가 돌봄취약계층 지원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림 V-2-3] AHP 모형3 : 효과성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재정 지원 방식



<표 V-2-4> 육아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정부의 재정 지원 방식

분야	상대적 중요도	CR값
비용 지원	0.188	0.0007
시간 지원	0.340	
서비스 지원	0.204	
기관 지원	0.269	

주: 상대적 중요도는 1을 기준으로 산출됨.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 결과.

나. 정책 목표에 대한 전문가 의견

한편, AHP가 아닌 일반설문 문항 중 먼저 정부 지원 설계 시 우선 고려되어야 할 정책 목표에 대해서는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이 7점 만점에 6.3점으로 가장 높고, 동등한 출발선 보장(사회적 형평성 제고)이 5.6점으로 다음으로 높았다. 양육비용

부담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유인은 5.1점이었고, 출산율 제고는 4.3점으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편으로 나타났다. 육아가구의 만족도 증진(수요자 요구에 부응)이 우선해야한다는 의견은 7점 만점에 4점으로 정확히 보통 수준을 보이며, 전문가들로부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 2018년 12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로드맵이 발표되기 전까지 육아정책 분야의 정책 목표가 육아가구 만족도 증진, 출산율 제고, 양육부담 완화, 여성 경제활동 참여 유인 등에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전문가 다수가 최근의 정책 방향의 변화에는 찬성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표 V-2-5〉 정부의 지원 설계 시 우선 고려되어야 할 정책 목표

단위: %

구분	평균 점수	우선순위						
		← 낮음 높음 →						
		1	2	3	4	5	6	7
출산율 제고	4.3	5.0	25.0	0.0	25.0	10.0	25.0	10.0
양육비용 부담 완화	5.1	0.0	0.0	15.0	20.0	15.0	40.0	10.0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유인	5.1	0.0	5.0	20.0	10.0	15.0	30.0	20.0
동등한 출발선 보장 (사회적 형평성 제고)	5.6	0.0	0.0	0.0	15.0	35.0	25.0	25.0
아동의 삶의 질 향상	6.3	0.0	0.0	0.0	10.0	10.0	20.0	60.0
육아가구의 만족도 증진 (수요자 요구에 부응)	4.0	0.0	15.0	20.0	25.0	30.0	10.0	0.0

주: 전문가 20명의 응답 결과로 행별로 20명 100% 기준임.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 결과.

현재 육아정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입이 실제로 제시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점수를 주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양육비용 부담 완화와 육아가구의 만족도 증진으로 5점 만점에 3.5점을 받았다. 반면 출산율 제고 효과는 2.2점에 그쳐 보통 수준에도 현저히 못미치는 평가를 받았다. 즉, 전문가들은 현행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육아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에 치중된 재정 투입이 전반적으로 정책 효과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었으며, 비용 지원이만큼 그나마 양육비용 부담 완화나 육아가구의 만족도 등에 국한하여 미미한 정책적 효과를 거두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표 V-2-6〉 정부의 지원을 설계 시 정책목표별 효과성

단위: %

구분	평균 점수	효과					
		전혀 효과없음	←	보통	→	매우 효과적임	모르겠음
		1	2	3	4	5	
출산율 제고	2.2	30.0	40.0	15.0	15.0	0.0	0.0
양육비용 부담 완화	3.5	5.0	20.0	20.0	30.0	25.0	0.0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유인	3.0	10.0	20.0	40.0	25.0	5.0	0.0
동등한 출발선 보장 (사회적 형평성 제고)	2.9	5.0	35.0	35.0	15.0	10.0	0.0
아동의 삶의 질 향상	2.8	5.0	35.0	40.0	5.0	10.0	5.0
육아가구의 만족도 증진 (수요자 요구에 부응)	3.5	0.0	5.0	50.0	40.0	5.0	0.0
전반적인 정책 효과성	2.6	10.0	35.0	30.0	20.0	0.0	5.0

주: 전문가 20명의 응답 결과로 행별로 20명 100% 기준임.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 결과.

이처럼 재정 투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육아정책의 효과성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는 질문에 대해서는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 설정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33.3%로 가장 많고, 재정 투입이 특정 부분(사업)에 쏠려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과 재정이 다양한 사업에 너무 산발적으로 쪼개져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2.2%로 다음을 차지했다. 한편, 2순위 응답에서는 재정 투입이 특정 부분(사업)에 쏠려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과 재정이 다양한 사업에 너무 산발적으로 쪼개져 운영되고 있기 때문, 지원방식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으로 나뉘는 양상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1순위와 2순위를 합친 전체적으로는 재정 투입이 특정 부분(사업)에 쏠려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과 재정이 다양한 사업에 너무 산발적으로 쪼개져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다음으로 지원 방식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 지원 대상자 설정이 잘못됐기 때문 순으로 정리가 되었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의 응답 순서를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현행 육아 정책의 효과성이 낮은 가장 근본적 이유로 지원 대상자 설정이 잘못된 것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외에 지원 방식이나 지나치게 다양한 사업 운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 지원에 대부분의 재원이 쏠리는 현상 등 운영상의 문제가 크다고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재정 투자액 규모 자체가 적다든가, 수혜금액이 적어

서 체감도가 낮다든지 하는 항목에 대한 응답은 그다지 높지 않아, 재정 투입 구조의 변화를 통해 육아정책의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표 V-2-7〉 육아 정책의 효과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육아 정책의 효과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이유		
	1순위	2순위	1+2순위
계	100.0 (9)	100.0 (9)	200.0 (18)
재정 투자액 규모 자체가 적기 때문	11.1	0.0	11.1
재정 투입이 특정 부분(사업)에 쏠려 있기 때문	22.2	33.3	55.6
재정이 다양한 사업에 너무 산발적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	22.2	33.3	55.6
지원 대상자 설정이 잘못 됐기 때문	33.3	0.0	33.3
수혜금액이 적어서 체감도가 낮기 때문	0.0	0.0	0.0
지원 방식(현금, 바우처, 서비스 지원 등)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	11.1	33.3	44.4
시대적 흐름으로, 어떠한 정책도 효과가 없기 때문	0.0	0.0	0.0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 결과.

VI

결론 및 정책 제언

- 01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자 정책의 기본 방향
- 02 정책목표 변화에 대응한 재정 투입 재구조화
- 03 포용적 복지국가를 향한 지원 강화
- 04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원 방식 모색
- 05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정립
- 06 육아지원 정책의 지역별 격차 축소 필요
- 07 신뢰성 있는 육아정책 재정 자료 구축 체계 마련
- 08 정보 제공 강화를 통한 체감도 증진 필요

VI. 결론 및 정책 제언

1.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자 정책의 기본 방향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에 있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염두에 두고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초저출산 시대에 대응하여 인구 정책 차원의 출산율 제고가 아닌 육아 가구의 행복한 육아와 삶의 질 개선을 우선적 과제로 수립하였다. 지금의 세대는 국민을 부를 창출하는 생산가능인구로만 보고 양적 팽창에 무게를 두는 정책보다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훨씬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가치관 변화에 초점을 둔 정책의 변화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사료된다. 둘째, 최근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입 증가의 주요 견인차 역할을 하는 보편지원의 확대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포용적 복지국가로의 발돋움을 위한 정책 재조정을 제안하였다. 육아에 대한 높은 관심과 보편 지원이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바이나, 현행 재정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보편 지원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모든 아동들이 어디에 거주하든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든 최소한의 안정적 지원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정망의 구축 혹은 돌봄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아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지원과 생애 출발선에서의 기회의 형평성 보장을 위한 지원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넷째, 신뢰성 있는 재정 자료의 구축과 정보 제공의 활성화 등을 통해 정책 체감도 제고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2. 정책목표 변화에 대응한 재정 투입 재구조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도입된 2006년 이후 3차 기본계획(2016~2020) 까지도 정부의 육아정책은 출산율 저하를 막고,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에 초점

을 맞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관계부처 합동, 2006; 대한민국정부, 2011; 대한민국정부, 2016). 이러한 정책 목표에 따라 육아정책 분야의 재정 투자도 육아가 구에 대한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행되어 왔다. 특히 2012년과 2013년을 전후한 2차 기본계획(2011~2015) 단계에서는 전면적인 무상 보육·유아교육 정책의 시행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자에 대한 모든 영유아에 대한 비용 지원이 이뤄졌으며, 기관 미이용자에 대해서도 가정 양육수당이 지원되는 등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적인 비용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입액 자체가 크게 증가하는 양상이 발견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집중적인 비용 지원 정책의 효과성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매우 미미하고 국한된 범위에 제한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막대한 재정 투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정책 효과가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입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높아져, 획기적인 제도 변화의 필요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반대로 육아정책 혹은 저출산 정책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정책 효과가 장기에 걸쳐 발현되는 만큼 정책 시행이 채 10년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 파기 혹은 급격한 변화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반론 또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육아정책의 정책 목표가 더 이상 출산율 제고 등 인구학적 관점의 양적 지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 지원 정책의 직접적 수혜자인 영유아 가구들은 재정 투자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인식³⁵⁾하고 있었으며, 보육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 확대를 가장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국민조사 결과에서는 여전히 육아 정책의 목표로 양육부담 완화(1순위 응답기준 40.5%)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급격한 정책 변화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할 위험이 높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육아정책의 방향은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면서도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하되, 기존과 같은 양적 성장이나 단기적 성과보다는 보다 미래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라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재정

35) 본 연구 대국민 실태조사 결과, 첫째 자녀 연령 기준 0-3세인 가구는 83.5%, 4-6세인 가구는 72.8%, 7-8세인 가구는 67.1%가 재정투자가 부족한 편(부족+매우부족)하다고 응답함.

투입 계획이 필요함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12)을 발표하고, 저출산 지원 정책의 목표를 삶의 질 향상,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에 적극적 대응 등으로 수정하며 기존 정책과제의 체계적 정비와 재구조화를 실시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12: 3~5). 결국 이러한 육아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국민과 육아가구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지 않고 정착육하기 위해서는 육아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 정책이라는 큰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외 재정 투입의 조정을 통해 육아정책의 재구조화를 이뤄나가는 것이 최선임을 알 수 있다.

산출기준³⁶⁾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현행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자에서 영유아가구에 대한 보편적이고 직접적인 금전적 비용 지원(보육료, 누리과정지원금, 가정양육수당)액은 약 45~65%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지속적인 육아정책 분야 재정 확대와 영유아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영유아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총 재원 소요분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정 투입의 재구조화를 통한 변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다만, 2018년 9월 이후 도입된 아동수당 지원 정책 등의 시행으로 육아정책 분야 예산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재정 압박이 커질 위험도 존재한다. 결국 아동수당 지원 예산의 확보가 기존 육아정책 재정을 침범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뤄지거나, 혹은 아동수당의 지원 체계가 육아정책의 정책 변화에 발맞추어 진행되어야만 새로운 육아정책의 안정적 정착과 정책 효과성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 사료된다³⁷⁾.

3. 포용적 복지국가를 향한 지원 강화

가. 저소득 가구 및 취약계층에 대한 차등적 아동급여 지원

육아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의 목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7점 만점 6.3점)하고, 동등한 출발선 보장(사회적 형평성 제고) 등 질적 지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대국민 조사 결과

36) 육아정책 분야 범주와 예산 구조로 인한 문제로, 본문 3장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37) 2019년 기준 아동수당 지원 체계와 보육 지원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정부 안이 마련 중에 있으므로 해당 연구 결과를 기다리며 정책의 변화를 주시하고자 함.

에서는 여전히 양육부담 완화나 출산을 제고와 같은 양적 지표가 정책 목표의 우선 순위로 거론되었다. 하지만, 전문가 조사와 대국민 조사 모두에서 공통된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대국민 조사 결과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지원금, 가정 양육수당 지원금의 수준에 대한 질문에서 절반가량의 응답자가 지원금의 수준이 확대되어야한다고 응답한 반면, 40%내외가 유지, 10%내외는 축소되어도 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런데, 이때 육아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금의 수준을 확대된다면 비용 지원의 확대는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많았다. 결국 육아정책 분야 재정 지원의 확대를 육아 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지원 방식으로 하느냐 서비스 등의 지원으로 하는가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전문가가 다소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지원 대상은 돌봄 취약계층 특히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수준이 증가해야한다는 것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10년 이후 취약계층에 대한 육아지원 정책은 주로 지원 대상을 기준으로 장애, 한부모, 다문화 가구 지원 등으로 구성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은 모두 합쳐 육아정책 분야 재정 총액에서 2~3%내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물론 취약계층 지원은 지원 대상자가 소수로 국한되는 경향을 보여 총액 자체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충분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2012년을 전후한 전면적인 무상보육·유아교육의 도입으로 보육 및 유아교육 분야 지원에서 가구소득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³⁸⁾이 사라짐에 따라, 오히려 사회적 형평성 제고가 저해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불러오고 있다.

이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보편 지원의 형태를 띠는 비용 지원과 달리 서비스 지원을 추가 지원하는 형태로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전반적인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저소득 가구 및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현재보다는 훨씬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비용 지원에 있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보육료 지원이나 가정 양육수당 등의 경우에도 농어촌 지역이나 장애영유아에 대한 추

38) 농어촌이나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 차등이 일부 남아 있기는 함. 2019년 아동수당 지원 정책 또한 가구소득에 무관하게 모든 가구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차등 지원이 사라짐.

가(혹은 차등) 지원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가구원 수나 가구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한 추가 지원에 대해 점진적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다만, 가구원 수 및 가구소득 수준 등을 고려한 추가 지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보육료 지원 및 누리과정 지원금에 추가되는 것은 무상보육·유아교육 정책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추가적인 비용 지원은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재구조화 혹은 아동수당 지원 제도의 개선 등과 함께 논의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비용 지원이 아동수당 지원 제도와 맞물려 진행될 경우, 현행 아동 수당은 아동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보편 지원 형태로 정책이 설계되어 있는바 지원금의 명칭을 아동수당플러스 혹은 아동급여(가칭)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이 제도의 목적은 보편 지원이 아닌 사회적 형평성 제고 등에 있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즉, 보편 지원 형태의 아동수당과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아동수당플러스 혹은 아동급여(가칭)를 추가 지원하는 형태로 제도를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직하다.

이때, 대국민 조사 결과 추가적인 비용 지원이 필요한 지원 대상으로는 저소득층(72.9%), 한부모가족(37.1%), 조손가족(27.3%), 다자녀 가구(24.0%)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당 추가 지원금의 수준은 저소득층의 경우 평균 약 18만원, 한부모가족이나 다자녀 가구 16만원내외, 조손가구 15만원 내외 수준으로 최소 현재보다 자녀당 15만원 이상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고 응답하였다. 지원금의 수준을 정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형태로 이뤄져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이후 (아동수당과 같은) 비용 지원의 확대는 취약계층 여부를 고려하여 추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면서 최소 10만원 이상의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육아정책의 지원 대상 연령 만 9세로 확장

한편, 재정 투자 규모가 가장 큰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지원, 가정양육수당의 지원이 모두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지원에 해당하며, 2018년 9월부터 지원되기 시작한 아동수당 지원 또한 영유아기 자녀에 국한됐었다³⁹⁾. 대표적인 시간 지원 정책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의 지원 대상은 비용 지원 정책에

비해서는 다소 길어 초등학교 2학년 자녀(만 8세)까지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관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영유아기만 지원하는 경우와 초등학교(초등 6학년, 만 12세) 자녀의 돌봄을 지원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이 외에 서비스 지원 정책 중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고연령의 자녀에게까지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출산 지원과 같이 임신·출산기에 집중된 지원 등 정책 목표에 따라 다양한 연령을 정책 대상으로 한다. 요컨대, 정책 목표에 따라 취약계층 등과 같이 특정 대상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확정한 경우가 아닌 상당한 정도의 보편성을 띠는 정책, 즉 육아 가구가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이용 기회가 보장되는 지원 정책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지원 대상은 영유아기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대국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3.2%가 육아 지원이 필요한 정책 대상연령은 초등 6학년(만12세)까지라고 응답했으며, 7~8세까지는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이 24.5%, 13~18세까지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이 21.7%에 달했다. 즉, 고등학교 졸업 시기까지는 육아지원 정책의 정책 대상 범위에 들어와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에서 21.7%를 차지할 정도로, 육아 정책의 지원 대상 범위를 넓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세부 지원 정책별로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연령을 현재보다 축소해도 된다는 의견은 각각 10.8%, 7.7%, 9.7%에 그쳐, 현행 영유아에 대한 비용 지원 정책의 지원 연령을 축소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 지원 정책의 경우에도 현재 정책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이 35.3%에 달하고, 일부 조정이 필요하지만 지원 자체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8.2%에 달해 정책 자체에 대한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때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대다수가 아동수당의 지원 연령이 현재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확대 연령은 만7세까지 확대(2019년 9월부터 이미 시행 중임³⁹⁾)가 32.6%로 가장 많고, 만8세(초등 2학년)까지가 15.9%, 만6세(2019년 8월까지의 기존 제도)가 15.1% 순이었다. 이 외에도 만9~12세 사이의 연령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합산하여 22.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아동수당의 연령을 만12세(초등 6학년)까

39) 아동수당 지원 대상은 2019년 9월 1일부터 만7세미만 모든 아동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기는 하였음(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아동수당, <http://ihappy.or.kr/info/intro.php>, 2019. 10. 18. 인출).

40) 조사시점에는 아동수당 지원이 만6세까지로 진행되고 있었음.

지 지원을 확대하기에는 재정상 압박이 너무 커 재원 마련을 위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결국 이러한 재정 압박을 고려할 때 현행(2019년 9월 기준) 수준의 지원 연령을 유지하거나 1세 정도를 확대하는 수준으로 지원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인다.

주요 육아정책의 지원 대상 연령을 정리하고 향후 재원이 확보되는 상황을 가정한 상태에서의 지원 연령 및 지원 수준 확장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VI-2-1] 육아정책 지원 대상 연령 및 지원 수준 확장(안)

연령	0~3세	4~5세	6세	7세	8세	9세	10~12세	13~18세
비용 지원	보육료 지원 (현행유지)	누리과정지원 (현행유지)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과 연계하여 지원수준은 조정 가능 (단, 기관 미이 용자에 국한)							
	아동수당: 2010.9.1. 도입 2019.1.1. 소득재산기준 삭제 (보편지원)			2019.9.1. 기준으로 만7세 까지 확대됨	확대 필요	재원마련 등을 고려하여 점 진적 확대 가능한 연령 구 간임		
	아동수당 플러스(가칭): 저소득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다자녀가구 순의 우선순위 추가지원이므로 기지원 연령부터 순차적 지원할 것인지 미지원 연령 구간을 우선 지원할 것인지는 추가 논의 필요							
시간 지원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 2019.10.1.부터 고용평등법 개정으로 2년까지 사용 가능해짐					확대 필요		
돌봄 서비스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초등돌봄을 위한 시간제돌봄 강화 필요							
				초등돌봄교실		확대 필요		
	다함께돌봄센터: 초등방과후 상시 일시돌봄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우선지원							

주: 실선은 현행 지원 내용, 점선은 확장을 고려한 제안 내용에 해당함.

자료: 1) 보건복지부(2019a). 보육사업안내.

2) 정부24, 누리과정 지원.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D00000003957> (2019. 10. 18. 인출).

3)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아동수당, <http://ihappy.or.kr/info/intro.php> (2019. 10. 18. 인출).

4)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고용보험- 육아휴직,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_onBnef/retrievePb0302Info.do (2019. 10. 18. 인출).

5)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5.do (2019. 11.28. 인출)

6) 경상북도교육청(2019). 2019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7) 보건복지부 블로그, 다함께돌봄센터, <https://blog.naver.com/mohw2016/221679303556> (2019. 10. 18. 인출).

8) 보건복지부(2019c).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4.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원 방식 모색

가. 시간 지원 및 서비스 지원(일가정 양립 지원)의 확대 필요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자의 효과성이 전반적으로 미미하거나 낮다는 점은 누차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2012~2013년을 전후한 시기의 급격한 재정 투입 증가와 정책 효과의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이 영유아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에 쏠리면서 기관 이용률이 제고되긴 했으나 양육비 부담 완화 등의 정책 효과로까지 연계되지 못한 한계가 드러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기관을 이용하는 다수에게 지원 예산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원함으로써 기관 이용이 크게 증가한 반면 양육부담을 경감하거나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되어, 양질의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추가 비용의 지출을 유발하거나 기관 이용 가격 자체를 상승시켜 지원금 효과가 상쇄되는 일종의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상당액의 예산이 비용 지원에 투입됨에 따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간 지원정책이나 서비스 지원에 대한 재정 확대에 강한 제약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중 고용 지원 사업은 육아정책으로 분류하지 않고 제외하였기 때문에, 주로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에는 육아휴직 지원(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포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의 시간 지원 정책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다른 차원의 지원으로는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서비스 등의 지원 정책으로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나 시간 연장 보육서비스 지원, 24시간 어린이집 지원 등 서비스 지원 혹은 기관 사업 등이 들 수 있다.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통한 기관 보육·교육은 보편 지원으로 일부 방과 후 지원을 제외하면 맞벌이 가구를 정책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책이다. 하지만, 실제 맞벌이 가구 혹은 한부모 취업부모 등의 경우 장시간의 보육서비스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육아휴직 등을 통한 자녀 돌봄의 필요가 매우 높은 집단이다. 결국 정부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는 현재보다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시간 지원 및 서비스 지원, 즉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재정의 대폭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는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 결과와 통해서도 확인될 뿐 아니라, 대국민 조사 결과에서도 시간 지원 정책에 대한 높은 지지를 통해서도 지지되는 결과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육아 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 및 상한액 상향조정을 위한 예산 확보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직장 문화 개선 혹은 사업체 지원금의 확대 등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 사료된다. 이는 제도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인하여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선결 조건과도 같은 사항이라 할 것이다. 다만, 현재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지원하는 재정이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되면서, 지원 대상자가 국한되거나 고보기금의 여력의 한계로 예산 확대가 어려운 현실이 존재한다. 따라서, 육아정책 분야 재정 재구조화 과정에서는 시간 지원과 서비스 지원에 대한 재정 투입을 현재보다 확대하되, 소요 예산 재원을 중앙정부가 감당할 것인지, 지금과 같이 고용보험에서 감당하게 할 것인지 등 재원 출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고평법) 제 19조2, 제 19조 3, 19조의 4항 등의 법률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되었으며, 단축근로시간도 상한이 35시간으로 연장, 휴직기간의 분할 사용(3개월 이상 기간으로 자유롭게 분할 사용)하는 제도 변경이 2019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법제처, 오늘의 주요 시행법령⁴¹⁾, 2019. 10. 18 인출). 즉, 육아가구에 대한 시간 지원 정책의 활용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잘 정착되어 정책적 효과가 증진되기를 기대해본다.

나.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정책 과제 조정

대국민 조사 결과와 전문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입의 효과성에 대해 대체로 보통 수준의 낮은 성과를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정책성고가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41) 법제처, 오늘의 주요 시행법령,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5853496&memberNo=5011620&vType=VERTICAL>, (2019. 10. 18. 인출)

전문가와 국민 모두 재정이 다양한 사업에 너무 산발적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1+2 순위 응답 기준 전문가는 55.6%, 대국민조사 32.8%)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실제 육아정책 분야 중앙정부 예산 사업의 수는 2018년 기준 68개,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료 기준 2,280개인 것으로 분석됐다. 중앙정부 사업은 2011년 106개이던 것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사업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주로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던 육아정책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매칭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생긴 변화로 볼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료에는 중앙정부 사업이 모두 포함되므로, 전체적으로 육아정책 분야의 재정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조치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문제는 지방정부 예산의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업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소규모 예산 사업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이 어떠한 사업이 얼마나 수행되고 있는지 정책에 대한 인지 자체가 낮아지고, 예산 조달을 위한 논란이 지속되는 등 사업 운영 및 재정 효율성이 낮아진다는 점에 있다. 그렇지만 사업의 수를 줄이고 무조건 통합한다고 해서 무조건 재정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도 없고, 각 사업은 고유 사업으로서의 목적과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관성이 높거나 전달체계의 일원화가 가능한 사업 등을 좀 더 큰 사업 단위로 묶어주거나 연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등 정책 사업의 조정 및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는 기존의 사업 자체를 통폐합하는 차원의 조치라기 보다는 기존 사업들을 재배치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예산 집행 단계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 증진에 방점이 있다. 단, 재정 효율성이 증진되기 위해 사업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정해야하는가 등에 관한 구체적 방안은 본 연구에서 다루기에는 연구 범위가 방대한 바, 후속 연구 등을 통한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5.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정립

앞서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입 규모의 확대는 무상보육·

유아교육 정책의 도입과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아동수당 지원 등 비용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제도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아직까지도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문제는 매해 막대한 지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진통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누리과정 지원금의 조달을 위한 부처 간 힘겨루기와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지난 2016년 12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되면서(김근진·문무경·조혜주, 2018: 35) 한시적으로 갈등이 봉합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안이었으므로, 기한 종료에 따라 누리과정 재정 조달을 위한 갈등이 다시 재점화 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또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적용되고 있었던 2018년에도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지원금 이 외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키의 지원 주체를 놓고 부처 간 갈등이 촉발되는 등(김근진, 2019 : 411)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재원을 누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2019년 10월 기준 기존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다시 3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이지만(김근진, 2019 : 416), 이는 임시적 조치의 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한편, 아동 안전 및 보호 사업 등의 경우에는 중앙 정부 예산이나 지방정부 예산으로 충당되지 않아 기금 등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며, 일부 보육사업의 경우에도 예산 확보가 어려워 기금 예산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최효미·김동훈·김근진 외, 2018 : 316). 예를 들어 보육 사업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은 고용보험기금,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은 양성평등기금,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은 복권 기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최효미·김동훈·김근진 외, 2018 : 316~317). 이로 인해 기금 예산의 변동 등으로 인해 정책 수행의 안정성이 저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방 재정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들로 인해 아동 안전 및 보호 사업 등 육아정책 분야 정책 예산이 크게 변동되거나 아예 사업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적잖게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육아정책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어떠한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의 수행이 필요한지를 정리하고, 해당 정책의 수행을 위해 일관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한 재정 조달 구조의 정비가 시급히 요구된다.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누리과정 지원금 예산의 경우에는 유아 교육특별회계법이 추가적으로 연장되는 3년의 기간 동안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이 제야말로 재정 조달 구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6. 육아지원 정책의 지역별 격차 축소 필요

지방자치단체 육아정책 사업 예산을 분석해보면, 지역별 예산 총액에서 큰 편차가 있을 뿐 아니라, 영유아 1인당 예산 또한 지역에 따라 편차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산 총액 자체가 총 인구와 예산 규모가 큰 경기도나 서울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한 결과이지만, 영유아 1인당 예산이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보육료 지원이나 누리과정 지원과 같은 비용 지원 사업의 경우 아동 당 지원 비용이 국가적 수준에서 결정되어 지역별 편차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아동당 재정 투입 규모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이러한 비용 지원 이외의 육아정책 분야의 재정 투자가 지역별 편차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거주 지역에 따라 아동에 대한 재정 투자 규모가 달라, 궁극적으로 아동 혹은 육아 가구의 삶의 질이 지역별로 편차를 갖게 될 위험을 내포한다.

가. 지방 재정 영향 평가 실시 및 기준보조율 조정

다만, 예산 자료 분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유아 수가 적은 도 지역의 영유아 1인당 예산 투입액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종종 발견되는데, 이는 육아 가구가 넓은 지역구 내에 흩어져 존재하는 등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입에 있어 역방향의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지역별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입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영유아 1인당 투입 예산이나 예산 투입 총액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하며,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지역의 육아정책 사업 결정과 재정 투입 규모 결정은 당연히 지역의 여건과 재

정 상황을 고려하여 이뤄질 수밖에 없으나, 이러한 지역별 여건의 차이로 인해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와 아동의 삶의 질에 지역별 편차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 혹은 적정 수준의 재정 투입 규모를 가늠하여, 지역별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입 규모를 결정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지역별 보육위원회 등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정책 사업의 기준보조율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지역별 육아 인프라 및 서비스 격차 해소

육아가구 입장에서 비용 지원 정책의 지원금은 아동 당 동일하기 때문에, 지역의 재정 여력이 크지 않아 육아정책 분야 예산이 적은 지역의 경우에는 비용 지원⁴²⁾이 외에 기관 지원, 서비스 지원 등의 정책에 대한 투자 규모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 지원이나 서비스 지원 예산이 적은 경우 육아서비스의 질 제고 및 지역 내 육아 인프라 확충 등에서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결국 지역별 육아 가구가 누릴 수 있는 육아 인프라 혹은 육아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게 될 위험이 상존한다.

대표적인 육아 인프라 지원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확충을 들 수 있는데, 가장 최근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서도 기관 이용 아동의 40%를 수용할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의 확충이 정책 목표로 제시되어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12: 23). 이러한 정책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전체 어린이집 개소 수 및 보육 아동이 감소세를 보이는 현상 속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의 개소 수와 보육 아동의 수는 다행히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b).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은 육아서비스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농어촌을 중심으로 우선 확충되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앞으로의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은 국공립 기관의 수용율이 낮고 정원충족률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충될 수 있다

42) 지역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분담비율은 다르기 때문에 비용지원과 그 외 지원 예산의 비중도 지역별로 일부 편차는 있을 수 있음.

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외의 육아 인프라에 대한 재정 투자에 대해서도 면밀한 고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물론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외의 육아인프라 및 육아 친화적인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12 : 27~29)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전반적인 양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의 변화는 매우 반길만한 일이지만,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나 재정 투입 계획 등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한 상태라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육아 환경 조성과 관련된 주요 정부 정책인 여성친화도시인증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5대 조성 목표 중 하나로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포함하고 있다(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5). 고영우·최효미·조장희(2018: 51~54)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지역 환경이 좀 더 육아 친화적으로 조성되면서 최종적으로 여성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되었다. 즉, 육아친화적인 지역 환경의 조성이 육아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유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 등도 육아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향후 이러한 육아 친화 환경 조성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 볼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7. 신뢰성 있는 육아정책 재정 자료 구축 체계 마련

지방재정법 제 59조⁴³⁾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작성하고, 주민에게 공시하도록(지방재정법 제 60조⁴⁴⁾)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를 통해 기본적인 지방 재정 현황이 모두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방재정365의

43) 국가법령정보, 지방재정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782&efYd=20190417#j59> :0 (2019. 11. 5 인출).

44) 국가법령정보, 지방재정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782&efYd=20190417#j59> :0 (2019. 11. 5 인출).

자료는 지역별, 정책 사업별로⁴⁵⁾ 예결산 현황을 나열식으로 등재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와 같이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자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자료 정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지역별로 예결산을 등재하는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동일 사업이 다른 범주로 분류되거나 해마다 정산시기 등이 달라지는 등의 문제로 실제 예산이 크게 변동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방 정책 사업에서 큰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료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아 지역별 재정 상황 비교나 시계열 현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으로, 면밀하고 정확한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특정 목적 사업에 대한 예결산 현황을 새롭게 취합하여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는 지방재정 현황을 공시할 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통일되고 일관된 기준에 맞춰 재정 현황을 공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표준 공시 기준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일관되고 공통된 기준에 맞춰 작성된 지방재정 자료라야만 앞서 언급한 지방재정영향 평가 등에서 신뢰성 높은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정책 설계 및 정책 영역별 재구조화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정책 자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최근 SOCX(Social Expenditure Database) 구축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상당수 육아정책 재정 자료의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가 구축되어, 정책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8. 정보 제공 강화를 통한 체감도 증진 필요

대국민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45%의 국민들이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입 규모 자체를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약 40%의 국민은 실제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입 규모에 비해 재정 투자액이 적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입 규모를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1/3가량의 응답자는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입 규모가 5~10조미만이라고 응답했으며, 5조원 미만이라고

45) 예산 비목 등으로도 분류가 되기는 함.

응답한 비중도 20%에 달했다. 실제 재정 투입 규모가 최소 11조, 최대 18조에 달하는 것에 비해 국민들이 인지하는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입 규모는 매우 적은 수준임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이처럼 다수의 국민들은 재정 투입 규모를 실제보다 적다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투입이 충분한가를 질문한 질문에서도 부족한 편(부족+매우 부족)이라는 응답이 60%가량을 차지하며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는 국민들이 인지하는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입은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직접적 비용 지원(보육료, 누리과정 지원금, 가정양육수당) 등으로 언론 보도 등에서 자주 언급되는 재정 규모를 기준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재정 규모를 적게 인식하는 배경에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육아정책이 육아가구에 대한 비용지원 정책 등으로 국한되는 양상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으며, 비용 지원 정책이 외의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체감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육아가구에 대한 재정 지원이 육아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다른 각도에서의 육아 지원이 실질적으로 정책적 효과성을 제고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특히 본인이 실질적인 지원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아동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어떻게 수행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육아정책의 목표를 보다 원만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녀를 출산하더라도 안정적인 사회 안전망이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는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 등을 경감시켜 저출산 극복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부처별, 정책 사업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홍보활동이 아닌 보다 체계적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되는 종합적 홍보활동 및 정책 안내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이미 구축되어 지원되고 있다⁴⁶⁾. 다만 이와 같은 홈페이지에 대한 육아 가구의 인지가 아직까지는 높지 않은 바, 이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6) 정부24, 서비스 찾기, <https://www.gov.kr/portal/service/clmsrSearch/main?srchSaeng=BA1801&srchDaesang=&srchJiwon=&sort=&jrsdOrgNm=&jrsdDptNm=&srchArea=&srchSidoArea=&target=daesang&saeng=BA1801&srhQuery=&pageIndex=4>, (2019. 10. 28. 인출).



참고문헌

- 경상북도교육청(2019). 2019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2018.6.20). 2018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 고영우·최효미·조장희(2018). 지역노동시장과 여성고용에 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관계부처 합동(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요약본).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2018).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0)-공공성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 권미경·김문정(2012). 2012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김근주(2017).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의 유형과 체계. 월간 노동리뷰, 2017년 12월호, 9-22.
- 김근진·문무경·조혜주(2018). 육아정책 재정조달 거버넌스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근진(2019).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개편 방향에 관한 논의.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자료집.
- 김민곤·천지은(2016). 저출산 정책으로써 출산장려금의 정책 효과성 연구: 서울 2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0(2), 163-190.
- 김소정·이채정(2012).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사업평가. 국회예산정책처.
- 김은정·이혜숙(2016). 영유아 보육(돌봄)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 보육료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지·최인희·선보영·성경·배주현·김수정·양난주(2018). 지속가능한 돌봄정책 재정립방안 연구(II): 여성·가족관점의 돌봄정책 추진전략.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인경(2017). 일-가정 양립정책의 효과성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 대한민국정부(2011). 2011-201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대한민국정부(2016).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류연규·백승호(2013). 일-가정양립정책이 여성의 일-가족 양립에 미치는 영향에

- 대한 비교 연구. 보건사회연구, 33(1), 122-161.
- 박미경·조민효(2014). 보육정책의 효과성 평가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3(3), 241-271.
- 박종서·김문길·임지영(2016).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모성보호 제도와 출산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2010a). 2010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1a). 2011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1b).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포함.
- 보건복지부(2012a). 2012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2b).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포함.
- 보건복지부(2013a). 2013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3b).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포함.
- 보건복지부(2014a). 2014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4b).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포함.
- 보건복지부(2015a). 2015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5b).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포함.
- 보건복지부(2016a). 2016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6b).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포함.
- 보건복지부(2017a). 2017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7b).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포함.
- 보건복지부(2017. 1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 보건복지부(2018a). 2018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8b).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포함.
- 보건복지부(2019a). 2019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9b). 2019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9c).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2019d).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포함.

- 서울특별시교육청(2017),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계획.
- 서울특별시교육청(2018),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계획.
- 서울특별시교육청(2019),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계획.
- 송다영(2011). 보육서비스 정책 개편 쟁점에 관한 연구 - 돌봄에 관한 자유선택론에 대한 비판과 대안모색. 한국사회복지학, 63(3), 285-307.
- 여성가족부(2015). 가족사업안내.
- 여성가족부(2016). 가족사업안내.
- 여성가족부(2017). 가족사업안내.
- 여성가족부(2018). 가족사업안내.
- 여성가족부(2019). 가족사업안내.
-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7).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 유승현(2011). 보육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한국행정연구, 20(3), 273-310.
- 윤자영·홍민기·김향아·오상훈·민인식·정익중·안현미(2013).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 윤희숙(2014) 보편적 보육지원확대가 취업모 양육비용에 미친 효과. 한국재정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21.
- 이나련·정혜원·임혜슬(2017). 경기도 가족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 (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이동선(2016).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개입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정책, 43(1), 259-284.
- 이명석·장한나·이승연·민연경·최상준(2012).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인식 조사-주출산연령 여성을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14(2), 29-64.
- 이삼식·유계숙·윤희식·최효진(2008).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최효진·정혜은 (2010).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혜원(2013). 보육정책의 효과와 개선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8.1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 정성호(2012).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35(1), 31-52.

- 최성은·우석진(2009). 보육지원정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윤경·박진아·최효미·김동훈·김태우(2017). 표준보육비용 산정 모형 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최은영·이진화·김승진(2015). 2015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최준욱·송헌재(2010). 저출산 대응 재정 정책수단이 효과 및 영향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 최효미(2014).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효미·강은진·조미라·조숙인·김태우(2018).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V).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김동훈·김근진·이윤진·이삼식·정익중·김기현·김승연·조혜주·염혜경(2018). 사회보장제도 「영유아·아동·청소년 돌봄분야」 기본평가. 사회보장위원회·육아정책연구소.
- 홍정림·이미화·김영란·유계숙·이영미·이연정·이채정(2013). 보육비 지원 정책의 효과성 분석. 한국인구학, 36(4), 95-118.
- Arellano, M., & Bond, S. (1991). Some tests of specification for panel data: Monte Carlo evidence and an application to employment equations.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58(2), 277-297.
- Ene. M, Leighton, E, Blue, G, Bell, B(2015). Multilevel Models for Categorical Data Using SAS PROC GLIMMIX : The Basics. SAS Paper 3430.

〈홈페이지 자료〉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고용보험- 육아휴직,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_onBnef/retrievePb0302Info.do (2019. 10. 18 인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여성,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woman/list5.do> (2019. 6. 17 인출).

국가법령정보, 지방재정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782&efYd=20190417#J59:0> (2019. 11. 5 인출).

법제처, 오늘의 주요 시행법령,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5853496&memberNo=5011620&vType=VERTICAL> (2019. 10. 18 인출).

보건복지부, 장애인 장애인자립 기반,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303&PAGE=3&topTitle= (2019. 6. 17 인출).

보건복지부 블로그, 다함께돌봄센터, <https://blog.naver.com/mohw2016/221679303556> (2019. 10. 18 인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아동수당, <http://ihappy.or.kr/info/intro.php> (2019. 10. 18 인출).

[illegible]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경력단절 여성 지원 정책, http://www.mogef.go.kr/cs/cbw/cs_cbw_s002d.do?mid=gnr108&div1=CWSP04&tid=tab_04&btSn=325. (2019. 06. 17 인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5.do (2019. 11. 28 인출)

정부24, 누리과정 지원.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D0000003957> (2019. 10. 18 인출).

정부24, 서비스 찾기, <https://www.gov.kr/portal/service/clmsrSearch/main?srchSaengBA1801&srchDaesang=&srchJiwon=&sort=&jrsdOrgNm=&jrsdDptNm=&srchArea=&srchSidoArea=&target=daesang&saeng=BA1801&srhQuery=&pageIndex=4> (2019. 10. 28 인출),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사업별 세출\기능별·정책사업별, <http://eduinfo.go.kr/portal/intg/intgInfTColBudgPage.do#%20return%20false>; (2019. 3. 8 인출).

e-나라지표, 고용노동부,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4 (2019. 3. 11 인출)

OECD Family Database, SF_2_1_Family_rat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19. 3. 9 인출).

OECD Family Database, PF1_1_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19. 3. 9 인출).

OECD Family Database, PF3_1_public spending on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19. 3. 9 인출).

Stata Guide, Heckman selection model, <https://www.stata.com/manuals13/rheckman.pdf> (2019. 9. 9 인출).

Stata Guide, Probit model with sample selection <https://www.stata.com/manuals13/rheckprobit.pdf> (2019. 9. 9 인출)

〈기사 및 보도자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2.02.07.). 2012년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고시문.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3.01.24.). 2013년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고시문.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4.01.22.). 201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고시문.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5.07.01.). 201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고시문.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6.01.01.). 201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고시문.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7.01.01.). 2017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고시문.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8.01.01.). 2018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고시문.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9.01.01.). 2019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고시문.

통계청(2019.2). 2018년 12월 인구동향 보도자료.

〈통계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세출지출사업 예산편성 현황(총지출).
<http://www.openfiscaldata.go.kr/portal/service/openInfPage.do?mId=B002> (2019. 3. 7 인출)

시도교육청 내부자료(2010~2017 예결산).

인구주택총조사-인구자료 2015년 2% 표본자료(MDIS 2019. 8.10 인출).

지방재정365/재정데이터 개방/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에서 원자료 추출, <http://lofin.mois.go.kr/portal/service/openInfPage.do?infId=OGAR4HBB8LWEBSL4NIHZ817053&srvCd=> (2019. 3. 20. 인출).

지역별고용조사, 시군자료 2015년 상하반기 원자료(MDIS 2019. 8. 10 인출).

지역별고용조사, 시군자료 2016년 상하반기 원자료(MDIS 2019. 8. 10 인출).

지역별고용조사, 시군자료 2017년 상하반기 원자료(MDIS 2019. 8. 10 인출).

통계청, 지역계정,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2019. 6. 30 인출).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2019. 6. 30 인출).

한국노동패널조사 13차(2010년)~20차(2017년), <https://www.kli.re.kr/kli/login.do?key=116&TARGET=%2Fkllips%2FselectBbsNttList.do%3FbbsNo%3D50%26key%3D163> (2019. 7. 5 인출).

KOSIS 국가통계포털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 <http://kosis.kr/> (2019. 5. 20 인출).

〈홈페이지 자료〉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고용보험- 육아휴직,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 onBnef/retrievePb0302Info.do> (2019. 10. 18 인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여성,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woman/list5.do> (2019. 6. 17 인출).

법제처, 오늘의 주요 시행법령,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5853496&memberNo=5011620&vType=VERTICAL> (2019. 10. 18 인출)

보건복지부, 장애인 장애인자립 기반,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303&PAGE=3&topTitle= (2019. 6. 17 인출).

보건복지부 블로그, 다함께돌봄센터, <https://blog.naver.com/mohw2016/221679303556> (2019. 10. 18 인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아동수당, <http://ihappy.or.kr/info/intro.php> (2019. 10. 18 인출).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사업안내, <http://seoul-i.sen.go.kr/FUS/CV/MI000000000000000000000000187.do> (2019. 6. 20 인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경력단절 여성 지원 정책, http://www.mogef.go.kr/cs/cbw/cs_cbw_s002d.do?mid=gnr108&div1=CWSP04&tid=tab_04&btSn=325. (2019. 06. 17 인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5.do (2019. 11. 28 인출)

정부24, 누리과정 지원.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D0000003957> (2019. 10. 18 인출).

정부24, 서비스 찾기, <https://www.gov.kr/portal/service/clmserSearch/main?srchSaengBA1801&srchDaesang=&srchJiwon=&sort=&jrsdOrgNm=&jrsdDptNm=&srchArea=&srchSidoArea=&target=daesang&sae ng=BA1801&srhQuery=&pageIndex=4> (2019. 10. 28 인출),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사업별 세출\기능별·정책사업별, <http://eduinfo.go.kr/portal/intg/intgInfTColBudgPage.do#%20return%20false>; (2019. 3.

8 인출).

e-나라지표, 고용노동부,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4 (2019. 3. 11 인출)

OECD Family Database, SF_2_1_Family_rat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19. 3. 9 인출).

OECD Family Database, PF1_1_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19. 3. 9 인출).

OECD Family Database, PF3_1_public spending on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19. 3. 9 인출).

Stata Guide, Heckman selection model, <https://www.stata.com/manuals13/rheckman.pdf> (2019. 9. 9 인출).

Stata Guide, Probit model with sample selection <https://www.stata.com/manuals13/rheckprobit.pdf> (2019. 9. 9 인출)

〈기사 및 보도자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2.02.07.). 2012년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고시문.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3.01.24.). 2013년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고시문.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4.01.22.). 201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고시문.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5.07.01.). 201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고시문.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6.01.01.). 201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고시문.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7.01.01.). 2017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고시문.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8.01.01.). 2018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고시문.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9.01.01.). 2019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고
시문.

통계청(2019.2). 2018년 12월 인구동향 보도자료.

〈통계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세출지출사업 예산편성 현황(총지출).
[http://www.openfiscaldata.go.kr/portal/service/openInfPage.do?
mId=B002](http://www.openfiscaldata.go.kr/portal/service/openInfPage.do?mId=B002) (2019. 3. 7 인출)

시도교육청 내부자료(2010~2017 예결산).

인구주택총조사-인구자료 2015년 2% 표본자료(MDIS 2019. 8.10 인출).

지방재정365/재정데이터 개방/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에서 원자료 추출, [http://
lofin.mois.go.kr/portal/service/openInfPage.do?infId=0GAR4HBB
8LWEBSL4NIHZ817053&srvCd=](http://lofin.mois.go.kr/portal/service/openInfPage.do?infId=0GAR4HBB8LWEBSL4NIHZ817053&srvCd=) (2019. 3. 20. 인출).

지역별고용조사, 시군자료 2015년 상하반기 원자료(MDIS 2019. 8. 10 인출).

지역별고용조사, 시군자료 2016년 상하반기 원자료(MDIS 2019. 8. 10 인출).

지역별고용조사, 시군자료 2017년 상하반기 원자료(MDIS 2019. 8. 10 인출).

통계청, 지역계정,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
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
BoxDiv](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2019. 6. 30 인출).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
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
ctStatsBoxDiv](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2019. 6. 30 인출).

한국노동패널조사 13차(2010년)~20차(2017년), [https://www.kli.re.kr/kli/lo
gin.do?key=116&TARGET=%2Fklips%2FselectBbsNttList.do%3Fbbs
No%3D50%26key%3D163](https://www.kli.re.kr/kli/login.do?key=116&TARGET=%2Fklips%2FselectBbsNttList.do%3FbbsNo%3D50%26key%3D163) (2019. 7. 5 인출).

KOSIS 국가통계포털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 <http://kosis.kr/> (2019. 5. 20 인출).



An Analysis of the Outcomes of Fiscal Spending in ECEC⁴⁷⁾ Policies

Hyo Mi Choi · Eun Jung Park · Tae Woo Kim · Seok Jin Woo

In step with the continued government efforts to address the on-going issue of low fertility rate in Korea, there have been substantial increases in the scale of fiscal spending in the field of ECEC policy. In response to the changes in the policy environment, this study looks at the scale of fiscal spending allotted for support policies in the extant field of ECEC, for the purpose of assessing the policy effects that were realized through fiscal spending at the aggregate level. By doing so, this study aims to identify policy implications and ways for improvement regarding the direction and efficacy of ECEC support policies.

To these ends, in this study we conducted literature reviews in addition to quantitative analysis of policy efficacy via administrative statistics and panel data. Furthermore, we held expert surveys (AHP) to look at policy priorities and outcome analyses, as well as surveys of the public to gauge user perceptions regarding the outcomes and direction of fiscal spending.

The key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Depending on the calculation criteria, the gross budget expenditure allotted for the field of ECEC policy was estimated at between 11,886.7 to 17,727.4 billion KRW as of 2017. Also,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olicy goals prior to the time period analyzed in this study (2017), we looked at indicators

47)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f childcare burden, female employment, and childbirth to analyze the efficacy of fiscal spending in ECEC policies. Firstly, analysis of matched datasets across the central government budget, the ‘Nuri Curriculum’ budget, and budget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showed that a higher (per capita) childcare budget was associated with higher probability of using education / care services. Also, somewhat unexpectedly, a higher per capita childcare budget was also found to lead to higher education / care costs. This may reflect the fact that the higher probability of service use and the subsequent rise in the number of households spending resources on education / care led to a rise in the overall average costs spent. Per capita childcare budget spending was not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education / care cost burdens, while the central government budget and the budget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3~2017)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in alleviating burdens. Secondly, analysis of a multi-level model to gauge the effects of spending on female employment found that female employment rates were higher in regions where more people were employed in male-dominant industries or industries characterized by gender competition. Although the per capita childcare budget was found to be positively associated with female employment rates, the effect was not significant. Thirdly, dynamic panel data analysis based o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budgets (2012~2017) of regional education offices found that while the policies of regional education offices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initial marriage and initial childbirth ages of women, they did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total fertility rate. Thus, while policies for support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fertility in the short term, there was some ambiguity regarding their long term effects.

Next, in a survey administered to 1,055 members of the public, almost half (49.2%) of the respondents felt the current level of fiscal spending on childcare policies to be insufficient. In fact, 10.9% of the respondents felt that current spending was “very insufficient”. Regarding the specific areas of childcare policy that needed more budgetary spending (multiple

choice), the most-selected response (54.5%) was childcare support measures such as childcare facilities, childcare fees, and home care allowances. This was followed by support for work-life balance (54.2%), such as parental leave and support for women affected by career interruption. Next, regarding the policy goals that government support policies should prioritize, the most-selected response (40.5%) was alleviating the cost burden of childcare, followed by boosting the fertility rate (21.8%), encouraging economic activity in women (12.4%),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mong children (9.3%), improving the satisfaction and meeting the demands of child-rearing households (8.1%), ensuring a level starting line (7.7%), and other goals (0.3%).

In the expert survey (AHP), where 20 experts were consulted regarding the direction of fiscal spending on childcare policy, the highest-scoring field in terms of relative importance was care support for disadvantaged households – experts opined that there was a need to greatly expand care spending for single-parent households, multi-cultural households, and households affected by disabilities. Also, in terms of policy goals that should be prioritized during policy design, experts gave a high score to improving children's quality of life (6.3 out of a possible 7), followed by ensuring a level starting line (improving social equity), which was given a score of 5.6.

Based on these findings, in this study we presented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restructuring fiscal spending to address policy changes, reinforcing policies to work toward an inclusive welfare state, such as providing graduated support and expanding the age coverage for children in low-income households (provisionally, a 'low-income household care allowance'), expanded support for working time adjustment and services (work-life balance assistance), establishing governance structures for ensuring stable funding, closing inter-regional gaps in ECEC support policies, establishing a credible system for compiling fiscal reports related to ECEC policies, and improving the visibility of policies by expanding information provision.

Key words: fiscal spending in ECEC policies, analysis of the efficacy of fiscal spending, improving the efficacy of ECEC policies, restructuring fiscal spending in ECEC policies

부록 1. 선행연구 경향성 분석에 활용된 문헌

〈부표 1-1〉 선행연구 경향성 분석에 활용된 문헌 목록

저자명	출판년도	논문제목
권미경 외	2012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김경미 외	2010	세계 주요 국가 저출산 대책 평가 및 우리나라에의 적용 방안
김기현 외	2012	유아교육 및 보육 경험의 장기 효과- 또래 · 교사관계 및 학업성취도
김미숙 외	2010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김미숙 외	2011	OECD국가의 아동가족복지지출 현황과 효과성 비교
김민근 외	2016	저출산 정책으로써 출산장려금의 정책 효과성 연구
김소정 외	2012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 사업 평가
김영민	2010	미국의 아동양육보조금의 주요 내용과 고용 효과
김은정 외	2016	영유아보육(돌봄)지원 정책평가와 정책과제
김인경	2017	일-가정 양립정책의 효과성과 정책적 시사점
김일옥 외	2011	출산장려 정책과 근로시간이 기혼여성의 둘째 아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
김정은	2013	미국 보육서비스의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효과성 연구
김정호	2012	보육료지원의 여성 노동공급 및 출산 효과 분석
김정호	2012	육아휴직 지원과 여성의 노동공급
김준기 외	2012	기혼 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사회지원의 효과를 중심으로
김현숙	2004	여성 인력공급과 조세, 재정정책-자녀보육비용을 중심으로
김현숙 외	2006	장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조세 재정정책- 출산율 결정요인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남궁윤영 외	2016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류연규 외	2011	복지국가의 아동, 가족복지지출과 아동빈곤율의 관계
류연규 외	2013	일 가족 양립정책이 여성의 일 가족 양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 연구- 여성 근로소득에 대한 정책의 직간접 효과를 중심으로
문소영	2017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출산장려금 정책을 중심으로
문은영	2010	서울시 중소기업 가족친화제도의 효과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민영경 외	2013	저출산 정책과 양성평등문화의 출산율 제고 효과
박미경 외	2014	보육정책의 효과성 평가연구
박상언	2013	가정친화제도의 효과성과 직장 가정상호작용의 매개효과
박종서 외	2016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박찬화 외	2012	10 개월 이하 영아를 둔 취업모의 양육지원체계, 자녀가치관 및 심리적 안녕감이 둘째아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박창현	2016	신문기사에 나타난 누리과정 정책 효과 인식 연구- 사회연결망분석을 활용하여
배호중 외	2018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가능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신혼 여성을 중심으로

저자명	출판년도	논문제목
서문희 외	2007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 평가
서문희 외	2009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의 효과에 관한 연구
서문희 외	2014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 증가 추이와 효과
송헌재 외	2015	보육지원정책이 출산율과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에 미친 거시적 성과 실증분석
우석진 외	2007	출산율 제고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조세, 재정정책(장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조세, 재정정책)
우석진 외	2014	보육지원정책의 효과분석- 거시적 성과 실증분석 및 질 제고방안 도출을 중심으로
원종욱 외	2010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총괄보고서)
원종욱 외	2014	주요 OECD국가의 사회지출과 사회적 성과
원종욱 외	2017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 분석(발표자료)
유승현	2011	보육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유해미 외	2011	영아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안-양육수당을 중심으로
유해미 외	2016	2015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유해미 외	2017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료 지원, 그 역설과 향후 과제
유희정 외	2008	지방자치단체별 육아지원 실태와 효과 분석
윤자영 외	2013	일 가정 양립 지원정책(고용효과성평가)
윤자영 외	2014	모성보호제도의 고용효과
윤자영 외	2014	육아휴직제도의 여성 고용 효과 정책제에서 정률제 급여제도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윤희숙	2014	보편적 보육지원확대가 취업모 양육비용에 미친 효과
이동선	2016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개입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OECD 국가를 대상으로
이명석 외	2012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인식 조사- 주출산연령 여성을 중심으로
이명석 외	2012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정책 효과분석
이미옥 외	2015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이삼식 외	2008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이삼식 외	2010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 연구
이상현	2003	보육사업 평가-시설별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이석환	2014	한국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의 효과 평가
이수영	2009	한국 육아휴직제의 고용연장효과 분석
이옥	2009	한국 보육정책의 성과와 정책변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철희	2018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했는가-2000년~2016년
이형우 외	2013	서울시 보육서비스 전달체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혜원	2013	보육료 지원정책이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에 미치는 영향
이혜원	2013	보육정책의 효과와 개선방향
임상규	2009	출산장려정책의 경제적 도구 선택을 위한 효과성 비교 연구
임응순	2015	복지재정지출의 지역경제 효과 비교 분석
정성호	2012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정은희 외	2018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관점에서의 적정 정부지출규모 연구
조병구 외	2007	정부 재정사업 심층평가보고서
주효진 외	2010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저자명	출판년도	논문제목
최분희 외	2017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최성은 외	2009	보육지원정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 분석
최연혁	2011	스웨덴의 저출산 대응정책과 중장기 파급효과 분석
최은영 외	2015	2015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최정은	2017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정책의 효과성 - 부모의 자녀양육비 부담 경감 효과를 중심으로
최준욱 외	2010	저출산 대응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 및 영향 분석
허만형 외	2011	출산장려금의 정책효과 연구 -제도도입 전후 출산율 증감경향 비교분석
홍정림	2013	보육비 지원 정책의 효과성 분석

부록 2.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의 중점과제 및 사업

〈부표 2-1〉 제1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2006~2010)

분야	세부분야	중점과제	주요사업	세부내용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신혼부부 출발지원	결혼 출산 주 연령층에 대한 결혼정보 제공 및 지원제도 도입	결혼 관련 정보 제공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 현역 및 예비역 장병에 대한 결혼·출산·육아 교육 강화 기혼병사 지원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지원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경감	보육·교육비 지원의 선진화	만 0~4세아 차등교육·보육비 지원대상 및 지원비율 확대 만 5세아 보육·교육비 지원, 다자녀가구 추가 지원, 장애아 보육·교육비 지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등 i-사랑카드(보육 전자바우처) 도입 보육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저소득층 지원 초등보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사이버 가정학습 내실화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소득공제 체계 개편 세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경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내실화
			주거안정 지원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공급 주택자금대출 혜택 부여
			미혼모, 미혼부 지원 확대	미혼모, 미혼부 지원을 위한 지역별 거점기관 운영 기초생활보장 적용기준 완화를 통한 생계 지원 미혼모자 가족 거주지 지원
		다양하고 질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육아지원 시설 확충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통합육아지원 시설 설치 및 지원 직장보육시설 확충
			민간보육시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시간연장형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동네품앗이 육아망 구축 유치원 종일제 확대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산전검사 및 분만취약 지역 지원 산전검사로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사업 추진

분야	세부분야	중점과제	주요사업	세부내용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 투자 확대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출산·육아관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모유수유 지원확대
				신생아 중환자실(인큐베이터) 이용시의 보험 급여 확대
				신생아 집중치료실 확대
			불임부부 지원 확대	
			산모도우미 지원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 지원 확대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사업 강화	생명존중 및 낙태폐해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사업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모성보호 강화	산전후휴가급여 지원 확대	산전후 휴가급여의 지원 확대 추진
				유산 및 사산 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 시행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육아휴직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근로형태 유연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확산	가족친화 인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족친화프로그램 개발 보급	기업인증제 등 가족친화적 기업 지원
			가족친화적 프로그램 개발	가족친화적 기업 경영모델 개발
			가족친화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가족친화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가족친화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가족친화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출산 육아 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출산 육아 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위한 ‘출산후계속고용 지원금’ 지원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고용지원센터 여성 취업 지원기능 강화
			가족 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 교육 강화	
			가족 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 교육 강화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범국민 인식개선 운동 강화
			가족생활 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아동 청소년 대상 지역 사회교육 강화
		가족단위 여가문화 지원	가족유형 및 가족생애주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가족유형 및 가족생애주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가족 유형별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가족 유형별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가족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가족형 관광인프라확충	가족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가족형 관광인프라확충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가족단위 여가문화 지원	새로운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분야	세부분야	중점과제	주요사업	세부내용
	건전한 미래 세대 육성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제2차 어린이 안전종합대책’ 마련 추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체계 강화 및 교 육·홍보 강화 아동안전 관련 통계기반 구축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 아동 보호체계	아동학대·방임의 조기발견 및 예방체계 구축 통합적 아동보호체계 구축과 전문성 강화 아동학대 예방 홍보 및 교육 강화 실종아동의 조기발견·보호시스템 구축 등 아 동보호 인프라확대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학교폭력 예방·근절지원 추진체계 구성 및 운 영 활성화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강화 학교폭력 피해 신고 및 상담기능 강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단속 강화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지원 시스템확립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방과후 서비스 제공 및 보호기능 강화	방과후 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 구축 청소년 지원센터 확충 및 지원 관련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아동의 발달 지원	취학전 아동의 인지발달 투자 확대 비만 아동에 대한 건강관리 및 운동지도 심리, 정서, 인지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 대한 전인적 발달 지원 아동 체험발달경험서비스 제공
			국내입양 활성화	입양가정 양육부담 경감 입양부모 지원요건 및 절차 등 제도적 개선 추진 입양문화 발전을 위한 인식 개선사업 추진
			유해환경 차단 강화	청소년 유해환경 종합대책의 집행으로 유해환 경 차단 강화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 크 구축
			학교의 건강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학교 보건교육여건 및 환경 개선 학생 대상 질병 예방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흡연 등 건강유해 행태를 감소시키는 사업 지 속 추진 학교-보건소 연계 통한 학생건강관리 강화
		빈곤아동의 자활·자립 지원	드림스타트 활성화	
			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	

〈부표 2-2〉 제2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2011~2015)

분야	세부분야	중점과제	주요사업	세부내용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육아휴직제도 개선	육아휴직급여정률제 및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도입 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육아휴직제도 대체인력 지원체계 개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육아기회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청구권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이용여건 조성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산전후 휴가 등 제도 개선	산전후 휴가 분할사용 허용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가족간호 휴직제 활성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 보호 강화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유연근로제 확산	공공부문 선도모델 발굴·확산 시간제 근무 활성화 단시간 일자리 확산·지원
			유연근로형태 도입 여건 조성	유연근로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강화 '스마트 워크센터' 도입 및 확산 유연근로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등 추진
		가족친화 직장 사회환경 조성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확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 강제방안 도입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활성화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기반마련 지원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강화 가족친화직장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운영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노사정위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추진 공무원 정상근무 관행 확산 초과근무 관리 강화 출산장려 우수지역(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 확대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우선 지원
			결혼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 강화	유자녀 현역병에게 상근예비역 편입 혜택 부여 학생부부를 위한 국공립대학·대학원 내 기혼자 기숙사 확대 저소득층 중 기혼자에 대하여 장학금 수혜 우선순위 부여
			결혼 관련 교육, 정보 및 서비스 체계적 제공	단계별 종합정보 제공 및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

분야	세부분야	중점과제	주요사업	세부내용
		임산·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임산·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농어촌 등 분만 취약지 보건의료 인프라 지원 강화
				신생아 집중치료실 확대
			임산·출산 비용 지원 확대	자연분만수가 인상 등 산부인과 건강보험 수가 개선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비용의 단계적 확대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운영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 대상 확대
				맞벌이 가구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 보육·교육비 지원
				농업인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양육수당 지원 확대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둘째아 이상 대학교 자녀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다자녀 공무원 가장 퇴직후 재고용
				다자녀가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다자녀가정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취약지역내 국공립보육시설 지속 확충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개선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사립 유치원 평가 내실화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유치원 종일반 확대
				저소득·맞벌이 가정 입소 우선순위 부여
				시간제 보육바우처 및 운영시간 다양화 방안 마련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이웃간 돌봄나눔 사업 활성화
			영아에 대한 가정내 돌봄 활성화	

분야	세부분 야	중점과제	주요사업	세부내용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지역아동센터 확대 및 내실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및 내실화
				초등 종일돌봄교실 확대
				맞춤형 방과후 학교 운영
				방과후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
				나홀로 아동 방과후 돌봄 서비스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위기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자립지원 사업 체계화 두드림존(토달자활지원서비스 체계) 확대·보급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아동발달 지원 서비스 확대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확대 실시
			취약계층 아동 휴먼네트워크 형성	휴먼네트워크 확대
			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역량 개발 지원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청소년활동 인프라 확충
				아동·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 활성화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확대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생활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성범죄 예방 및 보호대책 강화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활동 강화 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강화 성보호를 위한 교육 강화 및 지원 시설의 확충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유해환경요인 차단 및 건 강관리 지원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 강화 흡연·음주 등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 추진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 여건 조성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	중장기 아동정책 및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중장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계획 수립

분야	세부분 야	중점과제	주요사업	세부내용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 계구축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 정비	
		고령자 고용연장	고령자 고용연장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 개편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 추진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 업지원 서비스 강화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 업지원 서비스 강화	원활한 전직지원을 위한 장려금 제도 개편
				고령자 특화형 직업훈련·취업지원
				중고령층 취업성공 패키지 운영
				중고령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중고령자 적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내 실화
				중고령자 유아교육 인력풀 구축
				고령전문인력 우선채용 사회적 기업 육성
				시니어 창업지원
		중고령 인력 전문성 활용 제고	중고령 인력 전문성 활용 제고	과학 연구분야 퇴직인력 활용도 제고
				중고령자를 활용한 취업상담 서비스 제공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
				대기업 퇴직전문인력 활용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제도의 조기정착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제도의 조기정착	중고령 여성의 전문성을 활용한 멘토링 확대
				에이지 캠페인 실시
				지속적 연령차별 모니터링 실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 확립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 성 개선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개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특수고용관계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적용 확대
				저소득층 및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기초생활수급자중 직장근로자 사업장 가입자 당연적용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
				개인연금 활성화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및 수검률 향 상
				보건소 중심 통합건강관리 체계 구축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분야	세부분야	중점과제	주요사업	세부내용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강화	노후설계 기반조성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및 활성화	만성질환자 관리 프로그램 도입
				U-health 서비스산업 기반 확충
				노화 종합연구소 설립 추진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노후설계서비스 인프라 구축
	안정 되고 활기찬 노후 생활 보장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일자리 사업 체계화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노인일자리 질적 고도화
				일자리 지원체계 기능 조정 및 역할 강화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국민연금 급여의 근로유인 성 제고 농어촌 고령자 소득보장	기초노령연금 내실화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 개선
				연기연금 제도 활성화
				경영이양직접지불제 내실화
				농지연금 도입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노년기 주요질환 관리체계 구축	노인 질병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인다빈도질환 관리체계 구축
				노인 구강증진 서비스 확대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체계적 치매 예방 치료 관리
				효과적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치매환자 인식개선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예방적 서비스 공급역량 강화
				품질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장기요양보험 수급질서 확립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노인 운동사업 활성화
				노인운동문화 확산 및 전문인력 확충
		의료비 지출 적정화	의료비 지출 적정화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통한 재정건전 성 확보
				고령자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고령자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화
	고령	고령친화적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령자 자원봉사 활동의 기반마련
				자원봉사 정보망 연계 구축
				고령자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문화바우처 지원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개발 보급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분야	세부분 야	중점과제	주요사업	세부내용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주거·교통 환경 조성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마련
				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 공급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고령운전자 안전교육 추진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 의 보호강화	독거노인 및 손자녀 양육 노인의 보호 강화
				농촌 가사도우미
				노인학대예방 인프라구축 및 교육홍보 강화
			노인공경 및 복지기반 마련	효문화 정착을 위한 효행장려여건 마련
				노인 부양가족 지원을 강화하여 노인우 대 사회분위기 조성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우수사례 개발
성장 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 개선	잠재 인력 활용 기반 구축 및 인적 자원 경쟁력 제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공기업·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실효성 확보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 교장 교감 임용 확대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 확대
				범국민적 양성평등의식 확산
				청소년, 여대생 등에 대한 직업 진로지 도강화 및 추진체계 확충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 여건 개선
				지역단위 여성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이주·장애여성 등 취업 애로계층 취업지 원 강화
		외국 국적 동포 외국 인력 활용	외국 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외국 국적 동포 등의 국내 경제활동 참 여 확대
				개방적 이민 허용을 통한 해외우수인력 적극 유치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리 및 지원 강화 고용허가제 정착과 숙련기능인력 확보
			다문화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체류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체계 구축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분야	세부분 야	중점과제	주요사업	세부내용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 정보 제공 확대 학교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	실업자 훈련 계좌제 확대 재직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사업 효율성 제고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직 업훈련 참여 제고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진학 체제 구축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촉진 평생학습계좌제 확대 평생학습과 자격제도간 연계 강화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영세사업장(50인 미만) 작업환경 개선 노사 자율적 산재예방활동 정착 산재취약부문 지원 강화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상담 강화 직업재활급여 실효성 확보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 사회 제도 개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교육분야 제도개선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주택분야 제도개선		
			금융분야 제도개선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제도 개선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정성 유지		
			고령 친화 산업 육성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확보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고령친화제품 사용성 평가시스템 개발· 운영
		고령친화제품(서비스) 표준화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확대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		우수제품 지정·표시제도 확대				

분야	세부분 야	중점과제	주요사업	세부내용
			표시제도 확대	우수사업자 지정 제도 도입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발굴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법적 근거 마련
		국내외 시장 활성화	국내 수요기반 확충	산업박람회 홍보관 운영 내실화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종합체험관」운영 활성화
				지역사회밀착형 전시·체험관 운영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	해외시장 선점 인프라 확 충 및 지원	고령친화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인프라 확충
				고령친화 해외시장 개척 지원
			특수용도식품 중 고령자용 식품 기준규격 신설	
			고령자용 식품 신규시장 창출 및 시장 활성화	

〈부표 2-3〉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2016-2020)

분야	세부분야	중점과제	주요과제
저출산 대책	청년 일자리· 주거대책 강화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창출력과 일자리의 질 제고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및 해외+일자리 영토 확대
			주된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	청년·예비부부 주거 지원 강화
			학생부부의 주거여건 개선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임신·출산 사회책임시스템 구축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자금 지원 강화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
			임신·출산 의료비 대폭 경감(행복출산패키지)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난임부부 종합지원체계 구축
			산모·신생아 지원 확대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배려 강화
			여성건강 증진 강화
			결혼·출산친화적 세제개선
			한부모 가족 지원체계 강화
			비혼·동거가족에 대한 사회·제도적 차별 개선
			포용적 가족관 형성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건 조성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입양가족 양육지원 확대
	맞춤형 돌봄 확대· 교육 개혁	맞춤형 보육	아동이 행복한 사회
			아동이 안전한 사회
			수요자 맞춤형 보육체계로 개편
		돌봄지원체계 강화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
			보육·돌봄 사각지대 해소
			초등학생 돌봄 수요 대응체계 강화
		교육개혁 추진	지역 사회 내 돌봄 여건 확충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적성·능력중심으로 전환을 위한 교육·고용체계 개편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일·가정양립 실천 분위기 확산	일·가정양립 제도 이용권 보장	공교육의 역량강화
			사교육 부담 경감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일·가정양립 실현 분위기 확산
	남성·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일·가정양립 실천 여건 강화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확산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근무 환경 조성
			중소기업 실천여건 확충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 강화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활성화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지원프로그램 확대

분야	세부분야	중점과제	주요과제
고령 사회 대책	노후소득 보장 강화	공적연금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육아휴직 보편화를 위한 중장기 제도 개편 방안 검토
			1인 1국민연금 확립
		주택·농지연금 대폭 확산	연금분할 청구권 제도 확대
			기초연금 내실화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실화
			주택연금 대폭 활성화를 통한 노후 소득 증대
		노후 준비 여건 확충	농지연금 확산으로 고령 농업인 노후 소득 증대
			퇴직·개인연금 확산·정착
			장수리스크를 대비한 금융시스템 개선
			노후준비지원 확대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고령자 건강생활 보장	고령자 운동 활성화
			고령자 질병예방 및 관리 강화
			고령자 정신건강관리 강화
			노인의료비 부담 경감
			포괄간호·간병 서비스 확대
			장기요양보험제도 고도화
			치매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호스피스 활성화 등 후기의료체계 강화
		고령자 사회참여 기회 확대	고령세대의 여가 기회 확대
			고령친화형 콘텐츠 개발
			고령자 문화·여가 인프라 개선
			고령자 자원봉사지원체계 강화
			고령자 사회활동지원사업의 공익활동 내실화
			고령자 교육 기반 확충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시도-시군구-읍면동까지 연계된 국가 평생교육진흥 추진 체제
		세대 간 이해 증진	세대간 이해증진 기회 확대
			효행장려 풍토 조성 및 확산
		고령자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기 위한 주거여건 마련
		고령자 안전 및 권익보장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노인학대 예방체계 강화
			노인안심생활 지원
			고령운전자 안전관리 강화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여성 고용 활성화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다양한 근무형태 활성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체계 강화
		중·고령자 근로기반 확대	이공계 여성인력 진출 활성화
			여성고용 및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
			60세 정년제의 성공적 안착 집중지원
			정년제도 중장기 개선 방안 검토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분야	세부분야	중점과제	주요과제
			중·고령자 취업 지원 활성화
			중·고령자 창업지원체계 강화
			고령근로자 친화형 작업환경 개선 지원
			은퇴자 직무경험 활용제도 활성화
			‘고령’ 기준 재정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방안 마련 추진
		사회통합적 외국인력 활용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
			해외우수인재 유치기반 강화
			취업허용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강화
			비전문인력 수급관리체계 강화
			외국인 사회 적응 및 정착지원 강화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중장기 이민정책 수립
			외국인 관련 통계기반 구
	고령친화 경제로의 도약	고령친화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IT연계 스마트 케어 활성화
			고령친화 관광산업 육성
			고령친화 식품산업 육성
			고령친화산업 수출지원체계 강화
			전 산업에 걸친 유니버설 디자인 지원체계 강화
			고령친화산업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확립
			고령친화산업 인식 증진 및 소비 활성화 기반 마련
			고령친화제품·서비스의 표준화·인증 활성화
			사용자 중심 고령친화제품 개발 기반 강화
			고령친화 R&D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인구다문화사이징 대비 강화	장교·부사관 중심 병력구조 정예화
			병역자원 확보를 위한 전환·대체복무제도 개선
			대학구조개혁 추진
			교원양성 및 수급계획 재조정
			고령사회대비 지방 행정·재정제도 개선
			농촌지역 활성화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특수지역 연금 개혁
			재정지출 효율화
			세입기반 확충
			중장기 재정위험 관리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민간·지역·정부 협력체계 강화		사회 각 부문별 저출산 극복 운동 추진
			국민 참여 통로 다각화
	홍보·인식개선 활성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홍보 강화
			인식·가치관 형성 교육 강화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작은결혼식’ 확산)
	중앙·지방의 추진기반 강화		근거중심 인구정책 추진체계 구축
			저출산·고령사회영향평가제도 도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능 강화
			지자체 인구정책 추진역량 강화

부록 3.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의 정책과제 및 세부 내용

〈부표 3-1〉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3-2017)

영역	핵심과제	세부내용
유아교육 기획 확대	유아 무상교육 지속 확대	누리과정 도입 확대에 따른 연차적 지원단가 상향 조정('13~'16) '17년 이후에는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 추진 무상교육비 지원 확대시 부모 지원 바우처와 교원 인건비 연계
	유치원 신증설의 적정화	시·도별 유아수용계획 수립 유치원 수용계획을 위한 연령별 학급당 원아수 제시 기업체 등의 부설유치원 설립·운영 활성화
	유치원 시설·설비의 적정 기준 마련 내실 있는 유치원 정보제공을 위한 공시제도 정착	유치원 시설·설비 기준 구체화 유치원 정보공시제도의 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 유치원 정보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안착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유치원 급식·보건·안전 점검의 철저한 실시
유치원 운영 효율화	공립유치원 운영 개선	지역별 수요 및 서비스 만족도 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개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유치원 체제로의 전환 추진
	사립유치원 지원 및 운영체제 개선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방식 개선 사립유치원 원비 인상을 상한제 도입 사립유치원의 경영 단절 문제 해소
	유치원 평가제도 개선	유치원 정보공시제도와 연계한 유치원 평가 실시 평가결과의 단계적 공개 및 활용
	유치원 재무·회계규칙 도입	차입금과 적립금 제도 도입 및 제한적 허용 근거 마련 예·결산 기준 명시, 장부와 서식의 간소화 단식부기 회계, 재무·회계 관련 감사 실시
	유치원운영위원회 정착 및 발전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지역사회 인사 포함 방안 마련 유치원운영위원의 전문성 제고 및 학부모 참여 방안 모색 소위원회 활성화 및 다양한 운영 모델 개발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	누리과정 정체성 명확화 및 질적 발전	누리과정의 성격 및 내용 보완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정착 및 지속 발전 추진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현장 지원체제 강화	누리과정의 연령별 운영 지원 강 누리과정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장학 및 수업 컨설팅 체제 마련
	유아교육 교재교구 인증제 도입 및 우수 프로그램 활용	교재교구 인증제 도입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우수 유아교육 프로그램 보급 및 활성화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 유아 발달에 적합한 방과후과정 운영 시설 개선

영역	핵심과제	세부내용
교원의 전문성 및 자긍심 강화	방과후과정 전담인력 배치	방과후과정 전담 기간제 교원 배치
		방과후과정 지원 인력에 대한 규정 마련
		일정 자격을 갖춘 방과후과정 전담교사 배치로 질적 수준 유지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기준 강화	누리과정 담당 교사 자격 강화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연수 지원	유치원 교사 양성과정 기본 이수과목 정비
		교원 생애주기별 핵심역량 개발 및 적용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착	연수기관별 특화영역 설정, 코드 개발 및 부여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의 다양화
	유치원 교원임용 및 인사방식 개선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와 연계한 학습연구년제 시행
		초임교사를 단설유치원 또는 3학급 이상 병설유치원에 우선 배치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국공립 고경력 교사가 컨설팅 장학요원으로 1~2학급유치원 교사를 순회지도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사립유치원 신규 교원 채용시 공개채용 권고
	유치원 교사 근무여건 개선	대체교사 확대를 위한 인력 확보 및 운영 시스템 구축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정보화 전략 수립 (2013년)
		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2014~2015년)
	유아교육진흥원 및 체험교육원 설치 확대·운영 활성화	유아교육진흥원과 체험교육원 운영 지원 강화
		유아교육진흥원과 체험교육원 신규 설치
	유아교육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 전개	생애초기 유아교육에 필요한 부모교육 추진
		현장에 다가가는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유아교육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 강화	유아교육 관련 각종 위원회에 사립유치원 소속 인력활용 강화
		우수 사립유치원의 거점유치원 기능 수행 강화 및 지원
	유아교육 지원기능 강화	공·사립유치원간 협력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중앙 및 지방행정 조직의 지원 기능 강화
		유아교육 관련 유관기관간 역할 분담

〈부표 3-2〉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

영역	핵심과제	세부내용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교육의희 망사다리복원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한 국가책임 강화	국공립 유치원 단계적 확대 국공립 유치원 여건개선
	희망사다리 복원을 통한 실질적 교육 기회 확보	모든 유아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 강화(어린이 집 누리과정 국고 편성)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다문화유아 및 가정에 대한 교육확대
		특수유아에 대한 통합교육 확대 운영
	건전한 사립유치원 육성·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	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 공공위탁을 통한 운영방식 다양화 사립유치원의 법인 전환 활성화
교실혁명을 통한 유아중심의 교육문화 조성	유아 중심으로 교육패러다임 전환	놀이·유아 중심의 누리과정 혁신 유아중심의 교육을 위한 지도방법 변화 촉진(교 원 역량강화)
		유아와 현장이 중심이 되는 혁신유치원 확대
		유아 중심으로 방과후과정 개편
	영유아대상 과도한 사교육 문화 개선	돌봄 강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감소 공교육 혁신을 위한 건전한 유치원 운영 지원
교육공동체와 함께 유아의 건강한발달 지원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유아 교육 환경 조성	학부모안심인증제 도입·운영 공립유치원 급식 개선 직장인 학부모를 위한 유아 안심알리미 실시
		학부모간 공감·소통 문화 형성
		학부모 유아교육 참여 활성화
	교원 업무부담 완화를 통한 유아와의 상호작용 강화	행정인력 지원을 통한 교원 업무경감
		유아교육 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누리과정 지원금 지급방식 검토
유아교육 혁신을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	현장에 적합한 평가체계 마련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평가체계 정비
	사립유치원 지원 체계 정비	사립유치원 교원인력 채용 등 지원
		사립유치원 행정업무 지원을 통한 투명성 확보

부록 4. 중장기보육계획의 정책과제 및 세부 내용

〈부표 4-1〉 1차 중장기보육계획(2006-2010)

영역	핵심과제	세부내용
공보육 기반조성	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른 시설 확충	각 지자체별로 지역별 보육수요 및 자체 실정에 맞는 보육시설의 수급 계획 수립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농어촌 및 저소득 밀집지역과 보육시설 공급률이 낮은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 우선 확충 다양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방안 마련
	기본보조금 제도 도입	'07년 유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도입과 함께 가격규제 예외 시설 일부 허용 검토
		기본보조금 지원을 평가인증, 보육교사 급여 등과 연계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보육비용 지원 확대	아동별 기본보조금 지원을 통해 민간시설의 부모 부담 보육료를 국공립과 동일 수준으로 조정 만 5세아 무상보육 및 저소득층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차등보육료 지원을 '09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까지 확대 농어촌 지역의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을 '06년부터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까지 우선 확대 모든 장애아를 대상으로 무상보육료를 지원하고 장애아 통합 시설 지정을 확대 다자녀 보육료 지원비율을 현행 보육료의 20%에서 50%까지 확대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07년부터 무상 보육 지원
		기본보조금 확대로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비를 점진적으로 현실화
		영아보육 활성화를 위해「가정보육교사제」 도입 또는 가정보육 시설 정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검토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취업 부모에 대한 지원 강화	취업여성의 영아 양육 지원을 위한 '아이돌보미' 파견 사업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에 대한 입소 우선 순위 상향 조정
		보육시설 이용시간에 따른 보육료 지원 차등화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시설 이용시간 다양화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확대 일정한 교육을 받은 종고령자 육아도우미를 시간제 보육 시설에 지원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을 매년 10개소씩 확충하고,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을 매년 100개소씩 확대 지정
	농어촌 보육서비스 확대	농어촌 지역에 소규모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시간연장형 및 시간제 보육 우선 지원
		보육시설 차량 운행비 지원 확대 및 운영비 현실화 농어업인 양유아가 보육시설 이용시 지원 기준을 확대하

영역	핵심과제	세부내용
		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둔 여성농어업인에게 육아비용 지원(농림부)
	포괄적 보육서비스와 부모 협동보육 활성화	빈곤아동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부모교육을 위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국공립 및 법인시설에 사회복지사 배치 부모협동보육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및 운영매뉴얼을 개발·보급
	보육시설 환경 개선	취약 지역의 시설환경 개선 지원 확대 아동 특성에 적합한 시설 표준 모형 개발
아동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건강·영양·안전관리 강화	건강관리 체제 구축을 위해 보육시설과 보건소 및 인근 병원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 「보육 시설 안전 공제회」 설치 추진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	대학의 보육교사 양성교과목(학점)을 12과목(35학점)에서 15과목(42학점)으로 상향 조정 시설장에 대한 국가자격증제도 도입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제도 도입
	표준보육과정령 제정	'05년에 개발한 표준보육과정 입법화 추진 연령별(3단계)-특성별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평가인증시스템 구축	'06년부터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08년까지 모든 보육시설에 1차적 평가인증 시행 '09년 이후부터 모든 보육시설이 매 3년마다 1회씩 평가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보육시설 평가인증 제도가 서비스 질 관리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보육시설에 평가인증을 시행한 '09년 이후부터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연계
	보육행정시스템 구축	보육행정의 효율성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지자체-보육시설을 연계하는 보육행정시스템 구축 재정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육시설에서 온라인으로 보조금 신청 '06년 상반기 시범시행 후 점진적으로 전국 확충
보육서비스 관리체계강화	지자체 보육정책 활성화	보육담당 공무원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근무기간에 따른 가점, 수당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 검토 지자체별 보육정책을 매년 평가하고, 보육사업 수범도시를 선정
	지역사회 참여 및 시설 운영 투명성 제고	부모, 지역인사가 참여하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 및 지자체 부모 모니터링단 활성화 민간보육시설 대표자를 시설장 자격요건 소지자로 제한하는 방안 검토

〈부표 4-2〉 아이사랑 플랜(2009-2012)

영역	핵심과제	세부내용
양육비용 부담경감	보육료 지원 확대	만 0-4세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만 5세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및 누리과정 실시 다자녀가구 보육지원 확대 맞벌이 보육료 지원 농어업인 보육료 지원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단가 합리적 재산정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검토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 수당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 영유아 보육서 비스 강화	다문화가족 아동 보육료 지원확대 검토 다문화가족 아동 보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보급 다문화 프로그램 이수 보육교사 양성체계 마련 다문화가족 영유아 대상 소규모 보육사업 실시
	장애아 어린이집 이용 편의 제공	장애아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장비비 지원 장애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 강화 및 처우 개선 장애아 보육의 체계적 지원시스템 마련
	맞벌이 부모를 위한 보육서 비스 지원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지원 강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대 방과후 보육서비스 제공 아이돌보미를 활용한 안전한 보호와 아동양육부담 경감 영아보육 지원
	가정 내 자녀양육서비스 지원	가정 내 자녀양육서비스 지원
	어린이집 안전 개선	어린이집 환경 기준 개선 어린이집 영양·건강·안전 관련 프로그램 연계 및 교육 강화 열악한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평가과정 제도화 특기활동에 대한 기준 마련
	평가인증 활성화	평가인증 활성화
어린이집 서비스 질 제고	어린이집 균형 배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서비스 계약제 도입 검토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확충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부모협동 어린이집 확산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보육인력 보수교육에 표준보육과정, 평가인증을 필수 교과 목으로 편성하여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 인터넷 보수교육을 통하여 보수교육 참가의 편의성을 도모 향후 보육교사 자격기준, 보수교육 등을 강화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평가체계를 전면 개정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근로	보육교사 특별수당 확대

영역	핵심과제	세부내용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환경 개선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확대
	비용지원 선정기준 간소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간소화 및 합리화
	아이사랑 카드 도입	아이사랑 카드 도입 및 시행
보육정책의 효과적 지원체계 마련	보육정책 연구기능 강화	정책현장 중심의 자료수집 체계 및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활성화
		연구채널 다각화와 학제 간 통합연구로 신규 정책과제 발굴 및 개발 활성화
	보육사업 지원기구 효율적 개편	보육교사 자격관리,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무국 및 중앙보육정보센터 등 보육지원 기능 통합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설립	안전사고예방 및 사후보상 강화 등
	어린이집 지도감독 개선	주요 점검 항목을 사전에 공표하여 예방효과를 제고하고 효율적 점검을 지원
		지도점검 대상기관 사전예고제를 실시 어린이집 품질관리 매뉴얼 제작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정기적 워크숍으로 공무원의 지도점검 역량을 강화
	부모단체·모니터링단 활성화	부모단체 및 부모 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부모 참여권을 보장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실현

〈부표 4-3〉 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3-2017)

영역	핵심과제	세부내용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	0-5세 전 계층 보육·양육지 원 실현	보육료 쏠계층 지원 확대
		가정 양육수당 쏠계층 지원 확대
	보육료 적정화 및 부모 추가 비용 경감	표준보육비용 再계측 및 보육료 적정화
		누리과정 단계 단계적 인상 특별활동 등 부모 필요경비 부담 완화 추진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양육 지원	아동 및 가구 특성별 맞춤형 지원	One-stop 종합 보육·양육 서비스 지원
		實수요층 어린이집 입소 및 이용 불편 해소 가구 여건에 맞춘 촘촘한 양육 지원
	장애아, 다문화 영유아 맞춤형 지원 강화	보육·양육제도 합리적 개편 추진
		장애아 어린이집에 특수교사와 보육교사 단계적 의무배치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 장애아 발달에 적합한 어린이집 시설 환경, 교사 역량 등 기반 마련 다문화 보육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품질 관리 강화	믿고 맡길수 있는 복지형 어 린이집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직장어린이집 설치 유도 및 지원 확대 부모 선호도·체감도가 높은 어린이집 확충
	서비스 질 관리 강화 및 진입·퇴출 등 연계	생계형 시설 진입 제한을 위한 합리적 기준 개선
		어린이집 평가인증 강화 국가적 질 관리 체계 마련 및 평가결과와 보육정책 간 촘 촘한 연계·활용
양질의 안심(安心) 보육 여건 조성	보육인력의 역량 지원 강화 및 처우 개선	엄격한 자격 관리 및 전문성 지원 강화
		보육교사 근로 환경 개선 및 급여 인상 등 처우 현실화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질높은보육프로그램제공	보육 프로그램의 맞춤형 개발·보급, 운영 여건, 사후 컨 설팅 등 단계별 지원 및 관리 강화
		어린이집 특별활동 적정 운영 방안 마련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생태계 구축	참여·공개·신뢰 등 민-관협력기반조성	안전사고 예방 교육 강화 및 노후 어린이집 시설개선 지 원 확대
		안심 등·하원체계 구축 등을 위한 인프라 강화
	효율적·체계적인 보육 3.0 관리시스템구축	아동학대 시설·행위자 처벌 및 상담·교육 강화
		급식관리지원센터 단계적 확대 및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단계적 적용 현장 상담·지도 및 부모·지역사회 참여 강화
보육서비스 재정 및	보육·양육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건전한 보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공개 확대
		부모·지역사회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및 소통 기회 확대
		효율적 정보관리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법 위반 의심사례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부조리 사전 방지 및 효과적 발굴을 위한 제도 개선
보육서비스 재정 및	보육·양육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서비스 질 평가·관리 내실화
		맞춤형 보육·양육 전달체계 개편

영역	핵심과제	세부내용
전달체계개선	중앙-지방간 보육 재정 합리적 분담	국고보조율 인상을 통한 중앙 지원 확대 누리과정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
	바람직한 한국형 유보통합 추진방안검토	단계별 세부방안 마련·추진 유보통합추진단 구성·운영

〈부표 4-4〉 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영역	핵심과제	세부내용
보육의 공공성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로 확대	지방의 국공립 확충 및 균형 배치 여건 개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식 다양화
		'22년까지 매년 450개소 이상 확충 추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강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적 역할 확대
		민간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등 질 관리체계 운영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 확대 및 의무이행률 90%로 확대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 확대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	공공형어린이집 관리 강화
		협동조합 등 비영리적 운영주체 참여 보장
		어린이집의 관리 역량 강화
보육체계 개편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 체계 개선	어린이집 보육 지원 체계 개선 추진
		부모 선택기전 보장과 적정 보상체계 마련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표준보육비용 재계측
		적정 보육료 지원 및 부모부담 기준 정비
	보육과정 개선	영유아 특성에 맞춰 표준보육과정 개선 특별활동 개선 및 운영 합리화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보육교사 학과제도 도입
		보수교육 과정 내실화
		체계적 보수교육 운영을 위한 종합관리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보육교사의 적정 임금 지급 보장
		보육교사 보조인력 지원 확대
		교사 업무부담 경감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영유아 반 구성기준 개선
		어린이집 시설 기준 강화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	모든 어린이집 대상 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
		어린이집 지도점검 체계 개선
		어린이집 건강 및 안전관리 강화
부모 양육지원 확대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지원	부모교육 및 양육정보 제공 확산
		가정양육 서비스 확대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시간제보육 지원기준 개선
	취약보육 지원 개선	취약보육 대상 재검토 및 실태조사 취약보육 특성별 보육지원 개선

부록 5. 설문지 - 대국민조사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자에 대한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국가 정책연구기관으로 체계적인 육아정책의 수립을 위해 설립된 육아정책연구소는 저출산 극복 및 육아 지원을 위해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자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육아정책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 규모와 정책 지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정책 개선 사항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자료로만 활용되며 비밀이 보장되오니 성실하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 주관조사기관:	육아정책연구소	■ 조사실시기관:	(주) 에스티아이
■ 담당자:	김태우 연구원	■ 담당자:	박재균 연구원
■ 조사관련문의:	02-398-7783 wd7879@kicce.re.kr	■ 조사관련문의:	02-785-9564 sti9564@gmail.com

선문 1.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

1. 미혼
2. 기혼-배우자 있음
3. 기혼-배우자 없음(이혼, 사별 등)

선문 2. 귀하는 몇 년생입니까?

_____ 년생 ☞ 출생년도가 1995년 이후(만24세 이하)인 경우는
설문 종료.

선문 3.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자
2. 여자

선문 4. 귀하는 현재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는 몇 명입니까?

1. 없음 → 선문6으로
2. 있음 → _____ 명

선문 5. 자녀별 출생년도는 몇 년도입니까?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작성)

※ 첫째 자녀 연령이 2000년 이전 출생인 경우는 설문 종료.

첫째 자녀	_____ 년생
둘째 자녀	_____ 년생
셋째 자녀	_____ 년생
넷째 자녀	_____ 년생
다섯째 자녀	_____ 년생

선문 6.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_____ (특별시/광역시/도) _____ (시/군/구) _____ (읍/면/동)

선문 7. 귀댁의 가구원 수는 몇 명입니까? (함께 사는 사람을 모두 응답)

_____ 명

I.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자에 대한 인식

문 1. 귀하는 육아 정책 분야(보육, 유아교육, 저출산, 일가정 양립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입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5조원 미만
2. 5~10조원 미만
3. 10~15조원 미만
4. 15~20조원 미만
5. 20~25조원 미만
6. 25조원 이상
7. 전혀 모르겠음

문 2. 우리나라 2018년 총예산은 약 429조원이고, 육아 정책 분야(보육, 유아 교육, 저출산, 일가정 양립 등) 재정 투자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19조 가량(아동수당 제외)입니다. 귀하는 이러한 육아 정책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가 미래 세대 육성 및 육아 지원을 위해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과도한 편
2. 충분한 편
3. 부족한 편 → 문2-1으로
4. 매우 부족한 편 → 문2-1으로

문 2-1. 정부의 재정 투자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재정 투자 규모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2018년 총예산은 약 429조원이고, 육아 정책 분야(보육, 유아교육, 저출산, 일가정 양립 등) 재정 투자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19조 가량(아동수당 제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총 예산에서 4.4%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영유아 가구에 지원되는 보육료, 누리과정 지원금, 가정양육수당은 물론, 보육교사 인건비 및 유치원 운영비 등 기관 지원금, 장애, 한부모 등 취약계층에 대한 육아지원,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 등이 모두 포괄됩니다.

조원

문 3. 육아 정책 분야의 재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3-1. **현행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자액을 고려할 때, 예산 투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1. 보육 지원(어린이집 지원,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등)
2. 유아 교육 지원(유치원 지원, 누리과정 지원 등)
3. 돌봄 취약계층 지원(한부모, 다문화, 장애 가구 지원 등)
4. 일가정 양립 지원(육아 휴직,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
5. 기타 저출산 지원(아동 안전 지원, 아동 건강 지원, 출산 지원, 인식 개선 등)
6. 확대가 필요한 분야 없음

문 3-2. **현행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자액을 고려할 때, 예산 투입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1. 보육 지원(어린이집 지원,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등)
2. 유아 교육 지원(유치원 지원, 누리과정 지원 등)
3. 돌봄 취약계층 지원(한부모, 다문화, 장애 가구 지원 등)
4. 일가정 양립 지원(육아 휴직,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
5. 기타 저출산 지원(아동 안전 지원, 아동 건강 지원, 출산 지원, 인식 개선 등)
6. 축소가 필요한 분야 없음

문 4. 귀하는 육아 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설계할 때, 어떠한 정책 목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

1. 출산율 제고
2. 양육비용 부담 완화
3.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유인
4. 동등한 출발선 보장(사회적 형평성 제고)
5. 아동의 삶의 질 향상
6. 육아 가구의 만족도 증진(수요자 요구에 부응)
7. 기타 ()

문 4-1. 귀하는 **현행 육아 정책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이 아래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효과없음	→	보통	→	매우 효과적임	모르겠음
출산율 제고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양육비용 부담 완화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유인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동등한 출발선 보장 (사회적 형평성 제고)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아동의 삶의 질 향상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육아 가구의 만족도 증진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전반적인 정책효과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문 4-2. 귀하가 육아 정책의 효과성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으로 2개까지 응답)

1. 재정 투자액 규모 자체가 적기 때문
2. 재정 투입이 특정 부분(사업)에 쏠려 있기 때문
3. 재정이 다양한 사업에 너무 산발적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
4. 지원 대상자 선정이 잘못 됐기 때문
5. 수혜금액이 적어서 체감도가 낮기 때문
6. 지원 방식(현금, 바우처, 서비스 지원 등)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
7. 시대적 흐름으로, 어떠한 정책도 효과가 없기 때문

문 5. 정부의 재정 지원 방식은 가정양육수당과 같은 직접적인 비용 지원, 육아휴직 지원 등 육아를 위한 시간 지원, 의료 및 교육 서비스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귀하는 어떠한 방식의 지원이 육아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1. 육아 가구에게 직접적인 비용 지원(양육수당, 보육료 등)
2. 육아를 위한 시간 지원(육아 휴직, 시간제 보육 등)
3. 의료 등 서비스 지원(건강 검진, 아동 안전 등)
4. 보육 및 교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기관 지원(국공립 기관 확충, 교사 지원, 모니터링 등)
5. 어떠한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 같음

문 6. 귀하는 육아 지원이 필요한 정책 대상의 연령이 몇 살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특정 사업이 아닌 전반적인 육아 지원을 생각하며 응답. 연령은 만나이)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초1)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중1)	14세	15세	16세 (고1)	17세	18세
----	----	----	----	----	----	----	------------	----	----	-----	-----	-----	-------------	-----	-----	-------------	-----	-----

II. 육아정책 분야 지원 내용 조정에 대한 의견

※ 이하 문항은 대표적인 육아 정책 사업별로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 등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문 7. 정부는 영유아 가구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보육료 지원 정책, 누리과정 지원금, 가정양육수당 등)에 육아 지원 예산의 약 90%를 소요하고 있습니다. 무상 보육 지원에 따라 모든 영유아 가구가 아래 3개 중 하나의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지원금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귀하는 이와 같은 영유아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 수준 및 지원 대상이 향후에 어떻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령		보육료			누리과정(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종일반	맞춤반	긴급보육	국공립	사립	일반	농어촌	장애
0세반	12개월미만	441,000원	344,000원	60,000원	-	-	200,000	200,000	200,000
	24개월미만						150,000	177,000	200,000
1세반	36개월미만	388,000원	302,000원	60,000원	-	-	100,000	156,000	200,000
2세반	48개월미만	321,000원	250,000원	60,000원	-	-	100,000	129,000	100,000
3~5세반	48개월~취학전	290,000원	-	-	110,000	290,000	100,000	100,000	100,000

주 : 유치원 방과후 지원금 포함.

※ 연령은 만나이로 응답. (초등1학년은 7세이며, 중등1학년 13세, 고등1학년 16세)

구분	문 7-1. 지원금 수준 조정		문 7-2. 지원 대상 조정		
	문 7-1-1. 변화 내용	문 7-1-2. 지원금 조정 기준	문 7-2-1.	문 7-2-2. 연령 기준	문 7-2-3. 취약계층 우선 지원 대상
보 육 료 지원	1. 확대 2. 유지 → 문7-2로 3. 축소	1. 자녀 연령에 따라 차등 2.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3.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차등 4. 서비스 이용 시점에 따라 차등	1. 확대 2. 유지 → 문8로 3. 축소	자녀 연령 만 ()세 부터 만 ()세 까지(만) 지원하는 것이 적합	1. 저소득층 2. 한부모가족 3. 조손가족 4. 다자녀 가구 5. 기타 ()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1. 확대 2. 유지 → 문7-2 3. 축소	1. 자녀 연령에 따라 차등 2.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3.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차등 4. 서비스 이용 시점에 따라 차등	1. 확대 2. 유지 → 문8로 3. 축소	자녀 연령 만 ()세 부터 만 ()세 까지(만) 지원하는 것이 적합	1. 저소득층 2. 한부모가족 3. 조손가족 4. 다자녀 가구 5. 기타 ()
가정양육 수당 지원	1. 확대 2. 유지 → 문7-2로 3. 축소	1. 자녀 연령에 따라 차등 2.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3.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차등 4. 서비스 이용 시점에 따라 차등	1. 확대 2. 유지 → 문8로 3. 축소	자녀 연령 만 ()세 부터 만 ()세 까지(만) 지원하는 것이 적합	1. 저소득층 2. 한부모가족 3. 조손가족 4. 다자녀 가구 5. 기타 ()

문 8. 정부는 2018년 9월부터 가구소득을 고려(소득·재산 기준 하위 90%만 지원)하여, 아동수당을 지원하다가, 2019년 1월부터 모든 가구에 대해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현재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원 중이며 2019년 9월 1일부터 아동수당 지원 대상은 만 6세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귀하는 이러한 아동수당 지원 정책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1. 현재 정책 방향을 전적으로 지지함
2. 지원 자체는 찬성하지만, 일부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문 8-1로
3. 지원 자체도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 문 8-3로
4. 빨리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함 → 문 8-3로

문 8-1. 현재 아동수당 지원 제도의 조정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연령의 범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현재까지 만 6세 미만에 지원해 왔고, 9월 1일부터 만 7세 미만까지로 확대))

문 8-1-1. 지원 대상 연령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만6세	만7세 (초등 1학년)	만8세 (초등 2학년)	만9세 (초등 3학년)
문 8-1-2. 지원 수준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문 8-1-1. 지원 대상 연령	만10세 (초등 4학년)	만11세 (초등 5학년)	만12세 (초등 6학년)	만13세 (중등 1학년)	만14세 (중등 2학년)	만15세 (중등 3학년)	만16세 (고등 1학년)	만17세 (고등 2학년)	만18세 (고등 3학년)	
문 8-1-2. 지원 수준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문 8-2. 연령별 아동수당 지급액 이외에 우선적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급하는 추가 지원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문 8-2-1. 추가 지원 대상	문 8-2-2. 추가 지원 수준
1. 저소득층	자녀당 + ()만원
2. 한부모 가족	자녀당 + ()만원
3. 조손가족	자녀당 + ()만원
4. 다자녀 가구	자녀당 + ()만원
5. 기타()	자녀당 + ()만원

문 8-3. 귀하가 아동수당 지원 정책에 반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1. 대체로 정책적 효과가 낮을 것이라 판단되어서
2. 지원금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 같아서
3.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가중될 것 같아서
4. 내가 낸 세금으로 다른 사람만 도와주는 것 같아서
5.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해주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6. 영유아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이 유난히 많은 것 같아서
7. 기타 ()

문 9. 정부는 맞벌이 가구의 육아 시간 지원을 위해서 육아 휴직 지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귀하는 육아휴직 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향후 지원 수준 및 지원 대상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조정할 필요 없음 → 문 9-4로
2. 조정 필요성이 있음 → 문 9-1로
3. 육아휴직 제도 자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음 → 문 9-4로

구분	문 9-1. 지원 대상의 연령	문 9-2. 휴직 가능 기간	문 9-3. 지원 수준		
			소득 대체율	상한액	하한액
응답	자녀 연령은 만 ()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개월까지 통상 임금의 ()%까지 대체되도록 하고, 이후 ()%까지 대체되도록 함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개월까지 상한액 ()만원, 이후 ()만원	하한액 ()만원
현행 제도	만 8세(초등 2학년)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자녀 1명당 1년 이내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4개월째부터 50%를 지급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상한액 월 150만원, 4개월째부터 월 120만원	하한액은 기간에 상관없이 월 70만원

문 9-4. 현재 아빠의 육아휴직을 독려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상한 2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문 9-4-1. 귀하는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이전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1.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었음
2. 제도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음
3. 잘 알지 못했음

문 9-4-2. 귀하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제도가 아빠의 육아 휴직을 독려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효과없음	→	보통	→	효과적임
① -----	② -----	③ -----	④ -----	⑤

문 9-4-3. (문 9-4-2에서 1과 2에 응답한 경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육아휴직은 부모 중 누구든 1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2. 소득 대체 상한액(월 250만원)이 너무 작기 때문
3. 소득 대체 상한액의 지급 기간(3개월)이 너무 짧기 때문
4.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는 것을 아빠 스스로 싫어할 것 같아서
5.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는 것을 회사가 허용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6.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선에서 바라볼 것 같아서
7. 기타 ()

문 9-4-4. 귀하는 앞으로 이와 같은 아빠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지원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소 필요	→	현행 유지	→	확대 필요
① -----	② -----	③ -----	④ -----	⑤

문 10. 정부는 보육 및 유아 교육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등 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도 시행 중입니다. 영유아 가구에게 양질의 무상 보육·유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기관에 지원하는 다음과 같은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항목	축소되어야 한다	→	현행 유지	→	확대되어야 한다	모르 겠음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	① -----	② -----	③ -----	④ -----	⑤	⑧
기관 운영비(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및 기본 보육료 지원)	① -----	② -----	③ -----	④ -----	⑤	⑧
교사 지원(교사 처우 개선비, 보조교사 지원 등)	① -----	② -----	③ -----	④ -----	⑤	⑧
모니터링 등 질 관리(아동학대 방지, 급식 지원, 평가 인증 등)	① -----	② -----	③ -----	④ -----	⑤	⑧

문 11. 육아지원 정책 분야의 주된 사업 중 향후 재정 투자의 확대가 가장 필요한 사업은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를 모두 읽어 보시고, 분류에 관계없이 순서대로 3순위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비용지원	1. 보육료 지원	2. 가정양육수당 지원
	3. 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	4. 아동수당
시간 지원	5. 육아 휴직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7. 시간 연장반 및 시간제 보육 등 지원	
취약계층 지원	8. 한부모 가구 지원	9. 다자녀 가구 지원
	10. 장애 가구 지원	11. 저소득층 지원
기관 지원	12.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	13. 기관 운영비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및 기본 보육료 지원)
	14. 교사 지원(교사 처우 개선비, 보조교사 지원 등)	15. 모니터링 등 질 관리 (아동학대 방지, 급식 지원, 평가 인증 등)
서비스 및 지역 인프라 지원	16. 아동 건강검진 등 의료 지원	17. 아이돌보미 등 돌봄 지원
	18. 아동 관련 지역 인프라 (안전 및 육아친화 환경) 지원	19. 기타 ()

Ⅲ. 육아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인식

문 12. 귀하는 다음과 같은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보통	→	전적으로 동의함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보육료, 아동수당 등 비용 지원을 하는 현행 지원 정책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세금 부담만 가중시킬 뿐 효과가 낮으므로 지금이라도 폐지되는 것이 맞다	① -----	② -----	③ -----	④ -----	⑤
보편적 복지의 확대로 인해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축소되는 것 같아, 사회적 형평성이 저해됐다고 생각된다	① -----	② -----	③ -----	④ -----	⑤
지금의 저출산 대책은 영유아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현금성 지원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훨씬 좋다	① -----	② -----	③ -----	④ -----	⑤
요즘 부모들은 자녀 출산 및 육아 지원에 대해서 지나치게 국가에 요구하는 바가 많다	① -----	② -----	③ -----	④ -----	⑤
저출산에 대한 지원보다도 고령자에 대한 지원이 더 증가되어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영유아에 대한 지원보다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이 더 증가해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라면 육아 지원보다 결혼 지원이 더 중요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정부의 정책 방향이 출산을 제고에서 아동의 삶의 질 향상으로 변화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변화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민간 어린이집이나 사립 유치원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것이 마땅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영유아 뿐 아니라 아동의 돌봄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일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Ⅳ. 응답자 및 가구 특성

배문 1. 귀하의 최종학력, 취업상태, 직종, 종사상지위에 관해 응답해주세요.

최종학력	취업상태	직종	종사상지위
1) 고졸 이하	1) 취업 (휴직포함)	1) 전문가 및 관리자	1) 정규직
2) 전문대(2~3년제) 졸업	2) 구직 중 → 배문 2로	2) 사무 종사자	2) 비정규직 (임시 계약직, 단기 계약직)
3) 4년제 대학 졸업	3) 학생 (휴학포함) → 배문 2로	3) 서비스 종사자	3) 일용직
4) 대학원 이상	4) 무직/기타 → 배문 2로	4) 판매 종사자	4) 고용주, 자영업, 프리랜서
		5) 농림어업 종사자	5) 무급 가족종사자
		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 장기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8) 단순노무직	
		9) 기타	

배문 2. 지난 3개월 기준으로 귀하의 월평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얼마입니까?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에도 귀하의 소득만을 응답해주시시오. 세후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없는 경우 '0'으로 표기)

세후 월 _____ 만원

배문 3. 지난 3개월 기준으로 귀하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함께 사는 가구원 모두의 소득과 이자소득, 이전소득(아동수당 등 각종 수당), 부동산 소득(임대료 등) 등을 모두 포함해서 응답해주시시오.(없는 경우 '0'으로 표기)

세후 월 _____ 만원

배문 4. 귀하는 지금 동년배의 사람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는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층	중층	하층
① 상상	④ 중상	⑦ 하상
② 상중	⑤ 중중	⑧ 하중
③ 상하	⑥ 중하	⑨ 하하

배문 5. 귀하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보수
2. 중도
3. 진보
4. 정치적 성향 없음

배문 6. 향후 육아 정책 분야의 재정 투자에 있어서 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록 6. 설문지 - 전문가조사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자에 대한 전문가 조사

본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2019년 기본과제인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의 성과 분석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육아정책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조사 설문입니다.

본 설문은 AHP 조사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약 20분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응답시간 감소와 자료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AHP조사에 앞서 제시되는 ‘응답 요령’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응답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연구 수행 및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9월

□ 조사주관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최효미 부연구위원(02-398-7771)

육아정책연구소 김태우 연구원(02-398-7783)

□ 조사실시기관 : (주)에스티아이 박재균 연구원

■ 응답자 특성

이름				전화번호	
성별	☐ ① 여성		☐ ② 남성		
연령	☐ ① 20대		☐ ② 30대		
	☐ ③ 40대		☐ ④ 50대 이상		
현재 직업	☐ ① 교수	☐ ② 연구원	☐ ③ 현장전문가	☐ ④ 기타()	
전공(연구)분야	☐ ① 보육	☐ ② 유아교육	☐ ③ 사회복지, 경제, 사회, 기타		
조사표작성일	2019년 월 일				

전문가 조사 사례금 입금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기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래의 정보는 사례비 지급에만 사용된 후 폐기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이메일주소		
계좌이체 희망	계좌번호	(은행명 :)

AHP 평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는 모든 의사결정 요소에 대하여 쌍대비교라는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의사결정 요소 전체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방법론입니다. 평가할 정책은 “유아교육·보육정책 목표의 우선순위 선정”과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선정” 2가지입니다.

〈작성 요령〉

각 설문에 있어서 두 지표(A, B)를 비교하여 높은 정도에 따라 최저 1점부터 최고 9점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A와 B를 비교할 때 A가 B보다 높다고 생각하시면 A가 있는 왼쪽에, B가 A보다 높다고 생각하시면 B가 있는 오른쪽에 표시합니다.

[표시 요령]

기준	극히 중요								동등								극히 중요	기준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A														V				B

B가 A보다 6배 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하실 경우: 오른쪽 6에 표시

※ 주의사항

본 조사는 답변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일관성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일관성이 낮으면 설문을 다시 해야 합니다.

1) 정책 A가 B보다 우선순위가 높고, B가 C보다 정책우선순위가 높다면, **반드시 A가 C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야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정책대안을 미리 우선순위에 따라 A>B>C로 나열해 놓은 다음에 이 우선순위에 기초하여 쌍대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2) 정책 A가 B보다 우선순위가 2배 높고, B가 C보다 우선순위가 2배 높다면, A는 C의 4배정도의 우선순위가 나와야 합니다(* A= 2B, B=2C라면, A=4C) 따라서 **정책간 계량적인 차이를 맞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1. “육아정책 분야의 재정 투자액의 확대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의견”입니다. 아래의 5개의 부문을 기준으로 쌍대비교해주시기 바랍니다.(예산투입 비중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문	정책 예시	2017년 결산액 기준 예산 투입 비중
보육 지원	어린이집 지원,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등	61.9%
유아 교육 지원	유치원 지원, 누리과정 지원 등	30.6%
돌봄 취약계층 지원	한부모, 다문화, 장애 가구 지원 등	1.6%
일가정 양립 지원	육아 휴직,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	3.9%
기타 저출산 지원	아동 안전 지원, 아동 건강 지원, 출산 지원, 인식 개선 등	2.0%

기준	확대 필요								동등									확대 필요								기준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보육지원																		유아교육지원								
보육지원																		돌봄취약계층지원								
보육지원																		일가정양립지원								
보육지원																		기타 저출산 지원								
유아교육지원																		돌봄취약계층지원								
유아교육지원																		일가정양립지원								
유아교육지원																		기타 저출산 지원								
돌봄취약계층지원																		일가정양립지원								
돌봄취약계층지원																		기타 저출산 지원								
일가정양립지원																		기타 저출산 지원								

2. “육아정책 분야 재정 투자에 있어 정책 목표”는 어떠한 기준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쌍대비교 방식)

기준	극히 중요								동등								극히 중요	기준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재정효율성																		효과성
재정효율성																		형평성
효과성																		형평성

3. 육아 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설계할 때, 아래의 정책 목표는 얼마나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표	우선 순위						
	← 낮음				높음 →		
1) 출산율 제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양육비용 부담 완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유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동등한 출발선 보장(사회적 형평성 제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아동의 삶의 질 향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육아가구의 만족도 증진(수요자 요구에 부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귀하는 현행 육아 정책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이 아래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표	전혀 효과없음	→	보통	→	매우 효과적임	모르 겠음
출산율 제고	① ----- ② ----- ③ ----- ④ ----- ⑤					⑧
양육비용 부담 완화	① ----- ② ----- ③ ----- ④ ----- ⑤					⑧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유인	① ----- ② ----- ③ ----- ④ ----- ⑤					⑧
동등한 출발선 보장 (사회적 형평성 제고)	① ----- ② ----- ③ ----- ④ ----- ⑤					⑧
아동의 삶의 질 향상	① ----- ② ----- ③ ----- ④ ----- ⑤					⑧
육아 가구의 만족도 증진	① ----- ② ----- ③ ----- ④ ----- ⑤					⑧
전반적인 정책 효과성	① ----- ② ----- ③ ----- ④ ----- ⑤					⑧

4-1. 귀하가 육아 정책의 효과성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으로 2개까지 응답해주십시오.

- 1. 재정 투자액 규모 자체가 적기 때문
- 2. 재정 투입이 특정 부분(사업)에 쏠려 있기 때문
- 3. 재정이 다양한 사업에 너무 산발적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
- 4. 지원 대상자 설정이 잘못 됐기 때문
- 5. 수혜금액이 적어서 체감도가 낮기 때문
- 6. 지원 방식(현금, 바우처, 서비스 지원 등)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
- 7. 시대적 흐름으로, 어떠한 정책도 효과가 없기 때문

5. 정부의 재정 지원 방식 중 어떠한 방식의 지원이 육아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쌍대비교 방식)

부문	정책 예시
비용 지원	(부모)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지원금,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시간 지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서비스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 의료 서비스 지원 등 * 기관을 이용하면서 받는 보육료 지원 등은 비용 지원으로 분류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통한 지원은 기관지원으로 분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지원	국공립 기관 확충, 교사 지원, 어린이집 및 유치원 모니터링 등

기준	매우 적합									동등								매우 적합	기준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비용지원																		시간 지원	
비용지원																		서비스 지원	
비용지원																		기관 지원	
시간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지원																		기관 지원	
서비스 지원																		기관 지원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의
성과 분석 연구